행정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020-10

2007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2008. 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 목 차 ||

제Ⅰ장 총 괄 편

제1절 점검·평가 개요

1. 추진배경 ····· 3

2. 점검·평가체계 ····· 4

제2절 2007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결과 ····· 8

2. 총 평 ····· 9

3. 분야별 세부평가 ····· 10

4. 점검·평가단 의견 및 요구사항 ····· 17

< 참고자료 >

1. 사업별 추진실적 ····· 20

2. 사업별 평가결과 ····· 28

제Ⅱ장 분야별 평가편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Ⅰ. 총 평 ····· 37

Ⅱ. 평가결과 ····· 39

Ⅲ. 평가소감 ····· 42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 43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 48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 52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57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61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66

1-2-1-2.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71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77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 83

1-2-3-1.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 87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93

1-2-3-3.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 98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 103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107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 지원 ····· 112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 120
1-3-3-1.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 127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사고·고령농가 지원) ····· 131
1-3-3-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 137
1-3-5-1.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 142
○ 여성농업인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1-3-5-2)
○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1-3-5-3)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 147
1-4-2-3.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 152
1-4-2-4.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156
1-4-3-0.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 160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Ⅰ. 총 평 ····· 167

Ⅱ. 평가결과 ····· 169

Ⅲ. 평가소감 ····· 172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 173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운영 ····· 179
2-1-2-1. 학교군 구성·운영 ····· 184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190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195
2-1-3-5. 도시문화 체험학습 운영 지원 ····· 201
2-1-4-1.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 208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 212
2-1-4-4.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 217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 222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227
2-2-2-2. 농어업관련 대학생 학자금 지원 ····· 232
2-2-3-1.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 238
2-2-3-2. 자영농 · 수산계고 급식비 ····· 243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
○ 수산계고교(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 252
2-3-1-2.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 258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 265
2-3-2-2. 교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 270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 275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Ⅰ. 총 평 ····· 281

Ⅱ. 평가결과 ····· 283

Ⅲ. 평가소감 ····· 287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3-1-1-0.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 288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293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 299
3-2-1-3.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 303
3-2-2-1. 소도읍 육성사업 ····· 308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 313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319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 324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 330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 334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 ····· 339
3-3-2-4. 소하천정비사업 ····· 343
3-3-2-5.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349
3-3-2-6. 농촌폐비닐수거비 지원 ····· 353
3-3-2-7.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 357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 360
3-3-2-9. 양식어장 정화사업 ····· 364
3-3-2-10. 해수욕장 주변정비 및 시설개선 사업 ····· 368
3-3-2-11.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사업 ····· 372
3-3-3-1. 농어촌도로 정비 ····· 376
3-3-3-2. 교통서비스 강화 ····· 381
3-3-3-3. 국고여객선 건조 ····· 385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 389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 393
3-3-4-2. 오지개발촉진사업 ····· 398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 403
3-3-5-1.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지원 ····· 409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 ····· 414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 418
3-3-5-5.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422
3-3-5-6.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 427
3-3-5-7.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 432
3-3-5-8.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 437
3-3-6-1. 정보화마을 조성 ····· 442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447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 451
3-3-6-4. 디지털어촌 구축 사업 ····· 455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 459
3-3-7-3. 농어업 관련정보 제공 확대 ····· 462

제4절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Ⅰ. 총 평 ····· 469

Ⅱ. 평가결과 ····· 472

Ⅲ. 평가소감 ····· 474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4-1-1-1. 향토자원의 조사 · 발굴 및 DB구축 ····· 476
4-1-1-2. 향토자원 소득화(향토산업 육성)사업 ····· 483
4-1-1-3.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 489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 495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 500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506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 511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 516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 523
4-2-1-5.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 528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 533
4-2-1-8. 농업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 538
4-2-1-10.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 543
4-2-1-11. 해양관광자원 개발 ····· 547
4-2-2-1. 도농교류 페스티벌 ····· 551
4-2-2-3. 농촌체험교육농장 시범 ····· 556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 561
4-3-1-0. 경관보전 직불제 ····· 567
4-3-2-1. 농촌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자원관리기반 구축 ····· 573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 578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 582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 587
4-3-5-0.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592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 598
4-4-1-0. 1사1촌 운동 ····· 606
4-4-2-0.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전원마을 조성) ····· 611
4-4-3-1.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 616
4-4-3-3.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 622

4-4-4-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626

제Ⅰ장
총 괄 편

제 1 절 점검 · 평가 개요

1. 추진배경

□ 정부는 '04.3월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05.4)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 농어촌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통해 **농산어촌 문제를 범정부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운영**

□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별사업의 효율화 및 사업간의 통합·연계를 추진**

○ **정부의 단기 및 중장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국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도모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점검·평가를 통해 스스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유도

2. 점검·평가체계

가. 평가근거

□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삶의질향상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삶의질향상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때에 **전문연구기관**에 **평가 의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9조** : 위원회는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삶의질향상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삶의질향상 실무위원회**에 **점검·평가단**을 **설치**하여 **매년 평가** 실시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실무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평가하는 기능을 수행

※ **삶의질향상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 위원장은 기본계획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점검·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점검평가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나. 평가기관

□ **농어업인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를**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점검·평가단 구성

□ 점검·평가단은 **총괄,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의 5개 분과팀 26명**으로 구성 (임기 2년)

※ 평가단 명단 : 별첨

다. 평가대상

□ '08년 평가에서는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07년도 삶의질향상 시행계획의 **113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 실시**

○ 시범·연구·비투융자·지방이양사업은 정성적 평가를 일반·소규모 사업은 정량적 평가를 병행 실시

< 평가대상사업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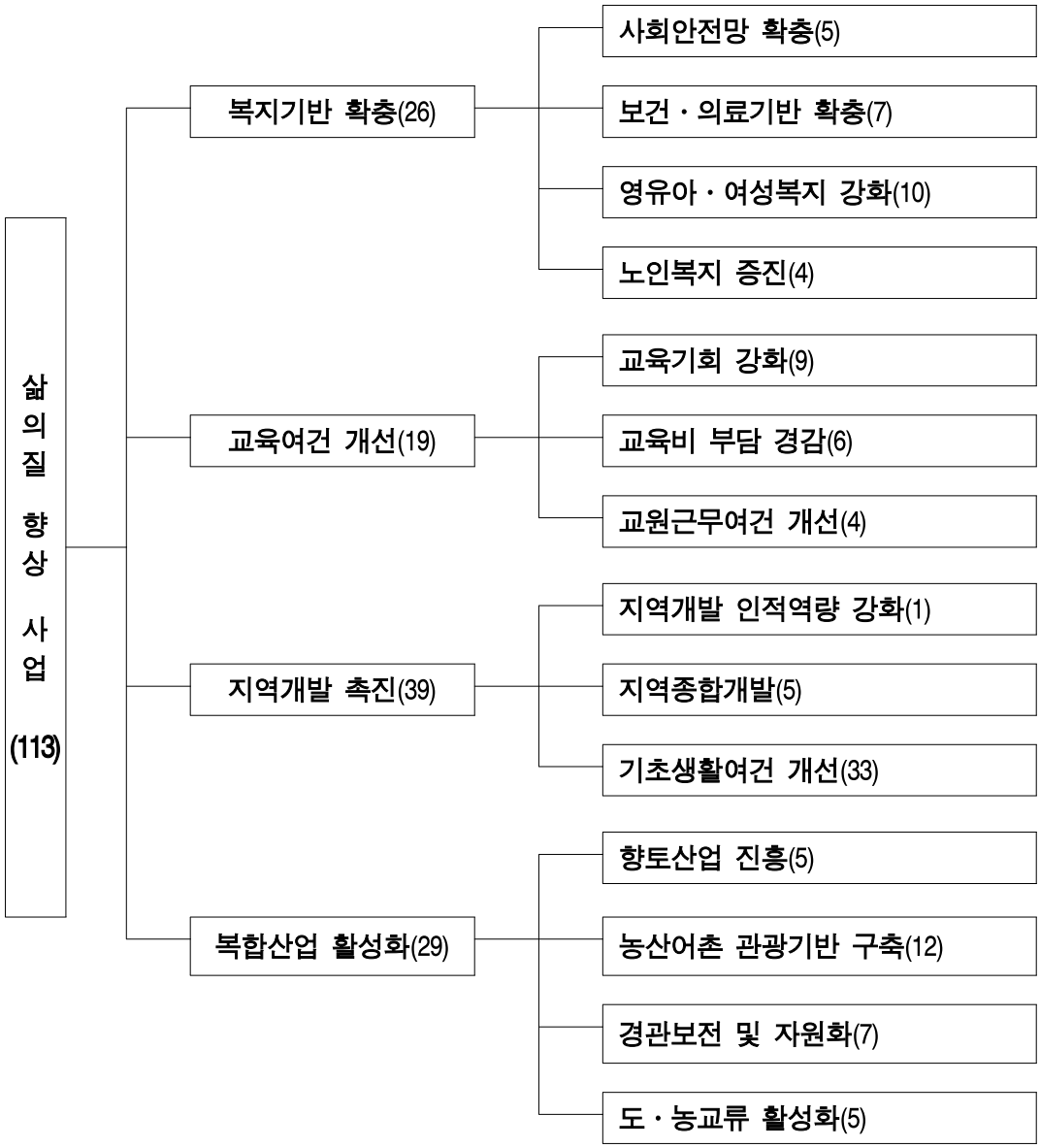

※ ( ) 내서는 사업개소수

라. 평가방법

□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는 『시행계획 점검·평가단 운영규정』에 의거 시행

□ 점검·평가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단계(계획, 집행 및 성과단계)별 점검·평가 **항목** 및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평가위원은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지침상 평가항목 및 착안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

○ 평가위원이 제시한 점수와 평가의견은 4개 팀별 회의와 점검·평가단 전체회의에서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사업추진의 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소규모사업과 연구·시범·비투융자·지방이양 **사업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

○ 계획단계 : 사업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절차적 합리성

○ 집행단계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중간점검 결과 반영, 재원조달 등

○ 성과단계 :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

□ 일반·소규모사업사업은 각 분야별로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상위 10~20%, 중위 60~80%, 하위 10~20%**의 등급 부여

○ 그 외 시범·연구·비투융자·지방이양사업은 정성적 평가 실시

※ '07년도 삶의질향상 시행계획의 일반/기타사업 분류

⇒ 일반·소규모사업 : 79개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등)

⇒ 기타사업 : 34개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등)

마. 평가결과의 환류

□ 목표의 달성도 등 **정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집행상황·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정책개선방안** 제시

○ **정책개선방안**은 보고후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의 익년도 예산액 조정을 제안**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액 편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실무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보고서를 각 기관, 기획재정부에 통보

○ 각 기관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

바. 평가 추진일정

평가지침 작성, 부처 통보	⇒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단 ('07.12)		각 부처 ('08.1)		평가단 ('08.1~3)

□ 점검·평가지침을 작성, 평가단에서 심의·확정

○ 각 부처에 '08년도 점검·평가지침 통보 ('07.12)

□ **각 부처에서 소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사무국(농식품부 농촌정책국)에 제출** ('08. 1월)

□ **사업평가 및 점검·평가보고서 작성**

○ 팀별로 사업별 평가 및 분야별 평가보고서 작성 (1~3월)

○ 총괄팀에서 총괄 평가보고서 작성 (4월)

○ 점검·평가단 최종 의결을 거쳐 평가보고서(안) 확정(4.30)

제 2 절 2007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결과(요약)

□ '07년 시행계획에 반영된 **113개 사업**을 일반사업(일반·소규모)과 기타사업(연구·시범·비투융자·지방이양)으로 분류하여 **점검·평가 실시**

* 일반사업(79개) 중 100억원 미만(37개)은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

□ 일반사업(79개)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별 상·중·하위로 구분**

○ 기타(연구·시범·비투융자·지방이양) 사업(34개)은 정성평가만 실시

□ **평가결과** : 상위 14개(17.7%), 중위 55개(69.6%), 하위 10개(12.7%)

평가등급	분야별	사 업 명
상위 (14)	복지기반확충 (3)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공공보건기관 기반확충
	교육여건개선 (2)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지역개발촉진 (5)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 소도읍육성,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복합산업활성화 (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경관보전직불제
하위 (10)	복지기반확충 (2)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장비 확충,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교육여건개선 (1)	농산어촌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지역개발촉진 (4)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테마과학관 건립, 디지털어촌 구축
	복합산업활성화 (3)	산림휴양공간 조성,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해양관광자원개발

2. 총 평

□ '07년 삶의 질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대부분이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 농산어촌 문제해결 등을 위해 사업개선이 필요한 **기존사업은 리모델링**

* 여성농업인 창업지원+생산품 품질향상+전자상거래 관리⟹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등

○ 농산어촌의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 농산어촌 경관보전,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신규발굴 필요

□ 사업추진 방식 점진적 개선을 통해 효율성 증대

○ 부처별 유사사업은 **사업간 통합·상호연계 강화**로 시너지효과 제고

- 중앙정부 부처 내, 부처 간 및 지자체간 유사사업의 통합추진 유도

* 마을개발(농촌+어촌+산촌), 관광사업(녹색농촌+전통테마+문화역사) 등

□ 신뢰성 있는 **점검·평가를 위한 제도보완 및 시스템 구축**

○ 자체 점검·평가보고서의 실용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 보완

* 사업별 양적지표(사업개소수, 예산집행 등)를 질적지표(만족도 등)로 보완

○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및 미진한 사업 개선방안 지도

□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

○ 삶의 질 향상 사업들의 효과적 현장 접목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

- 전국적 워크숍 및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

3. 분야별 세부평가

1 복지 분야

◎ 복지기반 확충 분야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26개)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대체로 규모**가 크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 하에서 추진하는 **중앙부처 주관 사업들이 성과 달성도가 높음**

- 이에 비해 소규모사업, 지자체가 소요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목표달성도 저조

◎ 대부분 사업이 실적 중심의 정량적 성과지표만 제시하여 점검·평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성적 성과지표의 발굴 필요**

□ 평가 상위사업

○ '07년 점검·평가에서도 전년도 우수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들이 상위사업으로 평가되었고,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은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림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매년 전수조사를 통한 적격자 선정으로 예산낭비 방지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으며, 매년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
-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확충**은 낙후된 보건기관에 시설·장비 현대화 및 인력·시설 확충으로 이용률 증가와 심리적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객 만족도가 높음

□ 평가 하위사업

○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나,

- 기존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후 **양질의 보육 서비스 지원 방안은 부족함**

- 향후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산어촌 취약지역의 보육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는 것이 사업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

○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은 농업인들이 힘든 농사일에 의한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관리 생활화를 위해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 본 사업으로 기 설치된 각종 기구의 사후관리, 시설운영 등 유지·보수대책이 없어 시설의 무단방치 문제가 발생

- '08년부터는 지방 자율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인근 보건진료소에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활용 대책 마련 필요

2 교육 분야

◎ 교육 분야에서 추진된 사업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며, 농산어촌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함

◎ 일부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어 중앙부처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없어 **사업취지 및 목적달성이 불확실함**

-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지방과 중앙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필요

□ 평가 상위사업

○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사업**은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기여함

- 지역의 우수고등학교 육성으로 우수학생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 자녀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정책 만족도가 높음

○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소외되고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

□ 평가 하위사업

○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은 유치원을 의무교육화 하려는 시점에서 **오히려 정책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 농산어촌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지원정책은 공·사립 모두 열악해질 우려

3 지역개발 분야

◎ 지역개발 분야 사업은 기존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성공적인 **사업성과 달성**

-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적용

◎ 농산어촌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역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관리 필요

◎ 점검·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

- 정확한 평가자료 제시와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상시평가체제 구축 등 보완 필요

□ 평가 상위사업

○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 사업 대부분은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방식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 달성도가 높음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성공적인 사업성과 달성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예비선정제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상향식 추진방식 도입으로 사업시행 착오를 줄이는 노력

- **마을 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를 선정하고, 관계기관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용수공급계획의 중복방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사업완료시 정기적 수질검사 등을 통한 음용수 관리 등 철저한 사업추진과 사업추진 후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긍정적임

□ 평가 하위사업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은 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이용자의 사업 만족도는 높였으나 부정이용, 타인판매 등 부작용이 따르며 장기적으로 주민의 자생력을 해칠 우려

○ **디지털어촌구축사업**은 어촌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구체적 분석과 성과지표 부재

○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사업**은 사업의 성과도가 불투명하며, 향후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 자체의 연속성이 의심됨

○ **지방테마과학관 설치사업**은 건축물 축조보다는 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기본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으며 사업진척도 부진

- 건립중인 사업 지구에 대해 사업진척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사업보완 필요

4 복합산업 분야

◎ 대부분 사업이 목표달성과 성과관리 측면에서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보다 내실있는 자체 점검·평가 보고서 작성** 필요

- "삶의 질 특별법"에서 취지로 삼고 있는 사업추진시 지원대상(지역범위, 지원자)에 **대한 부처 관계자의 인식 부족**

◎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직결되는 신규사업 개발** 및 향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한 새로운 기획 필요**

- 현장에서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을 즉시 기획하여 반영
- 기획한지 오래 경과한 사업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리모델링

□ 평가 상위사업

○ 평가 결과 상위로 평가된 사업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갖추고 있음

-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역량 강화 및 성과창출 가시화
- **경관보전 직불제**는 변화하는 농정 패러다임에 적합하게 대응하고,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현지조사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방법이 우수하며,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은 해당지역의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자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만족도 높음

□ 평가 하위사업

○ 하위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목표와 절차, 성과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

-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사업**은 획일적 시설 조성으로 지역별 특성과 기능의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전문인력 미비 등 운영과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이 위치한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로의 파급효과 유발 미흡
-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 및 성과관리 지표 제시 미흡

4. 점검·평가단 의견 및 요구사항

가. 평가단 의견

□ 신뢰성 있는 **점검·평가를 위한 제도보완 및 시스템 구축**

○ 각 부처에서 매년 작성하는 자체 점검·평가보고서의 실용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업별 성과지표 재검토 및 보완 필요

○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미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이행 지도

□ 삶의 질 계획하의 **유사·중복사업 체계화 및 사업관리 강화**

○ 마을개발, 체험마을, 정보화 관련 유사사업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위원회의 강력한 조정**을 통한 체계화가 필요

○ 기존과제는 여건변화에 맞게 사업방식 등 리모델링, 신규과제 적극 개발 및 추진중(완료) 사업은 **철저한 사후관리**

○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

□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적 현장 접목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의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

-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지방과 중앙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필요

○ 전국적 워크숍 및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도 및 역량 제고

□ 사업 기획·조정 및 평가·피드백 체계를 실질화시키고, 사업간 연계·통합 추진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 **활동 강화**

나. 강화 및 신규 추진 필요사업

○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은 정주기능 및 중심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농산어촌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높은 사업

- 현재 읍과 마을단위 사업에 비해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되므로 그 기능이 미약

○ **해수욕장 주변정리 및 시설정비 사업**은 기후온난화로 인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인파가 매년 증가하고, 지반침식 등으로 해수욕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점진적 증가가 요구됨

○ **우수고교 집중육성사업**은 지역의 학생 유출을 줄이고, 지역의 중심학교를 육성하여 지역이 발전하는 기초를 만들고 있으며,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은 현재의 지원 규모로는 전국의 장애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학교군 구성·운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교육 내실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 조기정착 필요

○ 향후 강화가 필요한 영역의 **새로운 기획** 및 **신규과제 개발**

- 경관보전 직불제를 넘어서는 농산어촌 경관 보전을 위한 사업, 도농교류 관련 사업들의 체계화, 도시민 농촌유치 관련 사업,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 심층평가 필요사업

○ 계획은 적절하나 비효율적 운영으로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체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교육여건개선 분야**로서

- **학교군 구성·운영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은**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를 알기 어려우며,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필요

-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복지부의 보육비 지원과 중복되어 사업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 개선 필요

- **농산어촌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은 유치원 교육이 공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유치원 교육정책에 혼선,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않음

○ 복지기반의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은 사업실시 후 응급의료 이용량, 응급실 내 의사인력 배치 및 의료장비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은 보육수요가 있는 군지역의 읍소재지에 국비지원 보육시설이 확충되는 반면, 실제 보육시설이 필요한 면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효과 등 평가 필요

-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기반확충**은 '07년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기 설치된 시설(1,342개)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설방치 및 사업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참고 1 >

사업별 추진실적(성과지표 기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 정 기 준	단위	07목표 (A)	실적 (B)	B/A (%)
1.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경감지원율	보험료 경감율	%	28	28	100
		1인당 지원율	계획 대비 실적	%	91	119	131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1인당 지원율	계획 대비 실적	%	92	99.6	108
1-1-3-0	농작업 재해보상지원	보상수준 재해공제가입률	(사망시)보상금액 (재해공제가입인원수/가입대상수)×100	백만원 %	35 51	35 45	90 88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보험가입률	(당해연도말 보험가입 신고척수/전년도말 보험가입 대상척수)×100	%	76	76	100
1-2-1-1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개소	인프라확충 지원개소	개소	39	37	95
1-2-1-2	농산어촌 공공보건 기관 기반확충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	86	85.6	99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점수	83	83.8	101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연간 활용일수	총 활용일수	일	260	260.6	100
1-2-3-1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농업인 건강안전 영농활용	활용건수	건	5	8	160
		농작업개선기술 특허출원	출원건수	건	3	3	100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농업안전보건 정책제안	시책건의 건수	건	5	7	140
		농업안전보건 기초자료 구축	DB구축 건수	건	2,000	2,084	104

사 업 명		성과지표	측 정 기 준	단위	07목표 (A)	실적 (B)	B/A (%)
1-2-3-3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인식 증가율	설문조사	%	20	33	165
		안전관리 실천율	안전보건 현황점검	%	50	71	142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신축시설수	총 신축시설수	개소	37	51	138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지원 아동수	총 지원아동수	명	32,505	33,817	104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양육비 지원율	(양육비지원 영유아수/ 농어가 5세이하 영유아수)×100	%	60	63.7	106
1-3-2-0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여성농업인센터 신축시설수	신축시설수	개소	39	38	97
1-3-3-1	농가도우미 지원확대	도우미 지원원수	총 지원인원수	명	4,276	4,516	105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도우미 지원원수	총 지원인원수	명	15,000	15,505	103
1-3-3-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방문교육 지원인원수	총 지원인원수	명	1,800	1,766	98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농외소득율	(창업지원 농가 농외소득/ 전국농가 농외소득)×100	%	34	37.2	100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시설 이용자수	시설 이용자수	명	960	1,330	138
1-4-2-3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개발건수	프로그램 개발 후 반영 건수	건	2	3	150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생활만족도	연간 개인과 마을의 활력도 및 삶의 질 향상 증가 비율	%	58	64.2	106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경영이양률	(경영이양자/전체경영이양대상자)	농가	74,033	75,757	102

사 업 명		성과지표	측 정 기 준	단위	07목표 (A)	실적 (B)	B/A (%)
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우수고교지정수	총 우수고교지정수	개교	44	42	95
		우수고만족도	만족도 조사	%	60	62.5	104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졸업생 영농종사율	(영농에 종사하는 졸업생수/ 전체 졸업생수)×100	%	95	95.3	100
2-1-2-1	학교군 구성·운영	지원학교수	총 지원학교수	개교	20	20	100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개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수	종	8종	8종	100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지역 지원수	현황조사	시·군	88	89	101
2-1-3-5	도시문화체험학습 운영지원	체험학습 운영지원수	총 체험학습 지원수	명	187,700	160,257	85
2-1-4-1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신증설학급수	신증설학급수	학급	30	45	150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수혜율(만5세아)	(지원인원/만3~5세아수)×100	%	43.7	48.9	112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443	428	97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52	51	97
2-2-2-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747	747	100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26	26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 정 기 준	단위	07목표 (A)	실적 (B)	B/A (%)
2-2-2-2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명	6,500	6,167	95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736	829	113
2-2-3-2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 자영농과생 급식비		농과계고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11	10	94
		농과계고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명	1,596	1,578	99
○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수산계고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명	432	481	111
2-2-4-2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순회강사 확보수	총 순회강사확보수	명	120	134	112
2-3-1-2	교원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시범학교 수	총 시범학교수	교	102	107	105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원교원수	총 지원교원수	천명	68	63	93
2-3-2-2	교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사택신축,개보수	총 사택신축,개보수	개소	782	859	110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학교도서관리모델링수	개교	248	0	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 정 기 준	단위	07목표 (A)	실적 (B)	B/A (%)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3-1-1-0	농촌지역개발전문인력육성 및 저변 확대	전문교육인원수	총 수료인원수	명	3,400	5,023	148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업착수율	(누계 착수권역수 /1,000(목표권역수))×100	%	9.6	9.6	100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소득증가율	연평균 어가 소득증가율	%	3.3	5.7	173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소	조성수	개소	15	15	100
		주민 만족도	현지설문조사	점	73	84.6	108
3-2-2-1	소도읍육성사업	단위사업 공정율	공정율 산정	%	90	90.5	100
3-2-2-2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	사업추진단계	기본계획수립 권역수	권역	4	4	100
3-3-1-1	농산어촌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수	총 주택개량수	천동	4.5	4.5	100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수혜자 만족도	사업농가 만족도 조사	%	83.3	85.5	103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상수도 보급률	(당해연도 누계 수혜인원 /면 인구)×100	%	48	48.1	100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용수공급률	(사업추진마을수 /사업대상마을)×100	%	72.5	72.5	100
3-3-2-3	면단위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당해 누계 수혜인원 /면단위 인구수)×100	%	44	45.5	103
3-3-2-4	소하천정비	정비량	총 정비연장	km	237	382	161
3-3-2-5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시설사업수	총 시설사업수(누계)	개소	116	121	104
3-3-2-6	농촌폐비닐수거비 지원	폐비닐수거율	(폐비닐수거량/폐비닐발생량)× 100	%	66.6	67.2	101
3-3-2-7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설치	설치대수	총 설치대수	대수	29	29	100
3-3-2-8	해양폐기물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수거처리물량	실적물량/계획물량	톤	1,671	1,684	101
3-3-2-9	양식어장 정화사업	사업추진 진척도	추진면적/대상면적	ha	11,531	11,531	100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이용객수	전년대비 이용객수	백만	105	114	108
3-3-2-11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사업	폐사어 처리시설	처리시설 신축수	개소	1	1	100
3-3-3-1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추진공정	사업추진공정율	%	95	84	88
3-3-3-2	교통서비스 강화	예산집행실적	예산집행실적	억원	53	54	102

사 업 명		성과지표	측 정 기 준	단위	07목표 (A)	실적 (B)	B/A (%)
3-3-3-3	국고여객선 건조	건조척수	당해연도 국고여객선 건조척수	척수	1	1	100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운임비 지원수	총 운임지원 대상자수	천명	132	148	121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사업시행수	총 사업시행 면수	면	300	300	100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사업시행수	총 사업시행 면수	면	219	219	100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주요사업 실적	방파제 연장실적	m	14,400	13,410	93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지원	지원관 개소수	총 지원관개소수	개소	11	11	100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	체육시설 지원수	총 지원시설수	개소	142	142	100
3-3-5-4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	공간 개관수	총 공간개관수	개소	20	23	115
3-3-5-5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지원수	총 프로그램 지원수	개	70	76	109
3-3-5-6	테마과학관, 사이언스샵 건설	건립수	건립지원	개소	10	12	120
3-3-5-7	수목원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식물유전자원 확보량	식물유전 누적확보량(누적)	종	1,500	1,549	103
3-3-5-8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개소수	총 지원시설수	개소	7	7	100
3-3-6-1	정보화마을 조성	마을당 온라인 평균판매액	온라인 총 판매액/마을수	백만원	1,800	1,973	109
		마을당 평균 게시글수	정보화마을 전체 게시글수/전체마을수	건수	2,200	2,723	123
3-3-6-2	초고속인터넷이용환경 조성	초고속 인터넷 보급율	초고속인터넷이용가구/ 전국농어촌지역가구	백만 가구	5.5	5.7	145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구축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점	70	73.7	105
3-3-6-4	디지털어촌구축사업	어업인 정보화교육	총 교육인원수	명	7,000	10,323	147
3-3-7-1	농업인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인원	총 교육인원	천명	55	55.7	101
		만족도	리커트 5점척도 설문조사	점	4.1	4.14	101
3-3-7-3	농어업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점	75	79	105

사 업 명		성과지표	측 정 기 준	단위	07목표 (A)	실적 (B)	B/A (%)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DB 구축수	농촌 어메니티 자원정보시스템 등록된 DB수	건	250	252	101
4-1-1-2	향토산업육성	향토상품개발 및 연구	개발연구된 총 향토상품수	개	19	19	100
4-1-1-3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향토음식개발 건수	발굴된 향토음식 아이템	건	131	154	117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조성수	총 사업조성수(누계)	개소	329	328	99
4-1-3-0	농어어업인고용촉진훈련	취업률	(조기 취업자수+수료후 취업자수) /(조기 취업자수+수료인원)×100	%	52	43.5	83.5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방문객수	총 방문객수	천명	1,544	1,579	102
		매출액	총 매출액	억원	210	233	110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농외소득 증가율	{(∑당해년도 연간추가농가소득/ 당해말 테마마을총수)/ (∑전년도 연간추가농가소득/ 전년도 테마마을총수)}×100	%	11.6	17.1	147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주민만족도	리커트 5점척도 설문조사	%	60	70	117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방문객수	방문객 총수	천명	950	1,556	164
4-2-1-5	어촌관광활성화사업	사업비 지원액	예산지원율	%	100	100	100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조성수	설계·조성·보완	개소	103	103	100
4-2-1-11	해양관광자원 개발	예산집행	예산집행실적	백만원	4,650	4,650	100
4-2-2-2	도농교류페스티벌	관람객 만족도수	관람객 설문조사(1,505명)	점	3	3.8	127

사 업 명	성과지표	측 정 기 준	단위	07목표 (A)	실적 (B)	B/A (%)
4-2-2-3 농촌체험교육농장	농장당 체험프로그램 참가자수	교육농장을 통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방문객수	명	1,000	1,000	100
4-2-4-0 향토문화관광축제 육성	관람객수	1개축제당 관람객수×45개축제 (문화관광축제)	백만 명	36	37	103
4-3-1-0 경관보전직불제	농업인 및 도시민 만족도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	80	91	114
4-3-2-1 농촌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자원관리기반 구축	기술개발실적	결과활용심의회 채택건수	건	3	3	100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어메니티자원활용모델 개발실적	활용 성과물로 채택된 건수	건	3	3	100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우수농촌주택 발굴	농촌주택 발굴실적	점	30	35	116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조성개소	총 조성개소수	개소	23	26	113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지원 법정리 수	지원 법정리 수	리	2,570	2,952	115
4-4-1-0 1사 1촌 운동	자매결연체결 실적수	총 자매결연체결수	건	11,500	8,114	71
4-4-2-0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유치비율	총 도시민 유치비율	%	15	15.2	101
4-4-3-1 도농교류 활성화	1사1촌 자매결연 교류액	교류금액	억원	541	553	102
4-4-3-3 도시민농촌생활지원	호당 평균 활용일수 증가율	사업농가의 전년대비 활용일수 증가율	%	100	102	102

※ 성과지표 미개량 사업(9) :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1-1-5-0), 여성농업인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1-3-5-2),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1-3-5-3),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2-1-4-4),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2-3-3-2),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4-2-1-8), 어촌관광 지원센터 설치·운영(4-2-2-10),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4-3-5-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4-4-4-0)

< 참고 2 >

사 업 별 평 가 결 과

(복지분야)

코드번호	사 업 명	평균	순위	평가등급	비고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91.2	3	상위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92.6	1	상위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87.8	9	중위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88.4	6	중위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87.0	13	중위	
1-2-1-2	공공보건기관기반 확충	92.6	1	상위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90.6	4	중위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85.6	14	하위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85.4	15	하위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87.2	10	중위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88.4	6	중위	
○	보육비 지원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88.4	6	중위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89.0	5	중위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87.2	10	중위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87.2	10	중위	
평균	15개 사업	88.6			

* 순위는 소규모, 일반사업만 해당됨

(교육분야)

코드번호	사 업 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고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97	1	상위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운영	92	6	중위	
2-1-2-1	학교군 구성·운영	93	5	중위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91	9	중위	
2-1-3-5	도시문화 체험학습 운영지원	94	3	중위	
2-1-4-1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94	3	중위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84	11	중위	
2-1-4-4	농어촌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77	12	하위	
2-2-2-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92	6	중위	
2-2-2-2	농어업관련 대학생 학자금 지원	86	10	중위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96	2	상위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	92	6	중위	
평 균	12개 사업	90.67			

* 순위는 소규모, 일반사업만 해당됨

(지역개발)

코드번호	사 업 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고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89	7	중위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95	2	상위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93	5	상위	
3-2-1-3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94	4	상위	
3-2-2-1	소도읍 육성사업	96	1	상위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85	15	중위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87	11	중위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95	2	상위	
3-3-2-3	면단위 하수도	87	11	중위	
3-3-2-4	소하천 정비	89	7	중위	
3-3-2-5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80	26	중위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83	20	중위	
3-3-2-7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80	26	중위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89	7	중위	
3-3-2-9	양식장 정화 사업 지원	83	20	중위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85	15	중위	
3-3-2-11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사업	79	31	하위	
3-3-3-3	국고여객선 건조	80	26	중위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63	35	하위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87	11	중위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84	17	중위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	91	6	중위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80	26	중위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84	17	중위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86	14	중위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84	17	중위	
3-3-5-6	테마과학관 건립지원	66	34	하위	
3-3-5-7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82	23	중위	
3-3-5-8	농어촌복합체육시설	81	24	중위	
3-3-6-1	정보화 마을 조성	89	7	중위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80	26	중위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83	20	중위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75	33	하위	
3-3-7-1	농업인 정보화 교육	78	32	중위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81	24	중위	
평균	35개 사업	83.5			

* 순위는 소규모, 일반사업만 해당됨

(복합산업)

코드번호	사 업 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고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80.4	8	중위	
4-1-3-0	농어어업인 고용촉진훈련	74.8	14	중위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89	1	상위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88.5	3	상위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82.6	6	중위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79.8	9	중위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75.3	13	중위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73.2	16	하위	
○	국유자연휴양림				
○	공유자연휴양림				
4-2-1-11	해양관광자원개발	73.8	15	하위	
4-2-2-1	도농교류 페스티벌	75.8	12	중위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89	1	상위	
4-3-1-0	경관보전 직불제	88	4	상위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79.2	10	중위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70.6	17	하위	
○	생태숲조성				
○	자생식물식재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85.4	5	중위	
4-4-2-0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갖기 활성화	82.4	7	중위	
4-4-3-1	도농교류활성화	79.2	10	중위	
합계	17개 사업	80.4			

* 순위는 소규모, 일반사업만 해당됨

제 Ⅱ 장
분야별 평가편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Ⅰ. 총 평

□ 농산어촌 복지기반확충 분야는 총 26개 사업이 추진되었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된 3개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면 총 24개 사업임.

○ 총 24개 사업을 사업성격별로 구분하면 일반사업 11개, 소규모사업 4개, 비투융자사업 1개, 연구사업 3개, 시범사업 5개, 지방이양사업 2개임.

□ 사업별 점검평가보고서는 24개 사업 전체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나, 평점과 순위는 일반사업(11개)과 소규모사업(4개)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평가결과 3개 사업이 상위 사업에 해당하고, 2개 사업이 하위 사업에 해당함.

○ 상위 사업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과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사업임.

○ 하위 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과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사업임.

□ 전체적으로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대체로 사업규모가 크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하에서 당초 계획 대로 추진하는 중앙부처 주관 사업들이 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어 높은 평점을 부여 받아 상위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향임.

○ 이에 비해 소규모사업이거나 지자체가 소요재정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목표를 달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일정 기한을 설정하여 추진되는 사업들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사업 추진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해당 사업으로 인해 농어업인 또는 농어촌 주민들이 받은 지원(혜택)의 내용(실적)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점검·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성과지표를 달성하였거나 보다 효과적인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의 변경이 필요

○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실적 중심의 정량적 평가에 국한된 한계가 있음. 향후에는 사업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정성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영역이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

Ⅱ. 평가결과

1. 분야별 평가결과표

코드번호	사 업 명	평균	순위	평가등급	비고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91.2	3	상위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92.6	1	상위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87.8	9	중위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88.4	6	중위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87.0	13	중위	
1-2-1-2	공공보건기관기반 확충	92.6	1	상위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90.6	4	중위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85.6	14	하위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85.4	15	하위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87.2	10	중위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88.4	6	중위	
○	보육원 지원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88.4	6	중위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89.0	5	중위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87.2	10	중위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87.2	10	중위	
평균	15개 사업	88.6			

* 순위는 소규모, 일반사업만 해당됨

2. 평가 상위사업

□ 상위 사업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과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사업임.

○ 이 사업들은 2006년도 점검·평가에서도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던 사업들로서 중앙부처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적인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해마다 크게 바뀌지 않는 사업들임.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사업은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에는 503,595세대에게 평균 연 284천원씩 1,431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함.

○ 취락지구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지원조치라든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하여 신규 경감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자를 발굴하여 적격자에게만 건강보험료 경감을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한 것 등은 잘한 점임.

○ 그러나 건강보험료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조속히 완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함.

□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 사업은 개방화 등으로 농어가소득의 감소 및 농어촌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고령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경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에 285천명에게 평균 연 275천원씩 731억원을 지원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농어업인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함.

○ 이 사업은 2007.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

○ 당초계획대로 지원 수준을 매년 상향조정하여 추진함.

○ 신규 지원대상자의 적극 발굴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노후 소득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확충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낙후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와 인력, 시설의 확충으로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에 기여하였음.

○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이용률 증가 및 심리적 접근성 향상으로 인하여 서비스 만족도(85%)가 향상됨.

○ 농산어촌지역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농산어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됨.

3. 평가 하위사업

□ 하위 사업은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사업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임.

□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기존의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국공립으로의 전환만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이 사업은 매입 또는 전환을 통하여 기존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취약지역에서의 보육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는 것이 사업 취지에 보다 부합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은 농업인들이 힘든 농사일에 의한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평소 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건강관리를 생활 습관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도농간 보건복지 해소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

○ 하지만 본 사업은 건강관리실의 시설 및 장비 확충에만 치중되어 설치된 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간과된 측면이 있음

○ 2007년도로 사업이 종료되고 2008년부터는 지방 자율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이 바뀌지만, 기 설치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Ⅲ. 평가소감

□ 관련 부처에서 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해당 사업으로 인해 농어업인 또는 농산어촌 주민들이 받은 지원(혜택)의 내용(실적)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점검·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목표나 실적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사업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점검·평가에 도움이 될 것임.

□ 지방이양사업이 당초의 목표대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양사업 시행 여부가 지자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이양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2008년부터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변경 적용될 예정인데, 필요 시 사업별로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1-1-0(계속)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농림부 / 소득지원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 총사업비 : 20,386억원('07년까지 기투자액 : 3,778억원)

○ 사업규모 : 당해연도 경감대상 농어업인
('07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2,234천명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건강보험공단)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91,556	6,265						6,265
'05	609,000	666						666
'06	599,000	1,359						1,359
'07	532,432	1,272						1,272
'08	450,953	1,356						1,356
'09	500,171	1,612						1,61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29,000	3,456						3,456
'05	604,000	666						666
'06	521,000	1,359						1,340
'07	504,000	1,431						1,431

- '07년 세대별 건강보험료가 농어가의 농지 등 자산가액 증가로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예산(1,272억원)보다 159억원이 증가한 1,431억원 집행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경감지원율	보험료경감률	%	28	28	100
	1인당 지원률	계획 대비 실적	%	91	119	131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보건의료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임.

- 2007년에는 503,595세대에게 연 284천원씩 1,431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함.

○ 취락지구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특·광역시의 내용이 일반시에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33조(준농어촌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 확인 후 지원조치함.

○ 예정대로 경감율 상향 조정을 추진하면서 경감대상 농어업인 일제조사 등 사업의 적정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된 점이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하는 것은 소득이 높은 농어업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농어업인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 지원농어가의 농지가격 등 상승으로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어 예산부족(159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도 요구액에 못 미치는 수준을 확보하였음.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과 관련한 관련 법령 개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의료보험료를 내고도 지역적 및 거리적, 의료기관 부족 등으로 의료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종사자에게 건강보험료 경감하여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합함.

○ 2006년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2007년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은 구체적임.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조정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한 것은 적절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잘된 점으로서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하여 신규 경감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자를 발굴하여, 적격자에게만 건강보험료 경감을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함.

○ 취락지구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특·광역시의 내용이 일반시에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33조(준농어촌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 확인 후 지원 조치함으로써('07.3),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지역 확대로 법의 형평성을 제고함.

○ 미흡한 점으로서(삭제)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50% 지원하므로써 농어업인간 소득역진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경감율을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07년내에 완료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농지가격 등 상승으로 자산이 증가하여 예산부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 확보도 요구한대로 확보되지 않아 예산부족 문제가 재연될 우려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2007년에 503,595세대에게 연 284천원씩 1,431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이용 확대에 기여함.

○ 2007년도 1세대당 지원계획 금액은 239천원이나 지원실적 금액은 284천원으로 계획보다 27.8%가 증가한 118.8%를 달성함. 최근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가세대 자산증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어 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추가예산(160억원)을 확보하여 조치함에 따른 것임.

3. 주요 결정사항

○ 성과지표 자체가 단순 투입지표라는 지적이 있어 '08년부터는 "농어업인 세대건강보험료 부담경감률(1세대당 연간지원액/전년도 농어업인세대 연간평균소득)로 변경함.

○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50% 지원하여 소득 등이 많은 농어업인 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농어업인간 소득역진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경감율을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2008년 내에 반드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임.

1-1-2-0(계속)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농림부 / 소득지원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2014년(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 총사업비 : 9,518억원('07년까지 기투자액 : 4,425억원)

○ 사업규모 : 연금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국민연금관리공단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지원기준,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3,925						3,925
'05	440천원, 317천명	605						605
'06	470천원,263천명	673						673
'07	520천원, 275천명	761						761
'08	620천원, 273천명	884						884
'09	730천원, 274천명	1,002						1,002

※ '07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지원기준,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2,039						2,039
'05	440천원, 317천명	605						605
'06	470천원, 301천명	673						673
'07	520천원, 285천명	761						761

- '07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 지원기준소득금액을 증가시켰음에도 1인당 지원액은 275천원으로 계획금액 276천원의 99.6% 지원

  * 계획보다 미집행된 사유 : '07년 초 연금가입자가 318천명에서 '07년 말 290천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어업인 고령화로 연금수급권자 증가로 연금가입자가 감소 및 농어업인 감소에 따름.

4.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물량 위주로)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는 농어업인 연금 1인당지원율(실적/계획)로 하고 목표치는 92%설정(목표치 근거 : ('05)87%, ('06) 88%
- 성과목표치 달성도 : 99.6%<실적(275천원)/계획(276천원)>
- 농어업인 연금수혜자 증가로 지원기준(14등급)미만 지원자보다 지원기준이상 지원자 증가로 목표치보다 실적치 증가(가입대상자 29만명 중 지원기준(14등급) 이상자 27만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인당 지원율	계획 대비 실적	%	92	99.6	108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업인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개방화 등으로 농어가소득의 감소 및 농어촌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고령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경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임.

○ 2007년에 285천명에게 연 275천원씩 731억원을 지원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농어업인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함.

○ 신규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노후 소득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은 2007.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된 사업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이 사업은 개방화 등으로 농어가소득의 감소 및 농어촌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대하여 고령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50%이내에서 지원 하고 있음.

○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연차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기본방향(지원표준소득 월액 등급: 12등급(2004년) → 18등급(2009년)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시부터 농림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간에 협조를 통해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를 통해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를 확인 발급하여 농어업인 연금지원자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2007년에 285천명에게 연 275천원씩 731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 2007년도 1인당 지원계획 금액은 276천원이나 지원실적 금액은 275천원으로 계획보다 7.6%가 증가한 99.6%를 달성함. 농어업인 연금수혜자 증가로 지원기준(14등급)미만 지원자보다 지원기준 이상 지원자 증가로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가입대상자 29만명 중 지원기준(14등급) 이상자 27만명).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자의 적정성 파악 및 미대상자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연금공단지사별로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대상자에게 통보함

3. 개선방안

○ 성과지표 자체가 단순 투입지표라는 지적이 있어 '08년부터는 "농어업인 연금가입자에 대한 징수율(연금지원자/연금가입자)로 변경하기로 함.

○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1-1-3-0(계속)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농림부 / 협동조합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경우 신체나 농기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여건 조성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6년 ~ 계속

○ 사 업 비 : *1,371*억원('05~'09 1차 계획기간 중)

○ 사업규모('06) : 농업인 653천명, 농기계 10천대

○ 추진내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보장을 위해 농업인재해공제의 공제료 일부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수립 → 공제상품판매(농협, 연중) → 자금교부 요청·집행 → 정산

※ 농업인재해공제는 농업인안전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로 구분

· 농업인안전공제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15세~84세)의 농작업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등 손해를 보상

· 농기계종합공제 : 농기계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농업인안전공제의 대상 및 보장수준 연차적 확대

- '13년까지 보장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사망시 9,000만원)으로 지속 확대

  * 보장수준(사망시 공제금) : ('06)25→ ('07)35 → ('08)45 → ('09)55 →('13)90

- 공제가입대상에 임업인 추가('07년)하고, 보장수준도 농업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09년)

○ 농기계 품목확대 및 보장내용 지속 강화

- 농기계 : ('07)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 ('08) 광역살포기, 베일러 추가

- 농기계 자체 사고외 대인/대물배상 특약 신설 및 보상수준 확대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명, 천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84					1,184	2,368
'05	(768천명,12.5천대)	114					114	228
'06	(768천명,12.5천대)	183					183	366
'07	(818천명,12.5천대)	227					227	454
'08	(818천명,15천대)	278					278	556
'09	(851천명,20천대)	382					382	764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명, 천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00					500	1,000
'05	(702천명,8.5천대)	114					114	228
'06	(653천명,10.4천대)	171					171	342
'07	(740천명,12천대)	215					215	430

- '07년 계획대비 보험가입자수 감소로 12억원 예산 불용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공제가입율은 목표 가입율 51% 대비 △6%P 감소한 45% 달성하여 계획대비 88.2% 달성

  · 가입농업인수: (목표) 818천명, 51% →(실적) 740천명, 45%

  ※ 농림업경제활동인구: (계획시) 1,604천명 → ('07년말 추정) 1,661천명('06년 1,721명의 3.5%감소 수준)

- 사망시 보상수준을 계획대비 100% 달성

  · 보상수준(사망시) : (목표) 35백만원 →(실적) 35백만원

- 보험 대상확대 차원에서 임업인 보험대상 추가('07.7)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재해공제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율	당해연도 안전공제 가입 건수/ 공제가입대상 농림업 경제활동인구×100	%	51	45	88.2
	사망시보상수준	사망시 보상수준 상승여부	백만원	35	35	10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작업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함.

- 가입자 중 사망, 장해, 입원치료 등의 사고가 19천여건이 발생하여 305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함.

○ 사망 및 장해시 등의 보상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사고 농업인의 수혜 범위를 확대함.

- 보장수준(사망시 공제금) : 2006년 25백만원 ⇒ 2007년 35백만원

○ 임업인을 가입대상에 포함함.

○ 농기계종합공제의 특약을 추가하여 농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인 것은 바람직함.

○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수준과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당초 계획한 대로 가입률 확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농작업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은 적절하며, 보장수준 및 가입률 확대 등의 사업목표를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정부는 농업인의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협중앙회(공제사업분사)의 전국 조직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 워크샵, 현장 점검, 협의회 및 현지 의견 수렴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함.

○ 2007년 예산을 일부 미 집행하였음. 사업 내용을 농업인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작업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함.

- 가입자 중 사망, 장해, 입원치료 등의 사고가 19천여건이 발생하여 305억원에 달하는 공제금을 지급함.

○ 사망 및 장해시 등의 보상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사고 농업인의 수혜 범위를 확대함.

- 보장수준(사망시 공제금) : 2006년 25백만원 ⇒ 2007년 35백만원

○ 임업인을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보장수준 및 입원공제금 확대, 농기계종합공제의 대인·대물배상 특약 추가 등으로 가입자가 전년 대비 9만여명이 증가함.

○ 가입률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3. 개선방안

○ 보장수준을 당초계획대로 확대하고, 가입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

○ 농업인 재해공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함.

1-1-4-0(계속)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율 제고로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

○ 근거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78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근해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123천명)중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순보험료(10톤미만 60%, 30톤미만 50%, 50톤미만 20%, 100톤미만 10%) 및 운영사업비(부가보험료의 70%) 보조

○ 시행방법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회원조합이 업무를 대행

○ 추진내용

-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입률 제고 추진

※ 어선원보험 가입률 : ('06) 74% → ('07목표) 76%

- 어업인의 자발적인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식)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33			3,382	5,115
'05	1식			209			422	631
'06	1식			180			351	531
'07	1식			201			411	612
'08	1식			265			510	775
'09	1식			878			1,688	2,56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식)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30		1,087	1,617
'05	1식				149		325	474
'06	1식				180		351	531
'07	1식				201		411	612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전국 어선원보험 가입률(목표 76%, 실적 76%)
- '07년도 어선원보험 가입율 목표를 전년 74%보다 2% 상향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업인정책 보험사업	어선원보험 가입률	수협중앙회의 전국 어선원 보험 가입 집계자료	%	76	76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어선원재해의 경우 대부분이 중대재해라는 특성과 대부분의 어선원들이 5톤 미만의 영세 어업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가지원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또한 국고 지원율을 규모별로 차별화하고, 휴어기 보험금 환불제 도입 등은 현실적인 사업 방안으로 평가됨

○ 그러나 현재 76%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이 여타 사회 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니나 중대재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입률 제고 방법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보험료율을 어선별 혹은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조정한 것과 휴항 환급제도 신설 등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또한 2차에 걸친 현지 실사를 통해 문제점 개선을 위한 어업인 의견수렴을 거친 것은 매우 잘 된 부분임.

○ 그러나 재해 발생에서 승인, 그리고 최종 보상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의 서비스의 질적 보완을 통한 가입률 제고와 보상과 재활이 함께 추진되는 다각화된 사업 계획이 추가되었으면 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정부, 해상노련, 수협 등이 참여한 협의체 운영은 적절한 사업 추진 방법으로 평가됨

○ 그러나 사업비 배분의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 보험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법 등이 대형 선주와 고액 체납자, 그리고 영세 체납자 및 소액 체납자에(삭제) 등으로 세분화되어 차별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성과 지료를 가입률로만 평가하는 것 보다는 하위 목표에 대한 차별화된 목표치가 제시되었으면 함.

○ 즉, 재해 신청에서 최종 승인 및 보상까지의 소요기간 단축에 대한 목표, 혹은 어선 규모별 가입률 목표 세분화(예를 들면 50톤 이상 100%, 5톤 미만 70% 등) 등이 성과목표로 추가되었으면 함.

3. 개선방안

○ 어선원 재해보상이 농업인 재해보상 특성과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 체계 등 농업인 재해보상 문제와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함.

○ 예년에도 지적되었듯이 5톤 미만의 임의가입 대상에 대한 확대 방안이 좀 더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규모에 따른 재해율 특성과 가입률의 차이가 분석되고 그 결과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있어야 함.

1-1-5-0(계속)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노령인구 증가 및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외국인 배우자 특례 신설 등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7.1~'07.12(계속사업)

○ 사업주체 : 보장기관(시·군·구청장)

○ 추진체계(사업절차): 급여신청(본인, 친족 등) → 조사(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 급여결정(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 급여실시(생계, 주거비) → 확인조사(매년 1회 이상, 수급자 적정 여부) → 보장중지(소득·재산 증가 등의 사유 발생시)

○ 추진내용(사업내용)

-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07.1월)
  ·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범위 축소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07.1월 시행)
  ·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및 이혼·사별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배우자 포함

-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특례 운영('04.6~)

  · 농지를 1ha 미만 소유자(임차한자포함)가 지급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논농업소득보조금) 및 농어업인 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등을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요인으로 추가인정

  ·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액과 가축·종묘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는 등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일반)	기금등			
합계				134,263		38,645		172,908
'05				19,716		5,675		25,391
'06				23,195		6,676		29,871
'07				26,473		7,620		34,093
'08				29,417		8,467		37,884
'09				35,462(안)		10,207		45,669

※ 상기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전체 예산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함.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일반)	기금등			
합계				71,941		22,906		94,847
'05				21,398		6,787		28,185
'06				24,070		7,687		31,757
'07				26,473		8,432		34,905

4. 성과목표 달성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축소(’07.1월 실시)

- 외국인 배우자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07.1월 실시)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은 농어촌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며, 개선사항을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제도 개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 ’07년도 농어업인가구에 대한 특례조항 계속 적용(’07.6월말 기준)

· 소득평가액 산정시 특례적용 현황: 11,133가구, 4,207백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특례적용 현황: 115가구, 543백만원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와 외국인 배우자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적으로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도를 매우 높인 제도임

○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완화되었고,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07.1월)되었음. 즉,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이 수급자로 보호되거나 급여가 증가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축소되었음.

○ 제도의 시행 및 개선으로 수혜 대상자가 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혜자의 양적인 범위가 한계가 있음 .

○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정책 모니터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그 효과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달성되었으나 만족도 조사와 같은 수혜 대상자의 조사를 통한 삶의 질 기여도는 평가되지 않았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농어업인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운영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 달성에 적합한 계획임. 즉,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임.

○ 소득 평가액 산정시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특례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외국인 배우자를 수급권자에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절차의 합리성을 확보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법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 및 사업추진을 위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공무원들에 대한 전달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집행을 위한 노력성과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요원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잘된 점 등의 파악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음.

○ 전체 수급자 1,536천명(06.6)에 대한 예산 26,47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구분 없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사용하였고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에 따른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용 리플렛의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 홍보, 지침개정 전달교육실시 등의 수동적인 홍보는 적절하게 이루어져 으나, 수급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는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업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선정기준 특례를 통하여 의료, 자활, 교육 등 7가지 급여 대상자가 확대되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공헌하였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외국인 배우자의 수급권 부여 기회의 확대로 경제적인 빈곤 문제의 해결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의 사회통합 증진에 기여함.

○ 본 사업은 적절한 성과 목표치 설정과 성과 목표 달성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여타 복지제도 개선사업과 같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개선방안

○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요원제도의 운영이 요구되며 모니터링은 연도 중간에 실시하여 법령, 또는 예산과 관련된 거시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미시적으로 파악된 문제점은 연도 내에 해결됨이 바람직함.

○ 본 사업에도 여타의 사회복지제도 개선사업과 같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제 해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니터링 요원제도와 별도로 수혜대상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1-2-1-1(계속)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응급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에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시설확충 및 장비지원으로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보장

○ 사업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응급의료제공 의무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및 제14조(농어촌 민간의료기관 육성)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민간의료기관 육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09년(이후 계속 사업으로 추진)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추진체계

- 응급의료 취약 군 지역 시·도 통보(보건복지부→시·도) → 해당 군 지역 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정(시·도) → 예산지원(복지부→시·도→의료기관) → 사업시행(시·도 및 의료기관) → 지원금 교부 및 사후 관리

○ 추진내용(계속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 의료기관
- 사업 규모 : 39개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 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 100% 지원
  · '07년 신규지원 11개 군지역 의료기관 : 개소당 의료인력 인건비 68백만원 및 시설·장비보강비 75백만원 지원
  · '06년 기지원 28개 군지역 의료기관 : 개소당 의료인력 인건비 68백만원 지원('06년 시설·장비보강비 64백만원 기 지원)
- 지원조건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취약 39개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 1개소에 24시간 진료를 위한 의사 인건비 지원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취약지 39개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 1개소 시설·장비보강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장비 확보 및 시설 보강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단위 : 군)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9개	2	6	3	3	5	6	7	5	2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시·군)	국 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합계	147	143						143
2005		-				-		-
2006	28	37				-		37
2007	39	35				-		35
2008	39	35				-		35
2009	41	36				-		3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시·군)	국 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합계	63	70						70
2005	-	-				-		-
2006	26	37				-		37
2007	37	33				-		33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37개소/39개소
- '07년 사업계획에 의거 1차, 2차(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관할 시·도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으로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운영지원기관 수	개소	39	37	95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응급의료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여 전국 군지역중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 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전담의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도농간 보건복지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임

○ '06년도에 26개 기관, '07년도에 11개 기관이 선정되어 각각 인건비 및 시설·장비비가 지원되었으나, 단순 사업비 집행에 그쳐 지원된 사업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24시간 전담의사가 제대로 배치되어 운영되는지, 그리고 응급환자의 이용편의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곤란하므로 인근의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적시에 후송할 수 있도록 후송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계획을 추가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할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지역의 보건소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원래 지원계획보다 2개 의료기관이 미비된 것은 지원규모가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유인하기에는 적정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지원규모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지역별 사정 등에 따른 국비지원 규모의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원효과 평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함

- 실제 국비지원 후 응급의료 이용량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인건비 지원 후 응급실내 의사인력 등의 배치가 어떤 식으로 향상되었는지, 응급의료장비는 제대로 운영되는 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비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시급히 실시하는 것이 요구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지표도 현재의 “지원계획 기관 수 대비 실제 지원기관 수”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08년의 경우 기관별로 인건비 지원만 이루어질 경우 성과목표는 100%임), “응급실 이용환자수의 증가율 내지 지역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의 제고 여부” 등으로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지역별 사정 등에 따른 국비지원 규모의 차등화 방안을 검토

○ 국비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지원효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됨

1-2-1-2 (계속)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보건복지부 / 건강투자기획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기능보강**(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 보강 등)을 통한 **보건의료 인프라 마련 및 농어촌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효과적인 지역보건사업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 보조)
- 농림어업인의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2014(총 21년), '94~'07년 총사업비(7,066억원)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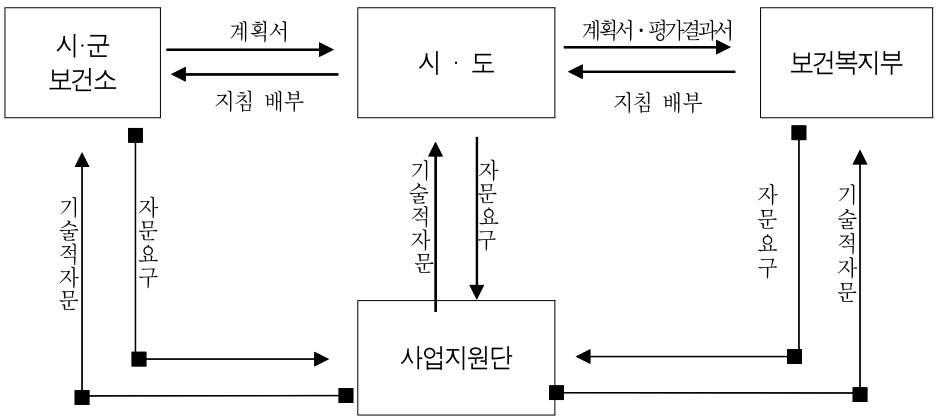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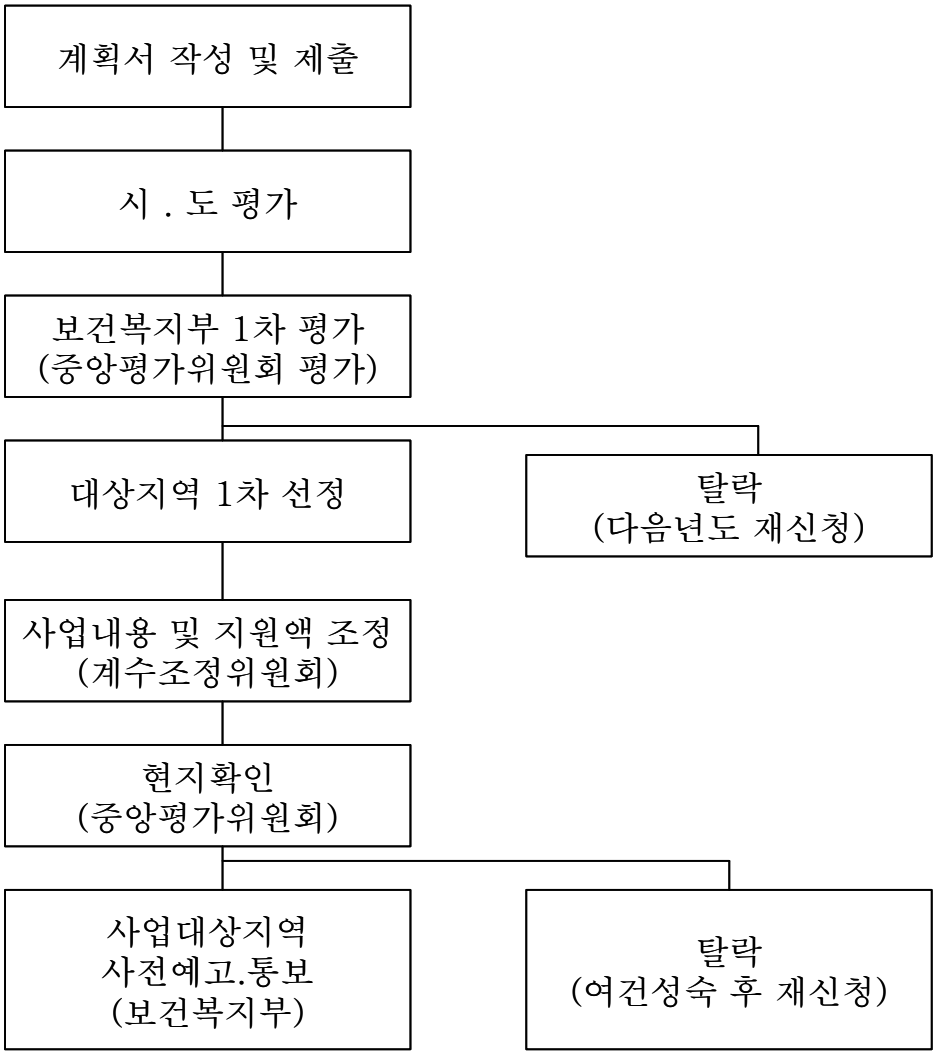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군지역’ 및 ‘도·농 통합지역의 시지역’ 보건의료기관

※ 도·농 통합지역이 아닌 일반시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액

· 신·증축 : 434만원(평당 국고지원 기준 단가)

· 개·보수 : 100만원(평당 국고지원 기준지원 단가)

※ 도서지역의 지원액은 신·증축 및 개·보수의 평당 국고지원기준단가에 20%가산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65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36	3,234				1,616		4,850
'05	330	569				285		854
'06	332	573				286		859
'07	690	620				310		930
'08	789	675				337		1,012
'09	795	797				398		1,195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52	1,762				881		2,643
'05	330	569				285		854
'06	332	573				286		859
'07	690	620				310		93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용자만족도	전문설문조사기관 조사결과 (현대리서치, 07.11)	%	86.0	85.6	1.2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제도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와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어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와 인력, 시설의 확충으로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서비스를 보장함으로서 삶의 질이 향상에 기여하였음.

○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이용률 증가 및 심리적 접근성 향상으로 인하여 서비스 만족도(85%)가 향상됨.

○ 농어촌지역 주변에 신도시개발로 인한 도시화 및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일반 의료기관의 유입 증가와 같은 공공보건환경 변화와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와 신속한 적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공공보건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질적 향상을 통한 공공보건서비스 보장이라는 목표가 명확함.

○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노인의 공공보건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차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장비의 확충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됨.

○ 사업 당해년도 사업지침 개발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조기 선정 및 통보로 지방에서 추진계획 및 예산을 조기편성 할 수 있게 함.

○ 세부추진계획의 현장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및 장비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함.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 수렴 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 중심의 계획이 이루어짐.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집행의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획서작성/제출, 시・도 평가, 중앙 평가위원회평가, 1차 선정, 계수조정위원회 심사, 현지실사, 대상지역 사전예고 등의 과정을 거쳤음.

○ 각 시·군·구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서 1차 평가(40%)하고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2차 평가(60%) 후 사업대상기관을 선정하므로 사업추진의 객관성을 담보함.

○ 사업추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가 운영되었고 파악된 문제점 및 성과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활용됨.

○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과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개선사업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차등지원하고 일정비율을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지방비 확보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예산의 늦은 배정과 사업추진 시 부지선정이 어려워 이월되는 사업이 있음. 또한 설계 후 설계검토 기간이 길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 보건기관 신축 시 단위면적당 건축비(평당 434만원) 외의 부대시설 비용의 지원이 적어 시・군의 자체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실 설치, 담장, 옹벽설치, 옥외포장 등).

○ 보건소 신축시 건강증진실 등의 설치가 필요하여 1,000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함에도 국고보조 지원기준 건축면적이 506평으로 제시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 지역의 보건소 신축에 애로가 큼.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 실시 후 농어촌 지역주민의 공공보건 만족도(85.6%)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오지/벽지에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됨.

○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도·농간의 의료서비스 격차의 완화에 기여하였음.

○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어 1,326개소 5,802(91%), 의료장비지원 370억(6%), 전산장비지원(2%), 기타 장비지원(1%) 순으로 지원 하였음.

○ 그러나 아직도 도서/오지/벽지의 700개 공공보건기관 미 개선된 곳은 328개소(46.8%)가 있음.

3. 개선방안

○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의 공공보건비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관의 실태조사와 이들 기관의 기능전환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됨.

○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공보건서비스 확충과 08년 7월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부지선정이 완료된 보건기관 신축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과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겨 지방에 예산을 조기 배정하는 방안이 요구됨.

○ 중앙정부에서는 기본 설계도를 제시하고 시군구 자체적으로 설계 검토하는 방안 또는 설계검토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지침 등으로 명문화가 필요함.

○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 지역에서는 보건소 신축시 국고보조 지원기준 면적의 상향 조정이 요구됨. 즉,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암관리 사업, 건강증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새로 증강된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이나 사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1-2-1-3(계속)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업목표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노후된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동 병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동 병원을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 **추진체계**

- 지침 마련→ 사업계획서 제출(각 병원, 시도 및 대한적십자사 경유)→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예산교부 및 집행점검

○ **추진내용**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각 병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 양질의 의료, 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운영방향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 고취
- 지역거점공공병원 직원 교육 :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감 고취 및 서비스 마인드 제고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5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연중, 421억)
- 지역거점공공병원 직원 교육(연중, 3억)

○ 2006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연중, 302억)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연중, 3.5억)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연중, 11억)
- 지역거점공공병원 직원 교육(연중, 3억)

○ 2007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연중, 221억)
  · 정보화 및 특성화 지원(연중, 14억)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연중, 3.5억)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연중, 11억)
- 지역거점공공병원 직원 교육(연중, 3억)

○ 2008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연중, 125억)
- 지역거점공공병원 신축 및 전문의료서비스센터 지원(연중,200억)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진단(연중, 5.2억)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연중, 6억)
- 지역거점공공병원 직원 교육(연중, 2억)

○ **2009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연중, 175억)
- 지역거점공공병원 신축 및 전문의료서비스센터 지원(연중,438억)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진단(연중, 6.2억)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연중, 20억)
- 지역거점공공병원 직원 교육(연중, 2억)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지역거점공공병원 40개소				1,989	1,744		3,733
'05	지역거점공공병원 40개소				421	391		812
'06	"				319	271		590
'07	"				238	190		428
'08	"				370	319		689
'09	"				641	573		1,214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지역거점공공병원 40개소				981	852		1,833
'05	지역거점공공병원 40개소				424	391		815
'06	"				319	271		590
'07	"				238	190		428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만족도 조사 결과(75.1점)를 기준으로 10% 상향 조정하여 '07년 목표치를 83점으로 제시하였으며, '07년 만족도 조사 결과 83.8점으로 나타남
- 지속적인 기능보강 지원 및 교육 실시로 목표 대비 실적이 무난하게 달성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 육성	지역거점공공병원 환자만족도	설문조사 (전문설문기관)	점	83	83.8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 육성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의 노후 된 시설, 장비의 현대화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함이 주요한 목적임.

○ 농산어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증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혜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유용한 사업임.

○ 사업 추진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종래의 수익성 위주의 평가체계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체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음.

○ 성과지표로서 지방의료원 등 이용자 만족도만을 제시하여 평가 지표로서는 다소 미흡하며 다른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농산어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08년 7월 부터시행 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사회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확충을 통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임.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및 지역 주민 중심의 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지원계획임.

○ 합리적인 계획을 위하여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평가지침 개발 및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기술지원이 이루어져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획에 반영됨.

○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현대화를 통한 육성은 도·농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현실적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계획임.

□ 사업추진이 효율성(집행)

○ 각 병원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연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계획서 수립, 평가, 심의과정을 두었으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시도하였음.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평가를 통하여 사업수행 실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시행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취약 지역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지속적·포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사업실시 후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만족도(83.3%)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됨.

3. 개선방안

○ 성과지표를 만족도보다는 그 외 다른 성과지표의 개발(예를 들면 시설 및 장비의 개선율, 직원에 대한 교육의 횟수)이 필요함.

○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관의 실태조사와 이들 기관의 기능전환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됨.

○ 농산어촌지역의 기존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과 08년 7월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양질의 공공병원서비스의 수혜를 위하여 실질적인 이용자 모니터링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요구됨

○ 사업의 이해 당사자(수혜 대상자)인 농산어촌 주민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요구됨.

1-2-2-0(계속)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 확충

(농촌진흥청 / 농촌생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 회복 및 건강 증진
- 농촌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

○ 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 제42조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제14조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6~2007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1,342개소 647억원(국비·지방비 각 50%)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보조율 100%)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96~'07) : 1,342개소 647억원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96~'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량		1,342	604	140	140	108	158	192
사업비	계	647	278	70	70	54	79	96
	국 비	324	139	35	35	27	40	48
	지방비	323	139	35	35	27	39	48

* 개소당 사업비 : ('96~'97) 35백만원, ('98~'07) 5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농작업 피로해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건강기구실, 찜질방 등) 설치
-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벨트 맛사지, 헬스자전거 등) 설치
- 농업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지역인프라 구축
  · 외부 체육지도자 등을 초빙 피로회복 마사지, 단전호흡 등 실시
  · 보건소, 한의원, 병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무료 의료지원 확대
- 사업 지원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 건강관리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공개강좌 등 개최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7년까지 1,342개소 설치, 국비사업은 2007년도까지 설치후 종료하고 2008년 이후는 지방 자율사업으로 권장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8		115			114		229
'05	108		27			27		54
'06	158		40			39		79
'07	192		48	-		48		96
'08	-		-	-		-	-	-
'09	-		-	-		-	-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8		115			114		229
'05	108	-	27	-		27	-	54
'06	158	-	40	-		39	-	79
'07	192	-	48	-		48	-	96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건강관리실 연간활용일수는 평균 260.6일로 성과목표치 260일을 100.2% 달성
- 건강증진 만족도는 매우 좋아짐이 60%로 성과목표치 60%를 100% 달성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농촌생활자원 활용실적 (연간활용일수)	설문조사	일/년	260	260.6	100.2
	농업인 건강 증진 효과	〃	%	60	60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업인들이 힘든 농사일에 의한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평소 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건강관리를 생활 습관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농간 보건복지 해소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

○ 하지만 본 사업은 건강관리실의 시설 및 장비 확충에만 치중되어 설치된 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간과된 측면이 있음

○ '07년도로 사업이 종료되고 '08년부터는 지방 자율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이 바뀌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사업을 종료하지 말고 기 설치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1996년부터 설치된 1,342개의 시설중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 등을 분석하여 설치된 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필요 조치사항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07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지만 기 설치된 1,342개소의 시설이 실제 제대로 가동되는 지 여부를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자체평가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실제 본 시설에 설치된 각종 기구의 사후관리, 시설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비용이 계속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비용을 염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추후 운영비가 제대로 조달되지 않을 경우 설치된 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점차 방치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임

-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보를 권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설치된 시설이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지표 역시 단순 설문조사를 통한 “연간활용일수”가 아닌 “기 설치된 시설중 실제 가동시설 수의 비율”, “실제 이용시간”, “이용자수”, “연간 운영비 규모” 등으로 구체화 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07년도로 사업이 종료되고 ’08년부터는 지방 자율사업으로 바뀌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 사업을 그냥 종료하지 말고 기 설치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1996년부터 설치된 1,342개의 시설중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미 사용시 그 원인 등을 분석하여 설치된 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인근 보건진료소에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운영비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시설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1-2-3-1(계속)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환경개선

(농촌진흥청 / 농업인복지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업활동 건강유해요인 증가에 따라 농부증 등 농업인 직업성 질환발생이 증가하므로 장기 추적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구명하고 적합한 예방관리 기술 개발 지원

○ 향후 농업인 안전공제 등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성 질환 구명, 농작업 재해판정 기준 등을 마련

○ 사업추진방향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재해 진단기준 개발('06~'09)

· 작목 및 농업활동에 따른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발생정도, 재해발생 원인 등을 구명하여 향후 업무상재해 예방 및 보상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유해 작업환경 평가 및 농작업 안전기준 확립('06~'09)

· 농업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작업환경 요소 및 노출 수준을 평가

· 유해가스, 농약, 근골격계 위험요인 등 유해 작업환경 안전기준 설정

- 인간공학적 작업시스템 및 보조도구 개발 지원

· 유해 작업요소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작업 보호구 및 보조장비 등을 개발하여 농업인 업무상재해 경감 : (현재) 18종 → ('09까지) 60종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15조(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 사업비 : 3억(국비 100%)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농업인 건강 장기(長期)평가를 위한 연구마을 조성(9개소) 및 농작업 보조장비·보호구 개발 등

○ 사업 시행방법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편성 →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개발국)

○ 추진내용

- 농업인 건강·안전 장기추적연구를 위한 연구마을 구축 및 운영('06~'09)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재해 진단기준 개발('06~'09)
- 유해 작업환경 평가 및 농작업 안전기준 확립('06~'09)
- 인간공학적 작업시스템 및 보조도구 개발 ('06~'09)

※ 의학(산업의학, 예방의학, 재활의학), 환경보건, 산업공학 등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공동연구 수행, 워크숍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건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5			117.5				117.5
'05	-							
'06	5			4				4
'07	5			3.5				3.5
'08	10			20				20
'09	15			20				20
'10	40			70				7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건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7				7
'05	-							
'06	5			4				4
'07	5			3				3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농업인건강안전 영농활용	목표건수	건	5	8	160
	농작업개선기술 특허출원	목표건수	건	3	3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작업 재해 예방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사전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

○ 재해 보상과 관련된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 규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연구의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만이 아닌 다양한 현장 조직(농업인과 일선 공무원)의 유기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고, 학술적인 측면에서 논문발표 등의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며, 연구 성과가 농약 방제복 개발 등 영농활용으로 구체화된 점 등은 매우 잘된 측면임.

○ 그러나 사업 제목이 '농작업재해 원인 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인데 원인구명과 관련된 사업목표 및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원인 구명이라는 장기 추적 연구의 특성상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업 인구의 고령화, 농작업 재해율 증가, FTA 체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및 목표 설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됨.

○ 방법론적 측면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장기 추적 연구를 한 연구 디자인과, 연구 영역을 단순한 연구로 그치지 않고 보조도구 개발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 연구로 연계한 점은 매우 적절한 계획으로 평가됨.

○ 그러나 농작업 재해 원인 구명 측면에서 보면(특히 건강과 관련하여) 연구기간(4년)과 연구 대상에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임.

○ 즉, 원인구명 등의 역학연구를 위한 코호트 연구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계획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과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원인구명에 필요한 연구진(환경평가, 건강영향 평가, 작업개선 등) 및 현장연구를 위한 일선 공무원(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중간모니터링을 위한 농업인의 유기적인 참여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

○ 연구대상(9개 마을)을 전국에 산재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 자체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 의미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실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 그러나 시범사업이 아니고 연구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역별 특성과 작목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하면 오히려 사업 집행의 효율성(특히 비용 측면에서)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연구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특허출원(3건) 및 논문 발표(9건), 영농 활용(8건) 등의 양적인 성과가 있었음

○ 또한 사업목표에 있어 하위 실행 목표를 4가지로 세분화하여 좀 더 사업목표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보이나 오히려, '원인구명과 개선'이라는 사업목표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사업성과 관리에 너무 산만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사업 추진 단계별 목표(예를 들면 1단계 : 건강수준 및 위해요인 노출 평가 → 2단계 : 농작업과 질환과의 원인관계 분석 → 3단계 : 예방 및 보상체계 제시 등)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 세부목표로 구체적인 사업성과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함.

3. 개선방안

○ 장기추적 연구라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예산확보 전략이 필요하나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 보임.

○ 따라서 제한된 연구비 내에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목표와 집행 방법을 장기추적 연구라는 사업 특성에 맞게 현실화했으면 함.

○ 즉, 농작업 원인 구명이라는 장기 코호트 연구에 맞게 연구기간(적어도 10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연구 목표는 포괄적인 영역보다는 '원인구명과 환경개선'에 국한하여 수행 가능한 실행목표가 단계별로 제시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현재의 전국적 사업대상에 대한 집행 방법과 향후 사업개소 확대 방안(2010년까지 40개소 확대)을 특정 지역과 작목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개소를 축소하되 코호트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예산 집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1-2-3-2(계속)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촌진흥청 / 농업인복지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업인 업무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개인의료비 및 손해를 최소화함('04, 노동부 통계 기초)

-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액 : 근로자 1,000만명, 약 10조원
- 농작업재해로 인한 손실액 추정 : 농업취업인구 200만명, 약 2조원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통계 마련 및 농업인재해예방 및 보상 정책·제도 마련 등에 기여함

○ 사업추진방향

- 「농작업 안전보건 센터」 설치를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 농촌진흥청 농기계, 농약, 농작업 건강관련 연구 중장기 로드맵
- 농작업 안전보건 연구회 구성·운영
  · 의료계, 인간공학, 산업계 등 산학관연 연구진 및 사업운영자 등
  · 워크숍 등을 통해 농작업 안전보건 연구지도 및 정책사업 관련 의견수렴
- 농작업 재해 질환 및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 농작업 안전모델 농가 인증, 중앙-지방 조직 강화 및 주요 기능 등
  ·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우선 관리 작업 도출 및 안전관리 기준 제시
- 인터넷을 통한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운영 및 원격 건강·안전 상담
  · 인터넷을 통한 원격 건강·안전 전문가 상담 실시('07'~'09)
  · 농작업사고 감시체계 구축·운영 : ('06) 18개소 → ('09) 165개소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15조(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 사업비 : 3억원(국비 100%)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감시체계 구축(26개소) 및 농작업 안전보건 TFT 및 산학관연 협력체 구축・운영 등

○ 사업 시행방법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편성 →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개발국)

○ 추진내용

- 농작업안전보건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농작업 안전보건 센터」마련을 위한 T/F 팀 및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T/F 팀 : 농기계, 농약, 농작업 건강 연구・지도 부서로 구성

・자문단 : 의학(산업의학, 예방의학, 재활의학), 산업공학 등

※ 농작업안전보건 중장기 연구 로드맵 기획, 발간

- 농작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연구

・농작업 안전모델 농가 인증, 전문 조직화 방안 등

- 인터넷을 통한 농작업사고 감시체계 및 원격 상담코너 구축

· 건강 · 안전부문 전문가 원격 상담 실시('07'~'09)

· 농작업사고 감시체계 구축 · 운영 : ('07) 26개소 → ('09) 165개소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5				117.5
'05	-							
'06	4			4				4
'07	3			3.5				3.5
'08	5(27)			20				20
'09	15(50)			20				20
'10	40(165)			70				7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				7
'05	-							
'06	4(18개소)			4				4
'07	3(26개소)			3				3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농업안전보건 정책제안	시책건의 건수	건	5	7	140
	농업안전보건 기초자료 구축	DB구축 건수	건	2000	2084	104

Ⅱ. 평가결과

1. 총 평

○ 현재 농작업 재해 및 직업 관련성 질환에 대한 국가적 통계가 없는 현실에서 보면 농업인의 재해규모와 특성,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에 대한 기초 연구는 시급히 수행되었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임.

○ 이러한 기초 연구의 토대 위에 장기적인 농업인 재해대책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연구로 평가됨.

○ 사업 추진 방법에 있어 수동적으로 보고되는 사례 수집방법을 탈피하고 능동적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로직트리(Logic Tree) 기법을 적용한 것은 재해 근본원인 조사에 매우 적절한 방법임.

○ 또한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유사과제와 통합 추진할 것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가 충실하게 반영되었음.

○ 그러나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추진주체와 체계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해 통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과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목표가 추가되었으면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작업 재해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고 그 근본원인에 대한 DB 구축은 국내 첫 사례로 아주 소중한 자료로 평가됨.

○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림부, 농협, 농업인 단체, 일선 지도기관(농업기술센터) 등과의 유기적인 관련기관 연계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례 수집을 위해 농업인 및 관련기관을 주축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법이며, 또한 농업인 전문가가 참여한 중간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한 것은 사업의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방법이었음.

○ 그러나 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잘못하면 감시체계 구성원의 관심도 및 능력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질적 편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 방법 등으로 신뢰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연구목표로 설정한 시책건의 및 DB 구축 건수를 충분히 달성하여 질적인 성과와 양적인 성과가 충족되었음.

○ 특히,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의 개선 방안, 향후 농작업 재해원인 조사 방법 제안, 농작업의 업무상 재해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의 시책건의는 매우 현실적이고 시급한 정책제안으로 평가됨.

○ 그러나 성과 지표로 제시한 DB 구축건수는 농작업 재해율에 따라(예를 들어 재해건수가 많은 특정 지역에 조사가 집중되는 경우 등) 사업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해건수가 아닌 조사 대상자(Target population)수로 제시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사업 성과와 노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3. 개선방안

○ 꼭 필요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확보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단계별 사업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예를 들어 1단계로 DB 구축 및 감시체계 구축 → 2단계로 DB 구축 확대 및 감시체계의 질적 보완 → 3단계로 특정 지역의 시범 운영과 문제점 보완 → 최종적인 재해 통계구축을 위한 시스템과 운영방법 제안 등으로 사업목표가 세분화되고 각 단계별 필요예산이 제시되었으면 함.

1-2-3-3(계속)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 사업)

(농촌진흥청 / 농촌생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의 작목 및 마을별 특성에 따른 농작업과 건강상의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활동을 실행하여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4(9년간)

○ 사 업 비 : 660억원(국비·지방비 각 50%)

* 마을당 3년간 총 2억원(1년차 1.2억원, 2·3년차 각 4천만원) 지원

○ 사업규모 : 330마을

○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생활과
- 도 농업기술원 : 농촌생활사업 관련 과·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촌생활사업 관련 팀·담당

○ 사업추진지원 : 각급단위 농작업 안전사업 추진단

○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 농촌진흥청 및 중앙 농작업 안전사업 추진단 : 사업기획 및 예산, 전문교육, 홍보, 평가, 지역지원 등
- 도 농업기술원 및 도 추진단 : 마을 선정, 도내 안전사업 추진 종합지원, 홍보 등

- 시군 센터, 지역사업단장, 시군 추진단 : 사업 주관, 진단, 마을 사업실행 지원, 농업인교육, 홍보, 평가 등
- 사업마을 및 운영위원회 : 진단 및 계획 수립 참여, 개선안 실행, 안전관리 생활화 등

○ 사업 추진내용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의 농작업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진단** : 농작업 현장 기초 안전보건 현황점검(농업인 리더), 농업인 건강검진 및 설문조사(병원 산업의학과), 농작업 유해요인 정밀진단(산업보건 전문가) 등을 통하여 기초 안전, 건강, 농작업 관리상의 문제점 진단
- 농작업 안전 보건 **개선안 도출 및 실행** : 분야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마을 특성과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개선방안 도출. (예) 근골격계 질환 예방 체조 실시, 쪼그린 작업자세 개선을 위한 작업의자 보급, 중량물 운반 개선을 위한 운반구 설치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4년까지 총 330개 마을 지원(마을당 3년간 총 2억원 지원)

- 사업 초기 도별 1~2개소씩 시범 추진한 후 중기 이후 사업량 확대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1개소	36.2	-	-	-	36.2	-	72.4
'05	-	-	-	-	-	-	-	-
'06	9개소	5.4	-	-	-	5.4	-	10.8
'07	8개소(17)*	6.6	-	-	-	6.6	-	13.2
'08	14개소(31)	6.2	-	-	-	6.2	-	12.4
'09	40개소(62)	18	-	-	-	18	-	36

* ( )안은 2년차 및 3년차 지원 마을 포함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개소	12	-	-	-	12	-	24
'05	-	-	-	-	-	-	-	-
'06	9개소	5.4	-	-	-	5.4	-	10.8
'07	8개소(17)	6.6	-	-	-	6.6	-	13.2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통하여 각종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관리 개선안 실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농작업 안전 인식 증가율	농작업 안전모델 마을 농업인 인지도 조사	%	20	33	165
	농작업 안전 관리 실천율	농작업 안전모델 마을 농작업현장 안전보건 현황점검	%	50	71	142

Ⅱ. 평가결과

1. 총 평

○ 그 동안 농업정책 및 농업인 관심도가 대부분 농업 생산에만 있었으나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과 안전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됨.

○ 사업 추진 방법에 있어 그 동안 대부분의 농촌 사업들이 예산지원 중심의 수동적 사업이었다면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 사업 혹은 참여적 사업으로 진행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원 사업 이후(3년) 해당 마을의 안전모델 사업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와 시범 사업 이후 전국적 확대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투여시간이 점차 많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위한 시범 사업은 매우 적절한 계획임.

○ 문제점 진단을 위한 전문가 참여, 문제점의 피드백 과정을 위한 농업인 참여, 문제점의 세부 실천을 위한 단계별 교육 실시 등의 사업 계획은 매우 효율적인 추진 방법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 방법에서 보면 해당 마을에 대한 문제점 진단 --> 개선안 도출 및 실행 --> 사후관리 등 단계적 추진 방법이 구체적으로 잘 실행되었음

○ 또한 사업 집행 과정에서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과 마을민 직접 조사를 통한 요구도 조사 등 전체 과정에 마을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참여적 방법을 통한 시범 사업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연차적으로 사업 규모(사업개소)를 확대하여 2014년까지 총 330개 마을을 지원한다는 양적인 추진 전략보다는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정 대상에 대해 예산을 집중하여 가장 적절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후 확대 보급한다는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성과가 당장 나타날 수 없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지표(특히 건강 부분)가 정량적 지표(인식증가율, 실천율 등)로만 제시되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를 위한 사업목표가 제시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인식도 변화 등의 성과 지표는 1~2년 정도는 증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이상 상향 조정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정량적 평가지표 외에 유해요인 진단을 위한 평가 도구 제시, 혹은 안전모델 사업 추진 절차서 개발, 혹은 농작업 보조도구 개발 및 확대 보급 방안 등의 정성적 평가목표가 연차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3. 개선방안

○ 제한된 연구비 내에서 제대로 된 농작업 안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업 목표와 집행 방법을 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현재처럼 연차적으로 대상 마을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에서 작목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시범 사업 이후(3년) 해당 마을의 안전모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제시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전국적 확대 보급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 모델과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전국적 확대 보급을 위해 유관조직(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지, 혹은 중장기적인 사업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의 현실적 사업목표 달성이 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임.

1-3-1-1(계속)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여성가족부 / 보육지원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농림어업인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 ~ '10년(총 5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내용

- 농산어촌 지역에 국공립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확충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06년 ~ '10년 (총5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차별 추진 일정

(단위 개소)

구분	'06년 계획	'07년 계획	'08년 계획	'09년 계획	'10 계획
보육시설 확충	27	37	22	30	30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6			343		343		686
'05	100			120		120		240
'06	27			48		48		96
'07	37			67		67		134
'08	22			43		43		86
'09	30			65		65		13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7			215		215		430
'05	101			63		63		126
'06	45			77		77		154
'07	51			75		75		15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전환 및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및 군관사 보육시설 국공립전환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보육시설 확충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확충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 확충 개소수	개소	37	51	138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취지는 매우 타당함

○ 국고보조율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신축비 지원단가도 현실화하였고,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민간시설 매입 후 잔액을 시설 리모델링비로 사용가능토록 재원활용의 융통성을 제고하는 등의 사업추진 내용이 개선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실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지 여부, 즉 지역내 미충족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지역별 보육수요의 규모에 따라 보육시설을 유형화하고 또한 유형별 규모 및 지원규모 등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립된 보육시설이 안전하며 또한 적정한 시설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향후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대상 선정시 대상지역의 실제 보육수요량과 보육시설 공급량을 판단하여 공급부족량의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산어촌의 경우 지역별로 보육수요가 상당히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육수요 규모별 보육시설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국비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현 사업추진방식의 경우 일정 보육수요가 있는 군지역의 읍소재지에 국비지원 보육시설이 확충되는 반면(읍지역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공급되어 있음), 실제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면지역에는 본 사업이 수행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엄밀한 사업효과 평가가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기 설치된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한 후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개선 되었는지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효과를 판단하기 곤란함

○ 보육시설 확충시 성과목표가 3년간 평균실적의 40%로 제시되어 있으나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가 취약하며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과소하게 목표를 책정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듬

○ 성과지표 역시 “계획기관 수 대비 실적”외에도 지역 보육수요 중 미충족 수요의 충족여부, 보육시설 서비스의 개선정도 등 정성적 지표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사업지역 선정시 실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보육시설이 설치되는지 여부, 즉 지역내 미충족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보육수요 규모별 보육시설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국비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건립된 보육시설이 안전하며 또한 적정한 시설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육시설이 건립 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1-2(계속)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여성가족부 / 보육재정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영유아보육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취학전 만5세아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업준비 기회 제공

○ 농산어촌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계속)

○ 사업내용 :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아동에게 1년간 무상보육기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별 확대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가구('07년 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

○ 지원단가 : 162천원

○ 추진형태 : 지자체 보조

○ 사업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보육시설(아동)

○ 보조율 : 50%

○ 사업비 : 311억원

○ 지원인원 : 32,505명

3. 연차별 추진계획

○ '07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

※ '09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수준까지 확대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59,641			1,508		1,508		3,016
'05	29,085			262		262		524
'06	34,029			322		322		644
'07	32,505			311		311		622
'08	30,487			292		292		584
'09	33,535			321		321		64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98,939			933		933		1,866
'05	29,085			267		267		534
'06	36,037			345		345		690
'07	33,817			321		321		642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7년도말 집행실적 추정은 33,817명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치 32,505명 보다 초과 달성

※ 2007년도말 정산은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중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지원아동수	총지원아동수	명	32,505	33,817	104%

Ⅱ. 평가결과

Ⅰ. 총 평

○ 소외되고 열악한 농산어촌 만5세 아동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계속 발전시켜야 할 사업임.

○ 예산의 적시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졌으며,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체계화된 일선 행정조직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통해 지방비가 편성되는 사업으로, 각 농어촌 지역의 만5세 아동의 부모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상 자치단체에서 최종 집행이 이루어지고, 보육료 지원신청자들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군·구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식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간 점검과 평가를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 부모 만족도 조사 및 각종 간담회 개최 등 중간 모니터링 실시는 평가할 만함. 그러나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은 미흡하였음.

○ 농산어촌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혜택 확대를 위해 농산어촌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조기실행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산어촌 저소득층 부모의 취학 전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하여 실질적인 농산어촌 가구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

○ 만5세 아동에게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산어촌 가구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킴.

○ 열악한 생활환경의 농산어촌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취학 전 만 5세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접근기회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한다는 사업목표에 대한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은 미흡한 실정으로 현실 적합성과 문제 해결 가능성 등 사업의 구체성은 다소 미흡함.

○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 계획('06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 '09년 130% 이하 가구) 수립 및 농어촌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조치는 매우 긍정적임.

○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단가 등의 결정과정에 기획예산처·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과 협의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은 평가할 만 하지만, 작년 평가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현장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일선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다소 미흡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통해 지방비가 편성되는 사업으로, 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상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집행이 이루어지는 현행 추진체계와 방식은 적절함.

○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정책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상호협조에 관련한 구체적인 실적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보육료 지원예산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중간정산 실시로 예산집행 추이를 점검하고(연2회), 보육료 지원대상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적격 여부를 재점검

(연1회)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음.

○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의 불편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이용불편 산고센터를 운영(연중)함은 물론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모만족도 조사(연1회)를 실시한 것은 높이 평가됨.

○ 현장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작년도 평가서의 지적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 회의 및 간담회를 4회 개최하고,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사와의 간담회를 1회 개최한 것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로 평가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당해사업의 지원실적을 효과적으로 계량화한 지표로서, 2007사업년도 목표치 32,505명에 비해 33,817명의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함으로써 104%의 달성도를 보여, 농산어촌지역 아동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업성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사업의 질적 성과 분석 및 평가 지표의 부재로 한계를 보임.

○ 농산어촌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접근기회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한다는 사업목표부문에 대한 성과지표 및 그 목표치 자체가 미비 됨.

3. 개선방안 등

○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모 만족도 조사를 확대 개편하여 사업의 질적 성과분석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양적 및 질적 성과지표의 개발과 조사 주최로는 정책당국자가 아닌 대학 또는 민간 연구단체의 외부용역을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임.

○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해당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유인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1-3(계속)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농림부 / 여성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2. 사업내용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비('07) : 536억원(국비 268, 지방비 268)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 영유아(0~5세, 취학유예 6세)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 타부처(여성부, 교육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중복지원 금지)

○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자녀 32천명/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금액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월지급액 : 0세 253천원, 1세 222, 2세 183, 3세 126, 4세 113, 5세 (취학유예 6세) 16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5세아는 100%)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취원아

・월지급액 : (국공립) 3-4세 39천원, 5세(취학유예 6세) 56 (사립) 3세 126, 4세 113, 5세(취학유예 6세) 162

□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비('07) : 480억원(국비 240, 지방비 240)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으로서 영유아(0~5세, 취학유예 6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자녀 46천명/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금액

- 월지급액 : 0세 126천원, 1세 111, 2세 92, 3세 63, 4세 57, 5세(취학유예 6세) 8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35% 수준(5세아는 50%)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원대상 확대 : ('07) 5ha 미만 → ('09이후) 전농가
- 지원단가 인상 : ('07)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 ('09이후) 75%이상 단계적 확대 추진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08년 이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
- 지원단가 인상 : ('07)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 → ('09이후) 50%이상 단계적 확대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8천명	1,971				1,971		3,942
'05	31	224				224		448
'06	75	363				363		726
'07	78	508				508		1,016
'08	54	412				412		824
'09	50	464				464		928

- '05~'06 사업 시행후 추진실적 및 타부처(여성부, 교육부)의 지원범위과 지원인원 및 단가를 고려하려 예산을 조정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3천명	937				937		1,874
'05	30	192				192		384
'06	56	316				316		632
'07	57	429				429		858

- '07년 관련예산은 '00년 농업총조사 자료와 '04년 보육시설 이용률 및 미이용률조사(행정조사) 자료를 근거로 편성함에 따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과다 추정
- 농어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여가부)의 지원단가가 큰 폭으로 올라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
- 특히, 여가부에서 도시평균 100% 수준까지 양육비를 신규지원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급증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60.0% → (실적) 63.7% → 목표달성도 106.1%
- 사업의 정착으로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이 개선되고,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정책의 직·간접적 효과(영향)가 나타나 초과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비율	농어촌지역 농어업인의 5세이하 자녀 중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인원 비율	%	60	63.7	106.1

Ⅱ. 평가결과

1. 총 평

○ 타부처(여성부, 교육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에 해당되지 않은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현지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 확대(만5세 이하 아동 →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아동, 결혼 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 전 지원대상 포함, 지원지역을 준농어촌지역까지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필요시 수시 조정한 것은 높이 평가됨.

○ 지원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는 긍정적이나, 대국민 홍보는 미약하여 도시 젊은층의 귀농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는 미치지 못함.

○ 지원대상 농업인에 준하는 임업인 및 어업인 기준 설정시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과 협의 설정 등 관련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젊은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되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농어촌 가구의 소득안정 및 경제생활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도시 젊은층의 귀농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한다는 사업목표와 사업 필요성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농지 소유규모(5ha 미만)로 지원대상 농가를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농어업인이 배제됨으로써,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적합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2009년 이후 5ha미만이라는 제한사항이 폐지되고 전농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임.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08년 이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하도록 한 사업운영 기본방향도 지원금액의 사실상 증액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그러나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 농어촌지역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운영되었던 사업임을 감안하면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농어촌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지원대상 확대요구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만5세 이하 아동에서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아동까지 포함하고, 결혼 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면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시행하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보건복지부 소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지역을 준농어촌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립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수시 조정한 것은 높이 평가됨.

○ 지원대상 농업인, 관련전문가 등의 지원단가 인상요구와 보육비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지원단가 인상(영유아 양육비: 법정저소득층 지원단가 50% → 70%, 일손돕기: 법정저소득층 지원단가 25% → 35%)

○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등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시설 등에서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서류 중 보육료(교육비) 수납영수증을 폐지하고, 보육(교육) 실적 통지서로 갈음함으로써 보육시설과 행정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유도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원대상자 선정 시 농업인으로 하여금 이·통장의 확인을 받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촌 거주여부,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보유실적 등을 확인한 후 집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였음은 물론, 시·군 단위에서 지원금 집행 시 보육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부서 및 교육청의 지원대상자를 확인한 후 집행하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과의 중복지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 지원대상자에 대한 월 지원 단가를 국가 전체의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함.

○ 보도자료 배포, 이·통장 방송자료 제공 등 다각적인 홍보 실시 및 반상회보, 이·통장 회의자료, 보육시설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위주의 집중 홍보 실시는 평가할 만 하나, 도시 젊은층의 귀농을 유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대책은 다소 미흡한 실정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지역 주민에게는 혜택이 없는 자녀양육비를 농어업인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시 주민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의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작년도 평가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있는 사업집행에 따른 피드백에 대한 조사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07년 12월 정책평가팀 주관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여론과 사업집행 성과 등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한 바 있음.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지수는 85.8점, 정책의 필요성은 88.5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사업에 만족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농어가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 타부처 지원사업 수혜율, 보육시설 미이용률 등을 조사한 농어가 전수조사에 근거하여 농어가

총 영유아 수 대비 양육비 지원비율(60%)을 성과목표치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설정 기준연도가 2004년으로 그 동안의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치로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3. 개선방안

○ 지금까지 사업계획에서 집행까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동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할 것을 건의함. 특히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중간점검·평가와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따른 지원대상의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등 현지 농어업인 중심의 추진계획의 수시 조정을 포함한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함.

○ 지원대상자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및 사업 안내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의발생을 방지한 결과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치(60%)보다 초과한 성과달성(63%)은 높이 평가되나, 도시 젊은층의 귀농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 농가만을 지원대상으로 함에 따라 규모화된 젊은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09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농지소유규모에 따른 지원대상 제한사항을 폐지 및 전농가로 확대계획을 수정하여 조기 시행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추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추가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 필요 및 이를 위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함.

1-3-2-0(계속)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농림부 / 여성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비('07) : 44억원(지방비 38, 자부담 6)

○ 지원대상 : 각 도별로 지원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규모 : 전국 38개소

○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85%(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 15%

○ 지원내용 : 센터 운영자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 센터의 주요사업 내용

- 필수사업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 임의사업 :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
-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

<'07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9					3,792	643	4,435
경기도	4					392	44	436
강원도	3					287	51	338
충북	3					293	52	345
충남	4					394	70	464
전북	7					655	115	770
전남	4					383	68	451
경북	2					184	32	216
경남	6					647	114	761
제주	6					565	98	654

- '05년부터 사업이 지방이양되어 시행계획 변경

<'07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8					3,697	563	4,260
경기도	4					392	44	436
강원도	3					287	51	338
충북	3					293	52	345
충남	4					394	70	464
전북	6					561	99	660
전남	4					383	68	451
경북	2					184	32	216
경남	6					647	114	761
제주	6					556	33	589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지방이양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상의 연차별 계획으로 자치단체별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정도에 따라 사업목표 수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계획대비 설치 비율	설치계획 ÷ 추진실적	%	39	38	97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당초 사업운영의 기본방향은 '05년부터 동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자치단체별 분권 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 정도에 따라 사업목표 수정이 불가피하고, 지역마다 예산과 시설운영방법이 다르고 기준이 강화되어 운영여건이 악화됨.

○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목표에 현저히 미달함.

○ 국고보조금 수취 방안의 강구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강구하고, 전국적인 센터 운영개수를 점차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 개정 및 실질 대상자 선정 시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하고도 구체적인 운용제도와 시스템이 미흡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해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 확대 및 내실화 도모는 바람직함.

○ 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 및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필수사업에 추가하여,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수익성 사업을 임의사업으로 허락한 것은 센터 운영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정된 경비지원('07년 총 지원금액 38억원 불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

○ 각 도별로 지원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격 여부와 해당 농촌 주민의 의견(지원신청서에 주민 몇 명 이상의 추천서 첨부 등)도 수렴할 수 있는 선정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 있음.

○ 2002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임에도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존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에 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나 사업추진계획의 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보다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 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 실시하는 것이 요망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 목표를 견지하고 실행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함.

○ 사업대상자 선정 시의 필수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지역 현실 문제를 해결함.

○ '05년부터 동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여건(분권 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정도)과 예산 및 시설운영방법이 다르고 기준이 강화되어 운영여건이 악화됨.

○ 신세대 주부를 위한 신 IT 기술을 활용한 홍보매체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신세대의 센터운영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것은 긍정적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으로서 여성 농업경영인의 위상제고와 경영효율을 제고함.

○ '06년 전국 여성농업인세터 운영개소 수 목표 73개소 대비 전국 38개소 운영으로 낮은 달성율(52%) 고려하여 목표치 과다설정 혹은 실행저조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대책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 '07년에도 '06년 73개소 대비 대폭 낮춘 목표치 39개소에 대해서도 38개소가 설치되어 97%의 달성율을 보임.

○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08년까지의 운영목표인 시 군당 1개소 설치 어려울 전망임.

3. 개선방안 등

○ 국고보조금 수취 방안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전국적인 센터 운영개수를 점차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센터운영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나 사업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에 관한 점검과 평가 및 지역주민의 여론조사가 필요함.

○ 보다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 강화 등 농촌 주민의 센터 이용의 활성화방안의 모색 또는 강구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수사업 중 영유아 양육 지원 사업은 동일 지역 동일 대상자를 위한 사업으로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음.

○ 전국적인 센터 설치 개소를 목표로 선정하는 동시에 지방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추진 기간을 장기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집행의 행정적 충돌 및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관계자 미팅의 정례화와 운영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3-3-1(계속)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농림부 / 여성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사업비 : '07년 5,675백만원(지방비 80%(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20%)

○ 사업규모 : 4,276명

○ 시행방법 : 각 시·도별 자체계획에 의거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액 : 지자체별로 1일 노임단가 30,000~38,000원의 80%인 24,000원~26,600원을 지원, 20%는 자부담

- 지원일수 : 지자체별로 30~90일 한도내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가지 180일 기간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도우미 이용

※ 지방이양 전 국고에서 지원하던 40% 예산은 행자부의 분권교부세에서 시군별로 지원실적에 따라 배분

※ 참고 : '08년도 지자체별 자체 지원계획

- 지원인원 : 4,622명
- 지원예산 : 총 6,322백만원(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 지자체별 사업내용
  · 지원단가 : 대구 35천원, 울산 38, 충북 35, 충남 35, 경북(영양) 35, 경남 35, 그 외 지자체 30
  · 지원일수 : 인천 45일, 경기 60, 충북 60, 충남 45, 전북 50, 경북(안동,의성) 90, 경남 60, 제주 45, 그 외 지자체 30
  · 자부담 비율 : 대전 10%, 전북 10, 경북(영양) 0, 그 외 지자체 20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07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276					4,613	1,062	5,675
부산	11					8	2	10
대구	10					4	1	5
인천	20					17	4	21
대전	5					4	0.5	4.5
울산	20					18	5	23
경기	273					377	98	475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강원	322					234	58	292
충북	345					435	109	544
충남	420					529	132	661
전북	500					675	75	750
전남	630					454	113.5	567.5
경북	700					504	126	630
경남	420					706	176	882
제주	600					648	162	810

<'07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16					4,915	1,121	6,036
부산	12					9	2	11
대구	8					6	2	8
인천	20					22	5	27
대전	5					3.5	0.5	4
울산	16					14	4	18
경기	190					233	58	291
강원	327					235	59	294
충북	345					544	136	680
충남	481					606	151	757
전북	560					756	84	840
전남	630					454	113	567
경북	750					540	135	675
경남	489					822	205	1,027
제주	683					670	167	837

4. 성과목표 달성도

○ 지원인원은 105.6%, 지원액은 106.4%로 계획대비 초과 달성

- 지원인원 : 105.6%(계획 4,276명 , 실적 4,516명)
- 지 원 액 : 106.4%(계획 5,675백만원 , 실적 6,036백만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계획인원 대비 실적인원 비율	연간 총 지원실적인원 / 당초 지원계획 인원	%	100.0	105.6	105.6

※ 사업홍보 등을 통한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신청·지원인원 계획보다 많았음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30~90일 한도 내에서 30천원~38천원의 일당을 지급함으로써 영농 중단 방지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지만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 사업과는 달리, 일부 지자체의 동 사업운영이 중앙행정기관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사업내용의 확대 실시를 통하여 여성농업인 복지 여건이 대폭 개선됨.

○ 연차별 추진계획은 '05년 지원대상 인원 34,250명에 3,061백만원(20%의 자부담 포함)의 지원금액에서 '07년 4,516명에 6,036백만원, 그리고 '08년에는 4,622명에 6,322백만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바람직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분권 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여성화 속에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그에 따른 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 '05년 이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사업의 확대와 축소가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지자체장의 지원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

○ 사업 확대 지자체와 사업 축소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 교환 및 지자체 사업으로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간 정례적 미팅을 정부차원에서 기획 실시도 검토 가치 있음.

○ 1999년부터 시작된 이후 여성농업인 복지관련 대표 사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발전 요망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자체장의 관심 제고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단가 인상(30천원→ 대구 35천원, 울산 38, 충북 35, 충남 35, 경북(영양) 35, 경남 35천원), 지원일수 확대(30일→ 45일, 50일, 60일, 90일까지), 자부담 비율 경감(20% → 대전 10%, 전북 10%) 등 사업의 확대 추진추세에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획 대비 신청인원 등이 초과되어 추경을 통해 확대 지원한 바 있고, 사업홍보 등을 통한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신청인원과 지원인원이 계획대비 초과함.

○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사무소의 출생신고에서부터 지역보건소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시행 대상자의 누락이 최소화됨.

○ 지방 이양사업으로 인하여 주민 의견에 대한 정례적, 체계적 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 개발 운용 활동이 부진함.

○ 동 사업에 대한 분권 교부세 배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지자체의 사업 계획 작성 시 활용토록 적극적인 창구 지도 실시가 요망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동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제고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에서도 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은 물론, 실제 추진실적에 있어서도 '06년 지원인원 109%(계획 3,505명 대비 실적 3,811명), 지원액 106%(계획 3,540백만원 대비 실적 3,741백만원) 달성에 이어, '07년 지원인원 105.6%(계획 4,276명 대비 실적 4,516명), 지원액 106.4%(계획 5,675백만원 대비 실적 6,036백만원)을 달성하여 매우 양호한 성과를 실현함.

○ 여성농업인중 출산한 농업인만 대상으로 하므로 성과 관리가 용이함.

○ 지자체장의 동 사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결과로서, 사업홍보 등을 통한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은 목표대비 초과 달성함.

○ 지역 여성단체, 여성 의료 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대주민 민원 업무 행정망을 공동 운용하여 사업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함.

3. 개선방안

○ 지속적·안정적 국고보조금의 지원방안 강구로 동 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 계속 추진이 바람직함.

○ '05년 이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사업의 확대와 축소가 지자체장의 지원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 제도적으로 또는 관련법상 지역 여성단체와 여성 주민 대표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 사업 추진 자문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여성 농업인 단체의 지자체 정책관련 위원회 적극 참여로 동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사업의 확대 적극 추진 요망됨.

1-3-3-2(계속)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림부 / 여성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고농가에 대한 영농지원, 고령·취약가구에 대한 가사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농촌생활이 가능토록하여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촌 고령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지원)
- 위 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비 : 5,514백만원(국고 : 70%, 농협·자부담 : 30%)

○ 사업규모 : 영농지원 8,000농가, 가사지원 15,000가구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추진내용

- 지원대상

·영농지원 : 2주이상 상해진단, 농지소유 5ha미만, 69세이하 농업인

·가사지원 : 65세이상 고령가구 중 단독 또는 부부가구(손자녀·장애인 동거 포함),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지원체계

· 영농지원 : 사고발생농가에서 영농도우미를 신청하여 영농도우미를 농작업을 대행하는 데 이용하고, 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가 지역농협에 임금지급 청구를 하면 실제 작업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

· 가사지원 : 지역농협에서 가사일을 지원할 가구를 선정하고 자원봉사 가사도우미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가사일(빨래, 청소, 목욕 등)을 대신해주도록하고 가사도우미에게는 지역농협에서 활동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급

- 지원액

· 영농지원 : 영농도우미에게 농촌노임평균단가 50,000원의 70%인 35,000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30%)는 이용농가에서 부담

* 지원한도는 영농도우미가 실제 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10일까지(350,000원) 지원

· 가사지원 :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에게 활동 실비 10,000원/일 기준으로 지급(국비70%, 농협 30%)

3. 연차별 추진계획

○ 영농지원은 지원범위 및 지원일수를 연차적으로 확대

- 지원사유 추가 : ('07) 사고 → ('08) 사고, 질병 → ('09이후) 사고, 질병, 영농교육

- 지원일수 확대 : ('07) 10일 → ('09) 15일 → ('10) 20일 → ('11) 25일 → ('12) 30일

○ 가사지원은 도우미 활동 실비 인상 및 지원일수 확대

- 도우미 활동비 인상 : ('07)10,000원/일 → ('09) 15,000원/일 → ('12) 30,000원/일

- 지원일수 확대 : ('07)10일 → ('09) 13일 → ('10) 16일 → ('11) 20일 → ('12) 24일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농협자금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2,000	231					98	329
'05	-	-					-	-
'06	16,000	21					8	29
'07	23,000	39					16	55
'08	28,000	58					25	83
'09	35,000	113					49	16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농협자금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591	53					22	75
'05	-	-					-	-
'06	14,180	15					6	21
'07	23,411	38					16	54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및 목표치

(1) 당초 지원계획 인원 대비 연간 지원실적 인원 : 89.6%

(2) 수혜자(영농·가사도우미 이용농가) 만족도 : 85.0%

* 5분위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 2분위 비율(전문조사기관 조사)

○ 달성도(1) : 101.8% (=23,411명 / 23,000명)

- 영농지원 : 계획인원 8,000명(농가), 실적인원 7,906명
- 가시지원 : 계획인원 15,000명(농가), 실적인원 15,505명

○ 달성도(2) : 87.0% (= (83.6% + 90.4%) / 2)

- 영농지원 만족도 : 83.6%, 가시지원 만족도 : 90.4%

* 농협중앙회에서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설문조사('07.12월)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취약농가 인력지원	(1)지원계획인원 대비 실적인원 비율	연간 총 지원실적 인원/당초 지원계획 인원 * 100	%	89.6	101.8	113.6
	(2)수혜자 만족도	도우미 이용농가의 사업만족도 *5분위 조사에서 상위 2분위 이상 만족도(전문조사 기관 조사)	%	85.0	87.0	102.4

* '계획대비 지원율'지표의 목표치는 첫해('06) 실적 88.6%를 고려 설정한 것으로 '07년에는 사업홍보·추진체계가 갖추어져 영농지원은 계획수준, 가사지원은 계획인원보다 다소 많았음. 가사지원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주로 단체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노력에 따라 예산상의 지원계획 가구 보다 실 지원가구가 많을 수 있음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주요 선진 농업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농업에서 고령농, 영세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촌 고령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임

○ 지원일수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좀더 시기적으로 앞당길 필요성이 있으며, 활동실비를 물가 상승률과 연계하여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시행주체인 지역농협의 실적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이 잘되는 농협의 사례 발굴을 통해 미진한 지역의 사업 실행을 촉구해야 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반영한 사업이라 평가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농림어인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하여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라 평가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원일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실비인상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실제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도우미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농가가 실질적으로 적잖은 지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사업목적 달성도와 연관성이 높음

3. 개선방안

○ 대상기준의 경우 농어촌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69세 이하 대상기준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영농도우미·가사도우미의 지원은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자부담을 경감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가 노동력이 좀 더 요구되는 품목(시설, 화훼)을 기피하는 경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배치가 필요할 것임

1-3-3-3(신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농림부 / 여성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기여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농업인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농촌의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업인력으로 자원화

○ 사업추진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지원), 제18조(농산어촌여성의 복지증진) 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2. 사업내용

○ 방문 교육도우미가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상담 등 실시

○ 사업기간 : 2007년 신규 시범사업 (*'08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시행)

○ 사업규모 : 8도 30개시·군, 대상 1,800명, 교육도우미 300명 운영

○ 사업비 : 2,597백만원 (국비 1,923, 지방비 674)

- 교육도우미 수당(50천원/일), 부부교실·가족캠프·모범가정 격려비 : 국비 70%, 지방비 30%

- 교육도우미 교육비, 교재개발·발간비, 홍보비 : 국비 100%

○ 사업시행 주체 : 도지사, 시장·군수, 민간관리기관

○ 사업추진절차

- 농림부(사업지침수립, 사업총괄)→ 전문기관(교육도우미 교육, 교재개발 등)→ 도 (세부계획 수립, 부부교실, 가족캠프 운영 등)→ 시·군(교육도우미 운영)

○ 사업 주요내용

- 신속한 적응지원이 필요한 결혼초기 가정에 대하여 방문 교육도우미를 통해 한국어교육과 소그룹 형식의 문화교육 등 실시 (1,800명)

  ※ 대상자당 교육시간은 5개월(상반기3~7월, 하반기8~12월)동안 66시간(3시간×22주)을 지원하며, 그중 한국어 교육은 50시간이상 실시

- 농촌지역의 집합교육 등 적응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상담실시

  * '07 교육도우미 운영인원 : 300명(10명*30시·군)

- 상대국의 문화이해, 갈등해소 계기마련 등 가족으로의 통합 지원

- 가족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 원만히 통합할 수 있도록 부부교실(320명), 가족캠프(160명) 실시 지원

- 한국정착에 모범적인 가정에 대하여는 모국방문(8명) 비용 지원 및 선진 농업현장 견학·문화탐방(16명) 등 격려

- 우리 농촌생활 정착에 노력한 가정들의 사례집을 한글·영어·베트남어 등으로 발간·배포

- '07년 사업 실시지역

도별	시범실시 지역	시·군 수
경기	이천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4
강원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3
충북	영동군, 음성군, 단양군	3
충남	서산시, 논산군, 부여군, 당진군	4
전북	정읍시,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4
전남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함평군	4
경북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봉화군	4
경남	함안군,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4
계		30

3. 연차별 추진계획

○ ('07년) 농림부에서 신규 실시 → ('08년) 여가부에서 통합 실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00명	19				7		26
'05								
'06								
'07	1,800명	19				7		26
'08								
'0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66	18				6.5		24.5
'05								
'06	1,766	18				6.5		24.5
'07								

4. 성과목표 달성도

○ 방문교육 지원인원 : 계획 대비 98.1% 달성

- 계획 인원 1,800명 , 실적 인원 1,766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방문교육 계획인원 대비 실적인원 비율	연간 총 실적인원 / 계획 인원 × 100	%	100.0	98.1	98.1

※ 계획대로 1,800명을 선정 방문교육을 시작하였으나 미 수료자 일부 발생(1.8%)

Ⅱ. 평가결과

Ⅰ. 총 평

○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어려움을 풀어나감으로써 농촌지역의 수요에 맞는 사업이라고 평가됨

○ 그러나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사업주체로서의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됨

○ 외국여성이 느끼는 교육의 종류와 결혼가정에서 필요한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춘 맞춤형 교육이 가장 필요할 것임

○ 총체적인 농촌문제로 접근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보급한다면 사업의 성격과 방향성에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지역의 문화·복지 서비스가 열악하여 결혼한 외국여성들의 사회적응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07년 신규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효과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평가가 좋은 사업으로 나타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목표치 달성도가 계획 대비 98.1%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 성과지표에도 부합

3. 개선방안

○ 사업의 성격을 감안했을 시 여성부의 역할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이 여성부로 통합되어 농림수산식품부의 계속사업 추진에 큰 문제점이 나타남.

○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에서 영농을 구성원과 함께 꾸려나가고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나 예산 지원이 없다는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사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농촌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수혜지역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임

○ 또한 보여주기식의 단기간 사업이 아니라 농촌사회에 적응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영농기술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임

1-3-5-1~3(계속)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국내원료를 기반으로 한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지원으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여권 신장

○ 여성농업인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온라인 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홍보 강화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촌진흥법 제2조2항(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14년

○ 사업주체 :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 사업량 및 사업비 : 3분야 390개소 120억원(국비 50%)

○ 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중앙집행(보조율 50~100%)

○ 추진내용

-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 소규모 가공 등 신규 창업 지원
- 노후 가공장비 및 유통개선을 위한 품질향상 지원
-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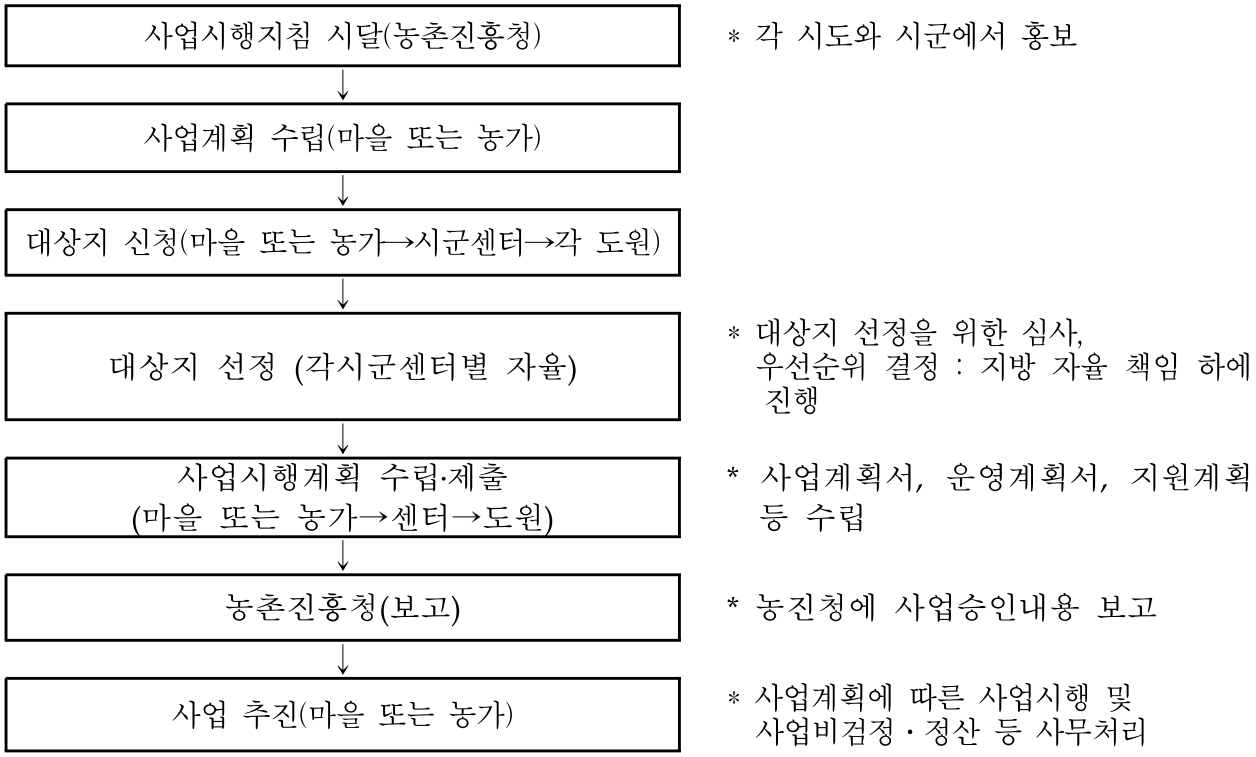

3. 연차별 추진계획

○ 신규창업은 2014년까지 시군당 1~2개소씩 총 180개소 육성, 신규사업 투입 3차년도 부터는 사후관리에 중점

○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은 2014년까지 총 210개소 육성,

○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계속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6	12.6	-	11.5	-	22.1	-	172.2
'05	24			2.3		2.3		28.6
'06	25	3.0		2.3		4.3		34.6
'07	25	3.0		2.3		4.3		34.6
'08	26	3.3		2.3		5.6		37.2
'09	26	3.3		2.3		5.6		37.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3	6.0	-	6.7	-	10.7	-	96.4
'05	24			2.3		2.3		28.6
'06	25	3.0		2.3		4.3		34.6
'07	24	3.0		2.1		4.1		33.2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사업량은 신규창업사업 9개소 계획에 100%, 품질향상사업이 15개소 계획에 14개소로 9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가 1건 계획에 100% 완료하였음

  * 품질향상사업 중 1개소는 현장에서 사업장 확보를 위한 용지전용이 지연되어 '08년 이월 추진키로 함

- 성과지표는 지원 후 2년차 여성농업인 창업사업 성과지표(농외 소득율)의 목표치 34%('03~'05 전국 농가 농외소득율 3년 평균) 대비 109.4% 달성하였음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품목 - 소량의 웰빙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신규 창업장의 지원 후 2년차 사업이므로 사업대표는 물론 지자체에서 집중 홍보 지원 해줌으로써 전국 농가 평균에 비해 높은 실적을 달성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후 2년차 사업 농외소득율	시범사업소득 조사결과	%	34	37.2	109.4

Ⅱ. 평가결과

1. 총 평

○ 꾸준히 제기되어 온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여권신장에 기여하고 경영주체로서의 의식함양, 경쟁력 확보 방안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무적이라 판단됨

○ 농어촌의 경우 여성농업인은 도시 근로자와 달리 경영을 동시에 꾸려가고 있는 등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 사회적·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 사업은 이를 일정부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이 초기단계이므로 큰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 보다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농촌정착률 저하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여권 신장을 통해 농촌정착 의지 고취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촌여성의 수요에 부응한 강의, 현황분석으로 창업지도에 많은 도움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한바가 나타나고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체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으로 나타남

3. 개선방안

○ 사업추진체계를 3개 기관으로 분산하여 집행하는 체계보다는 일원화하여 집행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추진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협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참여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1-4-1-1(계속)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보건복지부 / 노인요양운영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노인가구 문제 및 장기요양보호욕구를 해소하고자 가정중심으로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혜택의 지역편재 해소

○ 농산어촌 거주 등으로 인해 보건소,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09년

○ 사 업 비 : '07년 51억(국비 25.5억, 지방비 25.5억)

○ 사업내용

- '07년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14개소 신설
- '09년까지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주간, 단기,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복합된 다기능시설) 112개소 확충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시·군·구) → 사업대상 선정(복지부) → 예산신청(신·군·구) → 예산지원(복지부) → 사업시행(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5년 추진내용

- 총 예산 30억(국비 40%)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6개소 설치지원

○ 2006년 추진내용

- 총 예산 55억(국비 50%)으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설치지원

○ 2007년 추진내용

- 총 예산 51억(국비 50%)으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14개 설치 지원 (당초 12개소 설치계획)

○ 2008년 추진계획

- 총 예산 51억(국비 50%)으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12개 설치, 2007년 신축지원시설 장비보강

○ 2009년 추진계획

- 총 예산 52.5억(국비 50%)으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14개 설치, 2008년 신축지원시설 장비보강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2	118				124		242
'05	56	12				18		30
'06	16	28				28		56
'07	14	26				26		52
'08	12	26				26		52
'09	14	26				26		5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6	66				72		138
'05	56	12				18		30
'06	16	28				28		56
'07	14	26				26		52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이용정원 증원수	신축 센터 수 × 정원(95명)	명	960	1330	138.5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절대적 노인인구의 증가와 상대적 노인인구 증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태부족한 상태임. 특히, 2008년 7월에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요양이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확충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기여도가 큼.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잠재적 이용자의 의견 수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가 잘 이루어짐.

○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과 연차별 계획 간의 목표치가 불일치하며 07년에는 목표치의 38%를 추가 달성함.

○ 일부 지자체의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일정에 차질이 있었음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이양시 운영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이 요구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에 시설은 부족하여 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농업촌지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의 목표는 명확함.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가 확충되고 있으며 년차별 확충계획 및 정책 목표가 명확함.

○ 사업계획 절차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과 복지관련 기관, 지자체의 의견이 수렴되어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으로 현장 중심형 계획으로 사료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순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기초지자체의 평가를 거쳐 신청서를 광역지자체에 제출 및 1차 평가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함.

○ 재가노인복지의 수요와 공급추계의 변동에 따라 시설확충 계획이 수정되어 탄력성이 담보된 집행이 이루어짐.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조정하여 실행하기위하여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마련하였고, 시도 사회복지 공무원 연찬회 및 사업설명회 의견 등 평가 및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 및 해결함.

○ 사업대상 선정 시 전국적인 균형과 사업수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의 예산확보 지연으로 일정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요양과 케어를 위한 재가노인복지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농어촌노인의 삶의 질 확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사료됨

○ 2007년 총예산 51억원(국비50%)으로 12개소의 신규설치를 계획하여 14개소를 설치하여 약 138%를 달성함.

○ 전년도에 지원한 시설의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미 실시되었음. 만족도 조사를 위한 지표의 개발과 만족도 실시가 요구됨.

○ 비가시적인 성과의 추가 지표 설정 및 분석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즉 재가노인센터가 아닌 요양시설과의 균형적인 이송체계를 위한 시스템 구상이 필요함.

○ 예산의 확보는 물론 집행이 적제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재·행정적인 제약요건을 조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 검토 되어야 함.

○ 지자체의 재정환경에 따라 지방비 확보가 늦어져 사업추진의 지연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센터 설치 후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함.

○ 복지수요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점 도출 시 해결 및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향후 보조금 없이 보험료만으로 독립경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인원 확대를 위한 시설 지원이 요구됨.

1-4-2-3(계속)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인복지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의 다양한 노인보호자원을 발굴하여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인수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老老돌봄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농촌노인 인력 활용 및 복지욕구 충족

○ 지리적 조건, 인구밀도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효율성 등의 문제로 재가서비스가 발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노인복지수준 진단 및 자생적인 노인보호체계 구축 기반 조성

○ 사업추진 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9조(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08년

○ 사 업 비 : 3억원(국비 100%)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6~'08) : 4종, 3억원
- 마을내 이용가능한 노인보호자원의 발굴·양성 및 자발적 참여, 노인보호체계의 자생적 운영 등 다차원적 접근방식의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 마을중심의 자생적인 노인보호활동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마을주민들과 사업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설명회 병행

- 개발된 노인봉사원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및 효과성 평가 검증 작업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 향상
-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지도사업으로 연계하여 농촌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사업비 및 사업규모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종, 2마을	-	-	1	-	-	-	1
'06	2종	-	-	1	-	-	-	1
'07	2종	-	-	1	-	-	-	1
'08	2마을(현장적용)	-	-	1	-	-	-	1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종	-	-	1	-	-	-	1
'06	2종	-	-	1	-	-	-	1
'07	2종	-	-	1	-	-	-	1

○ 연차별 추진내용

- 농촌지역 老老돌봄 운영 체계분석 및 노인보호활동 활성화 방안 수립 ('06~'08)
  - 老老돌봄 운영체계에 대한 한·일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의 노인돌봄 문제점 및 운영방안 도출

- 老老돌봄에의 노인참여활동 사례분석으로 농촌지역의 사회적 老老돌봄의 가능성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운영·활동방안 제시
- 농촌지역 노인보호활동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1종

- 농촌지역 노인보호인력을 활용한 봉사원 프로그램 개발('06~'08)
  - 농촌노인에 대한 노인돌봄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여 농촌노인용 노인수발 기술 프로그램 개발(2종)
  - 농촌주민에 대한 노인돌봄 활동의향을 조사하여 농촌주민용 노인수발 기술 프로그램 개발(2종)
- 농촌지역 노인복지수준 진단지표 개발 지원('06~'08)
  - 지역단위 노인복지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 지역별 노인복지수준을 조사하여 비교분석 및 평가
  - 농촌지역 노인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건수	종	2	3	150

Ⅱ. 평가결과

Ⅰ. 총 평

○ 노인보호체계 구축방안이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농촌의 수요와 사업방향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예산이 충분치 않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확충 등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을 확충하여 노인복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노령화된 농촌에서 老老돌봄 사업을 통해 전국노인복지수준 실태조사 및 지역별 노인복지수준 비교분석은 사업의 목표와 당위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속적 연구 추진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재정 대비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었고 교육프로그램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다고 평가됨.

3. 개선방안

○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했을 시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노인보호자원의 활용・운영・관리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

1-4-2-4(계속)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농촌진흥청 / 농촌생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노인들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소득·경제 등 4영역을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 문화생활을 조성, 영위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을 만들고자 함

○ 사업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제13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4, 제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12

○ 사업량 및 사업비 : 총 1,177억, 800개소

- 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3년간, 총 137~150백만원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5 ~ '07) : 350개소, 176억원(국비)
- 사업내용 : 소득활동, 건강생활, 평생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등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5년~2012년까지 800개 시범마을 육성**

- 마을당 3년간, 개소당 42~50백만원 지원으로 자율적 마을 운영 기반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00	588.3				588.3		1,176.6
'05	100	21				21		21
'06	200	75				75		75
'07	50	80				80		80
'08	84(계획)	83.3				83.3		83.3
'09	300	108.5				108.5		108.5
'10이후	66	220.5				220.5		220.5

※ '07년까지는 확정된 계획, '08년 이후는 향후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	176				176		352
'05	100	21				21		42
'06	200	75				75		150
'07	50	80				80		16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사업 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58%, 실적 64.2%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건강장수 마을	생활만족도	개인과 마을의 활력도 및 삶의 질 향상 증가 비율	%	58	64.2	106

Ⅱ. 평가결과

Ⅰ. 총 평

○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촌노인 및 예비노인에게 경제, 건강, 학습·사회활동, 환경 등 4영역을 접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함으로서 노년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마을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마을 조직의 협력적 참여를 유인하며 사업담당자의 워크샵 개최등을 통한 기술지원 등의 활동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07년도는 본 사업의 3년차로서 '05년에 선정된 마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므로 이에 대처한 '농촌건강장수마을의 성과 분석과 지속적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추진하는 것 역시 타당한 절차로 고려됨

○ 하지만 현재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산지원 종료 후에도 건강장수마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가능형 활동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건강장수마을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하여 마을별 지역상황에 맞게 선정됨으로서 향후 지원이 종료된 후 사업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건강장수마을별 프로그램은 노래부르기처럼 일회성 활동이 아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등으로 국비지원 영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내 보건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과 구체적으로 연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지표의 경우 단순 생활만족도 향상률 외에도 사업집행과정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의 정성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예를 들어 학습사회활동의 경우 예산지원 종료 후 활동별 지속가능성, 소득활동의 경우 마을별 수익 향상률,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건강장수마을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하고, 건강장수마을별 프로그램은 노래 부르기처럼 일회성 활동이 아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등으로 국비지원 영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1-4-3-0(계속)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농림부 / 소득지원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 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쌀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사업추진 근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2호 및 제5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7년 ~ 2013년

○ 총사업비 : 1조 1,318억원('07년까지 기투자액 : 1,524억원)

○ 사업규모 : 151천ha ('07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51천ha)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촌공사

○ 지원조건

- 10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63~69세의 고령농이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ha당 일정금액을 지급

○ 지원 단가

- 매도하는 경우 : 연령에 따라 최단 2년, 최장 8년간 ha당 241천원(연 2,896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
- 임대하는 경우 :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

○ 추진절차

- 대상자 선정신청(농업인→농촌공사) → 현지조사(농촌공사) → 대상자심의·선정(농촌공사) → 대상자 통보(농촌공사→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농촌공사↔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촌공사→농업인) → 사후관리(농촌공사)

3. 연차별 추진계획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정('07.2.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정('07.2.25)

-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하는 논에 대한 경영이양시 직불금(258만원/ha) 지급('97 제도 도입)

○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258만원/ha → 268('98)

○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258만원/ha → 281('00)

○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258만원/ha → 289('03)

○ 한칠레 FTA 비준에 따른 70~72세도 '06까지 한정 지원

○ 매도이양에 대한 분할 지급형 직불제도 도입('04)

- 매도이양시 ha당 연령에 따라 2~8년간 월 241천원씩 연금식 으로 지급(임대이양시는 ha당 2,977천원 일시불 지급)

○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경영이양직불사업 확대 개편 추진('07)

-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방식 개선, 지급대상 연령 및 대상 농지 확대 등 개편안 마련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ha, 억원)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5,096	1,837						1,837
'05	8,278	278						278
'06	4,818	165						165
'07	2,000	113						113
'08	20,000	300						300
'09	20,000	981						981

※ '08년 이후는 '07.6.28 한미 FTA 보완대책 관계기관 협의 결과
- '08년 : 당초 1,764ha, 113억원 ⇒ 변경 20,000ha, 300억원
- '09년 : 당초 1,646ha, 113억원 ⇒ 변경 20,000ha, 981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308	1,759						1,759
'05	7,267	221						221
'06	3,709	144						144
'07	2,332	113						113

* 2007 실적은 잠정치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경영이양직불제	경영이양율 (누계 %)	이양농가/ 대상농가	농가수	74,033 (23.0)	75,757 (23.5)	102.3
	'07경영이양면적	실적/계획	ha	2,000	2,332	116.6

※ 대상농가 : 321,885농가

Ⅱ. 평가결과

Ⅰ. 총 평

○ 2007년도에 고령농업인 3,030명에게 11,263백만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원하여 농지를 경영이양한 성과를 거두었음.

○ 현재의 경영이양직불금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에 미흡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경영이양직불제가 되기 위해서는 단가 인상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사업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함.

○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경영이양직불사업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확정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

○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설정된 것이기는 하나, 2008년 이후의 목표치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

- 08년: 당초 1,764ha 113억원 ⇒ 변경 20,000ha 300억원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지역본부 및 지사)가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농업인단체 지역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집행 노력을 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2007년도에 고령농업인 3,030명에게 11,263백만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원하여 농지를 경영이양한 성과를 거두었음.

○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 2,332ha를 쌀 전업농 3,075명에게 이양하여 1인당 0.76ha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함.

3. 개선방안

○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추진중인 제도 보완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Ⅰ. 총 평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개 사업이 추진되었음. 자영 농업계고 급식비와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는 사업부처가 다르지만 농어업계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동일한 사업으로 이를 하나로 여기면 19개의 사업이 추진됨.

○ 추진된 사업은 4개의 일반사업과 8개의 소규모 사업, 5개의 지방이양 사업, 1개의 연구사업, 1개의 비투융자 사업임. 평가는 전 사업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평점과 순위는 일반사업과 소규모 사업에 한정되어 부여됨.

□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분야에서 추진된 사업은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며, 농산어촌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

○ 특히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은 교육 때문에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 지역의 고등학교를 집중 지원 육성함으로써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고, 지역과 학교가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우수고교를 육성할 수 있는 추진체제나 점검과 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전국의 우수고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하였음.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도 소외되고, 지원이 적었던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의 교육을 실현하였음.

○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군 운영, 학자금 융자, 급식비 지원 등의 많은 사업들은 농산어촌에서 절실히 필요한데, 운영하는 과정이적절하지 않거나, 잘못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음.

○ 학교군 운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학교간 협력을 통해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협력을 통해 학교군을 잘 운영한 경우도 있으나, 사업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학교 간에 갈등을 증폭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음.

○ 고교생이나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은 학생당 학자금 지원액이 적절하지 않아 성과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등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나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은 사업의 목적과 추진과정이 적절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하였음.

□ 일부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어 중앙부처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였음. 특수교육, 유아교육, 우수고교 등과 같은 사업은 중앙에서 계획하고 지방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08년부터 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지방과 중앙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Ⅱ. 평가결과

1. 분야별 평가결과표

코드번호	사 업 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고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97	1	상위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운영	92	6	중위	
2-1-2-1	학교군 구성·운영	93	5	중위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91	9	중위	
2-1-3-5	도시문화 체험학습 운영지원	94	3	중위	
2-1-4-1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94	3	중위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84	11	중위	
2-1-4-4	농어촌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77	12	하위	
2-2-2-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92	6	중위	
2-2-2-2	농어업관련 대학생 학자금 지원	86	10	중위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96	2	상위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	92	6	중위	
평 균	12개 사업	90.67			

* 순위는 소규모, 일반사업만 해당됨

2. 평가 상위사업

□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사업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사업이 상위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사업은 농산어촌의 교육과 지역의 붕괴를 막고 지역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특히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도시로 전학 가는 문제를 막고 학교가 지역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지역의 고등학교가 우수고교가 되어 지역의 자랑이 되고 이 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고 관심과 후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되었음.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공주대 농산어촌발전센터 등이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실행 과정을 점검·평가하였으며,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컨설팅 하였음.

○ 이런 노력의 결과 학교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후원이 증대되었으며 도시로부터 우수고교로 전학 오는 여건을 조성하였음. 학생과 학부모, 지역의 만족도가 높고,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음.

○ 우수고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립형 기숙학교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은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던 소외된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한 사업임. 특수지역, 특수아 등과 같이 특별한 문제를 가진 대상이나 지역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한 사업임.

○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나 전국적으로 6개의 지원센터에 120명의 강사를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음.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큼.

3. 평가 하위사업

□ 평가 하위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이 선정됨.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은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 농어촌 유치원 교육은 도시와 다른 문제와 여건을 지니고 있음. 농어촌 지역은 유아수가 적어 유치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움.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같이 있으면 두 유치원이 모두 열악하게 됨. 현재 정부의 공립 병설유치원 확대 정책에 따라 거의 모든 농산어촌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운영될 경우 사립과 공립이 모두 열악하게 됨.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모두 경영이 어려운 여건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과 같음.

○ 유치원교육을 무상의무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고려할 때, 원생수가 적은 농어촌의 유치원 지원 정책은 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종합적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에서 유치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립과 사립의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이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지원책만 마련하였기 때문에 낮게 평가됨.

Ⅲ. 평가소감

□ 평가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보고서의 내용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임. 협의회시 부서에서 보충하여 설명을 하였지만 추진한 사업이 방대하고 전국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웠음.

○ 추진한 사업이 단기적이거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거나, 사업내용이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낮은 사업이 많았음. 학교군 운영은 학교에 사업비를 1년만 지원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학교도서관 사업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학자금 지원은 학생당 지원규모가 적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교원수당 등은 현실성이 적었고, 유아교육비 지원은 다른 사업과 중복되어 효과를 내지 못하였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산어촌의 실정에 맞게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많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추진될 예정으로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추진하여 점검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축소됨. 많은 사업들은 지방으로 이양될 필요가 있지만 중앙부서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음. ’08년부터 우수고교 사업, 학교군 사업, 유아교육비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등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될 계획이며,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임

○ 지역의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농산어촌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서의 계획과 정책이 지방에 접목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함

2-1-1-1(계속)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농산어촌에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 방향

- 농어촌 1군에 1고등학교를 선정하여 농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색화된 우수고등학교 모델 육성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교육 살리기 대책」 대통령 보고('04.2.23.)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04.3)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05.4.)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계속)

○ 사 업 비 : 240억원('07년, 농특)

※ 국고(농특회계) 50%, 지자체 대응투자 50%

○ 사업규모 : 농어촌 군소재지 86개 고등학교(신규42개교)

○ 시행방법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단위학교
- 사업집행절차 : 사업지원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학교 선정(시·도교육청) →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단위학교)

○ 주요내용

-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권 부여 및 교장 초빙·공모제 우선 적용
- 기숙사, 다목적 설치, 특별교실 리모델링 등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육시설 현대화 지원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교육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 성적우수자 등을 위한 장학금 수혜 확대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6개교	539.85				539.85		1,079.7
'05	14개교	60.65				60.65		121.3
'06	44개교	239.2				239.2		478.4
'07	86개교	240				240		480
'08	이양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6개교	539.85				539.85		1,079.7
'05	14개교	60.65				60.65		121.3
'06	44개교	239.2				239.2		478.4
'07	86개교	240				240		48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우수학교 선정수	선정학교수	교	44	42	95.4
	우수학교 만족도	만족도 조사	%	60	62.5	104.1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학생의 도시 유출을 방지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자녀 교육을 안심하고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농산어촌 교육 진흥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4년에 7개교의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 시범학교를 운영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7개교를 선정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30개교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 42개교를 선정 지원하였음. 2007년에는 거의 모든 군 단위에서 1 우수고 육성 체제를 갖추게 되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전국 운영체제를 정비시키고 있음

○ 사업의 추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업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도교육청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학교를 선정하며, 단위학교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업시행 주체는 시·도교육청이지만 실제로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교발전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단위학교 수준에서 우수고 육성 방향과 과제 설정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체제 정비, 우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시도하고 있음

○ 2007년 사업예산은 농어촌특별회계에서 120억원을 확보하고, 지자체 대응투자 120억원으로 합계 240억원임.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됨. 지원 예산이 학교 수준에서 기숙사, 강당, 정보실 등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균형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 사례 발굴 및 연찬회 실시,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유도, 학교운영 매뉴얼 개발 등 학교운영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업의 성과관리 지표 개발과 함께 성과가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음. 일년 단위 사업지원 방식에서 다년간 사업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사업 촉진을 위해 정기적인 사업평가를 시도하고 선도적인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2008년 이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은 농산어촌 고등학교 및 하급 단계에서의 학생 유출경감 및 방지 차원에서 추진됨

○ 사업목표가 구체화, 계량화되어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의 국정지표와 부합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시범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음. 사업추진 근거가 명확함

○ 자율학교 지정, 교육시설 개선 및 현대화 등 하위 정책 목표가 구체적이고 적절함

○ 절차의 합리성 차원에서 볼 때, 계획 수립 시 주민 여론 수렴, 사전조사 등을 충분히 이행하였음.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였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앙기관 계획 수립, 시·도교육청 세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공모, 선정 등의 추진체계는 합리적임. 학교 선정 기준과 절차의 개선 및 선정된 학교에 대한 전문적 지도와 모니터링이 필요함

○ 우수 고등학교에 선정된 학교는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물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는 없음. 학교 구성원의 협력, 지역사회 유관기관, 주민들의 사업 참여와 협력체제 구축이 활성화되어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7년도에 전국의 거의 모든 군단위에 우수고를 선정 지원하였음

○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다년간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였음. 경쟁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선도적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 국고는 전액 집행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해당 학교수준에서의 예산집행실적이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설명회, 간담회 등 국민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실적이 있음.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만족도 실시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음.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한 실적이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2005년 평균 53%에서 2006년 59.7%, 2007년 62.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만족도를 최소 60%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있음

○ 시범학교 운영 7개교, 2005년 7개교, 2006년 30개교, 2007년 44개교로 성과목표 자체가 크게 향상되었고, 성과지표로 제시된 목표치 44개교 운영 목표는 95.4% 달성되었음

○ 실질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08년 이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우수학교 운영성과 향상과 학교 간 정보 교류 및 공유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아울러 사업의 일관된 성과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3. 주요 결정사항

○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 육성 사업은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 2007년도에 전국의 거의 모든 군단위에서 우수고 육성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2008년부터 도농복합시 지역 농촌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약한 시지역까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함

○ 본 사업 예산은 2008년 이후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국고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국가 수준에서 우수고 간의 정보 교류 및 공유,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의 확보와 평가체제가 구축·운영되어야 할 것임

2-1-1-4(계속)	한국농업대학 개편 운영

(농촌진흥청 / 한국농업대학)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업인구의 급감과 초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력 양성

○ 추진 근거

- 「한국농업대학 설치법(법률 제7997호)」 및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20호)」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

○ 사업량·사업비 : 720명 (240명×3학년), 6,982백만원

○ 사업주체 : 농촌진흥청 한국농업대학(직접 수행)

○ 추진내용

- 학제, 장기현장실습제도 등 정규교육과정 개편
-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신설
- 학교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 및 기능강화

○ 사업추진체계

- 발전방안 마련 및 보완(T/F팀 운영) → 의견수렴(세미나, 공청회) → 발전방안 보완 및 확정 → 추진 → 평가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1단계('05년) : 개편방안 마련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2단계('06~'08년) : 학제·정규과정 개편, 직업훈련과정 시범 교육실시, 학교 명칭변경, 시설 확충 등 개편 추진
- 3단계('09년) :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재설정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00명	351			18			369
'05	720	62			6			68
'06	720	66			6			72
'07	720	68			6			74
'08	720	76			-			76
'09	720	79			-			7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60명	196			14			210
'05	720	62			6			68
'06	720	66			6			72
'07	720	68			2			70

- 당초 한국마사회로부터 560백만원의 특별적립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적립금 규모 감소에 따른 사업분야별 지원규모 축소 및 수혜자 다변화 방침에 따라 162백만원 확보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졸업생 영농정착율은 95.3%로 성과목표치 95.0%를 100.3% 달성

- 보조지표인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 대비 비율은 213%로 목표치 190%를 112.1%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한국농업대학 개편운영	졸업생 영농정착율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	%	95.0	95.3	100.3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 대비 비율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	%	190	213	112.1

*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 대비 비율 =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농가평균소득)×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한국농업대학 개편운영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68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3년제 농업전문학교를 4년제 한국농업대학으로 전환하면서 학제개편을 시도하고, 홍보 및 입시제도 개선, 현장실습 내실화, 졸업 이후 영농 지원을 강화하여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007년도 재원은 농특세 68억원, 기금 등 6억원 합계 74억원을 국고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70억 수준의 확보에 그쳤으나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11.8% 늘어나 7,623백만원을 확보하여 대체로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성공적 사업추진이 예상됨

○ 2007년도 졸업생의 영농 정착률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업 및 농촌의 인구 유지, 지역 발전을 선도할 리더 양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개편하고, 각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목표는 명확하고 적절함

○ 한국농업대학이 우수한 전문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원여건을 개선하고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세부 사업목표는 상위목표에 부합됨

○ 정규 교육과정 개편, 우수 신입생 확보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현장실습 내실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신설, 학교 명칭 변경 등의 사업 계획은 구체적임

○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T/F팀 운영, 한국농업대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은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 학칙,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추진함. 한국농업대학의 교육운영사업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졸업생 영농실태 조사, 졸업생과의 간담회,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점검·평가단의 지적 사항인 졸업생의 교육만족도 영농정착률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인 입학생 자격요건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한국농업대학의 성과 지표로 졸업생의 영농정착률을 설정하고 졸업 후 농가평균 소득을 보조 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대학교육의 충실도 차원에서 성과목표 설정과 관리가 요망됨

○ 영농종사의무가 해제되어 영농 정착률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적극적인 추수지도를 통해서 당초 성과목표치 95%를 초과 달성한 것은 성공적인 사업 운영 결과라고 판단됨.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한국농업대학 개편운영 사업은 본래 계획대로 충실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업대학 개편 운영 사업은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목표의 설정과 관리가 필요함

○ 대학의 기구개편, 정원 확대 등 조직 확대의 당위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 실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대학의 지방이전 계획에 검토와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

2-1-2-1(계속)	학교군 구성·운영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소규모학교를 인근학교와 학교군(school complex)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협력 운영 및 시설 공동이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제고

○ 사업 방향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접해 있는 2~3개의 소규모 학교들간에 교육과정 협력 운영 및 시설 공동이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 20조(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 제 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0개 학교군

○ 지원대상 : 농산어촌 초·중학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학교군내 중심학교의 기본시설 현대화 및 공동 활용시설 구비
- 다양한 협동학습 프로그램운영(외국어 및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등)

- 이동수업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제공

- 지원액 : 30억원(20개학교군×3억원×50%)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0개군	90				90		180
'05	20개군	30				30		60
'06	20개군	30				30		60
'07	20개군	30				30		60
'08								
'09								

※ '08년 이후 지방이양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0개군	90				90		180
'05	20개군	30				30		60
'06	20개군	30				30		60
'07	20개군	30				30		6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학교군 구성·운영	학교군 구성	선정학교군 수	군	20	20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 및 운영 사업의 목적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에 대응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인근학교들이 학교군을 형성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는 데 있음

○ 농산어촌의 지역적 여건상 소규모 학교를 과도하게 통폐합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적정 규모의 교육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근 학교 간 시설과 교육활동을 공유하여 교육효과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지대하다고 판단됨

○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09년까지 5년 동안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며, 매년 20개의 학교군을 선정하여 학교군별로 국고 1억 5천만원, 지방비 1억 5천만원 총 3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2007년도에 20개 학교군에 60억원의 예산이 지원됨

○ 지원대상은 농산어촌 초·중학교의 학교군이며, 지원된 경비는 학교군 내 중심학교의 기본시설 현대화, 공동 활용시설 구비, 외국어 및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협동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동수업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2007년도에 20개 학교군이 선정되어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이 지원되어 학교군별로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됨. 지원된 후 학교군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심학교에서는 2006년 77.3%에서 2007년 84.0%로 향상되었고, 협력학교에서는 2006년 57.6%에서 2007년 65.0%로 향상되었음

○ 학교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음으로써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학교군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선정된 학교군도 중심학교와 협력학교가 밀접히 연계를 맺어 시설투자와 교육과정 운영 등에 적절히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2006년에 예산이 하반기에 교부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으나 2007년도에는 상반기에 교부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였음

○ 2008년 이후에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임. 국가 수준에서의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가 필요함. 학교군 구성 및 운영 사업을 특정 학교군에 대한 일회적 재정 지원 사업에서 탈피하여 우수 학교군에 대한 지속적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2005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농산어촌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임. 농산어촌 학교가 소규모화되어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 농산어촌 학교 규모의 적정화 효과를 가져 와, 학생의 사회성 발달,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지가 분명함. 학교군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명확하여 일을 추진하기가 용이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군으로 선정된 학교들이 어떻게 협조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일을 추진하기가 용이함. 아울러 재정지원이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면서 이런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항상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 학교군별로 재정 집행 내역이 분석, 평가될 필요가 있음. 매년 새로운 학교군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어서 일회적 재정 지원 사업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학교군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하려는 노력을 시도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학교군 사업은 인근 학교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시설과 인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 학생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2007년도 목표인 20개 학교군을 구성, 운영하여 당초 계획을 100% 달성함. 중심학교의 만족도는 84.0%, 협력학교의 만족도는 65.0%도 수준을 보임. 중심학교는 전년도 대비 6.7%, 협력학교는 7.4% 상승함.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높지만 중심학교에 비해 협력학교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개 학교군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파악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학교군 사업은 발전적으로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음. 학교군 사업은 일회적 재정 지원 사업에서 탈피하여 우수 학교군에 대한 계속적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특정 군 단위 학교군을 시범학교군으로 선정하여 효율적인 학교군 운영 모델을 개발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 2008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지만 국가 수준에서 사업의 모니터링, 성과 관리, 아울러 우수 사례의 발굴 및 보급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개별 학교군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1-3-1(계속)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기획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도농간 학력격차 완화 및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복식학급의 수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

※ 복식학급수업 : 상학년, 하학년의 2개 학년 또는, 그 이상의 학년이 한 학급으로 편성되어서 교육을 영위하는 복식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 개발된 교재의 적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적 삶의 질 제고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0조(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09년

○ 총사업비 : 10억원('05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 사업규모(단위 : 억원) : 2억원('07년 투자액)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추진 내용

- 사업추진 도교육청과 연구학교 워크숍
- 세부사업 추진 점검 및 협의회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4		8
'05	-	-				-		
'06	8종, 3개교	2				2		4
'07	8종, 3개교	2				2		4
'08								
'0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4		8
'05	-	-				-		
'06	8종, 3개교	2				2		4
'07	8종, 3개교	2				2		4

4. 성과목표 달성도

○ 복식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복식수업 콘텐츠 6종, 지원 프로그램 개발 2종
- 연구학교 운영 3개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복식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개발 교재수	종수	종	6	6	100
	지원프로그램수	종수	종	2	2	100
	연구학교운영	학교수	수	3	3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소규모학교의 복식학급에서의 수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식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한 농어산촌 학생들의 교육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우 필요한 사업임.

○ 그러나 개발된 복식수업콘텐츠와 지원프로그램들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효과를 전국적으로 알려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가능하다면 복식학급 교재개발과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을 한 주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복수의 주체에게 맡김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복식학급 교재개발 사업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모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교육정보원과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교육연구소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을 밀도 있고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야할 사업이므로 교재개발뿐만 아니라 복식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자생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 워크숍지원 등 교사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복식수업 교재 및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있는데, 그것의 유용성과 현장 적합성 등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고 홍보 및 보급노력이 미약함.

○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운 연구학교 방식 이외에 복식수업경험이 많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현장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생적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삶의질 향상 점검·평가단에서 지난해 권고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대응투자가 미흡한 경우에도 사업성과는 달성된 것으로 지난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음.

○ 재원의 합리적 배분면에서 보고서의 수치가 불일치하는 등 준비에 소홀함이 보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의 성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교재개발의 종수와 지원프로그램 개발 건수, 그리고 연구학교 운영수 등으로만 성과를 측정할 경우 질적인 측면의 성과를 측정하는데는 한계를 가지게 됨.

○ 복식수업자료의 유용성 및 현장에서의 활용정도 등에 대한 성과척도 개발이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복식수업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모두 필요함. 그러므로 농산어촌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연구소와 그 지역교육청의 교육연구원이 협력하여 개발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할 것임.

○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적 상황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개발된 자료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보다는 지역별로 특색을 살린 교재를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개발된 복식수업교재와 프로그램이 개발취지에 맞도록 그 기능을 발휘하는지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복식수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동아리 형성을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식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활동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2-1-3-4(계속)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 방과후학교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격차 해소

- 학습 능력 향상, 소질·적성 계발 등 농산어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
- 학교의 방과후 보호·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근로경제 활동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 추진 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신청	⇒	심사 및 지원 지역 선정	⇒	예산 지원	⇒	사업 추진
교육부		시·군청 및 지역교육청		심사위원회		교육부		시·군청 및 지역교육청

○ 추진 내용

- 농산어촌 학생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초등보육 시설, 프로그램 운영, 외부 강사비, 이동수단, 기자재 등을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지역 확대

- '06년 19개 군(169.5억) → '07년 89개 시·군(994억) → '08년 이후 140개 시·군(1,082억)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개 시·군	132		166.2		3,029.3		3,327.5
'05	-	-	-	-	-	-	-	-
'06	19개 군	-	-	-	-	169.5	-	169.5
'07	89개 시·군	132	-	166.2	-	695.8	-	994
'08	140개 시·군	-	-	-	-	1,082	-	1,082
'09	140개 시·군	-	-	-	-	1,082	-	1,08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9개군	132		166.2		865.3		1,163.5
'05	-	-	-	-	-	-	-	-
'06	19개 군	-	-	-	-	169.5	-	169.5
'07	89개 시·군	132	-	166.2	-	695.8	-	994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목표치 88개 시·군을 초과달성한 89개 시·군 지원

※ 논산교육청이 관할 범위에 따라 논산시, 계룡시와 사업을 신청하여 총 88개 지역교육청, 89개 시·군을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지역 수	현황 조사	기초자치 단체 수	88개 시·군	89개 시·군	101%

Ⅱ. 평가결과

1. 총 평

○ 교육여건이 매우 미흡한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기초학력의 보충, 다양한 소질계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학생의 보호기능과 학부모의 경제활동 지원 기능 등 그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농어산촌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교육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

○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학부모들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이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임.

○ 그러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좋은 교육활동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한데 여기에 대한 점검과 교육적 지도가 반드시 필요함.

○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우수한 강사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높은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 수준이 각각 64.4%, 66.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문제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대학의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겠음.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사업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야할 사업이므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계획을 획일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방과후학교사업이 실효성 있게 전개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는 속도를 달리 할 필요가 있음.

○ 방과후학교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연구와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정책시행결과를 계획수립에 지속적으로 반영한점이 돋보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학교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규모학교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점은 매우 타당한 방향설정임.

○ 「방과후학교 페스티벌」과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는 노력은 매우 타당하고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할 정책방향이 되어야할 것임.

○ 시·군청,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인「방과후학교지원센터」나 추진과정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과후학교 중앙컨설팅단」, 「방과후학교 시·도컨설팅단」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산어촌 거점학교 운영 확대를 통하여 양질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되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로서의 기능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

○ 농산어촌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어린 자녀를 학교가 방과후까지 보호해 줌으로써 학부모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도 교육개발원의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 64.4%, 학부모 66.2%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음.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보다 충실히 파악하여 거기에 부응하는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임.

○ 방과후학교 사업은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큰 사업이기도 하지만 도시 농촌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농산어촌의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지가 담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

3. 개선방안 등

○ 교육은 학생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발해나가는 과정임.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이 강사중심으로 선정되어서는 곤란하고 수요자인 학생중심으로 선정되어야함. 그런데 방과후연구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은 방과후학교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기에

적합한 활동중심으로 개설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 방과후학교 사업은 그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정책적 성과는 높다고만 할 수는 없는 수준임. 학생의 만족도가 64.2%, 학부모의 만족도가 66.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수요자중심의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만족도 수준을 최소한 80%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 적용지역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리기 보다는 방과후학교의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후에 적용지역을 확대해나가는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대학의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겠음.

2-1-3-5(계속)	도시문화체험학습 운영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폭력대책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 및 내실화로 교육복지 증진

○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의 도시문화체험학습으로 도시지역에 대한 문화적 이해 증진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대통령 공약사항

-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제정
-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보고('04.2.23)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4 ~ 2008. 1

○ 사업규모

- 사업 시행대상 : 면지역이하(도서벽지) 초등학교
- 사업 규모 : 초등학교 2,033개교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학생)의 도시체험학습 운영 및 예산 지원

- 총사업비 : 국고 10억원, 지방비 10억원, 총 20억원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 2008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운영

※ 재원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사업추진실적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1,755개교/160,257명 실시

- 시·도교육청별 도시체험학습 우수 사례 조사 및 홍보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문화체험학습 실시로 교육효과를 높임

- 도시문화체험학습 장소

· 문화유적 : 사찰, 성터, 궁궐 등 유적지 및 문화재

· 공공기관 : 시청, 소방서, 교육청 등

· 문화시설 : 각종 전시회, 영화관, 도서관

· 산업시설 : 산업체, 공장, 백화점 등

· 체육시설 : 운동장, 경기관람 등

○ 사업 추진방법

- 지원형태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 신청을 받아 추진

- 사업수행주체 : 시·도교육감

- 사업집행절차 :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예산지원(교육인적자원부→시·도교육청)→세부계획수립(시·도교육청)→도시문화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해당학교)→계획 검토 및 선정·지원(시·도교육청)→도시체험학습 운영(해당학교)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기간 및 일정

- 추진기간 : 2005년 ~ 2009년
- 추진일정

주 요 업 무	5개년('05~'09) 계획					비고
	'05	'06	'07	'08	'09	
○ 도시문화 체험학습 운영	10.35	10.35	11.00	18.75	-	'08이후 시도 이양

○ 연도별 사업비

(단위: 억원)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비	10.35	10.35	10.00	18.75	-
향후추진계획	2008년 이후는 시·도 이양 사업으로 지방비로 추진				

○ 연도별 시행 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30.7	-	-	-	49.45	-	80.15
'05	-	10.35	-	-	-	10.35	-	20.70
'06	-	10.35	-	-	-	10.35	-	20.70
'07	-	10.00	-	-	-	10.00	-	20.00
'08	-	-	-	-	-	18.75	-	18.75
'09	-	-		-	-	-	-	-

○ 연도별 시행 계획 추진 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851	30.7	0	0	0	25	0	55.7
'05	1,383	10.35	0	0	0	7.35	0	17.7
'06	1,713	10.35	0	0	0	8.88	0	19.23
'07	1,755	10.00	0	0	0	8.77	0	18.77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명	실적 (B)명	B/A (%)
도시문화 체험학습	도시문화체험학습 운영비율	도시문화체험 학생 수 비율	%	187,700	160,257	85.4

- 2007년 도시문화체험학습비가 18억7천7백만원(국고 10억, 지방비 8.77억)이 배정되었으므로, 1인당 도시문화체험학습비을 10,000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 약 18만7천7백명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 면지역 이하 초등학생들에게 문화유적, 공공기관, 문화시설, 산업시설, 체육시설 등 도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우 필요한 사업임.

○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 실정이나 학교 실정에 맞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위학교에 맡겨서 교육과정과 잘 연계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그러므로 예산과 지원조건 등에 대한 정보가 단위학교에 전달되어서 교육적인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되어 시행되어야 함.

○ 또한, 많은 학생들이 장시간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등에 의해 이동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은 교사나 교장은 이 사업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음.

○ 도시문화체험학습사업이 교육적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에 참가했던 농어촌학생들은 도시에 대한 막연한 선망만 갖고 돌아오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적 지도가 반드시 필요함.

○ 이러한 역효과는 지도교사가 체험학습후 그것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지도하느냐에 달렸음. 그러므로 이 사업의 성패는 지도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학교가 처한 지역적 여건이 매우 다양하고 학교의 교육적 실정이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가 지역적 여건이나 학교 실정에 맞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시문화체험학습사업을 지역적 여건과 학교특성에 맞게 성공적으로 실시했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하게 제시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함.

○ 도시문화체험학습사업이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도시의 문화를 체험하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면, 마찬가지로 도시지역 학생들에게 농산어촌의 문화를 체험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교육도 필요함. 그러므로 도시문화체험학습 사업을 장기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체험학습교류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학생・학부모・학교의 도시체험학습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별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 도시문화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족도를 분석하여 다음해의 계획수립에 반영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도시문화체험학습 사업의 교육적 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으로해서 도시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의 성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프로그램의 운영비율만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 보다 참여학생의 만족도 및 지도교사의 사후 교육적 지도활동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초등학교의 저·중·고 학년별로 학년의 특성에 맞는 도시문화체험학습의 시행을 위해서 동일지역 학교간의 협동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도시문화체험학습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시행되기 보다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형태로 연중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시행되는 것이 필요함. 그러기 위해선 예산지원 규모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서 단위학교에서 그것에 근거하여 연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교육과정과 잘 연계된 상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참여학생들이 장시간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도시문화 체험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교사의 교육적 지도 등 세밀한 교육적 준비와 사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학교가 처한 지역적 여건이 매우 다양하고 학교의 교육적 실정이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시문화체험학습사업을 지역적 여건과 학교특성에 맞게 성공적으로 실시했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하게 제시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함.

○ 장기적으로는 도시문화체험학습사업을 도시와 농촌 간의 체험학습교류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어촌 면지역 이하 초등학생들을 위한 도시문화체험학습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규모를 최소한 지금의 2배정도로 증액하여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1-4-1(계속)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교육인적자원부 / 유아교육지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유치원 부족지역 중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 교실 개·보수비 지원을 통하여 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유아들에게 유아교육 기회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사업규모 : 30학급

○ 지원대상 : 농산어촌 지역 공립 병설유치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Maching Fund(보조율 50%)

○ 사업시행 주체 :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 시행방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교육인적자원부)→예산 교부(교육인적자원부)→예산 배정 및 집행(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결산 보고 및 정산(시·도교육청)

3. 연차별 추진계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내국세분 교부율 인상(19.4%→20.0%)으로 '08년부터 동 사업의 지원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0학급	43.9				43.9		87.8
'05								
'06	150학급	37.5				37.5		75
'07	30학급	6.4				6.4		128
'08	-	-				-		-
'09	-	-				-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6학급	40				37.2		77.2
'05								
'06	121학급	33.7				30.9		64.6
'07	45학급	6.3				6.3		12.6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30학급(목표치)/45학급(실적)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공립병설 유치원 신·증설	신·증설 학급 수		학급	30	45	15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에서 유치원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음. 다른 교육기관이 없고 농번기와 같이 바쁜 때에는 어린 아이를 돌볼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사업은 의미있는 사업임

○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청의 여건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한 것도 바람직하게 여겨짐

○ 재원 조달도 농특세를 이용하여 중앙에서 지원하고 지방에서 대응 투자를 하도록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절하게 여겨짐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의 지원도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30%를 후에 지원하도록 하여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하도록 하였음

○ 계획과 사업 추진, 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좋으나 사업의 성격을 살펴볼 때 공립유치원 신·증설의 문제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여겨짐. 2008년부터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짐

○ 2007년도에 교육청에서 신청한 학교가 100% 신설이나 증설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병설유치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특세의 지원을 받아 농산어촌의 공립병설 유치원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은 적절하다고 여겨짐. 농산어촌의 수요을 반영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교부도 교육청의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음

○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사업내용을 알 수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도 교육부의 기본 계획과 교육청의 수요조사, 교육청의 자체 계획, 지역교육청의 사업 집행이 연동되도록 하였음.

○ 사업추진도 교육청의 호응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전체 재원의 일부를 차후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있게 사업을 추진하였음

○ 중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검토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계획했던 30학급보가 15학급이 많은 45학급을 신·증설하였음

○ 교육청에서 신청한 모든 학교를 신·증설하도록 하여 설정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음

3. 개선방안 등

○ 농산어촌의 유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공립병설 유치원 신·증설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님. 신·증설의 수요가 발생할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임. 현재 교육청에서 신청한 학교가 100% 신·증설되었고, 또 유치원교육에 관한 많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의미에 부합됨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개발과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방향설정이나 전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2-1-4-2(계속)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 유아교육지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 구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

○ 사업규모 : 330천명(도시지역 포함)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Maching Fund(보조율 50%)

○ 사업시행 주체 :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 시행방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교육인적자원부)→예산 교부(교육인적자원부)→예산 배정 및 집행(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결산 보고 및 정산(시·도교육청)

3. 연차별 추진계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내국세분 교부율 인상(19.4%→20.0%)으로 '08년부터 동 사업의 지원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68천명			4,886		4,886		9,772
'05	130천명			836		836		1,672
'06	308천명			1,972		1,972		3,944
'07	330천명			2,078		2,078		4,156
'08	-	-				-		-
'09	-	-				-		-

※ 도시지역 포함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69,285			4,126		4,065		8,191
'05	158,794			941		920		1,861
'06	229,086			1,472		1,432		2,904
'07	281,405			1,713		1,713		3,426

※ 도시지역 포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43.7%(목표치)/48.9%(실적)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유아교육비 수혜율	(지원아동 수/만3~5세 취원아 수)×100	%	43.7	48.9	112%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의 유아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짐

○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 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실현해 가는 전 단계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짐

○ 저소득층의 수혜율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역교육청, 시군구청과 협력하여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수혜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현장 점검을 통해 지원시 제기되는 문제를 파악하여 대처하고 있음

○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지원과 유아교육지원의 분명한 기준, 이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음

○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침이 제시되지 않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의 필요성은 제시되었으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사업계획에서도 사업의 목적이 열거되어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려움

○ 세부 사업을 계획할 때 여성가족부와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교육청, 기초단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성가족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과 어떤 사업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언급이 없음

○ 사업비가 크고 수혜 대상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지원하고 지원 후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유아교육비 지원 현장점검은 중간점검의 좋은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적절한 과정이라 여겨짐

○ 사업비 집행이 일정에 맞게 되었음. 만족도에서 35.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유아교육비를 지원해 주고도 만족도가 이런 정도가 된다는 것은 사업 추진과정을 깊게 성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보육료와의 차이 때문에 만족도가 낮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예산이 모두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유아교육진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노력해야할 정책적 방향 등이 제시되어야 저소득층 유아교육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산어촌의 저소득층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는 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에 제시되어야 함.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혜율도 좋은 기준이라 할 수 있지만, 수혜받은 학부모들의 만족도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수혜율 차원에서 보면 설정한 목표치 보다 높게 달성하였음. 그러나 앞의 만족도 부분과 비교하여 보면 사업들이 부모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3. 개선방안 등

○ 농산어촌의 유아교육은 특히 중요한 요소임.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지역발전,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될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때로는 이런 사업이 소홀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계획과 방향 설정이 필요함

2-1-4-4(신규)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교육인적자원부 / 유아교육지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공·사립간의 양극화 해소

○ 유아 공교육 담당교사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학부모 만족도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사업규모 : 3,295천명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의 사립유치원 학급담임 교사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Maching Fund(보조율 50%)

○ 사업시행 주체 :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 시행방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교육인적자원부)→예산 교부(교육인적자원부)→예산 배정 및 집행(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결산 보고 및 정산(시·도교육청)

3. 연차별 추진계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내국세분 교부율 인상(19.4%→20.0%)으로 '08년부터 동 사업의 지원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590	44				44		88
'05								
'06	3,295	22				22		44
'07	3,618	22				22		44
'08	-	-				-		-
'09	-	-				-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530	44				44		88
'05								
'06	3,618	22				22		44
'07	3,912	22				22		44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3,618명(목표치)/3,912명(실적)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학급담임수당 수혜율	(지원자수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 학급수)×100%	%	100%	108%	108%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특세와 지방비를 이용해 농어촌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담임수당을 월 11만원 지원해 주고 있음

○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집행의 성과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문제는 이 사업이 적정한가임.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치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재정지원의 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설립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많아 질 때 사립 유치원이 많아져 공립유치원 경영을 어렵게 하고 지역에 군소 유치원이 많아져 유치원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농산어촌의 학교가 학생수가 적어 통폐합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이전에 지역의 유치원의 규모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단기적인 지원책은 오히려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사립유치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임. 이를 위해 담임수당을 월 11만원 지원하고 있음. 사립유치원의 교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사립간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바람직함. 그러나 농산어촌의 사립 유치원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공립유치원과 경쟁하는 상황임. 학생수가 줄어듦에 따라 이런 경쟁체제가 심화되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모두 경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지역의 유치원 교육을 공립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임. 특히 농산어촌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폐

합하는 국가의 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립유치원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의 유치원 교육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지원하는 체제 구축이 더 필요함. 이런 맥락에서 2007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사업은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지원되는 비용도 직접 교사들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음

○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되는 내용이 적절히 지원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

○ 사업은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의 성과는 농산어촌 유치원 교사 3,912명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재원 44억원을 농특세 22억원, 지방비 22억원을 통해 지원하였음. 수혜율은 3,618명이 목표였는데 3,912명을 지원하여 지원율이 8% 정도 초과 달성되었음.

○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담당교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부모 만족도를 높였다고 성과를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사립학교 교사들에 월 11만원 지원하는 지원액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를 증액해야 함을 건의하고 있음

○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성과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월 11만원의 지원금이 담당교사의 자긍심을 얼마나 높일 수 있었으며 학부모 만족도를 향상시켰는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는 농산어촌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지역교육의 종합적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2007년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 농어촌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은 지역 유치원 교육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화되려는 시점에서 단발적인 지원책이나, 부분적인 사업은 오히려 정책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맞추어 농산어촌의 유치원교육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이 틀 안에서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농산어촌에서 유치원 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

2-2-1-0(계속)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농림부 / 농촌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리적·경제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계속

○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사업비 : 교부세 및 지방비에서 지원(지자체에서 사업 시행)

3. 연차별 추진계획

<'07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분권교부세	기금등			
합계	52,570			11,342,697		32,953,211		44,295,903
서울								
부산	840			326,447		761,706	-	1,088,153
대구	795			235,722		550,019	-	785,741
인천								
광주	19			7,319		17,698	-	25,017
대전								

울산	797			151,928		783,072	-	935,000
경기								
강원	6,192			-		5,010,000	-	5,010,00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5,869			4,732,042		8,605,492	-	13,337,534
경북	15,000			3,533,000		9,967,000	-	13,500,000
경남	13,058			2,356,239		7,258,224	-	9,614,463
제주								

<'07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분권교부세	기금등			
합계	51,330			11,092,043		31,733,515		42,834,273
서울								
부산	838			316,265		737,930	-	1,054,195
대구	732			281,070		654,451	-	935,521
인천								
광주	16			6,431		6,491		21,637
대전								
울산	793			151,256		779,335	-	930,591
경기								
강원	6,188			-		5,010,000	-	5,010,00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5,869			4,732,042		8,605,492	-	13,337,534
경북	14,500			3,387,960		9,160,040	-	12,548,000
경남	12,394			2,217,019		6,779,776	-	8,996,795
제주								

4.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천원	44,295,908	42,834,273	96.7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명	52,570	51,330	97.6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업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도농간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이 사업은 199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05년부터는 지원대상이 전농어가로 확대되었고, 개발제한구역해제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졸업 때까지 지원하는 등 수혜 범위 확대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

○ 그렇지만 2005년부터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업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됨. 현재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세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지원금액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원금액이 당해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인 바, 이에 따르면 전국에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될 것임.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고에 비해 최소 3배 이상의 수업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이 도농간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라는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으려면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는 농어업인 자녀에게 충분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도농간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하고, 사업목표도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라는 주요 국정지표에 부합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조직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망되며, 절차적 합리성 제고 차원에서 주민여론 수렴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잠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음. 특히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사업추진체계나 사업추진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할 주체가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임.

○ 사업추진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사업개선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점검·평가단 평가결과나 기타 내·외부 평가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도 어려움.

○ 시행계획 대비 예산집행 실적이 양호하고, 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2007년에 총 51,330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평균 842,600원을 지원하였음. 성과목표 달성도는 지원금액 기준으로 96.7%, 지원학생수 기준으로 97.6%인 바, 전년도에 양 지표 모두 100%를 달성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편임.

○ 성과지표나 성과목표치 모두 적합하고, 성과목표 달성도도 상당히 우수한 편임. 삶의 질 계획 비전달성에 기여한 정도는 보통으로 사료됨.

3. 개선방안 등

○ 농어업인의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그렇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부실화될 요인이 발생했고, 이명박정부의 출범에 따른 제반 환경의 변화는 이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이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려면 지원한도를 따로 두지 말고 문자 그대로 당해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따라야 할 것임. 농어업인 자녀 가운데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그리고 앞으로 설립될 자율형 사립고 등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이들에 대해 충분한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이 사업이 도농간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임.

2-2-2-1(계속)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농림부 / 소득지원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가계부담 완화와 농어업인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총사업비 : 3,242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2,767억원)

○ 사업규모 : 26천명('07년까지 지원실적 277천명)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지원조건 : 무이자융자(졸업 후 1년 거치, 한 학기 융자금을 1년 단위 상환)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학술진흥재단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9,000	2,010						2,010
'05	25,000	127						127
'06	25,000	483						483
'07	26,000	441						441
'08	26,000	413						413
'09	27,000	546						54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6,503	1,051						1,051
'05	25,206	127						127
'06	24,964	483						483
'07	26,333	441						441

○ '07년 사업추진실적 : 당초 지원 계획 26,000명보다 333명이 많은 26,333명에게 정부출연금 441억원과 회수금 등 306억원을 합하여 총 747억원을 학자금 융자로 지원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지원금액(억원)	연간지원규모	%	747	747	100
	지원인원(천명)	연간지원자수	%	26	26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간·계층간교육기회의 균등화를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튼실하고, 사업추진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성과도 우수한 편임.

○ 2008년 1학기 기준 연 7.65% 이자가 적용되는 교육부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에 비해 이 사업은 무이자 융자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에서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로 인해 과잉교육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고학력 실업으로 이어질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07년 현재 전체 신청자 가운데 80%를 조금 상회하는 학생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융자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은 예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잠재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경제 상황이 빨리 호전되지 않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면, 지금보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훨씬 더 늘어날 개연성이 큼.

○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졸업 후 1년 거치, 한 학기 융자금 1년 단위 상환이라는 현행 상환조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대학등록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는 농어업인의 복리증진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임. 사업목표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목표에 적합하고, 교육격차 해소라는 주요 국정지표에도 부합됨.

○ 세부추진계획이 치밀하게 잘 구비되어 있고 현실 적합성을 갖고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의 마련도 충실하게 이루어진 편임.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과정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의견 교환 및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단, 실수요자인 농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전반적으로 사업추진기관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했음. 그렇지만 전체 농어촌출신 대학생 가운데 수혜자의 비율이 10% 대에 머물러 있고, 전체 신청자 가운데 약 80%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 대비 예산 확충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당장은 융자금 회수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반 여건이 앞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크게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는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는 현행 방식이 갖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간 모니터링을 적절히 실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펼치고 있음.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삶의 질 향상 점검·평가단 평가 결과 가운데 정부출연금 대폭 확대 요구는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렇지만 상환조건의 완화 요구는 현재의 상환조건이 크게 무리가 없다는 전제 아래, 향후 상환율이 저조해질 때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남겨 놓았는데,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늦추라는 지적은 합리적인 요구로 사료됨.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단, 홍보 방법이 언론보도에 치중해 있는 바, 설명회나 간담회의 적절한 활용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2006년에 총 25,000명을 대상으로 667억원을 지원하였는데, 2007년에는 총 26,000명을 대상으로 747억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는바, 삶의 질 향상 비전달성을 위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단,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전년 대비 사업만족도의 변화 추이는 파악할 수 없음.

○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로서 매우 우수함. 그렇지만 현행 성과지표는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성과지표로서 지원금액 및 지원인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지원자 대비 수혜자 비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은 농어업인의 후생복지 증진 및 지역간·계층간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에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음. 그렇지만 2008년 1학기 기준으로 교육부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에 연 7.65% 이자가 적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무이자 융자라는 조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즉 단지 무이자 융자라는 조건 때문에 수학능력이나 취업 전망과 무관하게 대학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고학력 실업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이라는 후유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이제는 이 사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07년까지 융자금 평균 상환율이 91%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및 양극화 심화로 인해 상환율이 낮아질 개연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현재의 상환조건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거치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재조정하고, 매년 상환하는 액수도 소득수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2-2-2-2(계속)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림부 / 여성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후계 농업인 양성과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4항(특별적립금은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후계인력 장학사업 등에 대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 업 비 : 6,026백만원('07년 집행기준)

○ 사업규모 : 대학생 6,167명(농어업후계인력 2,166명, 농어업인자녀 4,001명)

○ 지원재원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 사업시행주체 : KRA와함께하는농촌희망재단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영농희망장학금 : 농수산계열 대학교 2학년(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자 중 영농(어)희망자

• 성적우수장학금 : 전국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자녀 중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 선발 지원

- 지원체계 : 재단(사업홍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대학생(재단 홈페이지에 신청서 등록) → 대학생(출력 후 대학에 신청서 제출) → 대학(장학금 지원 대상자 추천) → 농촌희망재단(장학생 확정 및 장학금 통장 입금)

※ 영농희망장학금은 신청자 전원, 성적우수장학금은 재적학생수에 비례 배정

- 지원금액

• 영농(어)희망장학금 : 학기당 120만원(대학생농업인은 60만원)

• 성적우수장학금 : 학기당 100만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장학금 재원 및 장학금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확대·인상

- 장학금 재원 확대 : ('07) 60억원 →('08) 65억원 → ('09) 68억원 → ('12) 80억원

- 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 ('07) 110만원/학기 → ('10) 150 → ('12) 200

* 국공립대학 등록금('08년 189만원/학기) 수준까지 연차적 인상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400				313			313
'05	4,500				34			34
'06	6,400				76			76
'07	6,500				70			70
'08	6,400				65			65
'09	6,600				68			68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141				146			146
'05	4,269				31			31
'06	5,705				55			55
'07	6,167				60			60

- 장학금 제도 시행초기로 계획인원을 여유있게 계상하였고, 영농(어)희망자가 계획수준에 못미쳐 실적 미달

4. 성과목표 달성도

○ 지원인원은 94.9%, 지원금액은 86.1%로 계획에 미달

- 지원인원 : 계획 6,500명 , 실적 6,167명
- 지원금액 : 계획 7,000백만원 , 실적 6,167백만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계획인원대비 지원실적	지원실적인원/계획인원 × 100	%	100.0	94.9	94.9
	지원계획금액대비 지원실적	지원실적금액/계획금액 × 100	%	100.0	86.1	86.1

Ⅱ. 평가결과

Ⅰ. 총 평

○ 젊고 우수한 후계 농업인 양성과 농어업인 교육비 경감이라는 이원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그렇지만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 및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개선의 여지가 큰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우선 학기당 120만원씩 지급하는 영농(어)희망장학금이 젊고 우수한 후계 농업인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1년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학기당 100만원의 성적우수장학금이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임.

○ 사업의 현실적합성, 문제해결가능성 등을 냉철하게 재검토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혜적 사업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업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시사해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추진 동기 및 필요성은 적합한 것으로 보임. 그렇지만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적합성이나 문제해결가능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요구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불분명함. 장학제도 세부방안을 마련할 때 대학관계자 및 대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2006년에 목표 대비 예산집행 실적이 92.3%에 그친 데 이어 2007년에는 그 비율이 86.1%로 더욱 낮아짐. 장학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추진방식이 미비하거나 수혜자에게 장학금의 매력도가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젊고 우수한 후계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영농희망장학금보다는 창업 이후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좀 더 매력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적우수장학금도 지금처럼 학기당 100만원을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누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 가운데 수능성적 일정 수준(예컨대, 4%) 이상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 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내 유수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 출신 대학생들 가운데 학비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에 실패한 사례가 비일비재함.

○ 중간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함.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목표 대비 예산집행 실적이 더욱 부진한 양상을 나타낸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한 방증으로 볼 수 있음.

○ 국민/이해 당사자에 대한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단, 의견수렴 방법으로 대학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장학생만 면담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내재적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학금의 잠재적 수혜 대상자 가운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미신청의 구체적 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삶의 질 향상 비전 달성을 위한 기여도는 보통으로 평가됨. 그렇지만 적절한 제도 개선을 거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면, 그 기여도가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지원계획 인원 대비 지원실적은 94.9%이고, 지원계획 금액 대비 지원실적은 86.1%로서, 장학금 지원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성과목표 달성도가 미흡한 수준임.

○ 성과목표 달성도가 매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가 어떤 식으로든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줌. 이러한 맥락에서 성과지표에 사업만족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잠재력이 큰 사업이지만, 현행 사업계획과 사업추진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추가적 확보가 절실하며, 당장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에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성적우수장학금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국내 유수의 대학에 진학했던 농어촌 특별전형 출신 대학생들 가운데 학비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에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사실이 이러한 판단의 배경임.

○ 영농희망장학금 지원을 통해 후계 농업인 양성을 도모하는 것은 현실성과 적합성이 결여된 정책의 선택으로 보임. 따라서 후계 농업인 양성이라는 목표는 좀 더 실제적인 유인책의 제공을 통해 달성할 필요가 있음.

2-2-3-1(계속)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체육보건급식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으로 학생건강 증진

○ 학부모 급식비 부담경감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1년~계속

○ 사업주체 : 시·도교육감

○ 추진체계 : 농산어촌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시·도교육청)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 준비(시·도교육청) → 예산지원(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 → 사업시행(학교)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농산어촌지역 744천명에게 식품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연 829억원, 지방비 100%
- 지원일수 : 학기중 연간 180일 지원

※ 시·도교육청 재정여건 등에 따라 학교별 지원액이 다르나, 일부 시도에서는 무상급식 실시, 또한 저소득층 학생은 급식비 전액지원(별도)

3. 연차별 추진계획

<'07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86,094					73,555		73,555
서울								
부산	6,307					654		654
대구	2,804					58		58
인천	15,037					3,635		3,635
광주								
대전	635					181		181
울산	27,664					1,574		1,574
경기	221,991					26,790		26,790
강원	43,444					2,761		2,761
충북	41,332					5,522		5,522
충남	84,957					13,760		13,760
전북	79,185					5,650		5,650
전남	67,438					7,502		7,502
경북	81,872					1,708		1,708
경남	99,431					3,268		3,268
제주	13,997					492		492

<'07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44,144					82,903		82,903
서울								
부산	5,959					655		655
대구	2,804					59		59
인천	14,597					3,477		3,477
광주	1,272					114		114
대전	636					183		183
울산	25,976					1,546		1,546
경기	173,178					28,096		28,096
강원	43,160					2,729		2,729
충북	41,332					5,535		5,535
충남	90,153					15,127		15,127
전북	81,220					12,178		12,178
전남	69,571					7,446		7,446
경북	83,281					2,000		2,000
경남	99,661					3,275		3,275
제주	11,344					483		483

5.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비	총 지원액	억원	736	829	113%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198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학생의 건강 발달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사업의 취지와 사업 목표가 분명함. 2007년에 성과지표 736억원 대비 829억원(744천명)을 지원하여 목표대비 113%를 달성하였음

○ 이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성과목표 및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성과가 있었음.

○ 특히 2007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기존 초등학생에 한해 지원되던 급식비 일부 지원을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중·고등학생의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농어업인과 도서벽지 주민들의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음.

○ 사업의 성격과 목적은 매우 단순하지만, 지방재정 여건 및 교육청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 급식 비 지원단가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급식비 지원 확대 등 양적인 측면의 지원은 물론 우수 농산물 공급, 직영급식 확대 등 질적인 측면의 관리와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2011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임

○ 농어촌의 발전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의 상위 목표와도 잘 부합되는 사업임

○ 급식비 지원이 교육청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음. 균등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함

○ 단순한 급식비 지원을 탈피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2005년~2006년 삶의질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음에도 급식의 질적 측면의 개선 등이 성과지표 등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음

○ 2007년 수립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기준으로 한 종합추진방안 및 성과지표 관리 등이 병행돼야 할 것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은 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을 밟고 있음.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교육행정 조직을 통해 사업추진이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행정조직 내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해결하고 있음

○ 급식비 단가의 경직성에 따른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예산조달과 배분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별 여건이 달라 차등적으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교육청의 사업추진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지원금액 차원에서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하였음

○ 2007년부터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중·고등학생 식품비 일부 지원 등이 확대됨으로써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음

○ 교육청별 공평한 지원 정도, 급식에 대한 만족도 등이 성과지표로 설정,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우수 농산물 사용 확대에 따른 농산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에 기여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됨

○ 급식비 현실화를 통한 급식의 질 개선, 교육청별 공평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우수농산물 사용 비율 등 사업 점검 및 모니터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2007년 기존 급식대책을 종합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수립된만큼 이를 목표로 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추진 및 관리, 성과, 평가방안 등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제시돼야 함

○ 삶의질 점검·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등도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과 평가위원 지적사항을 기반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2-3-2(계속)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

(농림부 / 농촌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영세농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농업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여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6~계속

○ 지원대상 :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

○ 사업비 : 교부세 및 지방비에서 지원(지자체에서 사업 시행)

3. 연차별 추진계획

<'07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분권교부세	기타			
합계		0	0	252,447	0	624,129	231,849	1,108,425
서울	해당없음							
부산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인천	해당없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사업규모 (명)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분권교부세	기타			
경기								
강원	342			38,000		114,000	38,000	190,000
충북								
충남								
전북	394			114,000			114,000	228,000
전남	415			36,937		137,837	43,696	218,470
경북	225			39,860		104,752	36,153	180,765
경남	220			23,650		267,540	-	291,190
제주	0							

4. 추진실적

<'07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분권교부세	기타			
합계		0	0	233,619	0	635,367	175,812	1,044,799
서울	해당없음							
부산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인천	해당없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경기								
강원	364			37,999		152,000	-	190,000
충북								
충남								
전북	354			95,963			95,963	191,926
전남	415			36,937		137,847	43,696	218,480
경북	225			39,860		104,752	36,153	180,765
경남	220			22,860		240,768	-	263,628
제주								

5.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농과계고 급식비	농과계고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천원	1,108,425	1,044,799	94.3
	농과계고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1,596	1,578	98.9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1986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영세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임

○ 지원대상은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이며, 2007년도 사업규모는 20.6억원을 확보하여 3,195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음

○ 이는 목표치 20억, 3,233명에 비해 예산면에서 103%, 인원면 에서는 98.8%를 달성하여 비교적 양호한 상황임

○ 다만,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지원실적이 자부담이 합산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됨으로써 실제 지원액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가 생산돼야 보다 현실적인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급식 단가의 현실화,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급식의 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되어야 할 사업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목표, 지원대상이 분명하고 구체적임. 국정지표 등 상위 목표와 부합됨

○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따라 수요 판단 등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하므로 사업추진 상 어려움은 없음. 행정기관과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은 대상자가 선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행정 조직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집행하고 있음

○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급식대상자의 의견 수렴 및 요구 반영 등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예산조달과 배분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음. 지자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배분되고 있음

○ 지방이양사업 전환 후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 사업을 알리려는 노력도 언론이나 설명회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없음

○ 07년도 사업은 2,610명을 대상으로 21억원을 확대 지원할 예정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됨

○ 지원액 차원에서 자영농과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급식의 질 차원에서 성과지표가 개발되고, 점검되어야 함

3. 개선방안 등

○ 자영농과생의 급식비 지원은 영세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평가됨

○ 급식비 단가 현실화, 급식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조사 등을 실시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급식대상자가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한 청소년기에 있으나 급식비 지원단가가 1식 1천원~1천5백원 수준으로 비교적 낮아 양질의 급식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별 교육청 재정에 따라 급식단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분권교부세의 탄력 운용으로 균등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지원 실적이 자부담과 합산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됨으로써 실제 지원액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가 생산돼야 보다 현실적인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삶의질 점검·질 점검 평가 성과지표에 지원금액, 대상학생 수 등 정량적인 지표는 물론 급식 만족도 조사, 급식비 균등 지원 및 증액 노력, 우수농산물 사용비율 등 다양한 정성적인 측면의 지표개발이 중요함

2-2-3-2(계속)	수산계고교(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해양수산부 / 수산경영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과 어촌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수산인력의 조기양성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7년~계속

○ 사업주체 : 시・도

○ 추진체계

○ 추진내용

- 사업지원대상 :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수산계고교 재학생
- 사업규모(사업량) : 4개고교(재학생 432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228백만원(지방비50%, 자부담50%)

3. 연차별 추진계획

<'07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개교/432명					114	114	228
충남도	1개교/77명					18	18	36
전남도	2개교/250명					54	54	108
경북도	1개교/105명					42	42	84

* '05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교부세(국비) 지원분은 지방비에 합산

4. 추진실적

<'07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개교/481명					136	136	272
충남도	1개교/71명					19	20	39
전남도	2개교/305명					75	74	149
경북도	1개교/105명					42	42	84

- 충남도 : 기숙사생 및 신입생 감소
- 전남도 : '07년도 신입생 수 증가

5.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전남도의 신입생 증가로 목표대비 111%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급식비지원 인원 수	지원계획 대비 실적	%	432명	481명	111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교육부의 수산계학교 육성방안에 근거하여 1986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영세 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어업전문 인력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된 사업임

○ 2007년도에는 수산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4개교 자영수산과 재학생 481명에게 2.72억원을 지원하였음. 이는 2006년 432명, 2.1억원에 비해 111%(학생수 기준) 증가한 수치로서 전남도의 신입생이 증가에서 비롯됐음

○ 급식 단가 현실화 노력을 추구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상태임

○ 어촌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목표는 분명하고, 국가균형발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상위목표와 부합됨

○ 시·도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교육청과 해당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단가 협의 등 절차적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행정 조직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사업 추진 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급식비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실정임

○ 예산조달과 배분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음. 교육청별로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재정 여건과 사업의지에 따라 급식비 지원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이는 적절치 않음. 현재 1식 1,030원~1,600원까지 차등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추진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청, 학교에 시행 협조를 구하고 있음. 추진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형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은 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으나 삶의 만족도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판단하기는 곤란함. 자영수산과 자원자가 적고, 어촌에 정착하려는 요구가 낮은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음

○ 전남도의 학생 수 증가로 432명 목표치 대비 481명, 학생수 대비 111%, 228백만원 목표 대비 272백만원, 120%의 성과를 이뤘음.

3. 개선방안 등

○ 자영수산과생의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교육비 경감, 학생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급식비 지원액 현실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였음.

○ 사업대상자가 충분한 양질의 영양섭취가 필요한 성장기의 청소년이니만큼 급식비 지원액을 현실화하여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급식 만족도 조사, 급식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통한 급식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삶의질 점검·질 점검 평가 성과지표에 정량적인 지표는 물론 급식 만족도 조사, 급식비 균등 지원 및 증액 노력, 우수농산물 사용비율 등 다양한 정성적인 측면의 지표개발이 중요함

2-2-4-2(계속)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 특수교육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대책 수립·실시
-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특수교육 내용, 방법 개선
-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순회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 목표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장애아에 대한 순회교육 제공, 특수교육 관련 상담,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 지원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3. ~ 2008. 2.

○ 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규모 : 11개 시·도의 농산어촌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60개소 운영 지원(센터당 1억원 지원)

※ 산출내역 : 담당강사 인건비 2인, 특수교육용 교재·교구비, 운영비

○ 시행방법 : 시도교육감이 지정·운영

○ 추진내용

- 농산어촌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60개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장애아 순회교육 전담 담당강사 120명(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특수교육 지원센터 배치
- 담당자의 업무 및 센터 운영 내용
  - 가정과 시설,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순회지도
  - 장애학생 가족 및 지역 장애인 교육상담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지원
  - 일반교원 특수교육 이해 및 연수지원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개소, 명, 억원)

연 도	'05	'06	'07	'08	'09	'10
운영 지원 센터수	18	60	60	시도이양		
담당강사 배치수	36	120	120			
예 산	9	30	30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8	69				69		138
'05	18	9				9		18
'06	60	30				30		60
'07	60	30				30		60
'08								
'0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8	69				75		144
'05	18	9				11		20
'06	60	30				28		58
'07	60	30				36		66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전담인력 배치 120명 배치 목표 대비 134명 배치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전담인력배치수	배치한 수 파악	명	120	134	112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이 사업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이후 전담강사가 전무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임. 2005년부터 처음으로 전담강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60개 센터에 120명의 전담강사를 배치하였음.

○ 일반적인 특수교육 여건도 열악하나 더욱 열악한 농산어촌의 특수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직 많은 지원정책이 더 필요하나 이 사업의 시작은 매우 필요한 것임.

○ 관할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여 현실적합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시·도교육청 관련자간 업무협의를 긴밀히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 60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각 센터들이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게 함.

○ 순회교육을 받은 학생, 학부모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하지만 이들이 너무 소수여서 전체 장애학생들의 실태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많은 장애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이 사업이 2008년부터는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하므로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우리나라 특수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나 특히 더욱 열악한 농산어촌의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우 필요한 것임.

○ 농산어촌 장애아 순회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순회교육 수요 학생수 등을 파악하는 등 현실적합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시·도교육청 관련자간 업무협의를 긴밀히 하여 지역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 2005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강사 120명을 지원센터에 배치하고 담당강사 2인 인건비 등을 포함한 사업예산 1억원을 각 센터에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각 센터의 요구를 분석하고 적합성을 검토한 다음 운영 지침 및 지원계획을 통보한 다음 예산 교부를 하였으며, 시·도별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시·도교육청별 운영평가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정책집행으로 보임.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60개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100% 집행함. 각 센터들이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게 됨.

○ 하지만 이 예산이 2008년부터는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함. 대체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특수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한 경향이 있다고 볼 때 이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산어촌에서 교육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마련됨.

○ 60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순회교육 지원(1,215명), 상담지원 (2,220건), 특수교육 진단평가 지원 (1,740명)을 함으로써 농산어촌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서비스를 활성화 함. 하지만 각 센터별로 본다면 1년 동안 평균 순회교육 20여명, 상담지원 37건, 특수교육 진단평가 지원 29건으로 전체 수요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편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각 지역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정비가 필요할 것임.

○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총 55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학생 89.5점, 학부모 89.0점, 교사 82.7점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하지만 극소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요구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음. 전체 장애학생들 가운데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위에서 평가해야 할 것임. 순회교육을 받은 학생을 포함하여 전체 장애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조사해야만 전반적인 요구수준 및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3. 개선방안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전담강사들이 순회교육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과 함께 순회교육을 맡는다면 순회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임. 순회전담강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평가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설문뿐 아니라 전체 지역의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며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현재 2명의 전담인원을 통해 장애학생들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충분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독립된 상설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영유아들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고 교육하는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취학 전에 장애아들이 조기진단을 받지 못하여 유치원 교육 등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 이러한 체제는 지역 내 병원 및 영·유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임.

2-3-1-2(계속)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적 및 기대효과

- 유능한 교장을 농어촌 학교에 초빙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내실화 도모

○ 사업 추진 방향

- 초빙교장 임용비율의 점진적 확대 및 임용추천 심사 강화 등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 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혁신의 필요성이 시급한 학교에 유능한 교장을 영입하기 위해 '06년 9월부터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개선방안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침체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교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

※ 교장공모제의 개념 : 일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을 가진 현직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교장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제도

- 기존의 교장초빙·공모제를 교장공모제로 통합하여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 사업내용(기존 사업)

- 시·도 내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초빙교장제 실시 확대
  · 시·도교육감은 지역실정,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 실시학교를 지정
  · 시·도교육감이 농산어촌 학교를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로 지정하여 해당 학교에 유능한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초빙교장제 제도 개선 추진
  · '교원정책혁신기획팀'을 구성하여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방안(시안)을 마련, '초빙교장제 점진적 확대와 제도 개선' 추진
  · 우리부 시안을 교육혁신위원회에 송부하여 최종안 수립을 요청, 최종 개선안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06.9~)
  ·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특성화학교 등 150여개를 대상으로 단계적('06년 50개교)인 시범 운영
  · 특성화중·고 약 20개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CEO) 등에게 공모기회 부여
  ·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교장 임용추천 심사 강화 및 2년 주기의 정기적인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 담보
- 교장공모제 시범운영('07. 9~)
  · 교장응모자격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심사절차를 적용하여 학교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 당해 학교에서 4년간 재임하여 학교혁신과 지역발전을 촉진
  · 응모자격기준에 따라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 개방형(당해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초빙교장형(교장자격증 소지자)으로 구분하여 실시

○ 예산 : 비예산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현황

구 분	'06.9 ~ '08.8	'07.3 ~ '09.2	합계
시범학교 수	51개	52개	103개

○ 교장 초빙·공모제는 '07년 9월부터 교장공모제로 통합하여 운영

- 교장공모제는 농어촌 소재 학교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등 혁신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학교에만 한정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시도별로 필요한 경우 그 실시지역을 확대하여 학교를 지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추진
- '08년 총 150개 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 2차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07.3~'09.2)는 총 52개교
- 3차 교장초빙·공모제는 '07년 9월자로 교장공모제로 통합하여 운영

※ 1차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 총 55개교

- 따라서 1차 교장공모제를 3차 교장초빙·공모제로 간주한다면 '07년 시범운영한 학교는 총 107개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시범학교 수	시범운영하는 학교수의 총합	교	102개	107개	105%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유능한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기존의 승진제도를 통하지 않고 공모를 통하여 유능한 교장을 선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장선발 제도를 도입함.

○ 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교장을 영입하기 위하여 2006년 9월부터 교장초빙·공모제를 시범운영 실시함. 교장초빙공모제는 농어촌 1군1우수고를 포함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특성화학교 등 150여개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입하였음.

○ 교장초빙·공모제는 능력만을 기준으로 유능한 교장을 영입하기 보다는 지연·학연 등의 인맥을 통하여 영입하거나 퇴임교장의 진로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보이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여 교장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게 되었음. 따라서 교장초빙·공모제는 2007년 9월부터 교장공모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 교장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 당해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공모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공모제로 이루어져 있음. 하지만, 농어촌 1군1우수고의 경우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교장초빙·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어 새로운 교장공모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1군1우수고에서 실시된 교장·초빙공모제에 대한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이와 함께 새로운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보다 다양한 곳에서 유능한 인재를 교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 학교 진흥을 위하여 새로운 교장선발제도를 시도한 것은 필요한 일임. 유능한 교장을 영입하는 것이 농어촌 교육력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임.

○ 다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초빙교장제를 근간으로 한 교장초빙·공모제만을 확대하려 한 것은 한계가 분명한 것이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혁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새로운 교장공모제를 마련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새로운 교장임용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교장초빙·공모제와 교장공모제교를 시범운영하고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며, 교육부 차원에서 '초빙교장제'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을 조사한 것은 적절하였음.

○ 추진과정에서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교원승진임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혁신위와의 협의하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양한 교장임용제도를 교장공모제라는 하나의 틀로 정리하여 보다 안정적인 제도 도입에 힘씀.

○ 교장공모제 틀 안에서 초빙교장형 공모제로 실시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이름만 바꾸게 될 우려가 있음. 초빙교장에 응모할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사절차에서는 능력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연, 지연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초빙교장에 응모할 대상을 늘리기 위하여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많이 배출할 경우 교장자격증을 소지하면서도 교장이 되지 못한 교원의 과다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교장공모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보다는 교감자격증 소지자(또는 교장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쟁하여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교장초빙·공모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시범운영의 학교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 것은 외형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실제 학생, 학부모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없이 성과를 이야기할 수 없음.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어야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교장공모제의 틀 안에 교장초빙·공모제가 통합된 것이므로 교장공모제를 교장초빙·공모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교원초빙제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개선방안 등

○ 초빙교장형 공모제를 포함한 모든 교장공모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객관적인 공모심사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임. 지금까지 실시한 교장공모제에서는 공모교장 심사위원 선정에서 대부분의 심사위원을 학교운영위원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획일적이고 편의적인 모습을 보였음.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함.

○ 공모교장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절차도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각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에 따라 소신껏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되, 자신의 투표행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함.

○ 초빙교장형 공모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확보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더 늘리는 것 보다는 교장승진후보명부에 오른 대상자를 늘려 실질 경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초빙교장형 공모제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경우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나타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 구성의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날 것임. 이를 위해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객관적인 심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장공모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유인가가 없으면 유능한 교장을 모실 수 있다는 보장을 하기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권이나 수당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2-3-2-1(계속)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단체지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6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및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수당)에 의거 농산어촌 소속 교원 중에서도 특히 업무가 가중되는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농산어촌 교육의 질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4

○ 사업규모 : 63,665명 (2007년도 연인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2,900,312,000원, 교사 1인당 월 50천원 지급(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30천원)

○ 지원조건(지원 대상)

- 순회교원수당 :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겸임근무를 명받아 2개(교육청 소속은 1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원(초·중등교육법 제5조의 병설학교 겸임교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통합운영학교 겸임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복식수업수당 :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소규모 학교에서 학년별 학급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 학급으

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복식학급 담당교원(복식수업이 아닌 수업도 담당하는 교과전담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근무처 구분 없이 겸임근무를 명받아 농산어촌에서 실제로 순회근무를 하거나 복식수업을 하는 교원(예: 소속학교가 도시지역인 교원의 순회근무, 교육청 소속 교원의 순회근무, 교감의 복식수업 등)

○ 주요 내용

시·도별 농산어촌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소속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담당교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시·도교육청에 분기별로 예산 교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연말에 정산 후 잔액 반납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8,188	58.97				61.66		58.97
'05	-							
'06	62,520	28.14						28.14
'07	68,556	30.83						30.83
'08	68,556					30.83		
'09	68,556					30.83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8,387	53.09						53.09
'05	-							
'06	54,722	24.09						24.09
'07	63,665	29.00						29.00

※ 복식 학급 해제, 교원 전보 등으로 지원 대상 감소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복식 학급 해제, 교원 전보 등으로 지원 대상 감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	복식수업 담당교원 및 순회교원	수당 지급 교원	명	68,556	63,665	93%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사업수당은 농산어촌 소속 교원중에서도 특히 업무가 가중되는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담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고 학생수도 줄어들면서 교원수도 감소하여 교과에 따라 학교를 순회하거나 여러 학년을 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이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소정의 보상이 필요함. 따라서,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사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은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임.

○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는 교원이 위 수당을 받을 경우 도서벽지수당을 3만원으로 삭감하여 지급하게 하고 있음. 사실상 교통비에도 못 미치는 명목상의 도서벽지 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도서벽지 근무 교원들의 사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하여야 함.

○ 이와 함께 교통의 발달로 도서벽지를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실제적으로 도서벽지로 분류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하고 도서벽지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시·도별 농산어촌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소속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담당교원 전원에 대해 농특세 재원으로 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 계획이 적절히 이루어졌음.

○ 하지만, 2008년부터는 이 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이관,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하게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원마련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생김. 농산어촌의 인구감소가 급감하여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담당 교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열악한데 중앙의 농특세로 지원하지 않으려는 것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도시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농산어촌학교로 순회교육을 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것을 지급하도록 하여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하였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분기별로 시·도교육청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도교육청이 해당교원에게 보수지급일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도교육청의 분기별 보고와 함께 연계된 것으로 효율적인 집행이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순회 교원 및 복식수업 담당 교원들의 늘어난 업무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교원 전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으로서 충분하진 않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음.

○ 수당지급에 따른 만족도 등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였음.

3. 개선방안 등

○ 재원을 농특세에서 지방비로 이관한 것은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야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농산어촌 인구 감소, 학교소규모화 등으로 인하여 농산어촌의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부담이 어떻게 가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수당지원을 하여야 함.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이 충분한 지원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다른 수당 지원의 필요 여부, 다른 수당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조정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을 현행과 같이 지급하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서벽지 근무교원들에게 차등지급되는 제도를 개선하여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함.

○ 이와 함께 도서벽지 수당을 재조정해야 함. 교통의 발달로 인해 사실상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에 근무할 경우에도 도서벽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실제적으로 도서벽지에 해당하는 지역만으로 도서벽지를 재구성한 다음, 실제로 도서벽지 근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해야 함.

2-3-2-2(계속)	교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도서벽지 교직원 사택 신축 및 개·보수비 지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교직원에게 주거 편의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시행 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비 : 121억원

○ 사업규모 : 859개동의 사택 신축 및 개보수

○ 지원대상 : 농산어촌 초, 중, 고등학교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 수립(교육인적자원부)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학교 선정(시·도교육청)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07년 782호의 사택신축 및 개·보수 계획에 의거 지방비 사업으로 859호 121억원 지원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 주거편의 제공

3. 연차별 추진계획

<'07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호)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82	0	0	17	0	95.47	0	112.47
부산	1					1		1
대구	2					0.07		0.07
울산	5					0.2		0.2
경기	263			9		2.8		11.8
강원	69			8		26		34
충북	7					0.7		0.7
충남	102					21.6		21.6
전북	23					1.2		1.2
전남	90					23		23
경북	199					13.9		13.9
경남	21					5		5

<'07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59	0	0	17	0	104.47	0	121.47
부산	1					1		1
대구	2					0.07		0.07
울산	5					0.2		0.2
경기	268			9		2.9		11.9
강원	69			8		25		33
충북	75					11.5		11.5
충남	106					21.6		21.6
전북	23					1.2		1.2
전남	90					22		22
경북	199					14		14
경남	21					5		5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교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사택 신축 및 개·보수	계획대비 실적	호	782	859	11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 도서벽지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사택을 신축하거나 개축·보수하도록 지원함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둠

○ 2007년 사택신축 및 개보수 계획에 의거 지방비 사업으로 859호 121억원 지원. 목표치 782호 대비 실적은 859호로서 110% 목표 초과 달성

○ 주택보급이 양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임. 도서지역의 사택은 기후나 습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할 것임

○ 교원 사택의 생활필수기구들은 정부가 제공하거나 공공관리하여 이동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원도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이 지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교원들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지대함. 교원들의 사택을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사업임

○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택집행상황 보고 자료를 받아 차기 연도 계획 수립 시 활용하였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필요한 곳에 사택지원을 하기 위해 사택 신청 물량을 파악하여 도서벽지 지역은 신청물량을 전액 반영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학생 수용전망을 고려해서 예산을 지원하였음

○ 시·도 교육청 사택 담당 팀을 통해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산어촌 도서벽지의 교원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근무기피현상이 일어났으나 교원의 사택을 확충함으로써 최소한의 근무여건을 확보하게 되었음. 특히 여성 교원의 경우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사택이 없을 경우 이 지역 근무가 더욱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사택문제의 해결로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음

○ 도서벽지의 경우 사택 보급률을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음. 상수도가 제공되지 않거나, 습기로 인한 곰팡이 혹은 지네와 같은 벌레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또한 순환근무로 자주 이동하는 교원들이 사택내의 주거 필수제품(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을 직접 구입해야 하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3. 개선방안 등

○ 교원 사택 확충 및 노후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속화되어야 함. 다만 시도 교육청이 사업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 점검 및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도서벽지의 시설은 기후조건으로 인해 빨리 손상되기가 쉬워 보다 자주 개보수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습기를 막고 단열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건축하여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지네와 같은 곤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최소한의 필수 가전제품은 정부 혹은 학교가 제공하여 관리하거나 공동운영 세탁기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2-3-3-2(계속)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교육인적자원부 / 지식정보기반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교육 및 문화 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학교 도서관 기본환경을 개선함으로써

- 자료·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케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 총사업비 : 498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126)

○ 사업규모 : 996개교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확충

○ 지원대상 : 학생, 교사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보조율 50%(매칭펀드)

○ 사업시행 주체 : 교육청, 단위학교

- 사업지원대상

·학생수 2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100명 이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제외 단, 교육감이 인정할 경우 300명 이하 학교도 가능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군 지역, 도·농 복합시의 읍·면 이하 지역

- 지원금액 및 형태 : 학교당 5천만원, 국고 50% · 지방비 50%

- 지원조건 : 농특(국고) 50%, 지방비 50% Matching Fund

- 사업 주요내용

  · 교육 · 문화시설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확충 지원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교수 · 학습 프로그램 개발)

- 단, 2007년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사업의 농특 예산 미확보로 자체 사업 예산도 미확보(펀딩 사업임)

3. 연차별 추진계획

(억원)

총사업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11이후
498	126	0	0	0	0	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수	학교도서관 수	학교	248	0	0

- 동 사업은 농특과 지방비 5:5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농특예산 전액 미반영으로 지방비 사업도 추진되지 못함

Ⅱ. 평가결과

1. 총 평

○ 학생 수 기준 2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의 도서관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 미확보로 중단됨.

○ 총사업비 498억원 중 2006년도까지 126억원이 투자되었으나 2007년도의 경우 농특(국고)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Ⅰ. 총 평

○ 평가결과 중앙정부의 사업추진 방향이 하향식에서 상향식개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에 의한 사업선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을 사업추진과정에 적용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공모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타 사업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 및 전문가 참여시스템의 적용이 요청됨

○ 또한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부서의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력뿐만 아니라 해당권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리더육성이 관건이며, 결국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단계까지 관과 민간의 파트너쉽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정부의 사업추진방식의 변화에 맞게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조직간 효율적인 업무연계화 작업과 리더육성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됨

○ 낙후지역개발사업군은 주민들의 역량이 중요하나, 대부분의 농촌 및 산촌 거주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지역혁신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리더 발굴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생활환경정비, 정부기반확충 등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혼재되어 추진될 경우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중복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지역사회기반시설확충 사업군은 일부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매입과 협의 과정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음

○ 농림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 관련부처들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지역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정책체계 및 투자 중복성, 사업간 연계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부서간 연계 및 협력에 있어서도 부처 및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처 및 부서간 연계,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 진흥사업군은 사업목표에 비해 사업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이 있으며,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민간자본이나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광범위한 관광사업 추진보다 전략적인 집중이 필요하며, 사업의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천수질, 폐기물 등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 예산증액 필요사업으로는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해수욕장 주변정리 및 시설정비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은 행자부의 소도읍육성사업이 읍근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기타 대부분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이 면급 이하를 대상권역으로 지원함에 따라 정주기능 및 중심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2006년, 2007년 도별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사업비 구성에서 기존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지원됨에 따라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추진됨으로서 물리적시설기반을 중심으로 지원되므로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이 경우 소도읍육성사업의 사업비를 참조가능) 연도별 1개 선정방식에서 탈피하고 완전경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수욕장 주변정리 및 시설정비 사업의 경우 기후온난화로 인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인파가 연중 증가되고 지반침식 등으로 인해 해수욕장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더해가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해수욕장 정비 및 시설정비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점진적 증가가 요구됨.

○ 특히, 해수욕장 주변정리 및 시설정비 사업은 3면이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국토의 현실에 있어 해당지역주민들의 소득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존 농산어촌 중심으로 추진되는 소프트웨어형 지역개발방식과 더불어 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군이라 할 수 있을 것임

Ⅱ. 평가결과

1. 분야별 평가결과표

코드번호	사 업 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고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89	7	중위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95	2	상위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93	5	상위	
3-2-1-3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94	4	상위	
3-2-2-1	소도읍 육성사업	96	1	상위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85	15	중위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87	11	중위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95	2	상위	
3-3-2-3	면단위 하수도	87	11	중위	

코드번호	사 업 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고
3-3-2-4	소하천 정비	89	7	중위	
3-3-2-5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80	26	중위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83	20	중위	
3-3-2-7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80	26	중위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89	7	중위	
3-3-2-9	양식장 정화 사업 지원	83	20	중위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85	15	중위	
3-3-2-11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사업	79	31	하위	
3-3-3-3	국고여객선 건조	80	26	중위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63	35	하위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87	11	중위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84	17	중위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	91	6	중위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80	26	중위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84	17	중위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86	14	중위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84	17	중위	
3-3-5-6	테마과학관 건립지원	66	34	하위	
3-3-5-7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82	23	중위	
3-3-5-8	농어촌복합체육시설	81	24	중위	
3-3-6-1	정보화 마을 조성	89	7	중위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80	26	중위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83	20	중위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75	33	하위	
3-3-7-1	농업인 정보화 교육	78	32	중위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81	24	중위	
평균	35개 사업	83.5			

2. 평가 상위사업

○ 낙후지역개발 사업군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이 상향식개발방식에 의한 공모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에 의한 일방통행식의 사업추진에서 탈피하여 실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이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추진과정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사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추진될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모델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농촌지역개발, 소도읍육성사업,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등의 경우 상향식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군(해당지역주민조직) 예비계획서작성 제출 > 도 자문 및 심의 제출 > 농림부 취합(평가방법 및 일정 확정) > 한국농촌공사 서류평가 > 서류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지역에 대한 현장평가 > 최종사업지 선정 > 기본계획수립(계획수립시 주민조직 및 전담자문단 운영) > 실시설계(농촌공사 도본부: 기술자문단 구성운영,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 발주) > 공사 착수 등의 예비계획서 작성에서부터 공사착수과정 등 전 공정에 주민조직 및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포함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자문단을 참여 사업이 상향식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개발방식의 변화는 지방화시대에 지역이 주도하는 내생적 발전전략이 새로운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가는 현실에서 낙후지역개발 역시 예외적 현상이 아니며, 낙후지역개발은 상향식 개발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주민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향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음

○ 또한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중앙지원을 연계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육성협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수범사례로 인용되고 있음

3. 평가 하위사업

○ 하위평가 하위사업으로는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디지털어촌구축,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 지방테마과학관 설치 사업 등 4개사업이 선정되었으며,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의 경우 개인에게 금전적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이 자생력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도서민 교통비 경감이 도시와 도서간 교류증진, 생필품 구매용이, 소비활동 촉진 등의 기대 효과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근거 있는 평가가 필요함

○ 디지털어촌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어촌 정보격차 해소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구체적 분석과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타부처에서 추진중인 정보화 관련사업에 비해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등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혜대상자인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전제되지 않어 사업의 성과에 대해 문제점이 높게 나타남

○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은 현재 제주 1개소에 사업비가 지원 완료에 따라 사업의 성과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폐사어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하여 친환경적인 재활용으로 연안어장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든 실정임

○ 지방테마과학관 설치사업은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보다 유지 관리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나, 사업추진상 사업성과 및 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자료가 부재하여 성과관리 및 목표달성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또한 지자체의 협조로 과학관 건립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보완하였으나, 아직도 예산 이월 등 미흡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평가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 부지확보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거나 타당성 조사 등이 수행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추진하는 예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어 하위사업으로 선정되었음

Ⅲ. 평가소감

○ 평가가 담당부서의 사업설명과 제출된 서면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제출된 보고서의 평가자료로서의 신뢰성 및 자료의 불비로 인해 보다 정확한 사업평가가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평가의 신뢰성의 문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인 사업평가보고서의 제출보다는 보다 정확한 평가자료의 제시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며, 미진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자료에 극한되어 나타나는 평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 소도읍 육성 추진기획단 등 전담팀 구성 및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사업간의 연계조정 기능을 발휘하여, 기반시설 사업 및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착수, 사업추진단계 및 완료시점까지 전문가 참여, 지역혁신리더발굴을 위한 교육 및 리더육성 및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지원사업이 공모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상향식개발방식으로 전환추진됨으로 소도읍육성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공모델화시켜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추진중인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성공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의 역량이 가장중요하나, 대부분의 농촌 및 산촌이 고령화로 인해 지역혁신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리더의 발굴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음

○ 그러나 현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리더와 귀농한 젊은 농부들을 중심으로 농촌에 활력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어 지속적인 지역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함

3-1-1-0(계속)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마을 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비전 제시·사업기획방법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및 제38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부터 계속

○ 사업추진방향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역량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 시행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Infra) 확충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시장·군수, 구청장 등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림부) → 시행계획 수립(한국농촌공사) 및 승인(농림부) → 세부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한국농촌공사) → 사업비 정산(농림부)

○ 사업 주요내용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자원 유형별 역량을 배양하도록 체계적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동기화과정(순회교육), 특별과정 등

- 체계적인 교육 관리·지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 사후관리방안 마련, 농촌지역개발 학적관리 및 인재뱅크시스템개발,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재 개발,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컨테스트 개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컨설팅업체 심사·등록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 내용

- 1단계(2005) :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시범운영, 교육수료자 사후관리방안 마련 농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DB 구축, 인력육성과 지역개발사업 연계 방안 마련 등
- 2단계(2006~2008) :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운영, 농촌지역개발 학적관리 시스템 개발·운영,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내고향 잠재자원 컨테스트 개최
- 3단계(2009) : 교육프로그램 지속 운영, 교육 지원시스템 안정적 관리·운영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722(명)	50.17						50.17
'05	1,322	2.57						2.57
'06	2,000	8.10						8.10
'07	3,400	8.50						8.50
'08	4,000	10.00						10.00
'09	5,000	21.00						21.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603(명)	19.17						19.17
'05	1,322	2.57						2.57
'06	2,258	8.10						8.10
'07	5,023	8.50						8.5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07년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은 교육 이수 인원으로 달성도 측정
- 컨설팅업체 등록수를 기준으로 컨설팅업체 정보 제공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지역개발 인력양성	교육 인원	교육 이수 인원	명	3,400	5,023	148%
	컨설팅업체 등록수	등록컨설팅 업체 수	개	30	49	163%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지역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활성화의 조기달성을 위해 농촌현장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농촌개발에 있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과거 농촌개발이 정주기반 확충, 생활환경 개선 등 물적 환경 개선에 치중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라면, 본 사업은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지역의 핵심역량을 키우면서 농촌리더를 육성하려는 소프트파워 강화사업이라는데 특징이 있음

○ 그간 추진된 각종 농촌개발사업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동력의 재생산이 미약하고 핵심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 동 사업은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향후 지속적인 농촌발전에 의의가 큰 사업이라 할 것임

○ 잘된 점

- '07년도 성과는 교육목표 대비 148%를 초과달성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기여했다는 점임
- 교육과정별 참여 및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현재 관여하는 사업 주제별 세분화된 과정으로 운영하여 교육생의 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음
- 산재하던 농촌계획 컨설팅기관을 종합 DB로 등록 시도

○ 미흡한 점

- 교육 이후 교육생의 교육효과 등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교육기관, 교육강사간 정보교류 및 표준교재 활용 미흡
- 컨설팅업체 DB 등록이 민간업체에 치중하여 공익기관의 등록이 미진하고, 홍보 및 기간부족으로 미등록 기관, 업체 발생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개발사업 추진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동기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의 목표, 계획의 구체성, 절차적 합리성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교육진행후 설문조사 및 교육강사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잘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교육생의 모집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미흡했고, 컨설팅업체 DB등록에서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등록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점이라 하겠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였고 관련기관간 연계 및 협조가 원활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관리 및 달성도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일부 위탁시행한 것은 바람직하나, 지방 교육의 경우 강사선정 등에 애로가 있으므로, 관리가 요구되는 바임

3. 개선방안 등

○ 교육수료생 자체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교육생 수준별, 교육회수별 선발 및 교육방식 차별화 방안 마련

○ 교육생 선발시 주민대표성, 열의, 필요성, 사업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추진(자치단체에서 인원 채우기식 부적합 교육생 선발 사전 차단책 마련)

○ 인재뱅크시스템, 표준교재 활용, 주기적 교육기관 및 강사워크숍 진행, 사후 모니터링 등 교육지원시스템 마련

○ 농촌컨설팅 업체 DB 등록의 지속적 추진과 다양한 기관 참여 유도. 특히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농촌통합계획 능력을 보유한 기관의 참여 유도 요망

3-2-1-1(계속)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1개 법정리 이상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농촌지역을 전원생활·여가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권역별로 권역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적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2017

○ 총사업비 : 64,256억원 (국고 51,699, 지방비 12,557)

-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 권역을 우선 추진

- 권역당 5년간 40~70억원 범위내 지원(국고 80%, 지방비20%)

※ 권역의 크기, 가구수 등 권역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현황 : '07까지 96개 권역 착수, 40개 권역 기본계획 완료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 제91조 내지 제109조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서작성(주민)→사업신청(주민, 시·군, 시·도)→타당성조사(농림부)→기본계획안 작성(시·군, 농촌공사)→기본계획수립(시·군, 시·도)→시행계획수립(시·군, 시·도)→사업시행(시·군)→준공(시·도)

○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 지원과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지원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빈집 철거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지역역량강화 : 컨설팅, 마케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까지는 신규 사업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연간 40개 권역)하여 176개 권역을 착수할 계획

○ 사업성과 평가후 '10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10~'13 기간중 80개/년, '14~'17 기간중 130개/년 수준 추진

○ 사업량을 확대하는 '10년부터 지자체에 업무 대폭 이양

- 농림부 : 예산확보, 모니터링, 성과평가, 제도개선
- 지자체 : 대상지역 선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6	899	4,731	-	-	1,183	-	6,813
'05	36	217	428	-	-	107	-	752
'06	20	183	434	-	-	109	-	726
'07	40	62	669	-	-	167	-	898
'08	40	69	1,280	-	-	320	-	1,669
'09	40	368	1,920	-	-	480	-	2,768

- 당초 '13년까지 1,000개 권역을 착수하고, '05~'09 기간중에는 276개 권역을 착수할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 주민참여형 상향식 종합개발사업이으로 현재로서는 연간 40개 권역이 적정 수준으로, 현재의 사업추진 속도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 중장기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확대 추진할 경우, 사업자체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어 1,000개 권역 착수목표를 '17년으로 4년 연장하고, '05~'09 기간중에는 176개 권역을 착수할 목표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조정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6	462	1,531	-	-	383	-	2,376
'05	36	217	428	-	-	107	-	752
'06	20	183	434	-	-	109	-	726
'07	40	62	669	-	-	167	-	898

※ 농촌주택정비 융자금은 '06이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7년까지 96개 권역('05 : 36, '06 : 20, '07 : 40)을 착수하여 목표를 100% 달성

  · 산출근거 : 96/1,000 × 100 = 9.6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마을종합 개발	사업착수율	(누계 착수권역수/ 1,000(목표권역수)) ×100	%	9.6	9.6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촌마을의 환경개선,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정주공간을 조성하려는 본 사업의 취지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지형, 영농권 등 생활권이 동일한 다수의 자연부락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묶어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과거 농촌개발방식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주민, 행정, 컨설팅기관이 합일체가 되어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추진 방식도 높게 평가됨

○ 지역자원에 기반한 다양한 소득원 사업을 전개하고,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높게 평가되는 바임

○ 그러나 농촌다움을 간직한 어메니티자원(지감자원)을 풍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지역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소득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려는 구체적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사업목표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하위 정책 목표, 세부추진계획, 절차적 합리성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형식적 절차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 의사결정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바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단계별 추진체계도 적절하며, 상향식 공모방식의 사업방식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중간점검 결과도 사업과정에 잘 환류되고 있음

○ 재원조달 및 배분, 홍보, 일정관리도 계획대로 잘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은 주민역량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본 사업과 농촌비즈니스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강화 모델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본 사업은 언론의 관심이 높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방문객 증가 등 도농교류의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는 상황임

○ 본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시범사업대상지 사업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대상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참여 전문가 등은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3. 개선방안 등

○ 면소재지활력사업은 사업성격 및 대상, 추진방식이 상이하므로 본 사업에서 별도 분리할 것을 적극 권고하는 바임

○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후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관련업무의 지방 대폭 위임 검토

○ 사업의 중장기 추진목표에 맞추어 연차별 계획을 집행하되 농촌지역의 특성과 상향식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및 재원배분에 있어 탄력성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 시도별 지역안배를 벗어난 완전한 공모방식 추진

○ 사업의 노하우 및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

○ 도시민의 유치 방안 적극 강구 요망

○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의 규모를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유도

3-2-1-2(계속)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낙후어촌의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년 ~ '13년

○ 총사업비 : 8,795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5,623억원)

○ 사업규모 : 232개 권역('07년까지 152권역 완료, 24개권역 계속)

[1단계('94~'07) : 160권역, 2단계('07~'13) : 72권역]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80%, 지방비15%, 자담5%

※ '03년 이전사업 국고보조 50%, 지방비 50%<자담포함>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권역)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70)		1,508			345	42	1,895
'05	1(17)		254			71	3	328
'06	17		309			73	4	386
'07	(24)		286			67	4	357
'08	8(12)		310			69	9	388
'09	11(17)		349			65	22	436

*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권역)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41)		849			211	11	1,071
'05	1(17)		254			71	3	328
'06	17		309			73	4	386
'07	(24)		286			67	4	357

*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연평균어가소득증가율

* '07사업계획 : 24개권역(계속사업 24개권역), 286억원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촌종합개발	연평균어가소득증가율	기준년도대비	%	3.3	5.7	173

* 균특지원 어촌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용역.(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1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초기단계에서는 생산기반시설이나 소득지원시설 사업도 지원이 되었으나 현재는 생산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음

○ 2007년까지는 35억원씩 균일하게 투자함에 따라 권역별 차등화가 발생하여 과잉투자 또는 예산이 모자라 예산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지역도 발생하기도 하였음

○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업을 동시에 집행하게 되므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투자되지만 성과도가 크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계획)

○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사업계획을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토록 추진체계를 개편 시행할 예정

○ 그러므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내지 협의시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자문 및 심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수립시 해당 사업 등이 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의 사업인 경우에는 차후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시 환경성 검토를 병행 실시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사업추진의 효율정(집행)

○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시 여건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신축성있게 조정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선정된 권역중 중심(거점)어촌계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기반시설,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역별 개발 잠재력에 따라 대(50억이하), 중(40억이하), 소(30억이하) 권역으로 분류, 개발규모에 맞춰 투자재원의 적정배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지금까지는 권역별로 중심어촌계없이 분산투자함으로서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음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예산이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이 되므로 어촌계원들의 어촌개발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의 소홀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횟집 등의 소득지원시설사업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촌계 자체에서 그 시설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장차 소득지원시설사업의 경우 운영관리권만 어촌계에 이관시키고 지상물에 대한 지상권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기존의 횟집등 소득지원시설사업의 경우 일방적으로 어촌계에서 판매, 매각처리한 시설의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시 당해 시설에 투자되었던 국비를 전액환수토록 하여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등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중복되어 집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역설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동해안의 경우 수심 때문에 선착장, 물양장 등의 생산기반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어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중심(거점)어촌계 중심으로 특화개발 추진하여 규모도 50억, 40억, 30억 등으로 세분화하여 차별화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기존의 생산기반 등의 Hardware위주의 시설사업에서 탈피하여 사업수를 줄이더라도 비즈니스 모델화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계획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단계에서 부터는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 협의시 철저한 심사 등의 검증작업이 요구됨

3-2-1-3(계속)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산림청 / 산촌소득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사전설계(1년) : 45백만원~72백만원(국고 100%)
- 마을조성(2년) : 10억~16억(국고 70%, 지방비 30%)

○ 시행주체 : 지자체(시장·군수)

○ 사업내용

- 원활한 마을경영 및 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주민의 역량 강화
- 생산소득기반 조성, 산촌체험시설 조성 등으로 주민소득 창출
- 생활기반 조성, 마을경관 개선 등으로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 사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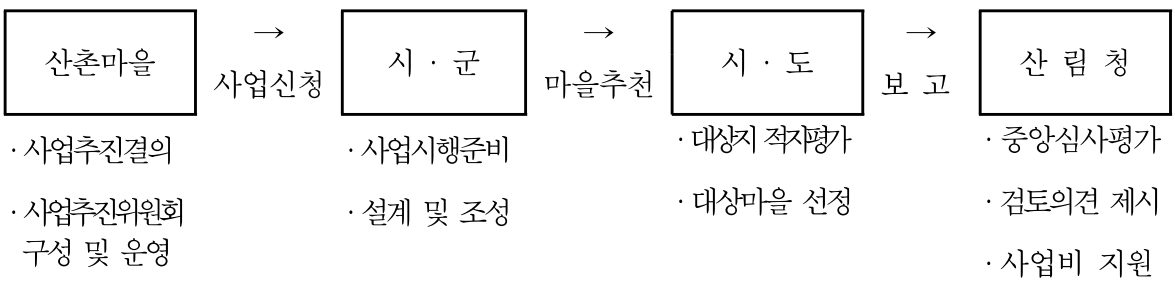

3. 연차별 추진계획

○ 산촌진흥기본계획('08~'17)에 따라 450개소 추가 신규조성

- ('07년) 153개소, 1,679억원 → ('17년) 603개소, 6,637억원

< 연도별 시행계획 >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		1,027			403		1,430
'05	45		145			58		203
'06	53		183			74		257
'07	66		211			83		294
'08	87		228			86		314
'09	99		260			102		36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4		539			215		754
'05	45		145			58		203
'06	53		183			74		257
'07	66		211			83		294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실적보고	개소	15	15	100
	수혜산촌주민의 만족도	현지설문조사	점	78	84.6	108.5

Ⅱ. 평가결과

1. 총 평

○ 국토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지역은 그 동안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동사업의 추진으로 산촌의 특성을 살린 유휴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바람직함.

○ 또한 산촌지역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으로 연결, 산림경영과 임업진흥을 위한 중심마을로 육성하여 산촌 주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국민에게는 휴양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간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함

○ 그러나 최근 정부정책이 하향식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임을 볼 때 관주도로 추진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하며, 행정기관 중심의 평가/환류체계로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미비함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산촌지역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으로 연결, 산림경영과 임업진흥을 위한 중심마을로 육성하여 산촌 주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국민에게는 휴양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간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함

○ 사업추진방식에서 지역별 특성, 산촌이라도 주변여건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내용이 필요하고 소수 관계자 중심의 계획수립이 아닌 다양한 전문가, 관계자 특히 해당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조성과 도농교류활성화, 마을리더 육성,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잘된 점은 예비선정제를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업추진방식에 적절성을 기하고 있는 점이나,

○ 미흡한 점으로는 산촌생태마을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농한기 예비활동마을 리더십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실시함으로써 담당자와 마을 주민의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 「산촌생태마을 사업매뉴얼(지자체 담당자용)」 발간으로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경험 부족 등 사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산촌마을 정주 인프라를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소득 기반 및 도농교류기반 조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를 실현함으로써 산촌지역 공동화 방지 및 도시민 유치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도로, 상하수도 등 산촌의 기초적인 생활여건이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제천, 진안, 화천 등 일부산촌지역에서는 관광사업, 산촌자원의 2차산업화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큼.

○ 「2007 재정사업 성과평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 만족수준을 의미하는 체감만족도의 보통 이상 비율은 95.2%이며,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항목별 평균 만족도는 84.6점으로 사업수혜자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제시된 목표치는 산촌마을 선정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만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추진과정에서부터 최종 사업완료단계까지의 전 과정 동안 주민과 이용자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등의 성과 지표가 부족하며, 개발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자칫 생태환경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보전해야할 산림자원을 위협하는 사업으로 인식될 수 도 있음.

○ 성과지표로 제시된 주민의 만족도를 제시하는 등 나름의 성과지표 개발 노력은 보이나, 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관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추진역량을 강화하여 상향식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성과지표 개발시 이와 같은 과정 등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구비되어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등

○ 낙후된 산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원 발굴, 생산기반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의 사업추진역량 제고 및 소프트웨어 사업분야 강화 등의 보완 필요

○ 사업추진방식을 주민들이 예비계획서작성 - 전문가 현장평가 - 사업선정 - 기본계획수립(전문가 자문 및 연구자 참여) - 사업확정(주민과 협의) - 실시계획 - 사업추진 - 단계별 평가(1, 2단계) -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평가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필요

○ 특히 상향식개발방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주체인 마을 주민의 사업추진역량 제고 및 소프트웨어 사업분야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바, 동기화과정, 지도자 과정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함.

3-2-2-1(계속)	소도읍육성사업

(행정자치부 / 지역발전정책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1조(예산에의 계상)

○ 사업목표 : 사람을 모으게 하는 유수지로서의 도심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읍지역 육성

-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
-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산어촌지역 거점지역으로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2. 사업내용

○ 개요

- 사업기간 : 2003 ~ 2012년(10년간)
- 총사업비 : 12조원 (국비 2조, 지방비 2조, 타부처 국비· 민자 등 8조)
- 대상지역 : 전국 194개 읍지역('01. 11. 9 지정·고시)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4	1	2	1	4	23	24	13	22	14	30	34	19	7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조건 : 정액지원(지방비부담 50%)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1개읍당 4년간 100억원 지원)

※ 1개읍에 4년간 균특 50억원(5억, 10억, 15억, 20억), 보통교부세 50억원 분할 지원

○ 추진절차 : 전국 194개 소도읍중 매년 상향식공모제로 선정 추진

사업계획수립 지침시달(행자부)➔사업계획 수립(시・군)➔1차심사후 추천(시・도)➔추천지역 심사・사업대상지 최종 확정(행자부 중앙 소도읍육성정책심의회)➔협약체결(행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추진(시・군)➔성과평가 실시➔feedback

3. 연차별 추진실적 - 72개읍 1조 5,127억원 투자

○ '03년도 : 14개소도읍, 962억원 투자

- 재원 : 증액교부금 150, 특별교부세 150, 지방비 453, 기타209

○ '04년도 : 36개 소도읍, 2,976억원 투자('03.14개+'04.22개)

- 재원 : 증액교부금 300, 특별교부세 300, 지방비 1,237, 기타1,139

○ '05년도 : 43개 소도읍, 3,245억원 투자('03.14개+'04.22개+'05.7개)

- 재원 : 균특회계 437, 보통교부세 437, 지방비 1,303, 기타1,068

○ '06년도 : 66개 소도읍, 4,012억원 투자('03.14개+'04.22개+'05.7개+'06.23개)

- 재원 : 균특회계 617, 보통교부세 617, 지방비 1,709, 기타1,069

○ '07년도 : 58개 소도읍, 3,932억원 투자('04.22개+'05.7개+'06.23개+'076.6개)

- 재원 : 균특회계 677, 보통교부세 907, 지방비 1,791, 기타 557

※ 기타 : 타부처 국비+민자 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97개소		3,465	4,035		8,611	2,694	18,805
'05	43		437	437		1,303	1,068	3,245
'06	66		617	617		1,709	1,069	4,012
'07	58		677	907		1,791	557	3,932
'08	56		464	804		1,268		2,536
'09	74		1,270	1,270		2,540		5,080

※ '07년까지는 확정된 계획, '08년 이후는 향후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31	1,961		4,803	2,694	11,189
'05	43		437	437		1,303	1,068	3,245
'06	66		617	617		1,709	1,069	4,012
'07	58		677	907		1,791	557	3,932

4. 성과목표 달성도

○ 지표정의

- 지방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목표대비 집행실적(개별사업별 공정률)

※ 58개 소도읍, 218개 사업

○ 사업현황/목표치 : 58개 소도읍, 3,932억원/공정률 90% 이상

○ 추진실적 분석

- 충북, 충남, 경남 등 3개시도 사업이 연초계획대비 100%완료되었으며, '08년 1월중에 다수 완료될 것으로 예상
- 목표 90%를 다소 상회하는 **90.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소도읍육성사업	단위사업 공정율	공정률 산정	%	90	90.5	100.5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소도읍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5년차를 마무리한 '07년도에는 총36개 사업이 완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발전효과를 거양하고 있음

○ 이중 지역에서 추천된 우수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당초계획대비 9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는 예산절감, 민관협력 등 다양한 미담사례와 특수시책이 발굴되고 있음

○ 특히, 수많은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수년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의 달성도 측면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 지역개발사업의 수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2. 분분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소도읍육성사업은 지역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계획을 공모하는 『상향식 공모제』방식을 채택하고,

○ 개발잠재력이 높은 거점 읍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중앙지원을 연계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육성협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수범사례로 인용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소도읍 육성사업은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까지 모든 시군에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는 것은 물론 소도읍 육성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재경부 특화발전특구 지정, 농림부의 산지유통시범사업, 건교부의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등 동일개발지역내 다수부처 유사사업과 연계추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뿐만아니라 중간점검 평가 및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높은 사업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만족도 조사를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 공동으로 실시하여 객관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 더욱이 4년간 추진된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을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소도읍육성정책심의회에 위탁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도시화 효과, 지역경제 발전효과, 지역발전효과 등을 거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성과목표 달성도에 있어서도 평가대상 총 58개 소도읍, 218개 사업에 대하여 공정률 90.5%를 보여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하고 있음

3. 개선방안 등

○ 소도읍육성사업의 경우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선정되어 각종 평가에서 매년 회자되고 있으나, 관련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즉, 2012년 계획기간까지 총 194개의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갖고 있으나, 그동안 신규지구 선정이 미흡('07까지 72개읍 선정)하여 지금까지 미선정된 122개 읍에서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의 조기 선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정부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중 계획의 적절성과 사업추진이 효율성, 사업성과의 달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이 계획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3-2-2-2(시범)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기능의 충족과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 도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색을 살린 발전 추구
  ·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 테마 발굴로 명소화 추진
- 면소재지 발전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 조기 구현
  · 타 부문에서 지원되는 관련 연관사업을 발굴하여 연계추진
- 지자체의 능동적 조정을 통해 분산 추진되는 각 부처 사업·시책을 종합적·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의 협력적 파트너쉽 중시
- 지역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공모를 통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확산할 수 있는 지역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2017

○ 총사업비 : 14,200억원(국고 11,400, 지방비 2,800)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200개 권역 우선 추진(투자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
- 권역당 3년간 70억원 범위내 지원(국고80%, 지방비20%)

○ 추진현황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4권역 수립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서작성→사업신청(시·군, 시·도)→타당성조사(농림부)→사업대상지 선정(농림부)→기본계획안 작성(시·군, 농촌공사)→기본계획수립(시·군, 시·도)→시행계획수립(시·군, 시·도)→사업시행(시·군)→ 준공(시·도)

○ 사업내용

- 생활편익, 문화·복지, 경관개선, 상권활성화 등 거점지역으로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지원
  - · 생활편익시설 : 가로정비, 공동주차시설, 승강장시설, 공공화장실정비 등
  - · 문화·복지시설 : 다목적 복지회관, 건강관리시설, 보육시설, 운동·휴양시설 등
  - · 경관개선시설 : 마을숲 및 녹지정비, 가로경관정비, 경관저해시설정비, 불량간판정비, 경관조형물 등
  - · 지역상권시설 : 재래시장정비, 특산품홍보, 지역축제활성화 등
  - · 기획운영S/W : 주민문화활동, 지역홍보, 시설물운영프로그램개발, 추진위원회 및 마을개발협의회 활성화지원 등
-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리모델링 등 주민편익증진에 역점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개발사업으로 '07~'17까지 200개소 착수 계획

- 우선 사업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07~'11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량을 확대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	8	156			27		191
'05								
'06								
'07	-(4)	4						4
'08	4(4)	4	12			3		19
'09	8		144			24		168

※ '07, '08년도 사업량은 누계치이며, ( )는 기본계획수립 권역수임

※ 동 투자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기 반영된 사항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4						4
'05								
'06								
'07	(4)	4						4

※ '07 사업량은 시범사업 대상권역의 기본계획수립 실적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7년도 추진목표는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및 '08년도 착수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으로서
- '07년도에 시범사업대상지 8개 권역을 선정하여 '08년도 착수권역 4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목표달성 하였음

* 시범사업대상지선정 : 여주군 당우, 강릉시 옥계, 괴산군 청천, 서천군 한산, 임실군 사선, 곡성군 옥과, 영천시 신녕, 하동군 진교권역 등 8개 권역

* '07기본계획수립 : 여주군 당우, 괴산군 청천, 곡성군 옥과, 하동군 진교 등 4개 권역

* '08기본계획수립 : 강릉시 옥계, 서천군 한산, 임실군 사선, 영천시 신녕 등 4개 권역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실적	권역	4	4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촌의 정주거점안 면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촌으로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표는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며,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그간 농촌개발사업이 인구수 줄어드는 자연부락단위에서 추진되어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확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본 사업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정주기능에 비해 농촌개발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면소재지를 새로운 사업단위로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협렵적 파트너쉽, 선택과 집중, 상향식 추진방식은 적절한 사업방식이라 판단됨

○ 그러나, 면소재지의 특성이 농촌이면서도 도시적 성격을 유지하는 도농복합지역임을 감안하여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농촌계획적 접근과 함께 도시계획적 노력이 요구되는 바임

○ 또한 공모에 의한 상향방식이 바람직하긴 하나 면소재지의 특성상 추진리더, 커뮤니티 등 추진동력이 불명확하여 완전 상향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점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상향-하향식을 병행하여 집중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바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1차 시범사업 기간이라 중장기계획은 뚜렷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해 및 연차별 계획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추진동기, 필요성, 계획비전, 계획의 구체성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현장의 계획 수립시 면소재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농복합적 계획작성 기법이 요구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상향식 사업추진체계, 추진방식이 적절하였으며,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음

○ 재원조달 및 배분, 일정관리, 홍보 등도 적절하였음

○ 그런데 물적 환경개선에 치중하여 5일장 등 경제권 중심지로서 경제사업 소재 및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활성화하는 소프트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인정되는 바이며 성과목표치 달성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업확대시에는 사업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과목표치에 반영해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등

○ 면소재지의 특성이 농촌이면서도 도시적 성격을 유지하는 도농복합지역임을 감안하여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농촌계획적 접근과 함께 도시계획적 노력이 요구되는 바임

○ 공모에 의한 상향방식이 바람직하긴 하나 면소재지의 특성상 추진리더, 커뮤니티 등 추진동력이 불명확하여 완전 상향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점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상향-하향식을 병행하여 집중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바임

○ 특히 향후 전국적 사업 확대 이후 현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에는 농촌공사 이외 다양한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되, 기존 농촌마을계획 경험보다는 도시계획 경험을 보유한 기관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

○ 그런데 물적 환경개선에 치중하여 5일장 등 경제권 중심지로서 경제사업 소재 및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활성화하는 소프트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임

○ 시범사업이란 점을 감안하여 사업초기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함

3-3-1-1(계속)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림부 / 정주지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농어촌정비법 제2조 7항 생활환경정비사업, 제31조 내지 제3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6년~2014년 (농특세 지원기한까지)

○ 사 업 비 : 9,524,869백만원

※ '06년까지 행자부가 추진해온「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07년부터 이관되어 「농어촌주택개량사업」(농림부), 「마을하수도정비사업」(환경부)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음(빈집정비는 시·군·구 추진)

○ 사업주체 : 시·군·구

○ 추진내용

-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촉진
- 지원조건

· 신·개축 : 동당 4,000만원 / 부분개량 : 동당 2,000만원

· 상환조건 : 5년 거치 15년 상환

· 이자 : 3.45%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
- 사업시행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금관리 및 대출 :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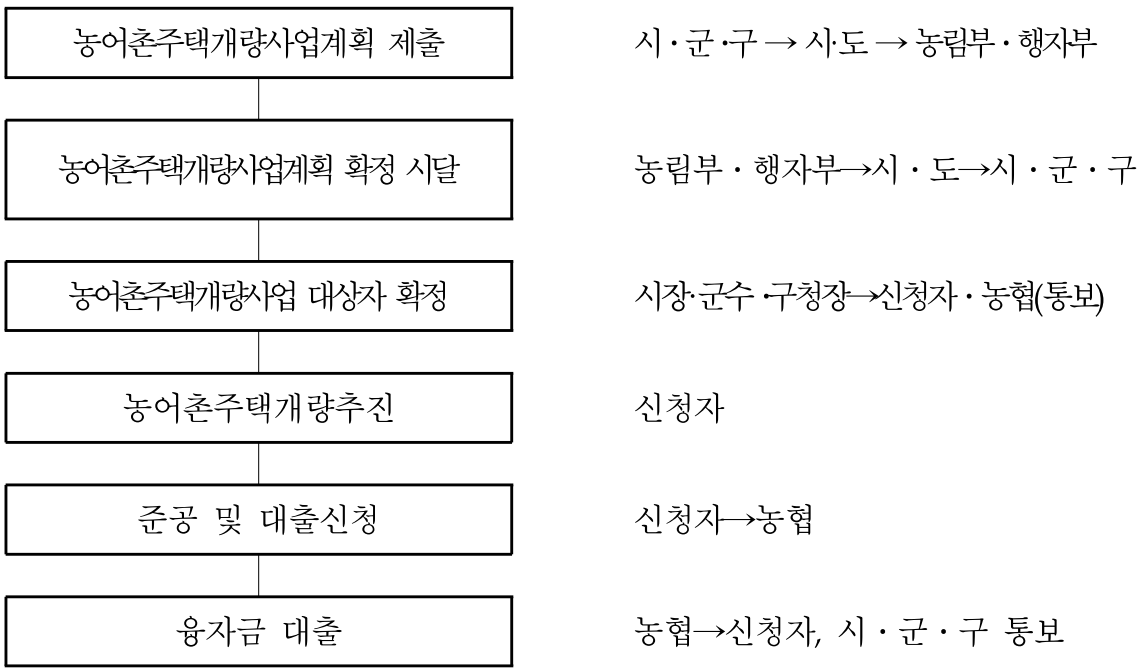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동)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재특	기금등			
합계	29,000	1,200		1,080	6,120	3,600		12,000
'05	6,000	180	-	360	720	540		1,800
'06	6,000	180	-	360	720	540		1,800
'07	4,500	180	-	360	720	540		1,800
'08	4,500	180	-	-	1,080	540		1,800
'09	8,000	480	-	-	2,880	1,440		4,8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600	540	-	1,080	2,160	1,620		2,240
'05	6,000	180	-	360	720	540		
'06	6,000	180	-	360	720	540		
'07	4,500	180	-	360	720	540		1,800
	1,100	440 (이차보전)	-	-	-	-		44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5년 단위의 중기계획 및 2014년까지 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 성과지표 : 총 주택개량수 등
- 성과목표치 100% 달성함(목표 4,500, 실적 4,5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낙후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농촌주민의 주거복지를 개선하려는 정책취지는 공감하는 바임

○ 과거 단순한 불량주택 개량 차원에서 벗어나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도농교류형 주택리모델링을 시도한 것은 좋은 정책사례라 하겠음

○ 농촌방문객에게 민박공간과 주생활 공간을 분리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한 점,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과 공간배치를 통해 농촌의 향토성을 살린 점 등은 잘된 점이 평가됨

○ 농촌주택 개량이 열악한 주택구조를 전면 혁신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 주택으로 전환하기에는 소요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점은 제약으로 지적됨

○ 아울러 부분적인 주택개량 및 신축으로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전면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거복지 차원을 뛰어넘어 주택환경을 혁신할 수 있는 사업방향이 요구되는 바임

2. 분분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목표, 계획의 구체성, 절차적 합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 중간평가, 재원조달 및 배분, 홍보, 일정관리 등은 본 사업이 '70년대 새마을운동의 대표사업이었고, 그 이후 계속 이어진 사업이란 점에 비추어보면 대체로 무난하게 잘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열악한 주택을 개량하는데만 머물고 있고, 농촌주택을 혁신할 수 있는 사업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현장 농촌주민의 사업물량 신청이 많아 성과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만 사업만족도는 64%로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만족도 제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신청되는 주택물량이 넘치는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주택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는 바임

3. 개선방안 등

○ 본 사업의 법적 근거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0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 농촌공사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촌주택설계모델을 현장 주택 신축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정부 예산을 통해 막대한 물량의 농촌주택을 개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방식, 재원조달, 추진체계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지역농협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을 참조하여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정책과 무관하게 막대하게 신축되는 농촌주택의 신축수요를 특정 추진체계를 통해 집중하여 민간주택회사로 하여금 주택건설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도 지역추진단위마다 대규모로 집중된 주택신축 물량을 통해 참여하는 민간회사(농협, 농촌공사 등 지역공공기관은 위탁중계업무 담당)가 양질의 고급주택을 값싸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대량 공급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3-3-1-2(계속)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자연친화적인 설계요소를 도입하여 농촌고유의 전통성과 주거공간의 합리성 및 쾌적성을 살린 농촌주택 리모델링 모델 보급

○ 농촌주민의 주생활수준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민박 이용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촌진흥법(제2조 2항, 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 30조),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농특위 대통령 보고자료. 2005. 12)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2020년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추진방향 및 기본지침 마련, 리모델링모델 개발(농촌진흥청) → 사업지역 선정 및 추진점검(도농업기술원) → 대상농가 선정(시군농업기술센터) → 신규지역 담당공무원 교육(농촌진흥청) → 주택진단 및 설계(농가, 건축관련 전문가,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기술 자문) → 사업추진(농가)

○ 추진내용

- 건축전문가에 의한 마을 및 농가환경 진단을 통한 리모델링 추진
  - · 환경친화적인 구성요소를 적용한 주거환경개선
  - · 부엌·방의 연결, 다용도 공간 설치 등 주택내부 리모델링
  - · 최적의 평면형태, 벽체, 단열, 채광, 통풍 방법 및 기술 적용
  - · 조류 및 곤충류를 유인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생울타리 담장, 정원, 화단 및 빗물활용 연못 등 생태적인 환경 조성 등
- 사업대상마을 현장교육 및 농가별 컨설팅 지원
- 사업(리모델링)결과 서류 및 현장심사
- 사업우수농가 시상('07. 12. 06, 농림부장관상 1점, 농촌진흥청장상 5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56	23				23		46
'05	5	1.75				1.75		3.5
'06	5	1.75				1.75		3.5
'07	10	3.5				3.5		7
'08	16	8				8		16
'09	16	8				8		16

- '08년 사업규모 증가('06년 삶의질향상 자체 점검·평가 보고서 기준)
  - · 사 업 량 : ('07) 10개소 → ('08) 16개소
  - · 사 업 비 : ('07) 3.5억원 → ('08) 8억원
  - · 사업단가 : ('07) 개소당 70백만원 → ('08) 개소당 100백만원

- 사업비 증액요인

  · 농산어촌체험마을 확대에 따른 농촌민박 수요량 반영

  · 시군 담당자 및 농촌주민의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 요구 반영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20	7				7		14
'05	5	1.75				1.75		3.5
'06	5	1.75				1.75		3.5
'07	10	3.5				3.5		7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시범	수혜자 만족도	사업농가 만족도조사	%	83.3	85.5	103
	소득증가율	사업 전 대비 마을당 민박소득증가율	%	300	304	101

○ 사업농가 만족도 : 85.5%

- 만족 이상이 85.5%로 전년도 83.3%에 비해 103% 증가

  · '06년도 : 매우 만족 20.8%, 만족 62.5%, 보통 16.7%

  · '07년도 : 매우 만족 34.5%, 만족 50.9%, 보통 5.5%

○ 사업 전 대비 마을당 민박소득 증가율 : 304%

- 소득증가율에 대한 성과목표치 300%를 충족시킴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최근 주 5일 근무제 영향에 의한 도시민의 농촌체류형 관광 및 농촌휴양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농산어촌체험마을 내 민박농가 조성 및 농가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농촌방문객에게 쾌적한 민박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농촌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농촌주택의 환경친화적인 리모델링 필요함.

○ 기존의 농촌주택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민들이 비전문적으로 계획·시공해 개보수 형태가 주택에 부합하지 않거나 조화롭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사업 전 농촌주택 개량은 도시의 경우처럼 획일화된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농가 자체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농촌마을 방문객 및 농촌주민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민박공간 조성 및 농촌고유의 전통성과 주생활의 합리성을 살린 농촌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본 사업은“전통적인 주거문화의 유지·보전과 현대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성 확보를 통한 농촌의 주거가치 향상 및 도농교류 촉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이 목표는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이라는 국정지표 및 농림부의 삶의 질 향상목표인“ 다원적 기능을 갖춘 자립형 정주공간 창출”과 부합함

○ 또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방안으로 적합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해당마을의 주민 여론을 파악하여 그 수요량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 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높이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관련 연구기관(농촌자원개발연구소)과는 사업계획 및 추진상의 주의사항과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함.

○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사업추진의 세부계획 수립, 사업추진 관리 · 감독, 대상농가 교육, 사업우수지역 견학 및 정보교환 등과 같은 실무를 사업대상자와 직접 교류하면서 현장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보고된 각각의 사업결과 및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건의사항은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추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반영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업인들 측면에서는 주택의 가치향상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의 소득을 얻었고, 도시민들 측면에서는 농촌다우면서도 편리한 공간에서 농촌 체험을 함

○ 민박농가를 이용한 도시민들이 다시 찾고자하는 의향을 가지게 됨으로서 도·농교류의 활성화가 촉진되고 농촌주민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함

○ 이러한 사업성과는 “다원적 기능을 갖춘 자립형 정주공간 창출”과 “주민소득증대로 안정적인 농산어촌 생활영위를 통한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라는 삶의 질 향상 사업목표와 잘 부합됨

○ 농가반응 조사결과

- 리모델링 만족도 : 매우 만족 34.5%, 만족 50.9%, 보통 5.5%
- 공간이용 편리성 : 매우 편리 56.4%, 편리 32.7%, 보통 3.6%

○ 사업 전 대비 마을당 민박소득 증가율 : 304%

- 사업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한 성과목표치 300%를 달성함

3. 개선방안 등

○ 친환경 소재는 일반 소재보다 단가가 높고, 농촌주택의 경우 노후화 된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커서 주택내부와 옥외공간 모두를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업비 증액이 요청됨

○ 또한 체류형 농촌관광객 증가에 따른 농촌주민의 사업신청도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의 사업량 및 사업비는 그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사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재원확보 대책이 요청됨

3-3-2-1(계속)	면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환경부 / 수도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수도법 제56조, "농어촌특별세사업 통합지침"

○ 사업목표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05년 37.2%에서 2014년 75.0%로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 ~ 2014

○ 사업비 : 25,834억원(국고 22,008억원)

○ 사업규모 : 면단위 농어촌지방상수도 553개소

○ 시행방법 : 국고 80% 지원

○ 추진내용 : 197개 시·군 면단위에 지방상수도 공급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신규 : 178개 지역 계속 : 417개 지역		7,847			1,962		9,809
'05	신규 30개 지역 계속 55개 지역	-	969	-	-	242	-	1,211
'06	신규 29개 지역 계속 84개 지역	-	1,335	-	-	335	-	1,670
'07	신규 22개 지역 계속 89개 지역	-	1,380	-	-	345	-	1,725
'08	신규 50개 지역 계속 94개 지역	-	2,038	-	-	509	-	2,547
'09	신규 47개 지역 계속 95개 지역	-	2,125	-	-	531	-	2,65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신규 81개 지역 계속 228개 지역		3,684			922		4,606
'05	신규 30개 지역 계속 55개 지역	-	969	-	-	242	-	1,211
'06	신규 29개 지역 계속 84개 지역	-	1,335	-	-	335	-	1,670
'07	신규 22개 지역 계속 89개 지역	-	1,380	-	-	345	-	1,725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사업	면단위 급수보급률(%)	면단위 총인구/급수인구	%	48	48.1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농어업인의 생활여건 개선 및 복리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9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으로 농어촌 면단위 상수도보급율을 '94년 16.1% 대비 2007년 48.1%로 제고하였으며, 2014년까지 목표 보급률을 75%로 제고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삶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07.10-'08.4)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주민만족도 조사를 도모코자 하고 있음

○ 시행중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기능 부여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시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사업목표는 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보급율을 '97년 20.8%에서 2014년 75%로 제고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년차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적절함

○ 개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인 수도사업자가 주민여론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지역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절차의 합리성이 있음

○ 시행중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시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균특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중앙관서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전국을 통괄하는 사업계획의 적정한 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 매월주기로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분석, 파악하고, 반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07년도 총 사업비 172,548백만원(국고지원액 138,038백만원) 중 139,418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80.8%로 전년(67%) 대비 많이 개선되었으나, 집행율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상수도보급으로 인해 위생적 생활환경과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음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은 2006년 시행계획에도 제시된 바 있으나,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사업추진상의 개선점 도출과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성과지표는 거주인구 대비 상수도급수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상수도보급율을 지표로 선정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적절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는 '07년 면단위 계획보급율 목표치 48%를 달성하였음

3. 개선방안 등

○ 사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관련 연구의 수행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총괄 조정기능 부여방안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시행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08년 사업비가 증액에 따라 사업 집행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3-3-2-2(계속)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수원공(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물탱크, 송·배수관로 등)을 설치하여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

→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호 라목 및 아목에 근거하여 '94부터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12(19년간)

○ 사 업 비 : 총 12,951억원(국고 8,230, 지방비 4,721)

○ 사업규모 : 전국 7,751개소('07까지 5,616개소 추진)

○ 시행방법

- 지원대상 : 면지역 자연마을중 자연수에 식수를 의존하거나, 간이(마을)상수도 시설지역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원으로 부적정하거나 식수가 부족한 마을
- 지원조건 : 1개소당 170백만원(균특,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확정)
- 주요사업내용 : 수원공(암반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정수시설, 물탱크, 송·배수관로, 계량기, 소화전 등)설치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

- 제1차('93~'04) : 수혜가구 50호 이상의 자연마을 4,751개소 완료
- 제2차('05~'12) : 수혜가구 20~49호의 자연마을 3,000개소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15		1,917			524		2,441
'05	346		471			118		589
'06	267		353			88		441
'07	252		342			86		428
'08	225		309			79		388
'09	325		442			153		595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65		1,166			292		1,458
'05	346		471			118		589
'06	267		353			88		441
'07	252		342			86		428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용수공급율 72.5%('07목표 : 252개소)
- 실적 : 용수공급율 72.5%('07실적 : 252개소, 100% 달성)

* 사업추진 마을수 : 5,616개소

* 사업대상 마을수 : 7,751개소

* 용수공급율 = 사업추진 마을수/사업대상 마을수

= 5,616(개소)/7,751(개소)×100(%) = 72.5%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용수공급율	사업추진 마을수/사업대상마을수	%	72.5	72.5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수도공급이 어려운 면지역 농촌마을에 수원공(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물탱크, 송배수관로 등)을 설치하여 생활,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임

○ 시설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와 합동으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책을 마련(3.28)하고, '08년부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은 잘한 점임

○ 지자체의 우수사례, 애로사항, 문제점, 운영관리방안, 기술개선 사항 등 제반분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점도 잘한 점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본 사업은 면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과 사업이 중복되기 쉬운 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수립과 추진상에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함. '94년부터 1,2차에 걸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선정시 광역·지방상수도와의 중복지역을 제외하고 있고, 관련부처와 연계 및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한 점임

○ 사업목표를 전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용수공급대책이 필요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목표와 연차별 추진계획이 명확함

○ 사업추진은 제2차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선정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와 중복지역을 사전에 제외하는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관계기관의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용수공급계획이 중복되는 지역은 제외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있음

○ 사업추진중 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점검과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완료시 준공검사와 정기적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함

○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와 시설개발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07년도 총 사업비 42,689백만원(국고 34,151백만원) 예산으로 25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액 집행 및 사업완료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농촌지역 마을에 청정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축산, 농업, 농산물가공용수 등을 추가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252개 마을(7,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 69%, 보통 24%로 대부분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지속 시행하여 사업성과관리에 노력하고 있음

3. 개선방안 등

○ 청정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굴을 통해 농업용수개발 등으로 지하수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 지하수 굴착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생활용수 공급시 농어촌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려와 청정수자원관리계획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3-3-2-3(계속)	면단위 하수도사업

(환경부 / 생활하수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면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하수도법」 제63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 업 비 : ´06년까지 3,722억원(국고기준)

○ 사업규모 : ´06년까지 102개 처리장 건설지원

○ 시행방법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국고 70%, 지방비 30%)

- ’95년부터 농특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전입시켜 사업 추진

-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05년부터 농특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 추진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설치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99				1,757		5,856
'05	신규4, 계속43	645				276		921
'06	신규11, 계속41	667				286		953
'07	신규14, 계속40	795				341		1,136
'08	신규16, 계속49	897				384		1,281
'09	신규10, 계속52	1,095				469		1,564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07				903		3,010
'05	신규4, 계속43	645				276		921
'06	신규11, 계속41	667				286		953
'07	신규14, 계속40	795				341		1,136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 목표 44.0%, 달성 45.5%

- 농어촌지역 오염물질삭감량(BOD, 톤/일) : 목표 70.0, 달성 74.5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지역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구역내 인구/전체인구) × 100	%	44.0	45.5	103.4
	농어촌지역 오염 물질삭감량	1일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량 × 유입하수의 수질(BOD농도) - 1일 하수처리장 배출수량 × 배출수질(BOD농도)	톤/일	70.0	74.5	106.4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보급('06년말 40.3%)은 전국평균(85.5%)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으로 생활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도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2007년도의 경우 예산 795억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여 사업추진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농어촌지역 2007년기준 하수도보급률 목표치 44%를 초과한 45.5%를 달성함

○ 본 사업추진에 따른 시군 관계자와 대상주민들에 대한 사전의견수렴, 삶의 질 만족도 조사 등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및 추진상의 개선점 도출과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표가 적합함

○ 성과지표를 종전까지 사용하던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보급율과 함께 농어촌지역 오염물질 삭감량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정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적용코자 노력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하수도법 추진절차에 따라 계획단계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과정에서는 설계자문 및 설치 인가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환경청에서 매월/분기별 예산집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의 예산을 감액하고 집행이 원활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액하는 등 사업집행을 독려

○ '07년도 국고 79,518백만원 예산으로 54개소(신규14, 계속40)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하수도보급으로 인해 생활환경개선과 쾌적한 정주기반조성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9개 하수처리장 신설지역 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기하였으며, 수질개선과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개선방안 등

○ 효율적인 하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율 등 달성가능한 지표설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대한 로드맵 설정에 의해 추진되어야할 것임

3-3-2-4(계속)	소하천정비사업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표

- 수해위험 소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로 친수 환경조성

○ 사업추진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음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5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사업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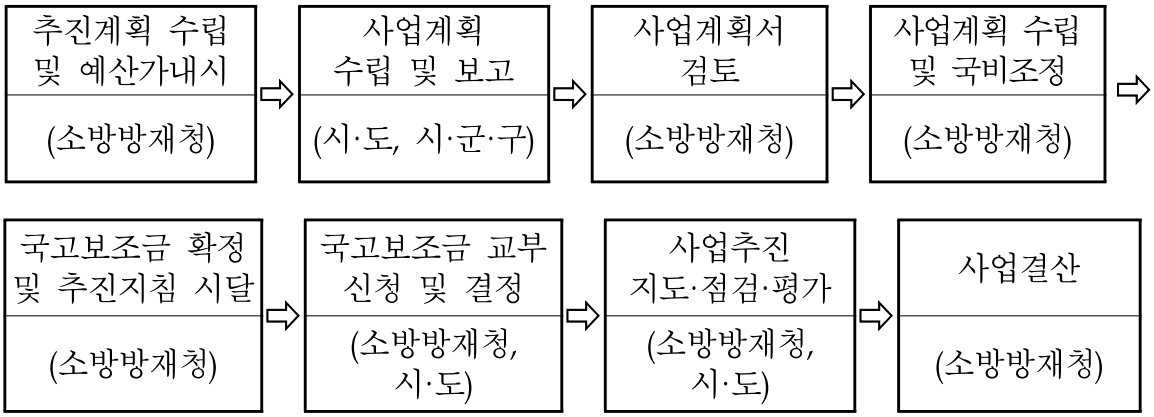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2016년

○ 총 사업비 : 11조 7,001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17,837억원)

○ 사업규모 : 25,528km('07년까지 정비연장 : 3,361km)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Matching Fund)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소하천 대상
- 소하천의 미정비 연장 비율에 따라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주요 추진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제성(B/C) 및 재해위험도 분석 등에 의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

- 호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낮은 산과 접한 구간은 호안 미시공
- 소하천정비 구간내 수해원인이 되는 교량, 암거 등 시설물 정비
- 국가 정책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조치 등의 인센티브제도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하천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사업비 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86	2,962	7	0	0	2,969	0	5,931
'05	192	481				481		962
'06	198	497				497		994
'07	237	593				593		1,186
'08	269	669	3			672		1,341
'09	290	722	4			726		1,448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03	1,568	3	0	0	5,137	0	6,708
'05	310	481				1,599		2,080
'06	311	497				1,580		2,077
'07	382	590	3			1,958		2,551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소하천정비사업	하천정비율	2007	km	237	382	161

- 지방비를 많이 투자하는 지자체는 국비를 증액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방비 확대 투자를 유도하여, 총 2,551억원(국비 593, 지방비1,958)을 투자, 당초 계획 총 1,186억원(국비593, 지방비 593) 대비 230% 증가한 1,365억원을 증액 투자하였음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자연 친화적 호안공법 추진 지침과 같이 사업 계획이 구체적인 점과 지자체간의 경쟁을 통하여 인센티브제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점, 실시단계부터 전문가 참여로 현지 실정을 반영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계획이 적절함.

- 사업 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체계를 유지한 점과 중간점검 평가로 부진 사업 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점검평가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로 목표대비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재해 취약요소 발굴 및 예방사업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룬 점이 우수함.

○ 따라서 평가보고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적극 검토 요망

- 큰 손실 방지와 재해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의 재정과 무관하게 중앙정부 주도 사업을 찾아 시행할 필요성 검토
- 보조금 이월시 조치사항으로 합리적인 예외 규정 검토
- 지자체의 적극투자시 국고보조금 증액의 혼적이 없으므로 인센티브 제도의 실질 반영 검토 요망
- 사업추진 체계상 지자체 접경지 또는 주체간의 접경지의 책임 전가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 방지책 검토 요망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하천 피해중 소하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소하천 정비율이 낮은 소하천에서 수해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2차 피해 유발을 지적한 점과 투자확대의 필요성 강조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 자연 친화적 호안공법 추진 지침 시달과 같이 사업 계획이 구체적인 점
- 지자체간의 경쟁력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점
- 실시단계부터 전문가 참여로 현지 실정을 반영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한 점

○ 평가보고서 반영 계획이 기술되어 있으나 사안별 반영비율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

- 재정 열악 지자체에 있는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필요사업 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체계를 유지한 점

- 중간점검 평가로 부진 사업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게 한 점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점검평가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한 점

-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로 목표대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점
-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재해 취약요소 발굴 및 예방사업을 확대한 점

○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의 경우 재해 예방차원에서 재난관리 평가 반영과 포상외에 국고보조금과 실질적인 증액의 연계가 없는 점

3. 개선방안 등

○ 큰 손실 방지와 재해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의 재정과 무관하게 중장정부 주도 사업을 찾아 시행할 필요성 검토

○ 국고보조금 이월시 감액조치 예외 규정 검토

3-3-2-5(계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의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

○ 지원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제3조) 및 폐기물관리법(제56조)

※ '94. 2 농림부 '농업정책심의회 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과위'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구 등으로 '95년부터 사업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2014년(20년)

○ 총투자액 및 사업규모 : '07년까지 1,959억원(139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郡)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군)

○ 지원조건 : 15억원 정액보조

- 시설부지가 확보되고 기본설계 등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에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매립여유 용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지역을 선정·결정하고 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 매년 109억원씩 15개소에 지원(신규사업8, 계속사업7개소)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9	534	22					556
'05	11	105						105
'06	14	109						109
'07	14	102	7					109
'08	15	109	15					124
'09	15	109						10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9	316	7					323
'05	11	105						105
'06	14	109						109
'07	14	102	7					109

- '07년부터 제주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750백만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제주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설설치수	설치개소	개소	116	121	104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으로 쾌적하고 위생적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임

○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입지선정, 토지매입 등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95년 사업시작 후 지원액(1개소당 15억 정액보조)이 인상되지 않아 국고지원규모가 미흡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은 적절하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사업추진상의 애로점이 있음

○ 매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추진지역을 선정·결정하고 2년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사업추진계획이 미흡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생활폐기물의 처리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이 지자체 의지에 의존하고 있음

○ 주민협의,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주민반대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상·하반기에 지자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음. 시설부지 선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농어촌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생활환경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만족도 조사 실적은 없음

3. 개선방안 등

○ '95년 사업시작 이후 국고지원액(15억 정액보조)이 인상되지 않아 총사업비의 20%내외 수준으로, 지원액이 적어 지자체에서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경향이 있음. 사업집행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액을 상향하거나 정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의 시행을 제안함.

3-3-2-6(계속)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농림부 / 친환경농업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표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

- 폐비닐 발생량을 줄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폐비닐수거비 지원

○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및 제39조

- 제8조 : 국가 및 지자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39조 :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 주요내용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수거비 지원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및 책임 강화 유도하기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폐비닐 수거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1년 단위사업)

○ 총사업비 : '07년까지 기투자액 111억원(370천톤)

- '07 사업규모 : 100천톤, 3,000백만원(30원/kg 정액지원, 국고 100%)

○ 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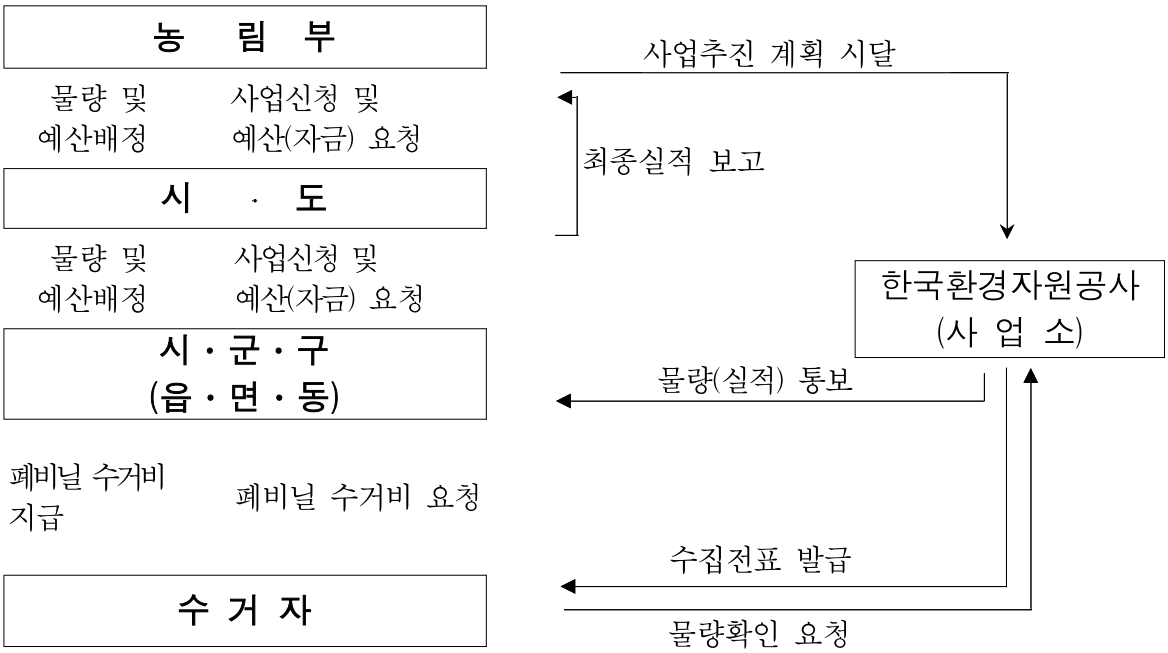

3. 연차별 추진계획

○ 폐비닐수거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수거유도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효과 제고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톤)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91	147	12					159
'05	85	26	-	-				26
'06	100	30						30
'07	100	30						30
'08	102	30	6					36
'09	104	31	6					37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톤)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5	86						86
'05	85	26						26
'06	100	30						30
'07	100	30						3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7년도 폐비닐수거율 목표 66.6%대비 100.9%인 67.2% 달성
- 폐비닐 발생량 357천톤 중 240천톤 수거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폐비닐수거비지원	폐비닐수거율	폐비닐발생량 대비 수거율	%	66.6	67.2	100.9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농촌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임

○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으로 수거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지원단가가 낮아 지원효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거단가 인상과 사업물량 확대가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수거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서 수거물량 확인을 요청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수거물량을 확인후 수집전표를 발급, 지자체에서 수거비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실적확인 및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취합하고 현지의견수렴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원단가(30원/kg)가 낮아 지원효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으로 수거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삶의질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수거단가와 사업물량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지표는 폐비닐 수거율을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적절함

3. 개선방안 등

○ 폐비닐 수거단가 인상이 필요하며,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비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도우미제도 등의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참여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환경마일리지를 부여)

3-3-2-7(계속)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해양수산부 / 항행안전정보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태풍, 해일 등 재해발생시 소형어선의 신속한 육지인양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미역 등 수산물 인양으로 부족한 어촌 노동력 해소

○ 낙후된 어촌에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를 통해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 및 수산업법 제84조 시행령 제67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주체 : 시·도지사(국고 50%, 지방비 50%)

○ 추진내용 : 전라남도 등 지자체 다목적인양기 29대 설치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대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1		53.1			53.1		106.2
'05								
'06	14대		3.5			3.5		7.0
'07	29대		7.43			7.43		14.86
'08	88대		22.17			22.17		44.34
'09	80대		20.00			20.00		40.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대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3대		10.93			10.93		21.86
'05								
'06	14대		3.5			3.5		7.0
'07	29대		7.43			7.43		14.86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설치 대수	정량	대수	29	29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2006년부터 고령화, 노령화된 어촌에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태풍 등 기상 이변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을 추진함

○ 2007년에는 충남, 전남, 울산, 강원 등 4개시도에 29대를 설치하고 있는 바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점차 확대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계획)

○ 기상이변시 소형어선의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미역등 수산물 인양으로 부족한 어촌 노동력해소에 기여함

○ 재산피해방지와 노동력 해결은 어촌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시키고 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의 가능성 제고

□ 사업추진의 효율정(집행)

○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300% 이상 예산을 증액추진하고 있으며 인양기 설치 사업 후보지역도 확대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는 바(88대, 7개 시군) 장차 일정기간동안 매년 계속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인양기 설치 대수를 살펴보면 2006년 14대, 2007년 29대를 지원하였고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도를 사업집행주체로 하여 현지실정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수요증대로 인하여 적지조사 및 적지선정을 위해서 지자체, 어촌계, 수협,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현장조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낙후된 어촌에 인양기를 설치함으로써 어촌의 삶의 질 향상

○ 지자체의 설치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바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개선방안 등

○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본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전국적으로 어선감척사업등으로 수요가 일정기간은 증가하겠으나 장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어촌종합개발계획시 소형어선 인양기설치를 위한 사업부지조성계획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적지선정을 하여 지속적으로 낙후된 어촌지역에 설치를 하여야 할 것임

3-3-2-8(계속)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연근해 주요해역·항만 및 어항 등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로 해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

○ 사업추진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 ~ 계속

○ 총사업비 : - 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888억원)

○ 사업규모

- 단계별 해양쓰레기 수거【국가어항 및 항만('99~'03), 연근해 주요어장(41개 해역, '04~'09), 지방어항 및 2차 연근해 주요어장('10~'15)】
-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 용역 및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운영 지원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전국 10여개 지자체)

○ 지원형태 : 민간·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단, 수매사업은 국고 60%, 지방비 4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시·도지사(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201	395	74	-	670
'05	30개 시·군·구	-	-	110	-	10	-	120
'06	30개 시·군·구	-	-	91	25	16	-	132
'07	35개 시·군·구	-	-	-	122	16	-	138
'08	35개 시·군·구	-	-	-	122	16	-	138
'09	35개 시·군·구	-	-	-	126	16	-	14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201	147	36	-	384
'05	30개 시·군·구	-	-	110	-	8	-	118
'06	30개 시·군·구	-	-	91	25	12	-	128
'07	35개 시·군·구	-	-	-	122	16		138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물량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물량	설계량 대비 실제 수거물량 비교	%	100	101	-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999년부터 어족자원을 회복하고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연근해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도서 쓰레기 수거, 습지보호구역 수거처리 등 어민의 생활터전을 친환경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D/B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해양쓰레기관리정책 수립

○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88억원이 기투자되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계획)

○ 1999년부터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1999~2003년까지 전국 116개 항만·어항에 375억원을 투입하여 46천톤의 수중침적폐기물 수거

○ 사업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사전에 D/B를 통해 침적 쓰레기량이 많고 인근 어장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지역 위주로 사업지역 선정 지원

□ 사업추진의 효율정(집행)

○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은 2001년부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위탁하여 시행(국비 100%)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사전의 철저한 입지선정을 하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각 지역마다 성과도가 차이가 나는 바 적게는 1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증대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어업인들은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의 사업호감도보다는 사업기여도, 사업유지 필요성, 향후 이용의향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업인의 생활수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개선방안 등

○ 해양폐기물 및 쓰레기는 대부분 육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육상기인 해양유입쓰레기의 사전차단을 위한 유역관리책임제도를 전국 4대강으로 확대·강화하여 해양오염원의 근원적 해결 필요

○ 해양폐기물수거는 해양오염방제조합, 어촌어항협회 뿐만아니라 기타 해양수산관련 유관기관에서도 수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 동 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등으로 인하여 예산배분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바 예산의 증대가 필요함

3-3-2-9(신규)	양식어장 정화 사업

(해양수산부 / 양식개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양식어장 환경을 개선하여 연안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함

※ 사업추진 근거 : 어장관리법 제1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6년~계속

○ 총사업비 : - ('07년까지 기 투자액 2,395억원)

○ 사업규모 : 면허어장 및 인근 수면 700천ha('07년까지 480천ha 완료)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80, 지방비 10, 자담 1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9,377		382			60	32	474
'05	11,766		76			10	9	95
'06	14,080		59			7	7	73
'07	11,531		76			10	10	96
'08	6,000		52			6	6	64
'09	6,000		119			27		14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377		211			27	26	264
'05	11,766		76			10	9	95
'06	14,080		59			7	7	73
'07	11,531		76			10	10	96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어장정화사업 추진 진척도

※ '07사업계획 : 11,531ha, 76억원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양식어장정화 사업	어장정화사업 추진 진척도	대상면적 계획대비 실적	ha	11,531	11,531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1986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24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으며 사업규모는 면허어장과 인근수면 700천ha로서 2007년까지 전체의 69%인 480천ha 규모의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였음

○ 양식어장사업의 지원은 국비가 80% 지원되므로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육지개발에 따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이 됨

○ 그러므로 현재 국가에서 사업비의 80% 지원하는 현 제도를 지양하고 지자체에서 기존의 10%를 50%이상 예산지원을 하여야 하는 것이 책임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계획)

○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해양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어촌계, 수협,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하여 여건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업임

○ 육상오염물질의 유입, 유해성 적조, 수산물 생산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해양오염으로 부터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기여

□ 사업추진의 효율정(집행)

○ 굴패각처리시 생산자와 굴 수협, 지자체,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어장정화사업보다는 지역개발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지방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어장관리법 시행에 따른 당해 초기년도 사업실시후 주요 품종별 생산량이 관련연구기관 연구결과에 의하면 7~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어민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72%가 만족, 28%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어 본 사업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불만스러운 이유 등을 심층 분석하여 차기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등

○ 양식어장 등의 오폐물 쓰레기 등의 오염원이 주로 육지기인형 오염원이기 때문에 육지의 정화시설사업이 선결되도록 지자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3-2-10(신규)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해양수산부 / 연안계획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해수욕장을 쾌적한 4계절 휴양지로 조성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이용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근거 :「연안관리법」 제20조 및 「해·강안 군경계철책 개선지침」('07.6)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기간

-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변환경 정화('05년부터 계속)
- 동해안 해수욕장주변 군경계 철조망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06~'09)

○ 지원대상 : 해수욕장 소재 시·도(11개)

○ 지원형태 : 지자체 정책보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해수욕장 주변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6억원의 예산 편성

○ 동해안 철책제거 및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매년 20억원씩 4년간 총 80억원을 투입할 예정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				110
'05	해수욕장지원			6				6
'06	〃			26				26
'07	〃			26				26
'08	〃			26				26
'09	〃			26				2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8				58
'05	해수욕장지원			6				6
'06	〃			26				26
'07	〃			26				26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6년 대비 전체 해수욕장의 총 이용객 증가율(108%)
- 강원도 철책제거 길이의 계획량 대비 실적량(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시설 및 환경 개선	해수욕장 이용객	전년대비 증가율	%	105백만	114백만	108
철조망 제거	철조망 길이	목표대비 제거율	%	21.1㎞	21.1㎞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전국 330여개의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와 해수욕장에 대한 쾌적한 4계절 휴양지로 조성하여 연안관리차원에서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이용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동해의 연안지역의 철책선 철거로 인하여 어업인과 관광객들의 해수욕장 및 백사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관광객의 해양경관권 확보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계획)

○ 지구온난화, 인공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해수욕장 침식이 해마다 발생하여 모래유실이 심각한 상황임

○ 해수욕장에 일시 가건물설치후 철거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므로 해수욕장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부족한 시설물은 신설하는 등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정화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

○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 철조망을 철거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조망권과 접근권 및 해안경관을 제공하고 그 파생수요로 관광수입증대

□ 사업추진의 효율정(집행)

○ 해수욕장 시설 정비사업의 핵심은 예산의 규모이나 정부 재정의 한계로 예산증액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에 애로

○ 동해안 철책제거사업은 2007년 부분적으로 철거되어서 미관상 다른 대체시설인 경관휀스로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임

○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위생·환경관리를 위해 해수욕장관리법을 조기에 제정할 것을 요구(지자체 등)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으로 2006년의 해수욕객 105,508천명에서 2007년의 114,438천명으로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강원도 해수욕장 주변 해안선 철책선을 총 61.7km중 21.1km를 철거하여서 총 철책선의 34%를 제거하였으며 2008년에는 4km가 추가로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협의가 되어 앞으로 2-3년이내 동해안 철책선도 국방부와 강원도와의 협의로 완전철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등

○ 해수욕장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해수욕장 주변 구조물의 높이, 색깔, 모양, 규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해수욕장 정비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침식방재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임

○ 해안경관형성계획, 해수욕장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여 동해안 철책을 대체할수 있는 경관휀스 등의 경관구조물의 설치가 바람직함

○ 해수욕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칭) 해수욕장 관리법 제정이 시급함

○ 해안경관계획, 해수욕장경관계획,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구조물설치 등 연안친수공간조성을 위한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관광부업시설로서 해변친수공원시설, 기타 관광시설로 인정되는 시설이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관광부업시설을 해수욕장주변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3-3-2-11(신규)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사업

(해양수산부 / 양식개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양식장에서 폐사된 어류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로 불법유통을 방지하여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양식장 폐사어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화 등 부산물 처리의 친환경적 인프라를 구축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05년부터음식물 찌꺼기 등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한 육상 양식장 폐사어 처리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도

○ 사업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 추진체계 : 지자체 보조사업(자치단체 자본이전)

시·도(시·군)	⇒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
○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 요구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배정 승인		○ 사업자선정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추진내용 :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기반시설, 장비 등) 1개소 설치

3. 연차별 추진계획

○ 제주('05~'06), 전남('07~'08) 폐사어 처리시설 1개소 시설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폐사어처리 공장지원	8	-	-	-	8	4	20
'05	1개소(제주)	2	-	-	-	2	1	5
'06	제주 확대시설	2	-	-	-	2	1	5
'07	1개소(전남)	4	-	-	-	4	2	10
'08	-	-	-	-	-	-	-	-
'09	-	-	-	-	-	-	-	-

- 예산에 적합한 소규모 적정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공장부지 확보 등 사업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계획보다 사업추진 지연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전남(대규모 양식시설지역) 폐사어 처리시설 신축 1식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폐사어처리 공장 지원	시설지원 1개소	사업비 지원	개소	100	100	

※ 부지확보 2,650㎡, 건축물 1,000㎡(별도 창고시설 170㎡)
※ 폐사어 처리시설규모 : 양식어류 폐기물 처리 10톤/일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양식어장 폐사어의 처리시설사업은 양식장 폐사어의 안정적 수거 및 처리를 통한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친환경적인 폐사어의 재활

용으로 연안어장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된 사업임

○ 양식장 폐사어의 처리시설사업은 양식 폐사어류를 시중에 유통방지 및 농가에게 저가의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하여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고 어장환경의 오염을 방지하는 지자체 보조 사업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계획)

○ 폐사어의 유기질비료의 규격화 및 유기질 비료의 소포장 시설로 생산 판매하여 어촌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함

○ 양식장 폐사어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 개선을 꾀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의 효율정(집행)

○ 현재 제주, 전남지역에 각 1개소 시설이 지원이 되고 있는 정도임

○ 폐사어 처리시설은 혐오 내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공장부지 선정에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2009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불투명한 실정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현재 제주 1개소에 사업비가 지원 완료에 따라 사업의 성과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임

○ 폐사어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하여 친환경적인 재활용으로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3. 개선방안 등

○ 사업의 성과도가 불투명하며 또한 내년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자체의 연속성이 의심됨

○ 도서, 오지 등 벽지지역의 폐사어 수거를 위한 운반선, 차량 등의 교통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고 할 경우 유기질 비료제품의 품질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할 것임

3-3-3-1(계속)	농어촌도로 정비

(행정자치부 / 지역발전정책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제8조
- 지방교부세법 (부칙 제7126호)

○ 목표

-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1 ~ 계속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

○ 추진체계 : 도로기본계획(변경)의 수립(시·군)→도로정비계획(변경)의 수립(시·군)→연도별 도로사업계획 지침시달→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수립(시·군)→도로의 노선지정(시·군)→검토·취합·보고(시·도) → 사업계획확정(행자부) → 예산지원(행자부 → 시·군) → 시행(시·군) → 결산(지자체)

○ 추진내용 : 농어촌도로정비 24,794km ('06.12.31기준)

○ 사업체계 및 내용

<추진경위>

- '90년까지 : 농어촌 소득원 도로사업으로 농림부 추진

- '91년부터 :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전환, 행자부에서 추진
- '91.12.14 : 농어촌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정
- '94. 6월 : 농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특별세 추가지원
- '04.1.29 :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05~'08까지 보통교부세 3조4천억원(매년 8,500억원)지원

- 농어촌도로는 '05~'08까지 462km, 2,047억원 지원계획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5년~2008년(4년간)

○ 사업규모 : 462km, 5,227억원(교부세 2,047, 지방비 3,180)

※ '05~'06 추진실적 : 1,063.5km, 6,223억원(교부세 1,197, 지방비 5,026)

○ '07 사업계획 : 450.9km, 3,262억원(교부세 658, 지방비 2,604)

<'07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km)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교부세)	기금등			
합계	450.9			658		2,604		3,262
부산	1.0			-		9		9
대구	3.0			11		4		15
인천	2.9			31		52		83
울산	8.5			5		47		52
경기	33.4			71		386		457
강원	36.5			87		273		360
충북	40.6			19		259		278
충남	84.6			55		357		412
전북	24.2			89		95		184
전남	138.9			104		514		618
경북	36.0			48		274		322
경남	35.9			98		283		381
제주	5.4			40		51		91

4. 추진실적

<'07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km)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교부세)	기금등			
합계	392.0			570		2,270		2,840
부산	1.0			-		9		9
대구	1.2			5		1		6
인천	2.4			31		52		83
울산	7.7			5		39		44
경기	35.4			69		415		484
강원	33.5			69		170		239
충북	38.1			13		287		300
충남	71.1			35		283		318
전북	24.2			89		93		182
전남	111.7			94		405		499
경북	31.6			43		241		284
경남	28.7			78		227		305
제주	4.9			39		48		87

5.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7년도 450.9km 3,262억원(교부세 658, 지방비 2,604)을 투자계획하여 현재 84%의 공정율로 추진됨.

※ 공정율은 '07.12.31기준 공사추진 진도임

-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동절기로 사업이월 발생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추진공정	계획대비 실적	%	95	84	88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어업생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농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됨. 농어촌 도로포장실적이 42.2%에 불과한 점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에 비해 열악한 도로환경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할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한 사업 추진 검토 필요

○ 지방양여금법 폐지에 따른 2008년까지의 한시적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확대변경 시행하고 사업개요만 제시하고 자체 점검 평가보고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시행부서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관계에 있거나 사업 추진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서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 목표가 분명하고 지역 균형 개발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나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2008년까지 한시적 지원에 그친 것은 문제.

○ 특성상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며 도시보다 농어촌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역에 따라 사업 추진 실적이나 예산이 균등 배분되지 않은 것은 사업 추진의 명확한 원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성과에 있어 목표대비 달성도의 부진은 준공시기 미도래와 계절적 요인인 점은 인정되나 한시적 예산에 따른 형식적 평가보고서로 담당부서의 사업 계속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3. 개선방안 등

○ 특성상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며 도시보다 농어촌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하여 지속적 재원조달 방안 필요

○ 지방도로 포장율 개선을 위한 특별재원 마련과 지역형평성 고려 방안 검토

○ 사업의지가 분명한 부서로의 업무 이관 적극 검토 요망

3-3-3-2(계속)	교통서비스 강화

(건설교통부 / 대중교통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 지원,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으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 제고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1조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에 재위임)
- 사업절차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에 의한 분권교부세 교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의거 벽지노선 등의 운행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동법 제51조에의거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
- 사업 규모 : 전국 13개 시.도 16,938km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및 10개 시.도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대당 1,800만원)
- 사업기간 ('05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분권교부세로 시.도지원)
  - 벽지노선 손실보상 : '82년 ~ (국비지원은 '99년부터-'04년까지)
  - 공영버스 : '94년 ~

3. 연차별 추진계획

○ '04년 국비지원규모를 유지('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33(285)		2,233
'05	벽지노선 등					340(49)		340
'06	"					376(53)		376
'07	"					459(54)		459
'08	"					504(61)		504
'09	"					554(68)		554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5(156)		1,175
'05	벽지노선 등					340(49)		340
'06	"					376(53)		376
'07	"					459(54)		459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공영버스지원 재정지원액 집행완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벽지노선등 지원	'06분권교부세	'07예산 집행율	억원	53	54	102
	'06지방비 확보	'07예산 집행율	억원	323	405	125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벽지 및 오지 등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를 지원하여 교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금으로 전환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타당함.

○ 벽지·오지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손실보상금 지원 등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규모가 지역의 실제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보다는 교부세의 규모에 의해 결정됨으로 실질적인 수혜범위는 적은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음.

○ 교통부문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벽지/오지버스운행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제도 개선방안 및 법령개정을 추진하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벽지 및 오지 등 비수익노선이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 도입, 교육청 셔틀버스, 준대중교통인 택시, 공영버스 등을 통합하여 운행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하여 벽지·오지의 교통서비스를 유지함으로써 낙후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사업이라 판단됨

○ 본 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을 고려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결정·시행하고, 행자부 지방재정평가시스템 및 지자체 감사과정에서 적법 추진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하나 분권 교부세 부족으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

○ 벽지노선 손실 지원사업이나 공영버스 구입지원사업 모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목표치를 '0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지방교부금) 한 것은, 지방교부 수요 등으로 추가 확대가 곤란한 실정(행자부)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 농산어촌의 교통서비스 수요(소요액) 대비 공급(지원액) 즉, 충족도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수요가 증가함에도 국비는 고정시켜 놓고, 증가분만큼 지방비로만 해결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기 때문임.

3. 개선방안 등

○ 본 사업은 지자체장(시장·군수) 소관 농어촌버스의 면허 및 지도감독 관련 사무이며, 재정지원사업도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결산이 없는 등 행정력에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이양사업의 재정(분권교부세)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일선 시·도의 지방비 확보 및 집행상황을 분석·평가토록 교통서비스 강화의 점검·평가기관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부족으로 추가지원은 곤란(분권교부세 총괄하는 행자부의 의견)한 실정임.

3-3-3-3 (계속)	국고여객선 건조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표

- 낙도 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적기에 대체 투입하여 도서민의 이동권을보장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 ~ 계속사업(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 사업주체 : 국가(지방해양수산청)

○ 사 업 비 : '07년까지 30척 대체, 339억원(국고 100%)

○ 사업규모 : 매년 낙도보조항로에 취항중인 국고여객선 1~2척 대체

○ 추진체계 : 국고건조(지방청 수행)후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에 위탁관리

○ 추진내용 : 전국 27개의 낙도 보조항로에 28척('07년 기준)의 여객선이 운항중이며, 매년 1~2척의 노후선 또는 항로에 부적합한 여객선 대체·건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78 ~ '85(새마을시리즈) : 총 21척 건조

- ‘86 ~ ’94(수요발생시 수시건조) : 총 4척 건조

- ’95 ~ 현재(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총 30척 건조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척)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85						85
’05	1	17						17
’06	1	16						16
’07	1	16						16
’08	1	18						18
’09	1	18						18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척)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	49						49
’05	1	17						17
’06	1	16						16
’07	1	16						16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차도선 1척 건조/차도선 1척 건조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국고여객선 건조	건조공정율	공정율	%	100	100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은 낙도 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적기에 대체 투입하여 도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임

- '95년 이후 총 3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척의 국고여객선을 건조하여 낙도보조항로에 취항시킴으로써 도서민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도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를 건조 공정률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건조'라는 양적지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질적 내용의 성과 지표도 같이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본 사업은 선령만료(20년)도래, 항로 부적합 여객선 대체 및 도서 주민의 교통수요 욕구충족을 위하여 매년 1~2척의 낙도보조항로 취항여객선을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낙도 도서민의 안정된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음

○ '07년에는 완도지역 이목/어룡항로의 일반여객선을 차량운송겸용 여객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도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수송과 생필품 운송으로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였음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였으나 일반여객선이 있는 지역에 차량운송겸용여객선을 지원하는 것보다 일반여객선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국가(지방해양수산청)가 여객선을 국고 건조후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에 여객선 관리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절차가 비교적 합리적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목표인 도서민 기초생활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함

○ 국고여객선 건조 계획 1척 대비 신조 여객선 취항 1척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 100% 달성

3. 개선방안 등

○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 요구액 반영 필요

○ 성과지표의 평가를 건조율이라는 양적지표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편의성, 안전성 등의 질적 평가로 함께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음

3-3-3-4(신규)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표

-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증진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

○ 사업추진 근거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계속사업

○ 사업주체 : 시·도(시·군·구)

○ 사 업 비 : 매년도 예산('07년 까지 국비 107억원)

○ 사업규모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연 400만명에 운임지원

○ 추진체계 : 우선 선사가 도서민에 할인된 운임을 적용하고 사후 지자체와 정산하는 방식(간접지원방식)

○ 추진내용 : 일반인 정규운임의 20%와 최고운임(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05.8 :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 ’05.11 : 해양부, 광역자치단체 및 여객선사간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협약(MOU) 체결

- 최고운임제 도입 및 지자체와 예산 동등분담 방안 확정

○ ’06.1~2 : 투명한 운임지원을 위한 전산매표시스템 확대 및 도서민 인증시스템 구축 완료

○ ’06.3 :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 실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만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10		10	247		257		514
’05								
’06	280			50		50		100
’07	350		3	54		57		114
’08	400		3	62		65		130
’09	450		4	81		85		17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만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40		3	104		107		214
’05								
’06	240			50		50		100
’07	380		3	54		57		114

- ’06년도 신규사업으로 정확한 사업규모 예측 곤란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132천명/148천명(운임지원 대상)
- 운임지원 효과에 따라 도서주민 및 이용객 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운임지원 대상	주민수	천명	132	148	12.1
	수송증감율	증감율	%	5	8.6 (잠정)	72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도서지역 주민들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장기적 차원에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연간예산 107억원을 여객선 건조에 투입하여 장기적으로 운임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해상교통비가 육상교통비에 비해 비싸므로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여객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운임지원이라는 단순한 금전지원은 부정수급자, 승선권부정사용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또

다른 예방시스템을 만들고 그 때문에 별도의 추가지출이 따르게 되므로 운임지원사업의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운임지원 대상 도서지역의 선정기준과 연 380만명, 운임 20~70%라는 운임지원기준의 근거가 불확실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객선사간의 양해각서체결과 상호역할 분담 및 세부시행방안을 규정을 두고 진행하고 있어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승선권의 부정이용, 부정 수급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한계로 판단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성과와 사업만족도의 평가는 개인에게 금전적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이 자생력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 도서민 교통비 경감이 도시와 도서간 교류증진, 생필품 구매용이, 소비활동 촉진 등의 기대 효과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근거 있는 평가가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전적 지원사업은 부정이용, 타인판매 등의 부작용이 따르며 삶의 지속성이라는 장기적 차원에서 자생력을 해치게 되므로 지원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3-4-1(계속)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정비법 제24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일반면 및 준농어촌 자치구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기반시설을 종합 정비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주의향을 가진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농촌활력증진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13

○ 사업주체 : 시장·군수, 구청장

○ 추진체계 :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총사업비 : '05년 이후 (국비)19,000억원('07년까지 기투자액 5,460)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로 추진

○ 사업규모 : 정주권개발 대상 797개면(15개 자치구 포함)을 대상으로 매년 300개면(구)씩 추진

○ 추진내용

- '90~'04까지 1단계 770개면(구)에 대한 지원을 완료(지방양여금)
- '05~'13까지 2단계 797개면(구)을 대상으로 지원(균특회계)

3. 연차별 추진계획(단위 : 면, 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8 (평균)		11,822			3,206		15,028
'05	338		1,639					1,639
'06	300		1,900					1,900
'07	300		1,921			480		2,401
'08	551		3,132			1,342		4,474
'09	550		3,230			1,384		4,614

※ '08년 이후부터는 행자부에서 이관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통합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2 (평균)		5,460			480		5,940
'05	338		1,639					1,639
'06	300		1,900					1,900
'07	300		1,921			480		2,401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시행면(구) 300개 실적 3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	사업시행면(구)	목표대비 추진실적	면(구)	300	300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열악한 농촌 정주기반을 확충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이며, 종합사업으로서 다양한 사업항목을 추진해 오면서 나름대로 농촌 정주환경개선등 성과를 나타냈음

○ 그러나 적은 사업비로 정주기반 이외에 소득원 및 생산기반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입한 결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그간 지적된 오지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는, 오지개발사업이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일원화됨에 따라 해소되었으나, 통합후 사업추진 방식, 대상지 선정 등 개선할 과제가 남아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추진동기, 계획비전, 계획의 구체성 등 전반적으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도 실시하여 절차적 민주성과 합리성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업비가 면당 8억원에 불과하여 대형 기반조성 사업이 불가하여 소규모 분산투자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 추진방식 등도 적절하였으며, 사업과정에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도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중간 평가 결과와 나타난 문제점도 사업내용에 적정하게 환류되었고, 재원조달 및 배분, 일정관리 등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림부의 본 사업과 행정자치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과의 일원화, 이관 문제 때문에 그간 업무 책임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었던바, 관계기관간 행정협의 조치 등으로 문제가 해소되었으나, 관계법령(오지개발촉진법 폐지, 농어촌정비법 개정) 정비, 일원화 이후 새로운 사업체계 구축 등 근원적 제도개선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성과지표 및 목표 달성은 당초 목표한대로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편의성을 갖춘 도농복합정주공간을 구현하려는 정책목표는 아직 여전히 달성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사업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농촌 전체에 걸쳐 실질적인 생활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등

○ 사업의 내용을 정주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기반 및 소득원확충 관련사업은 별도의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개성있고 차별화된 사업방향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프로그램 설정이 요구됨

○ 기존 오지종합개발사업과 통합될 경우 양측 사업의 내역을 수용하면서도 정주기반과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함.

○ 특히 과거 오지사업 대상 면으로 분류된 지역과 본 사업 대상지와의 차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바임

○ 면단위 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농촌의 발전모습을 예상하여, 마을종합개발, 면소재지활력증진 등과의 체계적인 연계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3-3-4-1(계속)	오지종합개발사업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 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09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추진체계 :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

○ 총사업비 : (국비) 6,443억원('07년까지 기투자액 3,317)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로 추진

○ 사업규모 : 오지면개발 대상 361개면을 대상으로 '07년 223개면 추진

○ 추진내용

- '90~'99 1차 403개면, '00~'04 2차 399개면에 대한 지원을 완료(지방양여금)
- '05~'09까지 3차 361개면을 대상으로 지원(균특회계)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46 (평균)		3,317			1,421		4,738
'05	312		1,100			471		1,571
'06	207		1,083			464		1,547
'07	219		1,134			486		1,620

※ '08년 이후부터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통합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46 (평균)		3,317			1,421		4,738
'05	312		1,100			471		1,571
'06	207		1,083			464		1,547
'07	219		1,134			486		1,62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시행면(구) 219개 실적 219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	사업시행면(구)	목표대비 추진실적	면(구)	219	219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현저히 낙후된 산간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임

○ 그간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문화복지편의 등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통해 오지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임

○ 그러나 그간 정주기반확충사업과의 중복성,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시되면서 급기야 2007년 사업을 끝으로 본 사업은 종료되고, 정주기반사업과 통합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하려는 시점에 있음

○ 계속 지적된 문제점은 분산투자, 나열식 사업항목 즉 선택과 집중 전략의 부재, 사업효과 미약, 경제사업인지 환경사업인지 사업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이었던바, 동년에도 비슷한 문제양상을 드러내고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추진동기, 계획비전, 계획의 구체성 등 전반적으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사업비가 면당 7-8억원 정도로 소규모인데 비해 다양한 사업내역을 포함되고 있어 분산투자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 추진방식 등도 적절하였으며, 사업과정에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도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중간 평가 결과와 나타난 문제점도 사업내용에 적정하게 환류되었고, 재원조달 및 배분, 일정관리 등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과 정주기반확충사업과의 일원화 문제 때문에 그간 업무 책임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었던바, 관계기관간 행정협의 조치 등으로 문제가 해소되었으나, 관계법령(오지개발촉진법 폐지, 농어촌정비법 개정) 정비, 일원화 이후 새로운 사업체계 구축 등 근원적 제도개선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성과지표 및 목표 달성은 당초 목표한대로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업시행 면수대비 사업완료 면수를 성과목표치로 설정한 것은 다소 안이한 목표 설정이라 판단되며, 생활개선, 소득증대, 만족도 등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요구되는 바임

3. 개선방안 등

○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분산투자, 나열식 사업항목(즉 선택과 집중 전략의 부재), 사업효과 미약, 불분명한 사업성격(경제사업인지 환경사업인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점이 향후 통폐합된 새로운 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는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면단위 균등지원방식을 시군단위 투자우선 순위에 의해 시군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중장기계획 마련이 요구됨

○ 지역을 불문하고 사업비를 획일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적 특성, 사업내용 등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다양하게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정주사업과 오지사업 대상면에 대한 사업비, 사업내용 등에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3-3-4-3 (계속)	도서종합개발사업

(행정자치부 / 지역발전정책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도서개발촉진법('86. 12. 31 제정)

○ 사업목표

- 지리적 여건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소득증대 시설확충을 통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으로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 창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2017(제3차 10개년 계획)

※ 제2차 10개년('98~'07) 계획 완료

○ 사업주체 : 지자체(37개 시군구)

○ 사 업 비 : 17,874억원(국비12,346, 지방비5,291, 민융자237)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1,407건

- 연육·연도교 사업 : 10개소(신규 2, 계속8)
- 유형화·특성화 종합계획 : 260건
  - ► 관광자원형 166건, 문화유적형 3건, 농업자원형 14건, 수산자원형 63건, 체험관광형 14건
- 기타 일반시설(생활·생산·문화·환경위생·생활안전시설 등) : 839건

○ 시행방법

<그림-1> 도서개발계획 수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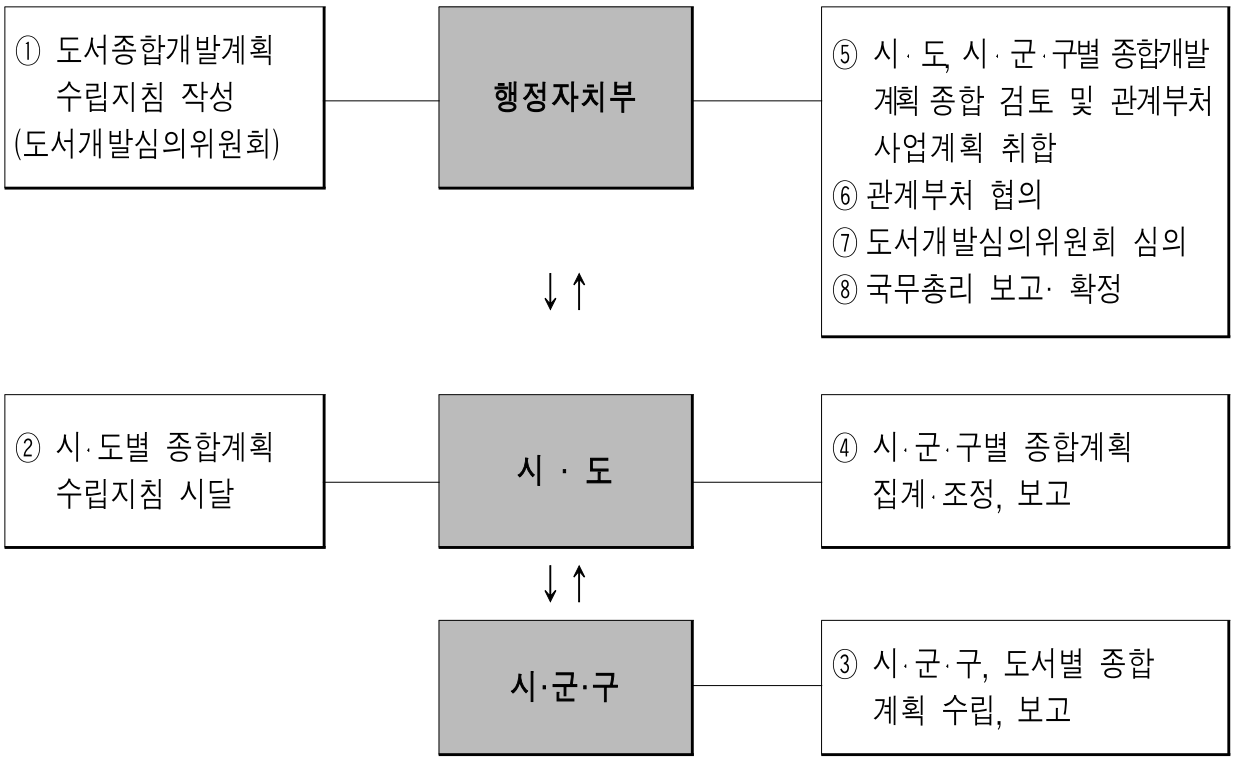

- 계획수립지침 및 기준의 시달(행정자치부 장관)
- 계획의 수립(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개발대상도서에 대한 시·군계획(안)을집계·조정, 시도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계획의 확정(행정자치부장관)
  - 계획(안)에 대한 부처협의
  -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 국무총리 보고후 확정
- 사업계획의 통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69		4,762			2,042		6,804
'05	396		900			386		1,286
'06	299		900			386		1,286
'07	270		1,001			429		1,430
'08	260		954			409		1,363
'09	244		1,007			432		1,43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01			1,201		4,002
'05	396		900			386		1,286
'06	299		900			386		1,286
'07	270		1,001			429		1,43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방파제 연장실적 : 13,410m(실적)/14,400m(계획) = 93.1%
- 선착장 연장실적 : 22,954m(실적)/23,769m(계획) = 96.6%
- 방파제 및 선착장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됨에 따라 **계획대비 100%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서종합개발 사업	방파제 연장실적	종합계획대비 연차별추진실적	%	92.0	93.1	101.2
	선착장 연장실적	종합계획대비 연차별추진실적	%	95.0	96.6	101.7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장기간에 걸친 사업추진성과를 제3차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더욱 내실화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도서민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동안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그 결과 생활·생산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서지역의 낙후성 해소에 기여함

○ 기존 소규모 분산투자를 벗어나 '선택과 집중' 방식의 유형화 종합계획 및 연육·연도교 사업 확대 추진 등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 창출을 위한 제3차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기존의 성과와 기수립된 제3차 사업계획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88년부터 제1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3차 10개년 계획('08~'07)을 추진 중임

○ 도서의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유형화 특성화 종합계획'은 물론 관계부처 협력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협력적계획', 도서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계획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도서개발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계획방향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자체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로 유사 중복을 피하는 한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업추진주체(지자체)의 자가 진단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삶의 질향상 점검평가단의 평가결과와 기타 내외부 점검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개선노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도서의 특성과 문제를 진단하여 도서지역에 현실성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개발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도서진단제도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졸업제와 연계방안을 구축중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도로, 전기, 급수 등 기초 인프라시설 확충에 따라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시설 투자로 도서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연육 연도교 사업 추진으로 도서 낙후성의 근본적 원인인 격절성 해소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물류비용 절감, 관광객 증가 등 도서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주민들을 대상으로 '07.5월에 실시한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사업 인지도는 87%에 이르고, 추진성과의 만족도는 92%, 생활여건개선정도는 91%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성과의 달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등

○ 제3차 계획수립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형화 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이밖에 3차에 걸친 장기간의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할 것임

○ 시혜성 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가 노력하여 획득하는 개발사업으로, 사업의 컨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3-5-1(계속)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문화관광부 / 도서관운영협력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농어촌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 2013년까지 농어촌공공도서관 총 260관 건립 목표

○ 추진근거 및 배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 '새문화관광정책사업'('98), 농어촌발전종합대책('94)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2.8 / 문화관광부)

○ 예산반영 추이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2	'03	'04	'05	'06	'07	'08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농어촌)	20	35	112	99	101	56	97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 ~ 2013년

○ 총사업비 : 1,240억원('07년까지 지원예산액 106관 642억원)

○ 사업규모 : 2013년까지 260개관 확충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건립비의 80%, 최대 16억원)

○ 지원조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본 방향 : 2013년까지 260개관 확충('06년말 현재 221개관 운영중)

○ 매년 6개관, 96억원씩 국고 지원 계획

※ 2005년도부터 균특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지자체 실링내에서 자율편성에 의해 대상사업 및 사업비 확정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개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1		447			511	-	958
'05	17	-	99	-	-	120	-	219
'06	13	-	99	-	-	137	-	236
'07	11	-	56	-	-	86	-	142
'08	14	-	97	-	-	144	-	241
'09	6	-	96	-	-	24	-	12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개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		254			343		597
'05	17	-	99	-	-	120	-	219
'06	13	-	99	-	-	137	-	236
'07	11	-	56	-	-	86	-	142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6개도에 11개관, 5,556백만원의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
- 당초 계획에 따라 11개관 5,556백만원 건립비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공공 도서관 건립지원	건립지원 도서관 수	국고보조금 지원 도서관 수 파악	개관	11	11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계획된 대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무리없으나, 적기의 예산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균특회계 체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제 조정기능이 부재하므로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즉, 부지마련이 가장 어려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폐교 등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상대적으로 재정 및 문화혜택이 열악한 농어촌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임

○ '05부터 균특회계 예산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게 됨에따라 각 사업 대상지 소관 지자체에서 세부추진계획 및 하위 정책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함

○ 지자체의 자율편성에 의한 대상사업이나, 주무부처 및 예산처의 사업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는 우선 예산계상 신청을 지자체가 하면, 문화부가 취합하여 예산요구를 하고, 기획예산처가 정부지원예산을 편성한 후 국회에 보내게 되며, 이렇게 예산확보가 확정될 경우 문화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교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 집행률이 낮고, 중앙부처의 지휘 감독이 어려워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저감되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 내지 평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발전적인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촌 지역은 문화적 기본시설이 빈약하므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은 농어업인들의 문화향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정보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건립추진 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이용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추진 중에 또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어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

3. 개선방안 등

○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이월 및 공사지연사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부지확보, 행정절차의 이행, 지방비 부족도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평가됨

○ 공공도서관 건립이 균특회계로 이관된 후, 지자체의 건립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자체 스스로의 건립의지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함

3-3-5-3(계속)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

(문화관광부 / 생활체육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읍·면·동 소생활 단위에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전여가 선용과 건강을 증진하여 농어촌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목표 : 전국 3,571 읍·면·동에 2개소씩 7,142개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 조건 : Matching Fund(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비 규모 : 개소당 10~20백만원 내외(기금 50% 지원)

○ 설치시설물 : 주민이 선호하는 소규모 간이 체육시설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예산범위 내 지속적 추진

○ 추진일정 : 연도별 120개소이상 설치

○ 사업비

(단위 : 억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개소	120	150	150	150	150	
금액	16	24	24	24	24	기금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78				98.2	98.2		196.4
'05	127				20	20		40
'06	169				20	20		40
'07	142				18	18		36
'08	120				16.2	16.2		32.4
'09	120				24	24		48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38				58	58		116
'05	127				20	20		40
'06	169				20	20		40
'07	142				18	18		36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지원액	기금집행실적	억원	18	18	100
	지원개소수	기금실적	개소수	142	142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읍·면·동 소생활 단위에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을 증진하여 농어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사업의 목표는 적절하며, 사업의 필요성도 높다고 판단됨.

○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지자체에 일임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 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등 사업추진 방식이 비교적 합리적임.

○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생활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금 배정시 농어촌에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 시설유지 관리 우수사례(지역 우수기업과의 자매결연, 예산배정 등) 홍보 검토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 목표가 분명하며 시설물 설치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등 자율권을 부여한 점이 우수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주민자율성에 맡기되 객관성이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행정단위별 2개소로 한정되므로 성과지표를 목표대비 건립개소수와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별 목표대비 건립개소수를 추가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예산배정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에 우선 배정하며, 초기에 많은 수를 건립하고 년차별로 감소시키는 배정방식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사업대상지 선정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 유지관리 우수사례 홍보 등이 필요

3-3-5-4(계속)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조성사업

(문화관광부 / 지역문화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공간을 조성해줌으로써,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적 문화불균형 해소

○ 지역의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여 주민 맞춤형, 생활문화체험공간 제공

○ 추진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호<문화·예술진행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시책과 권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 사업주체 : 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신청(한국문화원연합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지원 공모 신청(한국문화원연합회)
- 선정·지원 및 컨설팅(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 최종보고 및 정산(한국문화원연합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추진 내용

- 유휴공간 문화공간으로 리노베이션(90%)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10%)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				4,100	836	801	5,737
'05	11				1,100	6	300	1,406
'06	12				1,000	158	204	1,362
'07	23				2,000	672	297	2,969
'08								
'09								

- 08년도 예산지원 없음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6				6,100	836	801	5,737
'05	11				1,100	6	300	1,406
'06	12				1,000	158	204	1,362
'07	23				2,000	672	297	2,969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실적치 : 20개소/ 23개소
- 초과달성 사유 : 동 사업은 매년 평균 70개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바 심사결과 지원이 필요한 공간을 확대하고자 지원액을 줄이고 지원 공간을 추가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사업	공간개관수	총 공간개관수	개소	20	23	115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문화 체험공간 조성으로 소외지역의 문화복지를 신장시킨 점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특성상 사업수행주체의 전문성을 고려한 점과 위원회 구성 등 실현수단을 구체화 한 점이 긍정적

○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자하되 개관공간의 초기 운영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예산 확보시 또는 홍보 대책이 수립된 사업 대상지에 우선권 부여 방안 검토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시 저소득 주민 및 농어업인을 위한 문화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한 점을 고려한 주민 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으로 목표에 적합한 점

- 사업초기 사전 수요조사에 의한 지역주민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한 점
- 정책연구 및 문화예술 전문 평가단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한 점

○ 문화소외 계층의 정서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농어촌 지역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시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가 이루어지는 점과 중간모니터링, 시설컨설팅, 실무자간 핫라인 구축, 삶의 질평가결과 반영

- 국민 이해 당사자 홍보에 있어 단계별 홍보와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한 점

○ 복권 기금 재원 부족으로 예산 미 확보에 따른 사업 중지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문화적 혜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체험형 재교육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 자자체의 자발적 동기부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으므로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한 점

3. 개선방안 등

○ 지역 특성과 농어촌의 고령화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노력 필요

○ 개관시 운영난 해결방안이 수립된 지자체 사업 대상지에 우선권 부여 방안 검토

○ 지자체의 지방 문화원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지방 문화공간이 되어야 하며 예산확보 방안 모색으로 계속사업 검토

3-3-5-5(계속)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관광부 / 지역문화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소외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적·가치지향적 실버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자아실현 성취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통해 문화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새터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

⇒ 지방문화원을 고령화,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실버문화·다문화 활동 거점으로 정착

○ 사업추진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주체 : 지방문화원 및 전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신청(한국문화원연합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지원 공모 신청(지방문화원 → 한국문화원연합회)
- 선정·지원 및 컨설팅(한국문화원연합회 → 지방문화원)
-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지방문화원 → 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 최종보고 및 정산(한국문화원연합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대상

- 실버문화 프로그램 : 60세 이상 어르신
- 향토문화 체험프로그램 : 농어산촌·도서지방 문화소외계층(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등 포함)

○ 주요 프로그램

- 실버프로그램 : 보석문화해설사, 통영나전칠기제작, 창작뮤지컬, 동해어부들의 소리 재연, 전래놀이지도사 등 지역특색있는 문화 프로그램
-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 : 자연생태문화체험, 역사문화체험, 전통생활(민속)문화체험, 예술문화체험, 문화원간 연계 프로그램
  -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한글교육, 문화이해, 기능습득 등의 문화예술 강좌 교육프로그램, 문화탐방 프로그램, 국제결혼이주여성 한마당 축제 등
  - 새터민 대상의 북한식 김장 나누미 축제, 어르신 위안잔치, 한여름 밤의 음악회, 한가위 축제 등 공연형 프로그램과 어깨동무 멘토링 등의 상호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28개 프로그램			2,000	9,932			11,932
'05	696개 프로그램				3,432			3,432
'06	193개 프로그램				3,000			3,000
'07	228개 프로그램				2,000			2,000
'08	80개 프로그램				1,500			1,500
'09	85개 프로그램			2,000				2,0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432			8,432
'05	696개 프로그램				3,432			3,432
'06	193개 프로그램				3,000			3,000
'07	228개 프로그램				2,000			2,00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총 228개 프로그램에 16,490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성과를 거둠.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사업기획 및 운영 수립에 참여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버문화 프로그램 지원 수	프로그램 지원수	개	70	76	109%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별로 세분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자에 맞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소외계층의 참여가 비자발적인 경우 형식적 행사로 전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음.

○ 대상자별 기획된 프로그램의 분야별 다양한 성과지표를 산정하여 달성하기 위한 공동기획 컨설턴트를 둔 점이 평가됨

○ 분야별 세부 성과지표를 제시함에 따라 세부지표 산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연구 및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타지역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 점

-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 거점센타로 특화하여 현 농촌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반영한 점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사회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 적응력 향상, 타부처 협의를 통한 중복을 피하고 수요자 여론 수렴에 의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점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있어 권역별 담당 컨설턴트를 배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자간의 교류를 통한 연계 활동을 활성화한 점

○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와 협조 체계가 잘되고 있는 점과 평가결과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 내용 수정 보완 하여 준비한 점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언론매체에 의한 관심 증대에 의한 홍보로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된 점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소외 지역 소외 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문화적 환경에 접근하는데 기여한 점

○ 향토문화체험, 결혼이주 여성과 문화프로그램, 실버문화프로그램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심도와 만족도를 높인 점

3. 개선방안 등

○ 사업대상을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속적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 검토

○ 지역 문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 구축으로 프로그램 공유, 개발 및 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 지역문화 전문가 발굴 양성 프로그램 개발 검토

3-3-5-6(계속)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문화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자체가 추진하는 과학관 설립 등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 지방의 주민에게 과학문화 체험기회 확산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생활친화적인 과학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과학관육성법 제4조의 2(과학관육성 기본계획 수립)

- 과학관육성기본계획('03.12)에 의거 2012년까지 국·공·사립과학관 100개 육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계속

○ 사업비 : 약 50억원/년 규모

○ 사업규모 : 매년 10개(계속 5개, 신규 5개)규모 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 추진방법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방과학관별로 10억원 이내 지원

○ 추진내용

- 과학탐구관, 천체·우주영상관, 바다과학체험관, 생태체험관, 곤충 및 조류탐사과학관 등 건립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05년 서귀포 천문과학관 등 10개 테마과학관사업에 44억원 지원

○ ’06년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등 10개 테마과학관사업에 60억원 지원

○ ’07년 부안 곤충탐사관 등 12개 테마과학관사업에 54억원 지원

○ ’08년 약 10개 규모의 테마과학관사업 40억원 지원 예정

○ ’09년 이후 매년 8~10개 규모의 테마과학관건립 지원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8	381		619
’05	10개소 (신규 6, 계속 3)				44	45		99
’06	10개소 (신규 5, 계속 5)				60	110		170
’07	10개소 (신규 5, 계속 5)				54	106		160
’08	10개소 (신규 5, 계속 5)				40	60		100
’09	8개소 (신규 4, 계속 4)				40	60		1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8	225		383
’05	10개소 (신규 6, 계속 3)				44	50		94
’06	10개소 (신규 7, 계속 3)				60	98		158
’07	12개소 (신규 6, 계속 6)				54	77		131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고흥 천문우주과학관 등 6개 신규사업에 38억 지원,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등 6개 계속사업에 16억 지원
- 사업이 부진한 계속사업 지원을 배제하고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건립지원수 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방테마과학관건립지원	지방테마과학관 지속 확충	건립 지원수	개소	10	12	12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지자체가 추진하는 과학관 설립 등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며 지방의 주민에게 과학문화 체험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과학탐구관, 천체우주영상관, 바다과학체험관, 생태체험관, 곤충 및 조류탐사과학관 등을 건립 지원하고 있음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방과학관별로 10억원 이내 지원하나, 그 규모가 턱없이 영세하고 지방비 부담을 많이 주는 사업으로 지방에서는 관심도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더욱이 지역별 예산상황이나 여건에 적합하지 않는 사업을 일단 하고보자는 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건립후 과학관을 제대로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지역주민이 생활속에서 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는 지방과학테마과학관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외된 지방의 주민에게 과학문화 체험기회로 제공

○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과학관을 운영, 농어촌 주민이 복지증진과 문화교육 여건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적합

○ 지원계획 수립시 매년 3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연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실시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원 대상사업이 선정되면 정부는 재원을 보조하고 지자체가 실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 한국과학재단에서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과학연구소는 국립중앙과학관 등 과학교육 및 전시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 자문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지확보 문제와 지방의회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지방과학관 건립은 과학문화시설에 소외된 지방주민과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 테마과학관 건립 지원은 건축물을 축조하는것 보다 유지관리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나, 사업추진상 사업성과 및 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자료가 부재하여 성과관리 및 목표달성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실정임

3. 개선방안 등

○ 지자체의 협조로 과학관 건립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보완하였으나, 아직도 예산 이월 등 미흡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평가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지자체의 예산 부지확보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거나 타당성 조사 등이 수행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추진하는 예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 건립중인 계속사업의 경우도 사업진척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원여부를 중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역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3-3-5-7(계속)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

○ 사업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2년~계속

○ 사업시행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지사) ⇒ 사전타당성심사 및 결과 통보 (산림청) ⇒ 균특예산 확정 (국회) ⇒ 국고보조금 교부 (산림청) ⇒ 사업실행 ⇒ 정산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방자치단체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추진내용 :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집·증식 및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원·박물관을 확대 조성

3. 연차별 추진계획

○ 총사업비 : 1,918억원('07년까지 투자액 : 1,177억원)

○ 사업규모 : 지방수목원 22개소, 산림박물관 10개소 조성

- 수목원 부대시설로 산림박물관 조성

○ 조성기간 :

- 지방수목원 : 1년 설계, 3년 시공 - 산림박물관 : 1년 설계, 2년 시공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828	-	-	828	-	1,656
'05	26	-	126	-	-	126	-	252
'06	26	-	163	-	-	163	-	326
'07	25	-	159	-	-	159	-	318
'08	24	-	180	-	-	180	-	360
'09	30	-	200	-	-	200	-	4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447	-	-	442	-	889
'05	23	-	126	-	-	121	-	247
'06	26	-	156	-	-	156	-	312
'07	25	-	165	-	-	165	-	33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식물유전자원 누적 확보량	지방수목원 식물유전자원 누적 확보량 평균	종	1,500	1,549	103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수목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타당함.

○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과학적인 산림환경 보호체계를 확립'이라는 상위목표와 부합하며, 사업의 타당성·적합성 등의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산림생물종의 수집은 양적으로 증가한 반면, DB구축·운영 등 관리측면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며, 산림자원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업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의 여가 증진 및 심신수련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자원화·이용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사회적 편익성 강화가 필요하며, 훼손·멸실되어 가는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증식에 필요한 서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목원·박물관을 확대 조성한다는 취지는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수목원의 확대 조성은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이를 자원

화하고, 이용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여가증진 및 웰빙시대에 적합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수목원·박물관을 농산어촌지역 등에 조성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동사업지역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지역에 대한 정보를 갖지 않고 있는 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방수목원·박물관 조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추진체계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도지사(사업계획 수립·예산요청) ⇒ 산림청(예산확보 및 사업지시) ⇒ 시·도지사, 시·군·구(사업실행 및 정산)의 추진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수목원·박물관 조성사업지에 대한 특성화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심사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지별 특성화 전략이 요구됨

○ 또한 식물유전자원의 정보교류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목원·생태숲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연구인력 부족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및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과정을 신설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07년말 현재 전체 수목원·박물관 32개소 중 26개소(81%)를 농산어촌 등에 조성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을 통하여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2007년도 재정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86.5점으로 중상위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 사업지역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지역에 대한 정보를 갖지 않고 있는 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목원 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증진”은 국가식물자원의 자원화를 위하여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전·증식하는 사업목적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위한 성과지표로 “지방수목원 식물자원 누적 확보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수목원에서 식물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생물종의 자원화와 생물종의 현지외 보전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지방수목원 등 서식·보존 기반 확충이 필요함.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전기능 강화를 위한 수목원·박물관을 지속적으로 확대·조성('92~계속)토록 하며,

○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증식·보전 및 자원화와 연구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토록 함.

3-3-5-8(계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문화관광부 / 생활체육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사업목표

- 체육시설 건립 사업비 보조를 통한 지자체 시설 확충을 적극 유도
-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 시군의 읍,면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열약한 농어촌 지역에 우선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까지 시범사업

※ 2010년까지 지원 후 확대방안 검토 예정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2~6억원(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내용 : 광역시를 제외한 9개 시·도 중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등 유사 체육시설이 없는 읍,면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적정 사업대상 선정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0	27		102
'05	-	-	-	-		-	-	-
'06	7	-	-	-	37.5	12	-	49.5
'07	7	-	-	-	37.5	15		52.5
'08	7	-	-	-	37.5	-		-
'09	7	-	-	-	37.5	-	-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5	27		102
'05	-	-	-	-	-	-	-	-
'06	7	-	-	-	37.5	12	-	49.5
'07	7	-	-	-	37.5	15	-	52.5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지원개소수	지원실적	개	7	7	100
	지원액	기금집액실적	억원	37.5	37.5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도·농간 격차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스포츠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지역적 특성, 수요자의 선택권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체육시설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사업목적에 부합됨.

○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중 공공체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읍·면 지역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스포츠에 대한 서비스가 빈약한 지역에 체육시설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도모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설을 설치 후 운영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토록 함으로서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에 의해 적절히 추진되고 있으며, 복합체육시설 지원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신청 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설물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음.

○ 공공체육시설의 균형배치 및 소외지역(계층)에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기금 지원 이외에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체육시설을 지원하여 사업규모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지원금액은 시·도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균형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기금지원단체는 사업규모 범위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금지원 후 설계, 공사, 준공, 정산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체육시설 균형배치를 통하여 소외계층에 지원함으로써 건전여가와 체력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농어촌복합체육시설물은 '06년 ~ '1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지원 후 향후 운영, 관리 등 효과성을 분석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므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지원한다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업확대가 필요함.

○ 또한 사업확대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와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등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기금지원 사업은 '06년 ~ '10년까지 시범사업기간으로 기금지원 후 공사기간을 2년으로 하여, 아직 운영중인 곳이 없으므로 향후 사업지원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므로,

○ 사업 확대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

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와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잘된 점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육 서비스가 빈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 선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임.

○ '06년도 신규사업으로 운영중인 시설물이 없어 운영상 문제점 및 농어촌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 파악이 어려우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설을 설치 후 운영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토록 함으로서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에 의해 적절히 추진되고 있으며, 복합체육시설 지원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신청 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설물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토록 유도하도록 함.

3-3-6-1 (계속)	정보화마을 조성

(행정자치부 / 서비스정보화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등 정보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생활화 및 지역 공동체 형성

○ 지역 특산물 상거래 판매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2014년

○ 총사업비 : 3,309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1,341억원)

○ 사업규모 : 800여개 정보화마을 조성

○ 시행방법 : Matching Fund(50% 자본보조)로 지자체와 공동 수행

○ 조성현황 : 304개 정보화마을 조성

구 분	합 계	1차 조성 (2001)	2차 조성 (2002)	3차 조성 (2003)	4차 조성		5차 조성 (2006)	6차 조성 (2007)
					(2004)	(2005)		
조성 마을수 ※ ( )는 시도자체	304(54)	24(6)	78(3)	87(11)	70	(19)	26(15)	34(11)
정보화교육 (명)	234,629	18,332	40,606	27,210	17,224		57,501	73,756
투자예산	134,062	8,068	29,377	31,799	26,872	9,107	11,657	17,182
운영예산	18,600	-	380	1,193	2,372	3,539	4,134	6,982
조성예산 (지방비)	115,462 (50,019)	8,068 (1,068)	28,997 (7,997)	30,606 (10,606)	24,500 (10,500)	5,568 (5,568)	7,523 (5,430)	10,200 (8,850)

○ 사업 내용

- 초고속인터넷망, 마을정보센터, 가구별 PC보급 등 정보이용환경 구축
- 마을별 홈페이지 및 중앙콘텐츠 구축·운영 및 주민 정보화마인드 제고
- 정보화지도자 육성 및 마을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언론매체, 홍보영상물 등을 통한 정보화마을 브랜드 구축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5		4.5	437		500		941.5
'05	19			35		56		91
'06	18			61		36		97
'07	32		1.5	84		80		166
'08	68		1.5	126		164		**292**
'09	68		1.5	131.0		164		**297**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9**		**1.5**	**183**		**195.5**		**380**
'05	19			35.3		55.7		**91**
'06	26			62.3		54.3		**117**
'07	34		1.5	85.4		85.5		**172**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05년 평가부터 실시한 정보화마을 운영성과 평가 제도의 운영활성화 정책 효과로 실적을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마을당 온라인 평균 판매액	**온라인 총 판매액/마을수** ※온라인 판매금액 100만 원이상 발생한 마을만 집계	백만원	1,800	1,973	9%
	마을당 평균 게시글수	**마을홈페이지 총 게시글수/ 마을수**	건수	2,200	2,723	23%
	주민 정보화교육 평균 이수시간	**Σ(과정별이수자×교육시간) / PC보급 가구총수** ※ 총가구수:23,596가구	시간	7	13	86%

Ⅱ. 평가결과

1. 총 평

○ 계속사업으로서 사업 목표가 분명하고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현대인에 있어 생활의 일부인 정보화가 사회간접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사업추진 동기 및 필요성이 적절하고 미래농어촌은 온라인상에서의 마을 방문, 도시민과의 직거래 등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가 필수적인 점을 평가함..

○ 정보 이용 환경 조성과 중앙콘텐츠 및 마을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정보화 지도자 육성 및 마을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 정보화 투자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한 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추진을 통한 인지도 확산을 유도한 점 등 사업계획이 적절하며

○ 사업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주체(지자체,마을)간에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추진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체계가 확립된 점, 공동 일괄 구매에 따른 행정 효율성과 통일된 디자인 적용으로 일체감을 조성한 점, 사업추진에 있어 테마마을 사업 등 정보화 마을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한 점, 평가 자료를 상시 입력하여 신뢰를 제고한 점과 운영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이 평가됨

○ 성과지표를 정보사이트 게시글 수, 주민 정보화 교육 총시간 등과 같은 정량지표로 한 것은 적절하며 성과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상향조정한 점이 평가됨.

○ 다만 정보화 인프라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 실태와 현장 응용 능력의 한계 극복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사업이나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에 대한 정보화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과의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정보 이용 환경 조성과 중앙콘텐츠 및 마을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 정보화 지도자 육성 및 마을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
- 정보화 투자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한 점
-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추진을 통한 인지도 확산을 유도한 점

○ 정보화 인프라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실태와 현장 응용 능력의 한계 극복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역특성에 맞고 관련 주체(지자체,마을)간에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추진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체계가 확립된 점

- 공동 구매에 따른 행정 효율성과 통일된 디자인 적용으로 일체감을 조성한 점
- 사업 추진에 있어 테마마을 사업 등 정보화 마을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한 점
-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평가 자료를 상시 입력하여 신뢰를 제고한 점과 운영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

○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사업이나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에 대한 정보화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과의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지표를 정량지표(사이트 게시글 수, 주민 교육시간)로 한 것은 적절하며 성과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상향조정한 점

3. 개선방안 등

○ 정보화 인프라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 실태와 현장 응용 능력의 한계 극복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3-3-6-2(계속)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정보통신부 / 정보문화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2. 사업내용

○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08년까지 50가구 미만 농어촌 지역 16만여 가구에 대해 유선 및 양방향위성방식으로 초고속망 구축

- 재원은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1:1:2 비율로 분담하고, 마을규모, 이용희망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구축

○ 사업추진 근거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3. 연차별 추진계획

○ '06년~'08년 3개년 사업으로 추진

- '06년 총 354억원(정부예산 : 90억원)을 투입하여 유선망 구축
- '07년 총 354억원(정부예산 : 90억원)을 투입하여 유선 및 양방향위성망 구축
- '08년 총 160억원(정부예산 : 40억원)을 투입하여 유선망 및 양방향위성망 구축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0		220	440	880
'05								
'06				90		90	180	360
'07				90		90	180	360
'08				40		40	80	160
'09								

4. 성과목표 달성도

o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10개 지자체 초고속망 불가지역에 대한 유선 및 양방향위성방식으로 총 **3,837개 마을 57,893가구 구축** 완료
- KT의 기존시설이용, 장비 낙찰차액 발생으로 당초 계획 보다 **312개 마을 2,659가구를 추가 구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확대	초고속망 구축률	구축가구수	가구수	5.5만 가구	5.7만 가구	145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정부, 지자체, 통신업자가 공동으로 '08년까지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 16만여 가구에 대해 유선 및 양방향위성방식으로 초고속망를 구축하는 사업임

○ 정보통신 인프라 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정보이용활성화에 기여함

○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협의회를 통한 이해당사자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하고 효율적 망 설계 등을 통해 당초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정보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지자체, 통신사업자 등으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 발생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농어민들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하위목표를 구비하였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은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 수혜자인 지자체 및 통신사업자도 일부 비용분담이 필요하므로 매칭펀드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측면에서 향후 이윤 발생이 수반되므로 재원부담방식을 현행 매칭펀드방식에서 민간부문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07년 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06년 대비 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초고속망 신규 구축지역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80.01점으로 기록되어 '07년 성과목표인 80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3. 개선방안 등

○ '08년 사업추진완료후 인터넷 이용 희망가구에 한하여 KT와 지자체가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향후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할 것임

3-3-6-3(계속)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농림부 / 정보화기획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우수 농업경영체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기 구축된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 사업추진 근거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 ~ 계속

○ 총사업비 : '06까지 기 투자액 28억원

○ 사업규모 : (~'04) 1,706농가 홈페이지 구축, ('05~'07) 정보시스템구축 (23개 법인), 컨설팅(30개 법인)

○ 지원형태 및 시행기관

- 사업시행주체 : (재)농림수산정보센터
- 수혜자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형태·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단, 컨설팅은 자부담50%)

○ 추진내용

- 농업인 홈페이지 홍보 및 경진대회 개최, 홈페이지 관련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홈페이지 관리·운영

- 농업법인의 영농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농업법인 정보화 컨설팅, 농업법인 특화솔루션 발굴 및 보급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48				120	120	2,788
'05	홈페이지운영활성화, 4개 법인	459				-	-	459
'06	홈페이지운영활성화, 17개법인	480				66	66	612
'07	홈페이지운영활성화, 17개 법인	495				54	54	603
'08	홈페이지운영활성화, 특화솔루션	514						514
'09	홈페이지운영활성화, 특화솔루션	600						6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39				167	167	1,673
'05		413				-	-	413
'06		432				123	123	678
'07		494				44	44	582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구축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점수	점	70	73.7	105
	업무 효율성	업무시간 단축	%	20	41.2	206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업경영체의 경영 효율을 증대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적절하고 컨설팅, 교육, 민간업체 참여 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이 비교적 잘 계획되어 있음

○ 사전조사, 컨설팅 등으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있으며 경진대회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고 사업대상자들이 의견수렴 등의 사업절차도 적절함

○ 장기적 차원에서 자율 운영능력이 상승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마을단위 사업에 비해 경영체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 교육, 홍보 및 마케팅이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정보화 뿐 아니라 경영합리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됨

○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수요조사, 경진대회, 홍보 등의 절차적으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있어 적절한 전문기관, 참여자 협의회 등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자율적 운영상승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경영체의 선정·평가 등의 업무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홍보, 유지보수, 의견수렴 등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평가지표가 활용만족도만 선정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소득증가, 회원증대, 마케팅 등의 구체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업무효율성이 41.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가 스스로가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3-6-4(계속)	디지털어촌구축사업

(해양수산부 / 수산경영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정보화교육 인프라구축 및 정보화어업인 육성으로 어촌정보격차 해소 및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사업추진 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총사업비 : 200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113억원)

○ 사업규모(2011년까지)

- 어업인원격영상교육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31개소
- 어업인 정보화교육 : 113천명
- 어촌정보화사랑방 개설·운영 : 493개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개소)

구 분	'07까지	'08	'09	'10	'11
· 원격영상시스템유지보수	31개소	33	33	33	33
· 어업인 정보화교육	91,000	98,000	103,000	108,000	113,000
· 어촌정보사랑방 운영	493개소	493	493	493	493
· 전국 어업인정보화 경진대회	4회	5회	6회	7회	8회

* 추진계획은 누계수치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3.9	-	24.3	-	-	-	38.2
'05	7,000명 (31개소)	6.9	-	-	-	-	-	6.9
'06	〃	7.0	-	-	-	-	-	7.0
'07	〃		-	7.1	-	-	-	7.1
'08	〃		-	7.2	-	-	-	7.2
'09	〃		-	10				1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3.9	-	7.1	-	-	-	21.0
'05	14,155명 (31개소)	6.9	-	-	-	-	-	6.9
'06	9,966명 (31개소)	7.0	-	-	-	-	-	7.0
'07	10,323명 (31개소)	-	-	7.1	-	-	-	7.1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어업인 정보화교육, 정보화사업 활성화 정도

* '07년 사업계획 : 정보화 교육(7,000명), 활성화 정도(64.6%)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어업인정보화교육	교육인원	명	7,000	10,323	147
	정보화활성화정도	활성화정도	%	64.6	66.3	102.6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어촌지역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어업인의 삶의 질, 소득증대, 복지 증진 등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어촌지역의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수산업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07년에는 완도지역 이목/어룡항로의 일반여객선을 차량운송겸용 여객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도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수송과 생필품 운송으로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였음

○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물량을 정하는 등의 절차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

○ 어민들의 자율적 운영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삶의 질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

○ 기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자율적 운영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새로운 지원사업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어촌 정보 격차 해소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구체적 분석과 성과지표가 필요함

○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적절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이에 따른 정확한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3-3-7-1(계속)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림부 / 정보화기획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도·농간, 산업간 정보화격차 조기 해소

○ 영농과 실생활에 농업정보활용 및 농업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업규모 : '07년까지 농업인 57만명 정보화교육 실시

○ 사 업 비 : '07년 3,085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대학 등 교육전문기관

○ 지원형태 및 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고100%(단, 농협은 50%)

○ 추진내용 : 집합·방문·온라인교육 등 실시

- 집합교육 : 컴퓨터·인터넷활용(단기 기초), 농업정보활용(단기 중급), 경영 SW활용, 홈페이지운영 등(중기), 농업경영정보화(장기)
- 방문교육 : 농업정보119 방문, 이동버스
- 온라인 교육(www.affis.net) : 농업인 교육 이수자에게 재택·반복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70개 과정의 다양한 콘텐츠 운영
- 교육만족도·정보화 역량 조사 및 공모과정 외부평가 등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4,000	14,384				2,050	760	17,194
'05	66,000	2,553				300	261	3,114
'06	61,000	2,766				400	222	3,388
'07	62,000	3,085				450	111	3,646
'08	62,000	2,940				450	83	3,473
'09	62,000	3,040				450	83	3,573

<연도별 시행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4,050	7,842				1,150	396	9,275
'05	67,112	2,217				270	185	2,672
'06	63,724	2,583				354	124	3,061
'07	63,511	3,042				413	87	3,542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 정보화교육	온·오프라인 교육실적	∑교육실적	명	62,000	63,511	102.44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의 평균치 (5등급 척도)	점	4.1	4.14	100.98
	정보화 역량지수	조사결과의 평균치 (5등급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점	59	59.3	100.51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업인의 정보화 구축사업과 정보화 교육사업을 병행해야 농업인이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농촌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단순한 교육지원이 아니라 교육지원의 효과를 측정하여 이를 반영한 교육지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지원은 적절하고 다양한 정보화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일정한 수준과 기간을 설정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자발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정보화교육 관리에 대한 성과가 소득증대, 복지증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가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농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적절한 평가지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3-3-7-3(계속)	농어업 관련정보 제공 확대

(농림부 / 정보화기획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분산된 농업·농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농업인이 영농 및 실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농업·농촌 정보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토록 유도

○ 농림정책·기술정보, 유통가격 등 농업정보와 건강관리, 농촌생활 등 농촌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소비자·학생 등의 이용률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지원조건 : '99 ~ 계속, 국고보조 100%

○ 사업주체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주)다음커뮤니케이션

○ 추진체계

- 농림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정산
-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 및 운영, 예산집행

○ 사업규모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운영 및 32개 공영시장 67품목 유통정보 수집· 제공, 40개 농림유관기관 농업·농촌 정보 수집·분류·가공 제공 등

○ 추진내용

- 영농 및 농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생산·수집·분류하여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을 통해 제공

- 농림 소속/유관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농림분야의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여 green.daum.net을 통해 제공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농림수산정보망(www.affis.net)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 농림지식검색시스템(green.daum.net) 구축 및 운영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9						169
'05	affis.net운영	42						42
'06	affis.net운영 농림지식검색	29						29
'07	affis.net운영 농림지식검색	31						31
'08	affis.net운영 농림지식검색	33						33
'09	affis.net운영 농림지식검색	34						34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1						101
'05	affis.net운영 농림지식검색	41						41
'06	affis.net운영 농림지식검색	29						29
'07	affis.net운영 농림지식검색	31						31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정보서비스	정보서비스 활용율	전년대비 컨텐츠 활용도 증가율	%	10	10.7	107
	이용자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점	75	79	105
	지식검색 유용성	지식검색유용성 만족도 조사	점	75	76	101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됨

○ 중간 모니터링,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여 농업인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됨

○ 1회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의 의견수렴, 유관기관과의 협의회의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참여도가 중요하므로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용자중심의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해야하며 정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업인의 정보화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간 연계가 필요함

○ 교육기관의 시설현황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만족도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률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조사가 개선되지 않고 답보상태인 이유를 규명하여 이를 반영해야 함

3. 개선방안 등

○ 정보유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제4절 농산어촌 복합산업활성화

Ⅰ. 총 평

□ 복합산업팀의 2007년도 평가 대상 사업수는 총 29개임. 이 중 17개 사업을 양적 평가 대상으로 삼았음.

○ 부처별 자체평가보고서의 질적 차이가 심하여 일관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범위 및 농산어촌 주민의 범위 등을 비롯해서 법률에서 취지로 삼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과거보다는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체감하였음.

- 일부 부처에서는 마치 이 특별법의 대상이 농림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지역적 범위도 농산어촌의 마을 정도로 국한하여 알고 있어 해당 부처의 사업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법률과 사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29개 사업은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측면에서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편의상 상대적으로 계량화된 평가 점수에 근거하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경관보전 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도모하였고 사업 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음.

○ 특히, 이들 사업은 해마다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온 사업들이었음.

□ 2007년도에 제시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조치 내지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충실하고 성의 있게 제출한 부처가 있는가 하면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처도 있었음.

○ 모든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지난 점검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금년부터는 소액사업이나 연구사업 등은 질적 평가만을 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비록 양적 평가를 하지 않는 연구사업 등에도 질적 평가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예산사업도 소액사업과 사업비가 큰 사업, 매년 계속 사업과 격년도 계속 사업, 사업 내용에 따라 연구사업, 간접적 성격의 사업, 직접적 성격의 사업 등 평가 대상 사업의 보다 세분화된 중분류와 그에 따른 차별적 평가 툴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에 따라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중복된 성격의 사업이 분절되어 있어서 평가 자체가 어려운 몇 가지 경우가 발견되었음.

○ 가령, 향토산업 시책, 경관 시책, 주택 시책, 도농교류 시책 등 중분류의 내용별 시책에 따라 사업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거나 적어도 평가자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실적을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하는 등의 비효율 문제가 방지되기 어려움.

○ 즉, 복합산업 분과 전체로서의 사업 및 평가의 체계화가 필요함. 이는 추가적인 평가체계 자체에 대한 연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평가 결과가 사업의 내실화를 촉구할 수 있을 정도의 평가 시스템 체계 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목표에 따른 자체 성과지표 설정 지침을 마련

○ 서면 평가뿐 아니라 몇 개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1년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도입 운영

□ 신규로 개발될 혹은 향후 강화가 필요한 사업 영역도 관찰되었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획도 필요함.

○ 경관보전 직불제를 넘어서는 농산어촌 경관 보전을 위한 신규 사업 창출

○ 도농교류 관련 사업들의 체계화,

○ 도시민 농촌 유치 관련 사업 포함,

○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 등

Ⅱ. 평가결과

1. 분야별 평가결과표

코드번호	사 업 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고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80.4	8	중위	
4-1-3-0	농어어업인 고용촉진훈련	74.8	14	중위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89	1	상위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88.5	3	상위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82.6	6	중위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79.8	9	중위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75.3	13	중위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73.2	16	하위	
○	국유자연휴양림				
○	공유자연휴양림				
4-2-1-11	해양관광자원개발	73.8	15	하위	
4-2-2-1	도농교류 페스티벌	75.8	12	중위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89	1	상위	
4-3-1-0	경관보전 직불제	88	4	상위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79.2	10	중위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70.6	17	하위	
○	생태숲조성				
○	자생식물식재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85.4	5	중위	
4-4-2-0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갖기 활성화	82.4	7	중위	
4-4-3-1	도농교류활성화	79.2	10	중위	
합계	17개 사업	80.4			

* 순위는 소규모, 일반사업만 해당됨

2. 평가 상위사업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경관보전직불제 등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도모하였고 사업 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우수하게 나타남.

○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조장하여 주민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을 가시화한 것으로 판단함. 다만, 조성된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사업 완료되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은 지자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만족도도 높으며,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경관보전 직불제는 사업 계획 자체가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하고, 추진 실적 역시 큰 무리 없이 진행됨. 특히 사업 준비과정은 물론이고 대상지 선정, 시행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지조사 및 점검 모니터링 및 관계자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즉시적, 일관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됨.

※ 다만, 이러한 우수사업들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일 뿐이며 사후관리 등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평가결과 보고서에 제시함.

3. 평가 하위사업

□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목표와 절차, 성과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았음.

○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사업은 획일적 시설 조성으로 지역별 특성과 기능의 다양성 미흡, 전문인력 체계 미비, 수목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이해 부족 등 해결을 위한 운영과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됨.

○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은 정책 사업으로서 자연휴양림이 위치한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로의 파급 효과 발휘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됨.

○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 및 성과관리 지표 재고 등이 과제로 지적됨.

※ 다만, 이러한 평가 결과는 경미한 차이로 계량화된 점수에 의해 상대적 순위가 낮으므로 개선할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담당자의 실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님을 밝힘.

Ⅲ. 평가소감

□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확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

○ 일단, 부처 자체 평가보고서의 부실함, 질적 차이 등으로 인해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만큼 자체 평가보고서를 짧지만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 부처의 자체 평가보고서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보다 장기간의 평가가 요구됨. 일부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연계 평가가 불가피한 것도 있음.

○ 전년도 평가 의견에 대한 대응 의견 제출을 강제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지난 점검 평가시 언급된 사항에 대해 어떤 부처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권고를 받아들이는 노력을 한 반면에 어떤 부처는 별다른 언급없이 일상적이고 무성의한 대응을 하는 등 대조적인 사례가 발견됨.

○ 공통적으로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고 그 인과관계가 명확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평가사업의 예산, 내용 등에 따라 사업 재분류 및 양적·질적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복합산업팀 평가 대상 사업들의 시책별 분류와 체계 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일부 사업들 자체의 중복성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동일한 사업성과를 해당 사업의 성과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꽤 많음.

○ 사업의 중복성이 심하거나 혹은 연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장기적으로 기능 조정 및 통합 등이 필요함.

○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별도 추진하였더라도 평가에서는 통합 평가를 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등의 행정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기획된 지 오래 기간이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누적된 사업 대상지가 많아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의 평가를 지속해야 하는지 심각한 검토가 필요함.

4-1-1-1(계속)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환경자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조사 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원천자원으로 활용

○ 추진근거 : 농업 · 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고유한 특산품, 문화, 기술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지원) 및 시행령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09년(4년간)

○ 사업규모 및 사업비 : 20개 지역(시군), 9.3억원 ('07년 2.3억원)

○ 시행방법 : 시험연구비에 의한 자체 연구사업 수행

○ 추진내용

- 농어촌 지역별 향토자원 조사 : 매년 5개 지역(시군)
- 지역 향토자원 중 산업화 유망자원 발굴 및 DB화
- 향토자원 사업화 가치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한 유망자원 발굴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개발을 통한 지자체 향토산업 지원체계 구축
- 조사대상 지자체의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

향토산업육성 기본방향 수립 (농림부)	▪ 향토산업육성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사업대상 선정, 예산지원 등 총괄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산업화 모델 개발 연구 (농촌진흥청)	▪ 향토자원을 조사, 산업화 유망자원 선발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을 개발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 지원
향토산업육성 사업 추진 (지자체)	▪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 선정 ▪ 향토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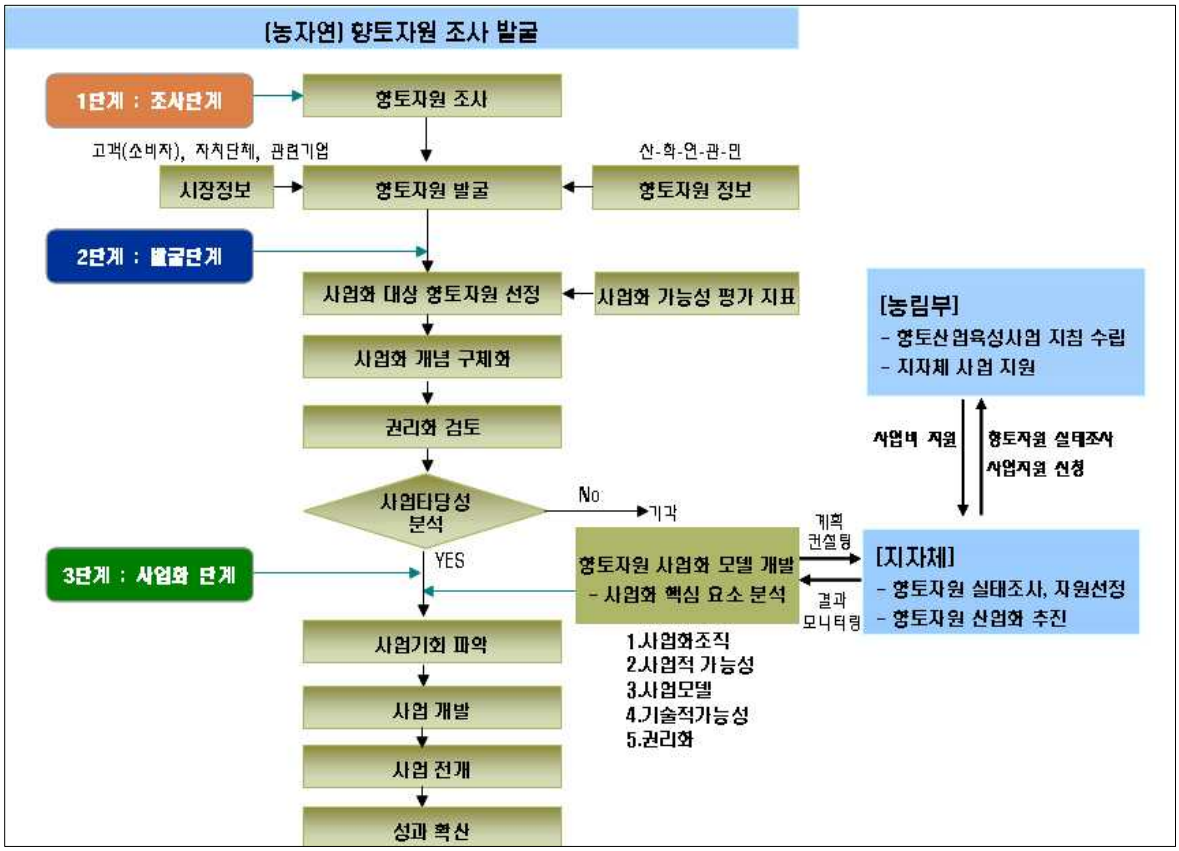

※ 향토자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향토적 전통성과 고유성을 가진 자원으로 시·군·구 지역 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이 있는 모든 자원을 의미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화('06~'09)

- 지역성 및 전통성이 강하고 부가가치성이 높은 자원 조사, 발굴

구 분	계	'06	'07	'08	'09	'10
사업량 (개소)	20	5	5	5	5	-
사업비 (단위:억원)	9.3	3	2.3	2	2	-

○ 지역별 향토자원 우수사례 산업화·마케팅 전략 분석 ('06)

○ 지역별 산업화 유망자원을 대상으로 산업화 지원모델 개발('07~'09)

-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테마 발굴 및 상품 개발, 마케팅, 홍보 등 산업화 지원 모델 개발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구 분	계	'06	'07
사업량 (개소)	12	6	6
사업비 (단위:억원)	5.3	3	2.3

- 당초 매년 3억원의 연구비를 계획하였으나 시험연구비에 의한 기본경상 연구사업으로 과제의 수, 규모 등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데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전체 과제수가 늘어남에 따라 배정액이 감소됨

<연차별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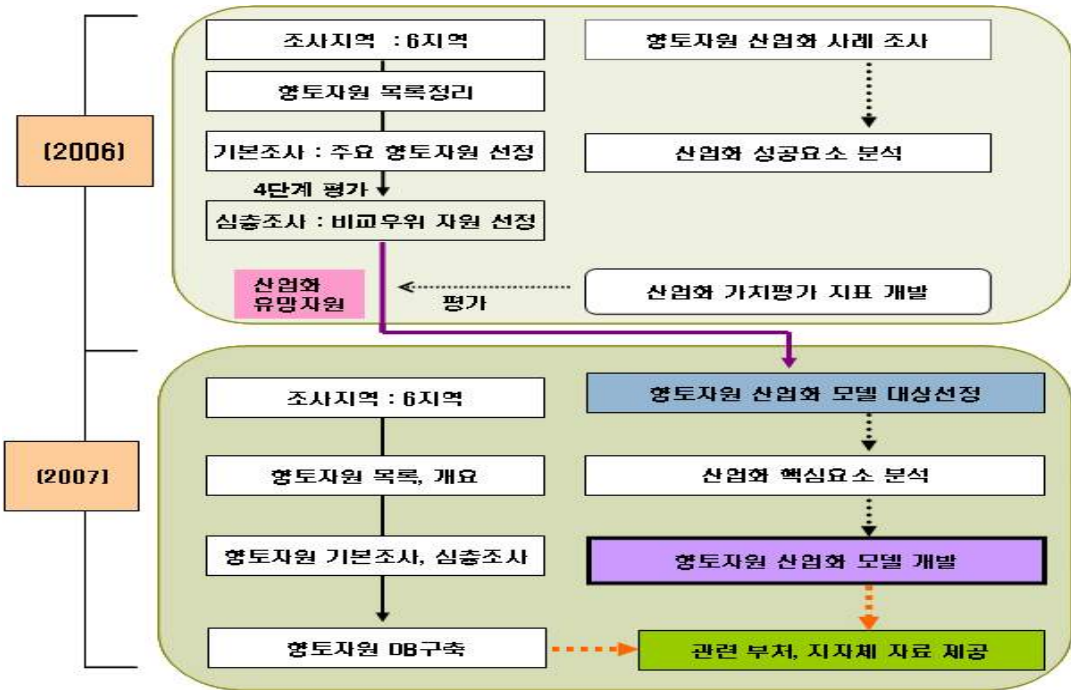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구축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 자원 DB구축수	산업화 유망 향토자원 DB구축수	건	250	252	101

○ 농촌지역 향토 자원 조사·발굴 및 DB화 : 6지역 /계획 5지역

- 조사대상 지역 : 옥천, 연기, 무주, 영광, 밀양, 의성
- DB 구축 건수 :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252건 / 계획 250건

향토자원 목록정리	⇒	주요 향토자원 기본조사	⇒	비교우위 유망자원 선발 및 심층조사
2,262건		1,058건		252건

○ 향토자원 산업화 가치평가지표 개발 : 3영역(향토성,기반성,산업성) 21문항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개발 : 6지역 6개 자원

- 지역별 산업화 모델 대상자원 : 비목, 진천농교, 소곡주, 울금, 반시 등 6종
- 향토자원 산업화 유형분류 : 원자재중심, 제조중심, 서비스중심, 프로젝트형
- 향토자원 산업화 프로세스(3단계: 조사, 발굴, 사업화) 및 사업화 핵심요소 도출(조직, 사업적가능성, 사업모델, 기술적가능성, 권리화)
- 산업화 유형별, 추진프로세스별 핵심요소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Ⅱ. 평가결과

1. 총평

○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움.

○ 사업 목표는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조사·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원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인정됨.

○ 2006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사업부터 향토자원 산업화 가치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등 세부 사업 추진으로 산업화 지원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점은 바람직함.

○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한정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DB구축에 그칠 수 있으며, 산업화 모델개발 또한 특정 지역과 자원에 한정될 수밖에 없음. 향후 많은 지역에서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산업화시킬 수 있도록 유형별로 대상지역을 선정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

○ 민간사업자, 벤처농업인, 마을, 지자체 등 관련 주체들이 쉽게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DB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발신하려는 추가적 노력이 따라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매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화하는데 그치고 있어 전국적으로 지역별 DB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목표로 하는 20개소에 한정된 DB구축에 그칠 전망임.

○ 지역별로 특화된 향토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산업적 활용을 모색하는 발굴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지역내 모든 자원을 DB로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으며, 목적 지향적으로 특정 목적과 사업영역에 초점을 맞춘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발상이 부족함.

○ 농특산물 상품화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 향토자원을 발굴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세부추진사업으로 지역별 산업화 유망자원을 대상으로 산업화 지원모델 개발('07~'09)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함.

○ 향토자원 DB 구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제품 생산, 마케팅, 브랜드화, 지재권 확보 등을 포함하는 산업화 기술 개발에 보다 많은 연구와 성과 창출이 요구됨.

○ 전체적으로 사업 방향을 향토자원을 조사·발굴하여 DB를 구축함은 물론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화하여 지역에 실질적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는 농림부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농진청 향토자원 조사 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업화 단계 연구에서는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향상 점검·평가단 평가결과 등 사업개선 노력이 보임.

○ 산업화 모델을 6가지 제시하였으나 이 가운데 화천군 비목처럼 아직 산업화되지 않는 것도 있으나 서천군 소곡주 등 이미 상품화된 자원을 설정하고 산업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곤란함.

○ 홍보는 '함께하는 농업기술박람회', '어메니티환경설계공모전' 등을 통해 활발히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연구결과인 DB를 누가 어떤 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촌지역 산업화 유망 향토 자원 DB구축수를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2007년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는 우수함(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252건 /계획 250건).

○ 다만, 조사·발굴하여 DB로 구축한 자원 그 자체로는 현장에 반영되어 산업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됨.

○ 세부 사업목표에 '산업화'가 포함된 만큼 성과지표에도 산업화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성과지표로 포함하여야 함.

3. 개선방안 등

○ 사업추진체계상 농림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화 전략을 연구하는 등 관련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따라서 향토산업 육성사업 선정지역과 연계하여 DB구축 및 산업화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임.

○ 향토자원의 산업화는 결국 벤처농업인, 민간기업, 지자체 등 관련 사업주체의 관심과 활용에 달려있는 만큼 이들의 니즈(needs)와 사업화 프로세스(process)를 파악하고 이를 연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함.

○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지 않도록 '09년까지 잔여 연구기간동안 향토자원의 산업화 모델 개발에 보다 많은 예산과 연구 인력의 투자가 배분될 필요가 있음.

4-1-1-2(신규)	향토산업육성

(농림부 / 농촌산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표

-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차 · 2차 · 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전략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2013년

○ 사업비 : 2,141억원(국고보조 1,071)

○ 사업규모 :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 개발·육성

○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권리화 등 S/W 및 시설·장비 등 H/W 분야 포괄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1~3년간 30억원(국고15)

※ 동 사업은 '05.9월 "향토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06.4월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 협의과정을 거쳐, '07년 신규사업으로 신설

3. 연차별 추진계획

○ '07년도 19개, '08년 이후부터 매년 30여개 향토자원에 대해 상품개발 등을 위한 S/W, H/W분에 대한 포괄적 산업화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9		341			197	218	756
'05	-	-	-	-	-	-	-	-
'06	-	-	-	-	-	-	-	-
'07	19	-	43	-	-	38	52	133
'08	30	-	90	-	-	55	62	207
'09	30	-	208	-	-	104	104	41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	-	43	-	-	38	52	133
'05	-	-	-	-	-	-	-	-
'06	-	-	-	-	-	-	-	-
'07	19	-	43	-	-	38	52	133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당초 목표치 대비 실적 100% 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향토산업육성사업	향토자원 개발 향토자원 발굴	개발 건수 발굴 건수	개	19 30	19 30	100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 2, 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전략핵심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에 사업에 착수하였음.

- 2005년 향토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6년 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7년에 신설

○ 2007년에는 19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30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인 바, 총 정책 목표는 200개 자원의 산업화임. 산업화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데, 200개라는 정책 목표를 사전적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사업 시행 이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2007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상향식, 포괄지원을 표방하고 심의회 구성, 토론회 개최, 연구사업 실행 등 바람직한 구조를 갖추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보다 사업이 발전,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도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사업 추진 과정의 단계별 모니터링 지표 및 사업 성과지표 개발이 정책목표와 내용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무엇보다도 '농촌활력증진계획(사업)'의 틀 속에서 이 사업의 정체성과 특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라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여 산업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취지는 적합하다고 판단됨.

○ 사업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상향식 구조, 포괄지원 형태,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 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활동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만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욕구 및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함. 따라서 사업 추진체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이해 당사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참여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평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현재 농촌활력증진계획 등으로 농림부 내의 유사사업들의 연계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의 정체성과 특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 과정에 학계,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향토산업육성심의회'를 구성하여 활용하고 지자체의 건의 및 현지점검, 연구사업 등을 통해 사업 지침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한 점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바람직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함.

○ 그러나 신활력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RIS사업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업만의 독자성이 무엇인지 아직 뚜렷하지 않아 보이며, 그런 측면에서 대 일반 국민, 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정책 홍보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2007년 향토산업육성계획의 주요 내용과 중간 성과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한 사례집 등으로의 정리를 통한 보급, 활용을 고려할만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아직은 사업 추진이 초기에 있으므로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를 논의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시점이라고 판단됨.

○ 다만, 자체 성과지표가 목표 대비 지원건수인 것은 적합하지 못함. 장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이나 성과지표가 다시 개발될 것이라 생각되나, 현재 시점에도 지원건수 이외에 계획의 내용, 중간 성과 점검 내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성과지표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됨.

- 장기적으로 성과지표 개발시에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이 되었다고 저절로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사업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등

○ 사업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이 고안되어야 할 것임.

- 대 국민 홍보, 대 지자체 홍보 등도 필요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개발이 정책목표 및 내용에 적합하게 개발, 적용, 환류될 필요가 높음.

- 사업의 단계별 모니터링 지표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양적, 질적 진척도 및 개선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정도의 지표
- 사업의 성과지표는 이 정책사업 자체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지표로서 세부사업별로, 지자체별로, 정책사업 전체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재의 성과지표로 들고 있는 수준은 전면 재편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았음.

○ 2007년에는 농촌활력증진계획 추진지침이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계획은 사업계획의 병렬묶음이지 하나의 사업으로서 체계화시키는 계획으로는 부족한 상태임. 그런 만큼 2007년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으로서의 독자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음. 이에 대한 사업 정체성과 특성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으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하는 경우를 위한 대비책 강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4-1-1-3(신규)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향토음식 소득자원화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고유한 전통식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향토음식을 통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

○ 추진근거

- 농업 · 농촌기본법 제8조(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농촌진흥법 제2조2항(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 농촌진흥법 제13조1항(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 지역에 고유하거나 문화, 기술, 특산품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 및 계승에 대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

○ 사업량 및 사업비 : 160개소 56억원 (국비 50%)

○ 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조율 100%)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시군 농업기술센터, 향토음식 개발·활용이 가능한 농촌체험 마을 또는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시군 농업기술센터> : 향토음식의 보전 및 명품화 기반조성 지원

· 사업대상자 교육 및 지역 향토음식 자원화 기술 지원, 지역 연계 네트워크 운영

<농촌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및 농가, 공동사업장> : 향토음식의 체험상품화 개발 및 운영, 기반조성

· 지방색을 살린 지역의 전통요리법에 따른 향토음식 보완· 개발, 체험상품화 개발 및 운용, 농업활동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10개소('07), 7억원(국비·지방비 각 50%)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	10.5				10.5		21
'05								
'06								
'07	10	3.5				3.5		7
'08	10	3.5				3.5		7
'09	10	3.5				3.5		7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3.5				3.5		7
'05								
'06								
'07	10	3.5				3.5		7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 10개소**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장 개설 건수)

- **달성도 : 100%** (10개소)

※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은 **'07년도 신규사업**으로 '07년도에는 사업장, 향토음식, 교육프로그램 등 주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본격적인 성과는 '08년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외부 전문평가기관 의뢰 결과 - 스트라베이스>

○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소 개설건수는 목표(10개소) 대비 100%(10개소) 달성

○ 본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총 133백만원으로 사업소당 평균 24백만원임

○ 향토음식 아이템 개발은 131건 개발 목표대비 117.6%(154건) 달성

○ 향토음식 솜씨보유자 발굴 및 양성실적은 목표(70명)대비 67%(47명) 달성

○ 향토음식 교육프로그램 운영건수는 목표(569건)대비 118%(672건) 달성

○ 향토음식 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은 목표(6,213명)대비, 63.9%(3,972명) 달성

○ 향토음식 홍보책자 발간실적은 목표(21종)대비, 104.8%(22종)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사업장 개설 건수	개설된 사업장 수	개소	10	10	100.0%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소득창출액*	사업소당 평균 사업소득액	백만원		2,421	
	향토음식개발 건수	발굴(개발)된 향토음식 아이템	건	131	154	117.6%
	향토음식 솜씨보유자 발굴실적	양성된 향토음식 솜씨 보유자	명	70	47	67.1%
	향토음식 교육프로그램 운영건수	향토음식 전수교육 프로그램 운영건수	건	569	672	118.1%
	향토음식 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향토음식 전수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명	6,213	3,972	63.9%
	향토음식 홍보책자 발간 실적	홍보(조리방법 등 수록)책자 발간건수	종	21	22	104.8%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당 사업은 우리나라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전통음식의 제조기술 보전과 전수, 체험자원화 및 소득상품화를 시도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예전의 향토음식맥잇기 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후속사업인 까닭에 사업의 추진절차와 기대효과 등이 무리 없이 전개되었음.

○ 이러한 사업추진 성과는 향토음식개발 및 자원화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높은 만족도(전체의 83%)와 함께 당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을의 소득증대 수치(개소당 평균 24.2백만 원)로 알 수 있었음.

○ 그러나 향토음식 솜씨보유자를 발굴하여 양성하는 부문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가용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이를 체험상품화하고 이어서 식재료를 현지 생산하는 등 일련의 실천적 계획으로 평가함.

○ 종래의 향토음식맥잇기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한 후속사업으로 현실적 합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됨.

○ 특히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인력(지도사)이 본 정책의 최종 소비자인 농업인을 현장에서 지도함으로써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었음.

○ 그러나 당 사업이 개소당 7천만 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인 까닭에 본격적인 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앙(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마을(또는 법인)에 이르는 추진체계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장점이라고 보았음.

○ 사업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려 하였으며, 현장애로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임.

○ 그러나 농업인을 현장에서 지도할 담당 공무원의 관련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사전 교육이 다소 미흡해 보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사업만족도 값(10점 만점에 7.4점)이 대체로 양호하였음. 또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개소당 24백만 원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향토음식 전수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목표치의 63.9%에 불과하였음. 향후 교육참여율 확대를 위한 대책 수립이 요망됨.

○ 또한 지원사업비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감안할 때 향후 예산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일종의 인센티브로써 마을식당의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후속지원책을 마련하면 좋겠음(소요예산 확보 요망).

○ 비교적 저예산 사업임에도 우수한 사업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량 및 예산지원을 증대시키는 것이 좋겠음.

○ 또한 당 사업은 인적자원기반조성이 필수이므로 향토음식 기능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교육사업과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4-1-2-0(계속)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농림부 / 농촌산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도시기업·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88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4 ~ 2014년

○ 사업비 : 10,152억원

- '07까지 6,934억원(보조 4,276, 융자 2,658)지원

○ 사업규모 : 400개소('07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328개소)

○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융자(사업시행 주체 : 시장 · 군수)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등 지원

- 지원조건 : 평당 정액지원

(단위 : 천원/평)

구 분	일 반 농어촌	추가지원 농 어 촌	우선지원 농 어 촌	전문단지 등	
				일 반 농어촌	추가·우선 농 어 촌
· 국비보조	15	50	70	30	70
· 국비융자	10	20	20	20	20
· 지방비보조	5	10	10	10	10
합 계	30	80	100	50	100

* 융자 : 연리 5.0%(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잔여사업비는 지방비로 충당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사업비 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조성개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2	34	1,852			1,637		3,523
'05	8	34	420	-	-	489	-	943
'06	8	-	260	-	-	298	-	558
'07	6	-	314	-	-	187	-	501
'08	10	-	428	-	-	563	-	991
'09	10	-	430	-	-	100	-	53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조성개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융자)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	34	994	-	-	974	-	2,002
'05	8	34	420	-	-	489	-	943
'06	8	-	260	-	-	298	-	558
'07	6	-	314	-	-	187	-	501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까지 농공단지 354개 조성(최종)을 목표로 **'07년 329개 조성**
-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공단지조성	농공단지 조성율	농공단지조성 개수	단지	329 (7)	328 (6)	99.7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기업과 공장 등을 유치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84년 이후 도입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사업 목적은 이전의 농촌지역 상황을 잘 반영하여 기획되었으며 사업 물량이나 실적 등의 측면에서 크게 무리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여러 관련 부처 및 기관간의 수평적 파트너십 및 시·도, 시·군과의 수직적 파트너십도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 농촌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유형 구분 및 차등 지원 폭 조정,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 지표 조정, 사업 추진 과정의 심층적 조사와 평가를 통한 사업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기업과 공장 등을 유치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된 이 사업 계획의 적절성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됨. 더욱이 매년 10개 정도의 물량 공급을 목표로 삼고 있어 계획이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우려를 차단시키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유형 구분을 통해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점도 타당하다고 평가됨.

○ 그러나 사업이 기획되던 198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촌지역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 추진 환경도 많이 변화하였음. 따라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 수요의 파악과 농촌지역 유형 구분 자체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여러 부처 및 관련 기관이 함께 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동시에 시·군과 시·도를 통해 사업이 직접 추진되는 등 수평적, 수직적 파트너십이 잘 갖추어진 사업으로 보임.

○ 그러나 여러 기관이 함께 사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됨. 즉 사업의 주무 부처가 총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하는 타 부처들이 필요한 역할을 지원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의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임. 가령, 농가 및 농촌 소득 증대라는 당초 사업 목표에 사업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 조성과 함께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는 농림부의 지원 영역이 아니므로 원활한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업 추진 일정의 경우 농공단지 지정 이후 평균 소요기간이 33개월인데, 이 중 지정소요 및 조성준비를 위한 기간이 16개월로 지나치게 소요기간이 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절차 완화를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농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성과가 높다고 판단됨.

○ 그러나, 사업 명칭에도 명시하고 있는 “지역부존자원”을 어느 정도 활용하여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지, 관련되는 타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또한, 사업성과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를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의 지표로 삼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사업성과 관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업성과 목표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122개 시·군 낙후도에 대한 구분은 최근의 관련 지표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이 필요하며, 일반농어촌/추가지원농어촌/우선지원농어촌에 따른 차등 지원 폭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지원 농어촌은 낙후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인데 지원액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농공단지 개발의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

○ 사업의 성과목표는 사업 목표치 대비 조성률로 측정해서는 곤란함. 본래 이 사업의 목표가 있는 만큼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치로 전환해야 함.

○ 계량화된 지표 이외에 다양한 사례를 통한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성과 등을 자체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사업 물량의 확대, 사업 추진 절차상의 규제 완화, 현지민 직업교육 과정 등과의 연계, 기 조성된 사업대상지 리모델링 등 실질적인 사업 관리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나아가야 함.

4-1-3-0(계속)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 직업능력정책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 · 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사 업 비 : 12억원

○ 사업규모 : 480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보조율 100%)

○ 지원조건 : 훈련실시 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소정 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09	68	1.5					69.5
'05	1,000	13						13
'06	864	13						13
'07	515	12	1					13
'08	515	13	0.2					13.2
'09	515	17	0.3					17.3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36	38	1					39
'05	716	13						13
'06	520	13						13
'07	-	12	1					13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취업률	(조기 취업자수+수료후 취업자수)/(조기 취업자수+수료인원)×100	%	52.1	43.5	83.5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대만 등 유사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국가에 비해서도 농외소득 구성비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우리 농촌의 실정에서 농어업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사업 목표는 매우 타당함.

○ 그러나 전년도(2007년) 평가시 제시되었던 총평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또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가 언급되지 않아 평가단의 평가의견을 무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전년도 평가의견이 아직도 유효하므로 다시한번 제시하니 차년도 자체평가보고서에서는 평가의견의 반영 상황을 명쾌히 제시해 주기 바람.

- 사업실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필요함. 현재로서는 실재적으로 새로운 취업욕구가 있는 농업인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가 불분명
- 직업훈련 이후 고용과 연계되도록 하는 실질적 연계가 필요함. 계획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나 계획량 설정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개설된 훈련과정이 훈련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확대함은 물론 직종을 다양화 하는 등 훈련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함
- 국민 혹은 이해 당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 홍보가 요구됨

○ 보고서의 세부항목별 기술 내용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작성되지 못하고 이중 삼중으로 중언부언되고 있어 본 평가보고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의 있게 작성되었는지 의심스러움. 이렇게 농촌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중앙부처의 성의가 담보되지 않고 부처 자체의 정책시행 논리에만 집착할 때 정책의 구체적 성과 발현은 요원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업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사업계획의 취지는 타당함.

○ 그러나 IMF 경제위기는 이미 극복되고 이제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과거 지향적 극복논리에 바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형식 논리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예를 들면,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새로운 농촌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함.

○ 훈련과정이 취업과 창업에 적합한 모든 과정이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소기의 투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훈련 항목 또는 예시적 메뉴 제시를 검토하여야 함.

○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훈련과정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의 직종별 고용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가능하면 사전에 취업처의 취업수요와 연계하여 과정내용을 설계한다면 훨씬 더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사전 조사 및 계획이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현행 추진체계는 훈련기관 지정은 지자체가, 훈련과정은 지방노동관서가 승인하고 있으나 이렇게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의도된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적절한 훈련과정이 선정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있는 능력있는 훈련기관이 일관성있게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따라서 훈련과정 선정과 훈련기관 지정 추천권을 지자체가 갖고 지방노동관서는 승인권을 갖는 방식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훈련과정 승인을 먼저하고 승인결과를 받아 지자체가 훈련기관을 지정하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실시상황에 대해 매월 모니터링하고 최종정산 후 문제점 및 부진사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훈련생을 대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어떠한 개선대책이 강구되고 그에 따라 지자체와 훈련자의 만족도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전년도 평가에서 사업예산의 배분기준이 적절치 못하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뚜렷한 이유가 제시되어있지 않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2007년도 고용촉진훈련 모니터링 결과 훈련생들의 사업만족도는 4.07(5점 만점)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본 사업의 성과로 사료됨.

○ 성과목표치를 3개년도(2004-06) 취업률 평균치를 사용한 것은 현실적인 지표개발의 한계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으나 목표가 갖는 미래지향성의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직업훈련분야의 목표치를 참고하고 본 사업의 추진의지를 담아 의도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전년도에 제시하였던 의견인 중도 포기자들을 성과지표에 고려하여야 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신중이 기해질 것이므로 성과지표의 분모항은 <조기취업자수+수료인원>에 <최초입학생수>로 변경되어야 함.

○ 금년도 성과는 43.5%로서 목표치 52.1%에는 상당히 미달하고 있으나 어려운 취업여건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임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3. 개선방안 등

○ 전년도 평가시 제시되었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과거의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년도 점검평가시 제시되었던 의견들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야 함. 그러한 관점에서 본 사업의 특수성을 들어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진정한 사업발전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음.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농어업인의 직업훈련도 어떻게 방향전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농촌지역이 급속도로 다문화 가구화 함에 따라 이민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이들 이민여성들의 경제적 능

력이 제고되지 않으면 농촌가구의 사회적 안정을 기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상당수의 이들이 이혼하거나 아니면 이촌하는 현상을 막기 힘들기 때문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차원의 농업관련 교육훈련비가 수백억원인데에 비해 농외취업훈련부문에서 거의 유일한 본 사업의 사업비 13억원은 너무 작은 규모이므로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함.

○ 농촌지역 자체의 또는 접근성이 좋은 인접 및 도시지역의 일자리 수요와 연계되어 농촌주민의 일자리 공급가능 분야 및 인력규모가 균형을 이루어야 본 사업의 최종적인 성과가 고양될 수 있으므로 지역단위에서 일자리 수급예측을 체계적으로 시도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4-2-1-1(계속)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림부 / 농촌산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주40시간 근무제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복원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2017년

○ 총사업비 : 1,276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274억원) *국고기준

○ 사업규모 : 850개

○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지원조건 : 마을당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시장·군수

○ 지원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 조성

· 농촌체험시설 : 체험농장 조성, 산책로, 캠핑장 등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민박, 정자, 주차장 등
·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조성, 빈집정비 등
· 기타 S/W관련분야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부)	*각 시도와 시군에서 홍보
↓	
마을협정체결 및 사업계획수립(마을)	
↓	
대상지 신청(마을→시군→시도)	
↓	
대상지 선정(시도)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지 선정 *농림부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시행준비 (마을, 시군)	*선정마을의 대표자 및 주민교육, 견학 등 사업추진능력 구축, 컨설팅 지원 *농림부에 결과 보고
↓	
사업시행계획 수립 (마을)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행정지원계획 등 수립
↓	
사업시행 승인 (마을→시군↔시도)	*농림부에 사업승인내용 보고
↓	
사업 시행(마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 검정·정산 등 사무처리
↓	
체험마을 운영 (마을), 추진상황점검 및 사후관리 (시·군) 사후점검·관리 및 평가(농림부)	*매년사업추진 점검(농림부, 지자체) *마을홍보 및 주민교육, 추가 컨설팅 등 지원 *사업추진 점검 및 평가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3		363			362		725
'05	47		47			47		94
'06	67		67			67		134
'07	84		84			83		167
'08	90		90			90		180
'09	75		75			75		15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8		198			197		395
'05	47		47			47		94
'06	67		67			67		134
'07	84		84			83		167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 목표치 대비 **102.2% 증가**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매출액 : 목표치 대비 **110.9% 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마을 방문객 수	총 방문객 수	천명	1,544	1,579	102.2
	농촌관광 매출액	총 매출액	억원	210	233	110.9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사업목표로 삼고 있으며 도시민의 참여를 매개로 농촌의 소득증대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임.

○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예산의 투입이 끝난 후에도 체험마을로서의 경영이 지속가능하도록 함이 중요한바, 주민 역량 강화와 지도자 양성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함.

○ 목표대비 성과가 수치적으로는 달성되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실질적 성과를 좀 더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체험 수요의 증가에 따라 농촌의 기능과 활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업의 추진 동기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됨.

- 다만,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단순히 “관광”으로 정의한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판단됨.

○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음.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단계별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를 구현하였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서 주민의 능동적인 사업 참여와 자체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사업의 계획, 집행시 민간전문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업시행이 보다 원활히 수행되도록 보조함이 바람직함.

○ 사업 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각종 협의 및 위원회 개최의 노력이 엿보임. 다만,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타사업과의 연계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임.

○ 사업에 관한 홍보를 서적, 신문, 공중파,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목표치에 접근하였으며, 사업으로 인한 마을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 당초 목표했던 각종 성과지표를 실적치가 상회하고 도시민의 주5일제 근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비해 목표치를 더욱더 높이거나 질적인 계량지표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농촌체험의 본질을 관광으로 보는 것보다는 도시민의 농촌문화체험으로 설정함이 타당함. 이를 사업 추진 및 홍보 과정 등에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성과지표에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타사업과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하여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마을 운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사업비가 마을당 2억 원으로 비교적 예산이 적어 공간환경 조성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마을공동의 농촌체험 기반시설을 건립하는데 보다 우수하고 지속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등의 용역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입찰 체계를 마련함이 필요함.

○ 이미 상당한 수의 마을이 육성되었으므로 대상 마을들을 유형화하여 효과적으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4-2-1-2(계속)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농촌전통자원의 발굴 활용으로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추진근거

- 농업 · 농촌 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및 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 교류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2009년 (마을단위 2년)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 마을

- 『②-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설명 참조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보조율 100%)

○ 추진내용

- 마을 고유의 테마 및 마을별 7거리 자원의 체계적 발굴
- 하드웨어 측면 : 체험 · 학습시설, 편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마을 고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주민교육, 소득자원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2 ~ '07) 131마을, 113.9억원(국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5		134.8			135.4		270.2
'05	21		20			20		40
'06	31		25.2			24.8		50
'07	34		32.7			32.3		65
'08	39		37.4			38.8		76.2
'09	-		19.5			19.5		3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5		77.4			76.6		154
'05	20		19.5			19.5		39
'06	31		25.2			24.8		50
'07	34		32.7			32.3		65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 11.6%** ('03년 KREI 농촌관광 연간 수요예측 결과)
- **실 적 : 17.1%** ('07년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평가 결과)

※ 외부 전문평가기관 의뢰 실시 - ㈜ 포애그컨설팅

- **147.4% 목표대비 초과달성** - 농촌관광 인지도 향상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농외소득 증가율	평가마을의 전년도 대비 농외소득 증가율	%	11.6	17.1	147.4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 지향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은 이 사업의 강점으로 평가됨.

○ 타 사업에 비교하여 매우 적극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 점은 잘한 점으로 평가됨. 특히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는 물론 현장의견 모니터링(지방단위 자율 평가회, 워크숍 등)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지 못하여 '09년으로 사업이 종료됨은 아쉬운 점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시민 여가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도농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는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비전에 적합함.

○ 사업 계획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업 추진시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산어촌 체험마을 관련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회 구성,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체계도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구성된 일관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소속 기관의 연구와 지도협력 등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형식적인 모니터링이 아니라 매년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부문별로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연찬회, 세미나를 실시한 점은 잘된 점으로 평가됨.

○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우수지도자 활동보상 실시,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사업('08년 20개소 지원 예정) 등 신규사업화 한 점은 평가할 만한 사항임.

○ 2007년 예산 집행실적은 100%로 양호하며, 2008년 예산 확보 또한 73개소 76.2억 원으로 양호함. 사업추진 일정도 당초 계획대비 160개소를 10개소 초과 달성하는 등 원활히 추진되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지원마을이 방문객 및 사업소득 측면에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는 등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활성화 효과가 실제 가시화되었으며, 방문객 대상 사업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도 목표치인 11.6%를 상회하는 17.1%로 양호함.

3. 개선방안 등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은 2009년 종료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촌관광을 접목하여 사업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새로운 농촌지역 활성화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정된 170개 마을에 대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문화관광부 / 지역문화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적 및 기대효과

- 5천년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의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꾸고
-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등 정주만족도 제고

○ 사업추진방향

-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
-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역사마을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

○ 사업추진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참여정부 문화비전(창의한국) : 지역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추진
- 문화관광부 업무보고('05.4)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5년(2004~2009년) / 1개 마을당 3년

○ 사 업 비 : 240억원(기금 155억원, 지방비 85억원)

- 1개도 30억원(기금 20억원, 지방비 10억원) / 경북, 경기는 15억원

○ 사업규모 : 9개도 13개 마을 조성

○ 지원주체 : 문화관광부

○ 보조사업자 : 한국문화원연합회(문화·역사마을가꾸기 심의위원회)

○ 간접보조사업자 : 지방문화원(문화·역사마을가꾸기 지역추진위원회)

○ 추진방법 : 민간보조사업

○ 추진내용 : 13개 마을을 선정하여 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경북 안동 완료 / 경기 안성 등 12개마을 추진중)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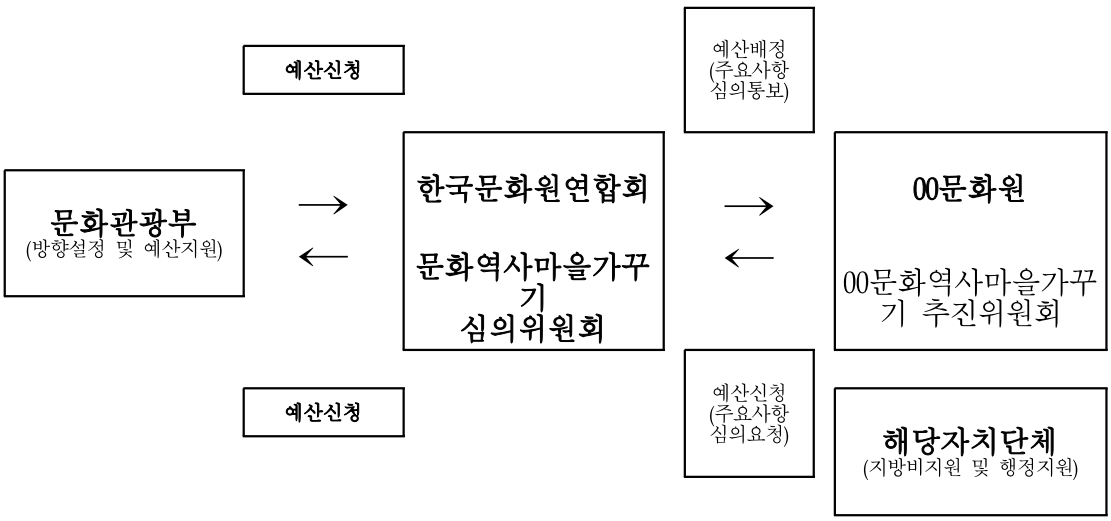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5,500	8,500		24,000
'04	1				1,000	500		1,500
'05	6				3,000	1,500		4,500
'06	4				3,500	1,750		5,250
'07	8				2,250	1,425		3,675
'08	7				3,000	1,500		4,500
'09	6				2,750	1,825		4,575

※각 사업지역 추진단계별 지원(예)서귀포 '05년5억원, '06년15억원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연 도	추진계획
2004	○경북 안동 군자마을 조성사업 착수 ○전남 영광 효동마을·제주 서귀포 법환마을 선정
2005	○전남 영광 효동마을· 제주 서귀포 법환마을 조성사업 착수 ○강원 원주 회촌마을·강원 강릉 학산마을·충북 서천 동자북마을·경남 통영 문어포마을 선정 및 조성사업 착수 ○전북 정읍 원촌마을·전북 고창 사등마을·경남 의령 입산마을 선정
2006	○전북 정읍 원촌마을·전북 고창 사등마을·경남 의령 입산마을 조성사업 착수 ○충북 충주 목계마을·충북 진천 보련마을 조성사업 선정
2007	○경북 안동 군자마을 사업완료 ○충북 충주 목계마을·충북 진천 보련마을 조성사업 착수 ○경기 안성 덕봉마을 선정 및 조성사업 착수
2008	○강원 원주 회촌마을, 강원 강릉 학사마을, 충남 서천 동자북마을, 전남 영광 효동마을, 경남 통영 문어포마을, 제주 서귀포 법환마을 사업완료
2009	○경기 안성 덕봉마을, 충북 충주 목계마을, 충북 진천 보련마을, 전북 정읍 원촌마을, 전북 고창 사등마을, 경남 의령 입산마을 사업완료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9,750	5,175		14,925
'04	1				1,000	500		1,500
'05	6				3,000	1,500		4,500
'06	4				3,500	1,750		5,250
'07	8				2,250	1,425		3,675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7년도는 경북 안동을 제외한 대부분 마을지역에서 조성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므로, 사업목적이기도 한 주민정주만족도 평가는 전체 사업대상마을보다는 사업완료된 경북 안동 군자 문화역사마을을 평가하였음.
- 마을주민들의 자생적 마을운영, 관리 등 훈련부족 및 가시적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진척도를 따져 '06년 목표 50%에서 상향조정된 60%의 목표치를 계획했으며,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계속적인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한 사업이해도 및 자생적 능력 향상으로 주민만족도는 목표치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문화역사마을 조성	주민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	60	70	117%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은 문화, 역사 자원이 풍부한 마을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역사마을로 가꾸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가짐.

○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한곳의 환경조성 공사가 종료되어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 마을은 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 단계임.

○ 이 사업의 특징인 중앙, 지방, 보조사업자와의 협력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 중요함.

○ 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의 유무형 자원의 가치 상승과 주민의 역량 강화 효과가 결합되어야 하는 만큼 단시간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 환경조성 공사가 종료된 마을이 자생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마을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마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래 목적한 바대로 마을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의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역사마을로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문화적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이는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본질에도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됨.

○ 년차별 추진계획은 교육, 기본계획, 실시계획, 환경조성, 마을운영, 관리로 추진 체계가 단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립되어 있음.

○ 마을단위의 추진위원회와 사업을 집행하는 전국문화원연합회(심의위원회)의 협조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임.

○ 마을 가꾸기에 관련된 문화, 역사, 건축, 관광 등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제고하였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은 타사업과 구분되는 효율적인 집행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사업 추진이 전국문화원연합회의 행정력과 집행력에만 의존하고 있어, 전국문화원연합회(심의위원회)의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집행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사업 추진시 타부처의 유사 사업과의 연계성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시화해낼 필요가 있음.

○ 지방문화원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가 민간전문가의 참여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문화원의 역량과 구성원이 각 지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의 역량에 따라 사업 집행의 질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음.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조율이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1차로 시설물이 완공된 군자마을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성과를 통해 방문자수와 마을소득이 증가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상승함.

○ 환경조성 공사가 착수된 곳이 2개소이며 나머지 10개소는 기본계획 혹은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려면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3년 후가 될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등

○ 사업의 목표인 역사, 문화적 소재를 단지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사업의 본질을 다소 훼손시킬 수 있는 표현임. 마을 가꾸기,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주민의 자긍심 등을 강조하기 바람.

○ 사업추진의 실행 조직인 전국문화원연합의(심의위원회) 인원보강 등 역량 강화 조치가 필요함.

○ 환경조성 공사 완료 후에 지속가능한 문화역사마을이 되기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지도자 교육 등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선행된 사업의 경험을 공유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함.

4-2-1-4(계속)	어촌체험마을 조성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 도모

○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 제공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 ~ '13년(13년간)

○ 사업 규모 : 112개 어촌체험마을('07년까지 87개)조성

○ 사업주체 : 시장 · 군수

○ 지원규모 : 개소당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증·감하되, 기본계획에 의한 투자금액 이내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국비50%+지방비45%+자담5%)

○ 추진체계 : 사업신청(마을) → 마을선정(시·군, 시·도) → 개발계획 수립(시·군) → 기본계획 협의(시·도→해양수산부) → 예산지원(해양수산부→시·도→시·군) → 사업시행 및 어촌체험마을 운영(시·군 및 마을)

○ 추진내용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의 관광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컨설팅, 실시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팜플렛 제작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9개소		205			184	20	409
'05	18개소		55			50	5	110
'06	18개소		69			62	7	138
'07	11개소		41			36	4	81
'08	8개소		30			27	3	60
'09	4개소		10			9	1	2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7개소		165			148	16	329
'05	18개소		55			50	5	110
'06	18개소		69			62	7	138
'07	11개소		41			36	4	81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체험객수, 체험소득

* '07사업계획 : 11개 마을 조성 41억원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촌체험마을 조성	체험객수	체험마을 체험객수	천명			
	체험소득	체험마을 체험소득	백만원			

* 주) 목표치 및 실적 미 작성사유 및 제출일정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07년부터 사무장 채용지원, 전문가 컨설팅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세부지원사업을 다수 발굴하여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됨.

○ 어촌체험마을별로 차별화된 사업모델(business model)과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각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사업계획 수립시 예비선정제를 도입하여 마을선정 전에 주민교육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은 마을의 자율적인 추진역량을 배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시도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체험·휴양·관광을 접목하여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려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며, 이는 삶의 질 향상 계획 비전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07년 3개 시도에 11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01년부터 '13년까지 112개소의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전체 계획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계획 수립시 예비선정제를 도입하여 마을선정 전에 주민교육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은 잘된 점이라고 판단됨.

○ 1마을 1전문가 컨설팅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별로 특화된 컨설팅을 실시('07년 13개 마을)한 점은 바람직하며, 우수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홍보하는 등의 사업도 바람직함.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 법적 조치사항을 사전 협의후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선정대상 마을에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리더들이 사전에 교육을 이수토록 한 것은 잘된 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성과가 일부마을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이 여전한 것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그동안 예산이 배정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던 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07년부터는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 점은 잘된 점이라고 보았음.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중간 모니터링과 자체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의견 모니터링(지방단위 자율 평가회, 워크숍 등)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07년부터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1마을 1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체험마을별 홈페이지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어촌체험마을 리더 전문교육비(교육비, 여비, 숙박, 식비 등)를 전액 지원한 점은 교육 참여도를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으나 리더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북돋운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제고할 여지가 있음.

○ 대국민 홍보를 위해 박람회 참가, 어촌체험수기 공모, 민간 주도의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 점은 잘된 점으로 평가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06년 방문객수를 성과지표로 하였으나 체험마을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 관광객이 있어 사업효과 검증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07년부터 체험객수(마을방문 체험프로그램 이용 고객수) 및 체험소득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점은 잘된 점이라고 평가함.

○ 실적 취합에 있어 어촌계장이 연말에 임의로 추정 산출하던 데서 벗어나 ’07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대장으로 작성한 통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이 같은 시스템 변화로 자료제출이 늦어져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본 평가에서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없음.

3. 개선방안 등

○ 어촌체험마을은 유사한 환경과 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마을별로 유사한 어촌체험 프로그램, 식사(횟집) 제공 등으로부터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임. 따라서 마을별로 차별화된 사업모델(business model)과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각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 추진 주체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더교육을 포함하여 일반 주민들을 위한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현재 건물 1동 지어서 횟집·민박 중심의 체험시설을 운영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없지 않음)하는 것이 바람직함.

4-2-1-5(계속)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촌에 대한 지원을 소득·관광기반 중심으로 전환, 지원함으로서 어업외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추진 근거 : 어촌 · 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09년

○ 총사업비 : 1,043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336억원)

○ 사업규모 : 개소당 50억원(7개소), 60억원(11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Matching Fund)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주체 : 시 · 도지사(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권역)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11)		370			370	0	740
'05	(1)		1			1		2
'06	(4)		35			35		70
'07	2(8)		120			120		240
'08	1(11)		79			79		158
'09	4(11)		135			135		27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권역)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		156			156	0	312
'05	(1)		1			1		2
'06	(4)		35			35		70
'07	2(8)		120			120		240

*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사업기간내 사업진척율(예산지원율)

* '07사업계획 : 10개소(계속사업 8개소) 120억원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촌어항관광 개발	10개소 사업비지원	예산지원율	%	100	100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어촌관광 활성화사업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사업이나,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지 않은 하드웨어 사업은 사업성과를 가시화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세부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현장에서의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매칭펀드 형태의 국고보조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됨.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은 중앙정부가 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해당 지자체 주관 하에 실시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체적인 경영능력을 갖추도록 관련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어장축소 및 어업자원 감소 등의 현실에서 어촌관광과 같은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 목표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어촌관광을 접목하여 어촌을 체험, 레저 숙박, 경관감상 등이 가능한 체재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 측면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당초 기대한 사업목표를 가시화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어촌·어항복합공간의 경우 개소당 50억 원, 어촌관광단지형의 경우 개소당 60억 원 규모의 사업임에도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하고 설계용역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정도의 주민참여로는 사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어촌관광 활성화사업 역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처럼 사업주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주민의 추진역량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배양하기 위한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앙정부(기본계획 수립)와 사업을 집행하는 시행주체가 분리(실시설계 용역은 해당 지자체 주관하에 실시)되어 있는 등 단계별로 상호 긴밀히 협의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07년은 실시설계 단계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중간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즈음에 주민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보았음. 또한 계획수립시 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참여가 부족할 것으로 평가됨.

○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러한 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분담금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는 실정
-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재정 적기 확보를 위해 균특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해양친수공간, 체험시설, 어민소득시설 등을 도입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처럼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완료된다고 하여도 어촌마을(주민)이 자체적으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체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조성된 시설은 골칫거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 사업성과지표로 제시한 '국고보조금 지원율'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궁극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의 어촌관광 활성화 정도를 측정·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등

○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에 따라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사업임. 그러나 '어촌관광'은 '서비스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지 않은 하드웨어 사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하여 함께 결합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집행율이 저조한 것이 본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고, 부지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함.

○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매칭으로 20~30억 원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7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은 20% 내외임).

○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체적인 운영전략과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 나가도록 관련 세부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함.

4-2-1-6(계속)	산림휴양공간조성

(산림청 / 산림휴양정책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제20조(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 사업추진 목표

- 급증하는 국민의 휴양수요에 대처하고 어디서나 쉽고 즐겁게 쉴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을 '17년까지 180개소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8 ~ 계속

○ 사업주체 :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추진 내용

- 지원대상 : 국가 및 지자체
- 사업규모
  - 신규설계 : 6개소(국가 2, 지자체 4)
  - 조성 1년 : 6개소(국가1, 지자체 5)
  - 조성 2년 : 6개소(국가2, 지자체4)
  - 보완사업 : 38개소(국가 18, 지자체 20)

- 지원조건
  - · 국유자연휴양림 조성(30억) : 국가 100%
  - · 국유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100%
  -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30억) : 국가 70%, 지자체 30%
  - · 지자체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50%, 지자체 50%
  - · 지자체 산림욕장 조성(4억) : 국가 50%, 지자체 50%
- 사업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 사업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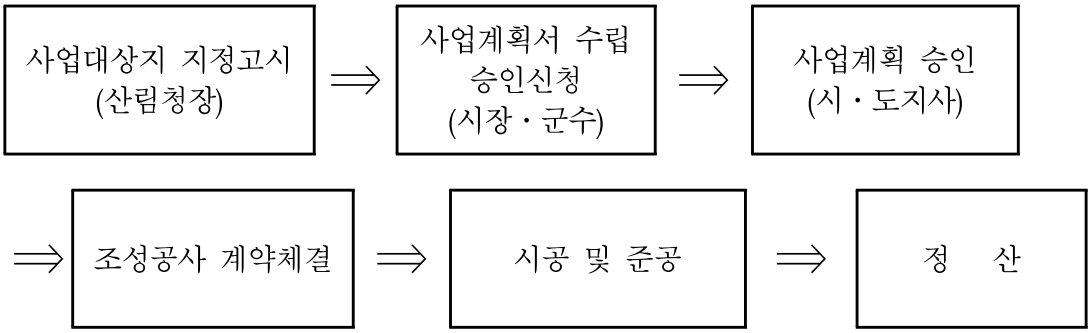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2		1,027	1,148		762	41	2,978
'05	31		103	209		94	7	413
'06	45		176	214		127	7	524
'07	71		281	211		197	7	696
'08	65		240	222		184	10	656
'09	60		227	292		160	10	689

○ 예산

- 사업기간 : 1988 ~ 2010
- 재원형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 국유자연휴양림 조성(국비 100%)
  · 지자체산림휴양시설(국비50~70%, 지방비 30~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7		560	634		418	21	1,633
'05	31		103	209		94	7	413
'06	45		176	214		127	7	524
'07	71		281	211		197	7	696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산림휴양시설 조성	국유림	설계·조성·보완	개소	32	32	100
	공유림	설계·조성·보완	개소	55	55	100
	산림욕장	설계 및 조성	개소	16	16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산림휴양 시설을 설치하여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관광 산업의 중심지로서 관리인을 현지인을 우선 배치하여 농·산촌 지역관광 개발과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 목재와 황토 등 친환경적인 소재를 최대한 사용한 자연휴양림 시설이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함으로써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정책 사업으로서 자연휴양림이 위치한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로의 파급 효과 발휘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지역별 산림휴양 수요와 산림환경을 감안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산림휴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산림의 보건·휴양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기반 구축에 기여함.

○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산림휴양시설 사업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부지 및 지방비 확보를 완료하여야 예산을 반영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시공과 준공, 산림형질 변경 최소화를 위해 자연휴양림의 잠재수요,

시설규모와 위치 적정성 등을 검토 하는 타당성 평가제도를 설정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사업추진 시 관련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설치, 지하수 이용·허가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하여 자연생태계 보호 및 재해 예방을 하려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산림욕장 운영의 활성화 및 미흡한 제도 개선을 위해 산림욕장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관리 인력을 현지 주민을 우선으로 배치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관광의 중심지로서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음.

3. 개선방안 등

○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여가시간 및 소득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시설과 친환경적인 시설 등 고객수준에 부응하는 다양한 부대시설 기반이 부족한만큼 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함.

○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산물과 지역의 잠재적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자연휴양림 운영과 연계한 지역 관광 상품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함. 주민들과 자연휴양림간의 연계 운영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결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자리메김될 수 있도록 타 사업들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야 할 것임.

○ 시설물의 사용과 유지·관리, 주변 환경정리 등 이용자의 의식수준 고취를 위한 사전 홍보 교육 및 환경 캠페인 전개도 필요함.

4-2-1-8(신규)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도시와 구별되는 농업·농촌의 독특한 자연 · 문화 ·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는 친환경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내지 제32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 추진경위

-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정착 등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를 농촌으로 유입하는데 필요한 농촌관광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

· 농촌의 수려한 경관과 전통, 특산물, 역사 등 농업 · 농촌만의 특성을 지닌 잠재자원을 개발하여 농촌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 제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05.4월)에 동 사업 추진을 반영
- 국가재정운용계획('05~'09) 실무조정협의회에서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심의·조정('05.1, 농림부)
-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농림부, '07.6)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7 ~ '14년

○ 총사업비 : 600억원('07년까지 기투자액(국비기준) : 16억원)

○ 사업규모 : 24개 조성 ('07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0개소)

○ 사업시행기관 : 시 · 군,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주체 : **시 · 군**

- 기본(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 할 경우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등을 일괄 위탁하고 이 경우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함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50%

○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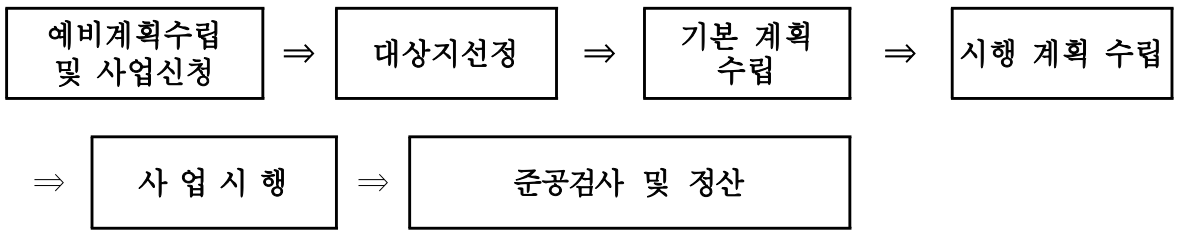

○ 지원 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지원 대상시설 :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등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

- 휴양 · 체험시설 : 야영장, 자동차캠핑장, 학습전시관, 산책로, 공연장 등

※ 농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등 소득기반시설(수익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

○ 사업유형

- 단독개발형 :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만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식
- 연계추진형 :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농협 등의 농촌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업·농촌 특유의 자연·문화·향토자원을 주제로 한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 추진

- 2014까지 각 도별로 2~3개소씩 총 24개 지구를 추진하되, 지자체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 확대를 검토
  · '07년도 4개 지구를 신규사업으로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지구**		**15,694**			**15,694**		**31,388**
'05	-	-	-	-	-	-	-	-
'06	-	-	-	-	-	-	-	-
'07	4지구	-	1,570	-	-	1,570	-	3,140
'08	8지구	-	5,624	-	-	5,624	-	11,248
'09	4지구	-	8,500	-	-	8,500	-	17,0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지구**	**-**	**1,570**	**-**	**-**	**1,570**	**-**	**3,140**
'05	-	-	-	-	-	-	-	-
'06	-	-	-	-	-	-	-	-
'07	4지구	-	1,570	-	-	1,570	-	3,14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7년도 4지구 착수, '08대상지 8개소 선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	해 당	없 음				

※ '07년 신규사업으로 성과 및 성과지표가 없음

· 향후 적합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할 예정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업 ·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유형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특색 있는 친환경적 공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임.

○ 2014년까지 전국에 24개소를 대상으로 국고와 지방비를 각각50%씩 지원하여 기반시설 및 휴양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 조성물 중 소득 기반비설(수익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 대상지 선정시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원조성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소재로 다양한 유형의 테마공원을 조성

하여 증가하는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함으로써 동시에 농촌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음.

○ 하위 정책목표와 세부 추진계획, 그에 따른 현실 적합성 문제 해결 가능성을 각 아이템별로 도출하고 있음.

○ 또한 사업지 대상 선정의 적절성과 합리성에 관한 계획을 모니터링제도를 통해 대비하고 있는 점도 돋보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의 단계별 공청회 및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음.

○ 시장 · 군수가 사업집행자가 되어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신규사업으로 4개지구 추진 중이라 아직 성과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됨.

3. 개선방안 등

○ 신규사업이기는 하나, 사업 대상지 선정시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다 효과성이 높은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함.

○ 농업·농촌 테마공원의 이미지 구현, 다양성 등을 위해서 사업 집행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정책 홍보와 의견 수렴 및 교육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함.

4-2-1-10(신규)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어촌관광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 어촌관광 S/W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 2013

○ 총사업비 : 124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없음)

○ 주관기관 : (특)한국어촌어항협회

○ 사업규모 : "어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5개년('07~'11)계획				
	'07	'08	'09	'10	'11
어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설립기반 구축 및 설립	전문인력 채용 및 우리부 업무 이관 등 사업 추진	어촌관광지원 클러스트 구축 - 전문여행사 및 지역관광센터 연계	어촌관광 지원 사업 추진	어촌관광 지원 사업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						20
'05								
'06								
'07	설립기반 구축							
'08	센터 설립							
'09	센터운영	20						2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06								
'07	설립기반 구축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정('07.12.21)으로 어촌관광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마련
- 한국어촌어항협회 내 어촌관광지원센터의 전단계 형태인 「어촌문화관광센터」설치('07.1월)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	설립기반 구축	근거 법령 제정	-	법제정	제정·공포(12.21)	100
	센터 설립 준비	주관기관 조직정비 정도	-	관련조직 설치	정비여부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어촌관광이 관광기반 시설 조성에 치중되어 지속적인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지원 조직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근거법령 마련과 내부조직 정비를 추진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평가됨.

○ 바다여행객 증가를 감안하고 어촌의 지역경제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어촌관광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별, 계절별 특색에 맞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전담할 전담조직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지역 인구유입 등 어촌사회 활력을 제공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비전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근거 법령 제정과 하위법령 제정 준비 등 세부추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 어촌관광 전문 여행사와 지역 관광센터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어촌관광 지원 클러스터화 추진도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 기반 마련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주관기관인 한국어촌어항협회 조직을 정비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센터 설립 이전에 어촌문화관광센터로 내부조직 정비를 추진하고 준비체제를 마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삶의 질 향상 기여도와 성과의 직접 측정은 할 수 없으나 직·간접적인 어촌관광 관련 사업은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근거 법령 제정, 조직정비 등이 어촌관광지원센터 설립이라는 사업 목표

실행과 직결되므로 설립기반 구축과 설립 준비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함.

3. 개선방안 등

○ 지속적인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전담할 전담조직이 필요함.

○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지역 인구유입 등 수산업과 어촌의 지역경제는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도 필요함.

4-2-1-11(계속)	해양관광자원개발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주 5일근무제 시행으로 해양관광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 조성

○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부터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07년까지 국고 156억원 투자)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해양낚시공원조성(장흥군) 등 12개 사업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시장, 군수)

-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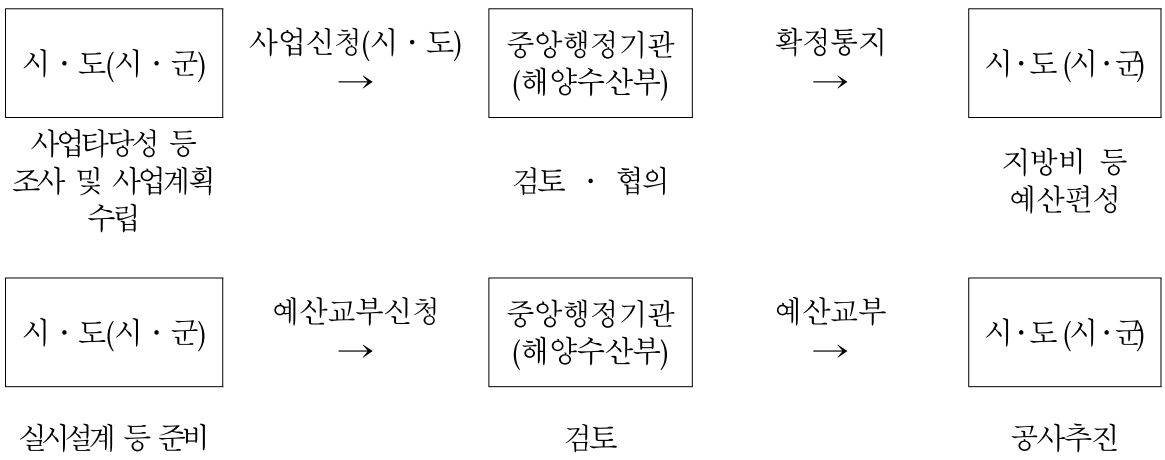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3개소		48,750			50,250	58,900	157,900
'05	4개소		3,070			3,345	-	6,415
'06	9개소		7,900			8,500	-	16,400
'07	6개소		4,650			5,275	6,000	15,925
'08	14개소		4,175			4,175	13,000	21,350
'09	20개소		28,955			28,955	39,900	97,81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개소		15,620			17,120	6,000	38,740
'05	4개소		3,070			3,345	-	6,415
'06	9개소		7,900			8,500	-	16,400
'07	6개소		4,650			5,275	6,000	15,925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6개소 4,650백만원 교부하여 목표치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해양관광 자원개발	계획대비 추진실적	계획대비 집행실적	%	4,650	4,650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매년 사업비 지원 및 사업 개소수가 증가함을 고려할 때 전국 연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평가 됨.

○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으로 해양관광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통하여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대

○ 균특회계 예산으로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보다 지역 간 예산배분 등을 우선함에 따라 사업의 질 저하 우려, 소프트웨어는 없는 하드웨어 사업에 그칠 우려가 큼.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리나시설, 해양친수시설, 해양종합공원 등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사업지 선정에 실시설계가 곧바로 진행되어 설계 후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곧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세부 추진계획이 적합

○ 광역 및 기초단체의 신청사업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관련기관 등의 의견 수렴 시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예방책 필요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신청과 집행, 예산지원 검토 및 예산 교부 등 사업관리체계는 적절하게 구성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

○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의 사업신청을 받은 후 자체 조정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신청하고, 실제 사업추진은 자치단체에서 전담하므로 사업추진 방식 적절

○ 시설 조성 완료 후 운영 단계를 고려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여 성과 창출이 우려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설 조성으로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도모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므로 사업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레저스포츠 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목표치에 대한 지원을 완료

○ 사업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재고하고 목표치 설정도 다시 고려해야 함. 즉, 이로 인해 외부관광객이 얼마나 유치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함.

3. 개선방안 등

○ 사업의 부실 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 재검토 과정을 강화

○ 사업 성과 관리 지표 개발

○ 하드웨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고려

4-2-2-1(계속)	도농교류 페스티벌

(농림부 / 농촌산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도농교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촉발로 홍보효과 거양, 농촌체험관광의 질 향상 도모

-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촌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 붐을 조성
- 주민 스스로 타 마을과 차별화된 농산어촌체험 컨텐츠 발굴 및 정보교환,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역량 및 마을 자생력 증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 개최주기 : 격년

○ 지원조건 : 행사당 10억원 내외(국고 100%),

* 2007년도 도농교류페스티벌 예산 6억원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 지원내용 : 전시기획, 농산어촌마을체험관 등 전시부스마련, 참가마을 및 기관·업체 모집, 홍보·마케팅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격년)	국비(억원)				지방비	기타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	13			7		1	20
'05	1	-			7			7
'06	-	1						1
'07	1	5					1	6
'08	-	2						2
'09	1	5						5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격년)	국비(억원)				지방비	기타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	6			7		1.5	13
'05	1	-			7			7
'06	-	1						1
'07	1	5					1.5	6.5

* 기타 : 부스판매비, 입장료수익 등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목표(3점)대비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목표 달성

・참가자 만족도 : 3.2점(5점 만점) ・관람객 만족도 : 3.8점(5점 만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농교류 페스티벌 개최	참가자 만족도	참가자 설문조사	96명	3	3.2	106.7
	관람객 만족도	관람객 설문조사	1,505명	3	3.8	126.7

* 전년도 점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참가(방문) 의향률에서 만족도로 변경단, 관람객의 경우 별도 여름철 예약방문을 받아 방문을 실질적으로 유도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이 사업은 도농교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촉발, 농촌체험관광의 질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10억 원 내외의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골자임.

○ 상대적으로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수요 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 행사가 지니는 의의는 상당히 큰 편이며 크지 않은 예산과 인력으로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됨.

○ 2007년도에는 약 6억 원의 예산으로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개최하였고, 방문객 및 행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되었음.

○ 그러나 성과지표의 문제점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상시 기획 체제의 구축, 사무국 등의 역할 재정립 및 전문성 보완, 사후평가와 피드백 체계 확립, 성과지표 재검토, 모니터링지표 마련 등이 필요한 과제라고 보았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체험관광이 2000년 이후 본격화되기는 하였으나 도시민의 수요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붐 조성, 정보 교류를 위한 종합적인 행사가 턱없이 부족하였으므로 도농교류 페스티벌이라는 사업 자체의 기획 의의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7년도는 제2회 도농교류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제1회 페스티벌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다는 측면에서 이 역시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함.

○ 2006 파리 국제 농업박람회 현지조사 등을 추진하였는 바 그 노우하우(know-how)라는 것의 하나는 상시적인 행사 기획 체제의 구축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사업 추진 자체가 페스티벌에 너무 임박하여 사무국과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지고 홍보 등의 측면에서 1개 방송사만 깊이 개입됨으로써 오히려 타 방송매체 등이 외면하는 등의 미숙함을 보였다고 생각함.

- 페스티벌 사후평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부족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은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페스티벌을 전담 기획, 집행하는 전문성은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농림부,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의 역할 분담 체계와 각각의 전문성 등에 대하여 적절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됨.

○ 더불어 격년을 주기로 도농교류 페스티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페스티벌에 대한 모니터링, 사후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결과의 피드백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모니터링이나 사후평가는 페스티벌 기간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객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도농교류 페스티벌의 질적 발전을 위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개선방안 등이 도출되는 절차로 자리잡아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지표, 평가지표 등이 개발되고 정밀한 질적 보완 작업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도농교류 페스티벌 자체로 농산어촌의 소득이 증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는 않지만 도농교류를 통한 산업적 측면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2007년도에는 관람객과 행사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성과는 일반 국민들의 도농교류, 도농교류 페스티벌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두어야 할 것임. 특히 관람객이나 행사참여자의 성향상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은 통상 '보통'에 맞추어지기 마련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성과 달성도를 3점 이상이니 100% 이상 달성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페스티벌 준비 기간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기왕에 개최하는 행사라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간적, 재정적 자원을 투입함.

○ 페스티벌 준비 전 과정부터의 모니터링 지표 개발이 필요하고 성과 판단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다음 행사에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함.

○ 사무국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조치, 사무국을 비롯한 행사 관련 기관간의 역할 분담과 추진체계 등의 적절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페스티벌 성과 달성도를 만족도 '보통'이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만큼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치로 전환해야 함.

- 방문객 목표 수, 실질적 현장 농산물 판매량, 참여 마을 등의 방문 예약건수 등
- 대국민 도농교류 페스티벌 인지도 등

4-2-2-3(신규)	농촌체험교육농장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농업 · 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농촌진흥법 제13조1항(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초중등교육법 제48조 5항(수업운영방법 중 교외체험학습 허가)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목 표

- 농촌 ·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 농업 ·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부가가치 증진

2. 사업내용

○ 사 업 기 간 : 2006년 ~ 2012년

○ 총 사 업 비 : 250억원

○ 사 업 규 모 : 1,000개소

○ 지 원 형 태 : 지자체 보조

○ 지 원 조 건 : 국비, 지방비 각 50%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행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상 보조사업 추진
- 기술지도 및 현장교육, 농업인교사양성과정 병행 추진

○ 추진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학습활동 기반조성
  - · 주제중심통합접근 프로그램 및 워크북 개발
  - · 교육시설·장비 설치, 교구·교재 제작 및 구입 등
- S/W 관련사업 : 전문 컨설팅, 보험, 홍보 등
- 농업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사양성과정 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 (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6	22				22		44
'05								
'06	8	1				1		2
'07	48	6				6		12
'08	60	7.5				7.5		15
'09	60	7.5				7.5		15

* 산출근거 : 1개소 100백만원<25백만원×4분야(1개소)×50%=국비50백만원>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6	7				7		14
'05								
'06	8	1				1		2
'07	48	6				6		12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체험 교육농장	농장당 매출액	농외소득을 제외하고 교육농장 운영을 통한 농장당 매출액	백만원	12	16	133
	농장당 체험프로그램 참가자수	교육농장을 통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방문객수	명	1,000	1,000	100

○ 농촌체험교육농장 매출액을 ’06, ’07년 사업 추진 농장을 조사하여 농장당 16백만원으로 목표(’06년 우리나라 평균 농외소득이 10백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도전적으로 12백만원을 목표로 잡음)인 12백만원 대비 133%의 실적이 나타남

○ 농장당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수를 ’06, ’07년 사업 추진 농장을 조사하여 농장당 1,000명 (테마마을 사업초기 방문객수 1,398명과 비교사여 마을단위가 아닌 농장단위이며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임을 감안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잡음)을 목표로 하여 1,000명이 방문하여 목표대비 100% 실적을 나타냄

Ⅱ. 평가결과

1. 총평

○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농촌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과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도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임.

○ 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수업운영방법을 다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와 식량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개소당 2,5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까닭에 본격적인 교육농장의 기능을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음. 즉, 주차장, 식당, 화장실, 세면실 등 단체 교육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비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교육성과가 극히 저조한 교육농장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초중고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된 체험학습수요를 농촌지역으로 적극 수용할 수 있음.

○ 교육기반조성과 농장주 교육에 이어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구성 등 하위 정책목표간의 보완성 및 연계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시·도 및 시·군별로 어느 정도 체험학습 시장이 형성될지에 관한 객관적 기초자료 없이 사업량을 무차별적으로 지역안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방과 후 현장체험학습을 농업 및 농촌현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초중등학생들에게 전통문화와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었음.

○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농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다양한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농장주들은 여전히 자체 홍보능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는바, 그 해결책으로 교육농장주를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 등의 지원을 하였음.

○ 한편 개소당 25백만 원의 지원사업비로는 학생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주차장, 화장실, 급식 등)을 구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장주들은 그들의 매출증대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교육자로서 청소년을 가르친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음. 이는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였음.

○ 한편 농촌전통테마마을 등의 마을체험사업을 교육농장사업에 연계함으로써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기도 하였음.

○ 교사양성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96.9%)에 비해 시범사업 농장주의 만족도(37.5%)는 비교적 낮음. 이는 홍보 부족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아직 충분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봄.

3. 개선방안 등

○ 각 시·도별 또는 시·군별로 체험학습에 대한 수요 예측을 선행하고, 시장욕구에 부합하는 교육농장을 지정 및 육성하는 지역별 수요공급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음.

○ 사업개시 후 2~3년간의 사업실적을 평가한 다음 자립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교육농장에 대해 기반시설자금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과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관할 교육청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야 함.

4-2-4-0(계속)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화관광부 / 관광산업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 향토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축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집중 육성, 유망축제 발굴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 ~ 계속

○ 사 업 비 : 4,000백만원(2007년도)

○ 사업규모 : 문화관광축제 52개 선정·지원

○ 시행방법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율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절차 : 문화관광축제 추진계획 수립 시달(문화부→시·도) → 사업계획수립(축제 추진주체) → 사업신청(시·군·구) → 문화관광축제 추천(시·도→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등급결정(문화부) → 예산지원(문화부→시·도→시·군·구) → 사업시행 및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군·구) → 사업평가(문화부 등) → 평가결과 다음해 선정시 피드백

○ 추진내용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2개 축제, 3,500백만원
  - · 최우수 축제 : 7개 축제, 각 250백만원
  - · 우수축제 : 9개 축제, 각 100백만원
  - · 유망축제 : 17개 축제, 각 50백만원
  - · 예비축제 : 19개 축제, 예산 지원없이 행정지원
- 문화관광축제박람회 개최 지원 : 500백만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261개				261	261	-	522
'05	45개				25	25	-	50
'06	52개				40	40	-	80
'07	52개				40	40	-	80
'08	56개				78	78	-	156
'09	56개				78	78	-	156

※ '07년까지는 확정된 계획, '08년 이후는 향후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9				94	438	-	532
'05	45개				25	137	-	162
'06	52개				40	132	-	172
'07	52개				39	169	-	208

- 제주도 2개 축제(각 50백만원 지원)는 특별자치도 승격으로 관광진흥기금 미 지원(기금 1억원)

<연도별 축제지원 세부내역>

○ 2005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45개 축제, 2,5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3개 축제, 각 250백만원
  · 우수축제 : 7개 축제, 각 130백만원
  · 지역육성 : 8개 축제, 각 60백만원
  · 유망축제 : 9개 축제, 각 40백만원
  · 예비축제 : 18개 축제, 예산 지원없이 행정지원

○ 2006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2개 축제, 3,5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5개 축제, 각 300백만원
  · 우수축제 : 9개 축제, 각 150백만원
  · 유망축제 : 13개 축제, 각 50백만원
  · 예비축제 : 25개 축제, 예산 지원없이 행정지원
- 축제 테마 박람회 개최 지원 : 300백만원

○ 2007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2개 축제, 3,5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7개 축제, 각 250백만원
  · 우수축제 : 9개 축제, 각 100백만원
  · 유망축제 : 17개 축제, 각 50백만원
  · 예비축제 : 19개 축제, 예산 지원없이 행정지원
- 문화관광축제박람회 개최 지원 : 500백만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향토문화관광 축제육성	문화관광축제 총 관광객수	2007년 문화관광축제 참여 관광객	백만명	36	37	102.8
	문화관광축제 총 경제파급효과	2007년 문화관광축제 경제 파급효과	억원	1조4천	1조6천	114.3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지역축제 중에서 관광객 유인력이 크고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선별하여 중앙 차원에서 평가 및 관리하고 있음.

○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당 사업은 문화관광부 관광국에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대표적 정책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이천도자기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함평나비축제 등을 위시하여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지역에서 문화관광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념비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시민과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민에게는 농외소득 및 농산물 판매라는 장소마케팅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99년부터 전문가집단이 축제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선정 점수에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체계가 탁월함.

○ 또한 매년 2회에 걸쳐 시·도 축제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축제워크숍을 개최하고 문화관광축제 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사업으로 평가함.

○ 그러나 축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위한 축제테마박람회(부산 벡스코)를 꼭 부산에서 해야 하는지는 의문임.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로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각 시·군·구에서 열리는 축제 중에서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시·도의 추천을 받아 4단계(예비/유망/우수/최우수)로 등급을 나눠 지정함으로써 축제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켰음.

○ 이렇게 육성된 문화관광축제는 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를 활용하여 국내외 및 전 세계로 홍보를 하였음.

○ 한편 문화관광축제의 높은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은 40억 원으로 대단히 적었음.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적은 재원을 선택과 집중 방식을 도입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예산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금산, 함평, 화천, 김제, 진주, 보령, 강경 등 유명축제를 개최하는 지역에서는 지역상권이 크게 활성화되고, 지역 이미지가 개선되었음.

○ 구체적으로 ’07년도 집계결과를 보면 축제방문객 37백만 명, 경제파급효과 1조 6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당 정책사업의 성과가 매우 훌륭하였음.

○ 담당부서에서는 향토문화관광축제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대표축제를 육성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음. 그 결과 문화관광축제는 풍부한 후보축제(시·군·구 대표축제) 중에서 상품성이 뛰어난 축제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문화관광축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음.

○ 이를 토대로 '08년부터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외래관광객 유인력에 뛰어난 보령 머드축제와 안동 탈춤축제를 별도 선발하여 '대한민국대표축제'라 칭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시키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개선방안 등

○ 초기의 문화관광축제 관련 정책이 외래 관광객의 유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컨대 시·군·구 대표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증진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고, 시·도 대표축제는 관내 관광이미지를 안팎으로 홍보하는 기회로써, 그리고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주민 및 외지관광객들이 문화와 상품을 교류하는 만남과 나눔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외국인의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활용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지원, 홍보지원, 컨설팅지원 등이 필요할 것임.

4-3-1-0(계속)	경관보전직불제

(농림부 / 정주지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적극적인 농촌경관 형성 시책을 통해 농촌을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소득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20013년

- 2005~2007 기간 중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방안 보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농업인

○ 추진체계

- 대상지역 신청(주민→시·군→시·도→농림부) → 대상지역 선정(농림부→시·도→시·군) → 경관보전협약 체결(지자체와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 이행상황점검 및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체계 및 내용

- 사업시행대상 지역 : 읍·면지역 및 자치구 준농촌지역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최소 1ha이상, 마을단위 3ha 이상 집단화된 지역

- 사업내용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
- 지원금액 : 170천원/10a(국고 70%, 지방비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경관작물 :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연, 자운영, 야생화 등
  * 연, 자운영은 '07 시범적용 후 확대방안 검토

○ 추진현황 : '07 시범사업으로 800ha 신규 착수

3. 연차별 추진계획

○ '05년~'07년 까지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기간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추진방안을 보완

○ '05년, '06년은 470ha(600백만원)를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며, '07년은 800ha(1,000백만원)를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9,556				4,041		13,597
'05	470	600	-	-	-	240	-	840
'06	470	600	-	-	-	240	-	840
'07	800	1,000	-	-	-	408	-	1,408
'08	3,252	2,596	-	-	-	1,113	-	3,709
'09	4,000	4,760	-	-	-	2,040	-	6,800

※ '07년까지는 확정된 계획, '08년 이후는 향후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52				888		3,040
'05	470	600	-	-	-	240	-	840
'06	470	600	-	-	-	240	-	840
'07	800	952	-	-	-	408	-	1,36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사업 시행면적(ha), 사업시행 만족도
- '07년도 800ha(952백만원) 시행을 계획하여 100% 추진하였으며, 지역적으로 다양한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사업에 대한 만족도 80%를 목표로 추진하여 목표의 114%(만족도 91%) 달성

  * 마을경관향상, 방문객 증가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사업만족도 추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경관보전직불제	계획대비 실적	사업 시행면적	ha	800	800	100
	사업의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	%	80	91	114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농촌공간의 전원경관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본 사업의 추진 취지는 매우 시의적절함.

○ 사업 준비과정은 물론이고 대상지 선정, 시행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지조사 및 점검 모니터링 및 관계자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즉시적, 일관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됨.

○ 또한 전년도에 제시되었던 평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업추진방식의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을 보인 것은 본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의 성실한 자세로 평가됨.

○ 경관보전 직불제에서 지원하는 작물의 범위를 초화류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타 경관형성 효과가 우수하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작물까지 확대한 것은 잘 된 일이나 지역실정에 따라 경관형성효과는 매우 다양하므로 지역에 보다 더 작물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함.

○ 최근 주요 곡물의 국제 거래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식량위기가 가시화 되는 여건 아래에서 주요 작물의 증산이 다시금 강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경관작물의 선택도 단순한 경관 제고라는 단일 목적을 벗어나 효율적 농업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재조정을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전원휴식공간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농촌경관이 농촌 어메니티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다양한 농촌개발 및 정비사업에서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조성이 주요 사업항목으로 자리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 하에서 농업경관을 농민이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본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임.

○ 특히 한계농지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촌의 농지경관 훼손은 물론 자연환경적 가치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토보전적 의미로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농업·농촌을 국민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이어서 사회문화적 가치가 매우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럽연합이 식량작물 재배면적에 대한 강제 할당제(휴경의무)를 전면 철폐한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식용·사료용·연료용 농산물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물량조정 위주의 농업정책을 다시 물량확대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변화 상황을 감안하여 농업생산과 결부된 경관작물 재배촉진시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농업경관 형성 자체가 강한 지역성을 띄고 있으므로 주민 또는 지자체가 점차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유의하여야 함.

○ 모니터링의 주체가 전문가보다는 차츰 지역주민, 도시민 등 관리자 및 이용자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삶의 질 향상 점검·평가단은 물론이고 농림정책 리모델링위원회 평가 결과까지 제시된 평가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였음.

○ '07년도 예산 1,000백만 원에 비해 08년도 예산이 2,646백만 원으로 2.5배 이상 증액되었고 특히 부처요구액보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1,000백만 원이 증액된 것은 본 사업에 대한 지역의 높은 반응도를 반영한 것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도시민의 이주 희망지 중 으뜸이 아름다운 경관지역임을 감안하면 본 사업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님.

○ 사업의 만족도는 91%로서 목표치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이제는 단순히 만족도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농촌·도시 주민 모두가 개선 또는 새롭게 희망하는 경관 유형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이를 사업수행에서 적극 반영하는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조사료 생산과 연계할 수 있는 총체보리 등에 대한 경관작물 인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경관형성 효과는 소규모 면적보다는 대면적에서 큰데 비해 대규모로 추

진할 경우, 이해 당사자가 다수이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또 관련 비용(소프트머니)이 상당히 소요되며 유지관리에도 또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대규모의 경우 면적 규모별로 단위면적당 직불가격을 차등적으로 인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상분 중 일부를 관련비용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대규모 단지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됨.

○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농지내 및 인근지역에 농업경관 이외의 경관요소(주택, 공장, 각종 시설물, 도로, 수로 등)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기타 경관요소들에 대한 정비 또는 미화가 함께 병행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 근본적인 농촌경관의 이미지, 사업의 모니터링 방식, 주민참여 등에 대하여 연구사업, 세미나 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추가함.

4-3-2-1(계속)	농촌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자원관리기반 구축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환경자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농촌경관의 유형별 관련기술 및 체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산어촌 공간조성 및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농촌 자립기반 구축
  - · 지역의 잠재자원 개발, 소득화사업, 경관 형성, 커뮤니티 형성 등으로 권역별 특성화 유도
  - · 지역주민·지자체 및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지역개발 추진
  - ·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 추진
  - · 농촌경관의 유지·보전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및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농촌 자립기반 구축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법률 제8501호)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법률 제8749호) 제45조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 '농어촌정비법'(법률 제8466호)제32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 농림부 '농촌경관종합대책'(2006.12.20)에 의한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관련기술, 지원체계, 프로그램 등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2014년(8년간)

○ 사 업 량 :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자원 관리기반 기술 7과제
100지역 적용 ('07년 : 1건)

○ 사 업 비 : 60.5억원('07년 0.5억원)

○ 시행방법 : 자체 수행

○ 사업추진내용

- 농촌경관어메니티 자원화 이론 정립
- 농촌경관어메니티 자원화를 위한 관리/계획메뉴얼 작성
- 농촌경관어메니티 자원유형에 따른 평가체계 구축
- 농촌경관어메니티 마을/지역 등의 공간영역(규모)에 따른 평가체계 구축
- 농촌경관어메니티 평가체계를 활용한 평가기술(Tool) 개발
- 농촌경관어메니티 "경관성" 평가지수 개발
- 농촌경관어메니티 평가(RLA : Rural Landscape-Amenity Assessment) 및 보존계획이론(Planning Theory) 정립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			11				11
'05	-			-				-
'06	-			-				-
'07	1			1				1
'08	3			5				5
'09	3			5				5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			0.54				0.54
'05	-			-				-
'06	-			-				-
'07	1			0.54				0.54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자원 관리기반 구축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자원 관리기반기술개발 실적	농촌진흥청 결과활용심의 결과 성과물로 채택된 건수	건	3건	3건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사업 목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본 연구사업의 취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위 목표가 많음. 예컨대 지역의 잠재자원개발, 소득화사업, 경관형성, 커뮤니티형성 등으로 권역별 특성화 유도 또는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지역개발 추진 등은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등에서나 적합한 목적을 나열하고 있음.

○ 연구 제목과 다르게 7개의 세부사업추진내용 중에서 무려 5개가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 결국 농촌경관조성 과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어메니티자원의 관리기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본 연구과업의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일색의 연구가 되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연구제목<농촌경관조성 및 관리기반구축>과 달리 실제 핵심 연구는 자원평가에 집중되었음. 연구주제와 목적, 내용의 불일치를 보임.

○ 관광측면에서 볼 때 겉치레에 불과한 농촌경관자원만으로는 수려한 산, 바다, 호수 등 자연경관자원과 경쟁에서 불리하며, 또한 농촌경관을 마을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이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음.

○ 결국 농촌방문에서부터 체류, 위락, 교류,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관광객 심리를 분석한 소비자행태론에 근거하지 않으면 당 연구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경관을 보고 심리변화를 일으킬 관광객의 행동변화를 관찰/분석할 수 있는 심리학 전공자의 자문을 받지 않았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자체 점검평가결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개발사업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농촌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 지표설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됨'이라고 서술했지만 과연 여기서 도출된 평가지표만으로 어떻게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본 연구결과만으로 농촌이 활성화되고 농외소득이 증대된다는 주장은 비약임.

3. 개선방안

○ 어메니티를 하드웨어 시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人心 등의 소프트웨어적 해석을 겸하는 연구가 필요함. 주민이 배제된 경관은 통과형의 일과성 자원에 불과하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농촌 활력화 및 농외소득 증대라는 연구 목표와 심각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환경자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농촌의 생활권역 및 자원권역을 고려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기술 개발(농촌어메니티 계획 모델 9유형 개발 및 보급)

○ 사업추진 근거

- 농업 · 농촌기본법 제 14조 및 제 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4년간)

○ 사 업 량 : 9개 계획모델 개발('06~'07년 : 6유형)

○ 사 업 비 : 19.8억원('07년 3.1억원)

○ 시행방법 : 자체 수행

○ 추진내용

- 농촌권역별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 9유형
- 농촌어메니티 자원 기반형 공간정비시스템 개발
- 개발 모델의 현장보급을 위한 컨설팅 체계 개발
- 대국민 홍보 및 현장지원을 위한 자원의 시각화 기법 개발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			11.3				11.3
'05	-			-				-
'06	3			4				4
'07	3			3.1				3.1
'08	2			2.2				2.2
'09	1			2.0				2.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			7.1				7.1
'05	-			-				-
'06	3			4				4
'07	3			3.1				3.1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모델 개발 실적	농촌진흥청 결과활용심의 결과 성과물로 채택된 건수	건	3	3	10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시작한 이래 도시민의 농촌방문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농촌어메니티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전통테마마을사업은 2009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그 사업의 성패는 환경보다 주민의 인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연구는 아직도 과거지향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예컨대 권역별 어메니티계획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어메니티기반형 공간정비시스템을 개발하면 농외소득이 증대된다는 안이한 시각에 사로잡혀 있음.

○ 더욱이 농촌전통테마마을과 같은 소규모 마을단위사업에서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어메니티의 소득유발효과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권역단위로 확대시키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세부추진과제로서 어메니티자원의 활용모델개발, 공간정비시스템개발, 컨설팅모델개발, 정보활용방안개발, 시각화기법개발 등 일련의 연구수행절차는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개발된 모델을 아산, 가평, 양평 등지에 실제 적용하였으나 그 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가 거의 없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촌어메니티자원활용모델컨설팅매뉴얼>의 용도가 지자체 및 마을주민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 보다는 외부 컨설턴트를 위한 어메니티자원활용지침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검토하기 바람.

○ 5개 세부추진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그중 '자원활용모델개발'에 국한되었음.

3. 개선방안 등

○ 당 연구에서 도출된 계획모델을 실제 농촌마을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용역기관에 홍보하고 보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실적자료(또는 성과지표)를 찾을 수 없었음.

○ 성과지표를 '자원활용모델개발'에 국한하지 말고 5개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평가보고서에 오탈자 많음. 반면 전문용어라고 간주할 수 없는 외래어를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음.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농림부 / 정주지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지역에 적합한 경관주택을 발굴·보급함으로써 농산어촌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며 도시민의 농촌 이주촉진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7년~계속

○ 사업비용 : 237백만원

○ 사업주체 : 농림부(총괄), 한국농촌공사(집행)

○ 추진 내용

- 경관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건축하고 전시함으로써 농산어촌 경관주택에 대한 홍보·보급 추진
  - · 농어촌연구원내 3천평 규모의 전원마을 주택전시관 조성·운영
  - · 전원마을 주택전시관 내 스틸하우스와 국산목재를 활용한 주택2동 증축, 공동 화장실 증축

- 2007년도 전원생활 엑스포 개최시 전원마을 주택전시관을 부대 행사장으로 활용하여 전원주택 모델을 전시하고 관람객 유치

· 주택유형별 상담 및 정보 제공, 도시민 대상 전원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2007 한국농촌건축대전을 통해 농산어촌 경관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은퇴도시민, 농산어촌지역 주민 등 수요자의 관심 제고

· 국내 건축가들의 초청건축가전, 일반인 대상 일반공모전을 실시하여 다양한 주택설계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

·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실제 농산어촌 주택 건축시 도입 가능한 요소를 발굴하여 경관주택표준도로 개발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농촌공사)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			5		6.6	20.6
'05								
'06								
'07		-	-	-	5	-	3.6	8.6
'08		4	-	-	-	-	1.5	5.5
'09		5	-	-	-	-	1.5	6.5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농촌공사)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67	21.67
'05								
'06		-	-	-	-	-	18.7	18.7
'07		-	-	-	-	-	2.97	2.97

- '07년도 농촌경관주택표준도 개발은 당초 마사회적립금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08년도 신규사업(농특세)으로 반영
- 2007 한국농촌건축대전 행사비가 계획(1.5억원)보다 적게 집행(0.87억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7년도 전원생활엑스포 개최시 전원마을 주택전시관에 14,275명이 관람하여 농촌주택 모델 보급을 위한 홍보 추진

※ 관람객 집객 목표 : 10,000명

- '07년도 한국농촌건축대전을 통해 총 35점(초청건축가 작품 5점, 일반공모 수상작 30점)의 우수 농촌주택 발굴 목표 달성

※ 06년도 초청건축가 작품 5점, 일반공모 수상작 25점 발굴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전시 및 홍보	전원주택 전시관 관람객수	명	10,000	14,275	143
	우수 농촌주택 발굴	전년도 대비 발굴 실적	점	30	35	116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형 경관주택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공모전을 이용한 것은 작품의 발굴과 전문가의 발굴에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임.

○ 농산어촌형 경관주택의 다양한 모습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전원주택 모델전시관을 활용함과 동시에 전람회 등 각종 행사를 병행하여 홍보 효과를 높인 것으로 평가됨.

○ 각 계층의 건축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건축공모전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농촌경관주택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 특히 발굴된 건축가들을 수상에 그치지 않고 각 부처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반영, 활용하여 공간환경 조성물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산어촌의 경관에 어울리는 주택을 개발 보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점차 늘어나는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에 부합하며 농촌경관의 수준을 높이는데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건축대전 등 건축설계 공모전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주택설계 계획안을 모색하고 주택전시관을 통해 경관주택 모델을 홍보함은 경관주택의 보급, 개발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

○ 전원마을 주택전시관을 통한 홍보도 설계도가 아닌 실제 건축물을 통해 그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도시민의 접근이 보다 용이한 장소를 확보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함이 필요하며, 매년 변화된 주택수요에 반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전원마을주택 전시관을 박람회 행사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홍보 효과를 높이는 점에서 효율적이며 타행사와의 연계를 확대함이 필요함.

○ 농촌건축대전을 각 건축전문가 단체의 공동개최를 통하여 얻는 객관성

담보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홍보 효과와 농촌주택 전문가 발굴의 기회를 넓히는 것으로 의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촌건축대전, 전원마을 주택전시관 운영 및 전원생활 박람회를 통하여 경관형 농촌주택에 대한 홍보와 도시민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

○ 전원주택 전시관 관람객수와 농촌경관주택 발굴 수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높은 편임.

○ 공모전을 통한 농촌경관주택 발굴은 성과 목표치를 상회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설계의 완성도 및 질의 담보가 수반되지 않는 양적 계량은 의미가 없음을 인식함이 중요함.

3. 개선방안 등

○ 전원주택전시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부대 행사를 모색하여 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함이 필요함.

○ 농촌건축대전을 통하여 선정된 작품의 활용 이외에 수상자인 건축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부처의 사업에 연계함을 모색함이 필요함.

○ 농촌건축대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을 확대 더 많은 건축 관련 단체와 제휴하여 양과 질이 담보되는 공모안과 건축가를 발굴함이 필요함.

○ 주택전시관이 장소적으로 도심과 원격지라는 단점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매년 변화하는 주택 질에 대한 수요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도 검토되어야 함.

4-3-4-0(계속)	자생식물단지 및 생태숲 조성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산림식물자원의 현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인위적·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을 조성
-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휴양공간으로 제공

○ 사업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시행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지사) ⇒ 사전타당성심사 및 결과 통보 (산림청) ⇒ 예산 확정 (국회) ⇒ 국고보조금 교부 (산림청) ⇒ 사업실행 ⇒ 정산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방자치단체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추진내용 : 2015년까지 지역·기후·생태천이 등을 고려하여 특성적으로 생태숲 등 조성

3. 연차별 추진계획

○ 총사업비 : 1,426억원('07년까지 투자액 : 590억원)

○ 사업규모 : 지역생태숲 조성 26개소, 자생식물단지 조성 3개소

○ 조성기간

- 지역생태숲 조성 : 1년 설계, 5년 시공
- 자생식물단지 조성 : 1년 설계, 1년 시공

< 연도별 시행계획 >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559	30	-	589	-	1,178
'05	16	-	74	-	-	74	-	148
'06	18	-	125	5	-	130	-	260
'07	19	-	140	9	-	149	-	298
'08	17	-	110	8	-	118	-	236
'09	17	-	110	8	-	118	-	236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	335	14	-	334	-	683
'05	16	-	74	-	-	69	-	143
'06	23	-	123	5	-	123	-	251
'07	26	-	138	9	-	142	-	289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생태숲 조성	지역생태숲 누적 조성실적	지역생태숲 누적 조성 개수 측정	개소	23	26	113

Ⅱ. 평가결과

1. 총 평

○ 생태숲 조성,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립으로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 복원기법 개발 및 연구 등 식물자원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생태 숲을 농산어촌지역 등에 조성하여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자연학습 체험 등을 통한 정서함양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

○ 식물유전자원 교류 확대를 통한〔수목원·생태숲 네트워크〕 구축 등 과학적인 산림환경 보호 체계로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도모

○ 수목원 관람 및 전시시설의 획일적인 조성으로 지역별 특성과 기능의 다양성 미흡, 전문인력 체계 미비, 수목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이해 부족 등 해결을 위한 운영과 제도 미흡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자생식물의 보전과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 복원기법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생태 숲 등을 농산어촌지역에 조성하여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식물자원의 보전·이용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 심화로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보전과 자원화·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적으로 생태 숲 및 자생식물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마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역 생태 숲 등 조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추진체계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도모

○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생태 숲 조성·관리지침에 명시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개선의견을 반영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전체 지역 생태 숲 29개소 중 24개소를 농산어촌지역에 조성하여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 생태 숲에서 자생식물을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생물종의 자원화 생물종의 현지 내 보전에 기여하므로 이에 따른 지역 생태숲 등 서식·보존기반 확충이 필요

3. 개선방안 등

○ 생명공학(BT) 및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식물자원의 보전·이용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산림식물자원의 현지 내 보전기능 강화를 위한 생태 숲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

○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여가시간 및 소득증대로 인해 증가하는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생태숲 조성 등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 지역별로 다양성과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과 대 국민 상대의 정책 홍보 등의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단지 계획수립에 의견을 듣거나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설명하였다는 식의 주민참여가 아니라 생태 숲을 기획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발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달성도를 점검하시기 바람. 몇 개소를 설치하였으므로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임.

4-3-5-0(계속)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농림부 / 정주지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정립 및 정책수단마련을 위한「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수립·추진

- 높은 국민적 관심, 농촌의 현황 및 국내외 정책동향 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필요

○ 경관법 제정(건교부) 관련 농촌경관계획 수립기준 마련

- 농촌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농촌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 사업기간 : 비 예산사업

○ 사업추진근거 : 삶의질향상법 제30조, 삶의질향상법시행령 제12조

○ 사업추진주체 :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한국농촌공사 등

○ 추진체계

-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 마련(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 기관별 세부과제 추진 → 추진상황점검·관리(참여기관 실무협의회)

○ 사업내용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추진

· 농촌경관관련 관계기관과 공동작업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 이를 종합하여「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수립('06.12.26)

- 경관법 제정(건교부) 관련 농촌경관계획수립기준 마련

· 농촌경관의 관리를 위해 농촌경관계획 수립기준, 농촌경관지표, 및 농촌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건교부 주관 연구용역에 적극 참여, 우리부 검토의견 반영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 '06년까지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 수립 및 로드맵 마련

○ '07년부터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 추진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업무	5개년 계획('06~'10)					비고
	'06	'07	'08	'09	'10	
○ 종합대책 및 로드맵 마련		━				
○ 경관계획수립기준마련 연구 추진		━				
○ 건교부주관 경관계획수립기준마련 연구 공동 추진		━				
○ 선농촌경관계획 체계 구축			━	━		
○ 후농촌지역개발사업 시행				━	━	

※ '07년까지는 확정된 계획, '08년 이후는 향후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 '06년도 추진실적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수립('06.12)

· 농촌경관종합대책 수립방안 마련(6월)

· 농촌경관개선대책수립을 위한 관계기관(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촌공사, KREI 등) 합동 T/F구성·운영(6~12월)

· 농촌경관 보전·형성·관리 세미나 개최(12.12)

- 경관법 제정(건교부) 추진관련 관계부처합동 경관계획수립기준 제정
- 농촌경관계획수립기준마련 연구용역 추진(5~12월)

○ ’07년도 추진실적

-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 세부과제 추진
  ·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평가 실시(’07.3, 7, 11)
  · 농촌경관계획수립기준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농촌경관계획 수립기준(안) 마련
  · “농촌경관 지표, 농촌경관맵 및 경관보전협약의 현장 적용성 연구”를 추진하고, 농촌경관지표 시안 마련(’07.4~12)
  · “농촌경관개선을 위한 관리기법 및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농촌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시안 마련(’07.5~11)
  · 건교부주관 관계부처합동 “경관계획 수립방향 및 기준마련 연구” 자문 및 농림부 안 반영(’06.7~’07.6)
- 제1회 농촌경관사진콘테스트 개최(’07.10)
  · 입상작(22점) 전시회 개최(’07.12, 인사아트센타 및 청사안내동)
  · 홍보책자(1,000부) 및 사진엽서(3,000매) 제작·보급
- 농촌경관개선정책 워크숍 개최(12.6~7)
  · 대상 : 지자체, 전문가, 농업인 150명 대상
  · 경관작물재배관리 매뉴얼 제작·보급(1,500부)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7년도에 경관법 제정과 관련한 관계부처합동 경관계획수립기준 제정과 농촌경관지표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여, 경관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하고, 농촌경관지표 시안을 마련하였음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농촌경관에 사회적 관심증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농촌활성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비교적 차분하게 경관계획체계 구축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에의 활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가서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음.

○ 사업추진시 발생하고 문제점을 나름대로 개선하고 있으며 전년도 점검·평가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성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됨.

○ '07년도에 신설을 시도하였던 농촌경관개선사업은 경관직불제 사업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경관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사업화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경관에 대해 도시민은 물론이고 농촌주민들에게도 최근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문화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은 크나 큰 자부심이자 도농상생의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농촌경관 형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시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5개년 계획하에 연차별로 차근차근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본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새로운 고려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적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함께하여야 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촌경관과 관련된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이 공동작업팀과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촌경관정책심의회를 통해 주요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심의·조정을 거치는 등 나름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됨.

○ 그러나 경관정책은 그 본질이 미학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과 동시에 경관의 의도적 형성·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규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사자인 농촌주민의 참여와 의견반영이 필수적임.

○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초청토론회, 전문가-지자체 공무원-농업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판단됨.

○ 전년도 점검·평가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비교적 성실하게 수용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경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진정한 홍보는 농촌경관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살아있는 생생한 의견 제시일 것인데 이러한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질적 제고 노력이 미흡하므로 일상적·지속적으로 국민의 의견, 특히 앞으로 농촌경관의 주요 소비자가 될 젊은 층의 의견 수렴에 집중하여야 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촌주민 차원을 넘어서 전체 국민의 웰빙과 관련된 주제이므로 사업성공시 파급효과는 매우 크리라 판단됨.

○ 사업만족도 조사를 하기 힘든 현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실행 요구사항을 목적체계도(목적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실천행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행위의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로 표현한 다음 이를 종합하면 성과달성도가 종합되는 체계)에 의해 체계화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3. 개선방안 등

○ 농촌경관개선의 실제적 실행수단이 될 '농촌경관 개선사업'의 신설을 계속 추진하여야 함.

○ 정책 수립의 실무 작업에 농촌경관이 갖는 미학적 전문성과 정책 실현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경관 전문가와 농촌주민대표 또는 농업인 관련대표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점검의 정밀성을 고양하고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목적-실행수단-평가지표가 연동된 목적체계도 방식에 의한 성과지표 측정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4-3-6-1(계속)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농림부 / 소득지원팀)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
-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에 기여
- 농촌지역 특히, 조건불리지역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 사업추진근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제5호
-「농업 · 농촌기본법」제39조 제5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0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 총사업비 : ('07년까지 기투자액 858억원)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직불금 : 국고 70%, 지방비 30%)
민간경상보조(경지경사도 조사비 : 국고 100%)

○ '07 사업계획 : 사업규모 187천ha, 사업비 51,378백만원

○ 추진절차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시·도 → 시·군 → 읍·면, 한국농촌공사)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농림부·시·도, 시·군, 읍·면)

· 사업대상 지역(법정리) 선정 제출(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대상 지역(법정리) 통보(농림부 → 시·도 → 시·군 → 읍·면 → 대상 법정리)

- 지원대상 법정리 사업신청(법정리 → 읍·면 → 시·군) → 대상 법정리 선정 통지(시·군 → 읍·면 → 대상 법정리)

- 사업신청(농업인 → 법정리 마을대표 → 읍·면 → 시·군)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직불금액(보조금) 확정(시·군) → 보조금교부 신청(시·군 →시·도 → 농림부)→ 보조금교부(농림부 → 시·도 → 시·군)→ 보조금 지급(시·군 →농업인)

○ 사업 추진 내용

-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 내의 농지 및 초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 활성화 실천 등 지급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인 경지율(22%미만)과 경사도(14%이상 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및 도서개발 촉진법상 도서의 법정리)를 적용하여 지원대상 법정리를 선정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지관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마을협약 및 기금조성 등 마을중심으로 운영

· 마을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보조금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사업비의 30% 이상)

- 대상농지 : 밭, 과수원, 초지

- 지원단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

- 지원대상자 : 지급대상 법정리 내의 대상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해당 농지소재 읍·면에 거주하며,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공동기금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본방향 마련 및 사업 준비

○ 직불제 기본방향 마련을 위한 실무대책반 운영('01.6~12월)

- 농림부, 농경연, 농진청, 농협, 농기공 참여(11 차례 회의 개최)

○ 399개 오지면 경지경사도 측정 조사('02년)

○ 횡성, 무주, 봉화 지역의 1개 면을 대상으로 도상연습 실시('02.4~5월)

- 경사도 14% 이상의 밭을 대상으로 지번조서 작성, 마을협약, 보조금 신청 등

○ 강원도 3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3년, 도비 3억원)

- 대상지역 : 삼척시 가곡면, 횡성군 강림면, 인제군 상남면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관련 연구용역 실시('03.4~'04.1월)

- 조건불리지역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등 3건

○ 시범사업 지역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04.8~'05.4월)

○ 전국 1,420개 읍·면 대상 경지경사도 측정

- 총 1,420개('02년 399개, '04년 200, '05년 821)

□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실시

○ 39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4~'05년)

- '04계획 : 31천ha, 100억원, - '05계획 : 31천ha, 123억원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본 사업 추진('06년 부터)

- '06계획 : 187천ha, 523억원, - '07계획 : 187천ha, 523억원

○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개정('07.4월)

○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시스템 개발 보급('07.10월)

○ 조건불리직접지불 제도 개선 계획('08)

- 중장기 직불제 개편방안과 연계 지원기준, 지급단가 등 제도 개선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계 (농특세)	사업비				행정비 (농특세)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50	2,124	2,052	-	-	-	72	878	-	3,002
'05	31	123	87	-	-	-	36	37	-	160
'06	187	523	514	-	-	-	9	220	-	743
'07	187	523	514	-	-	-	9	220	-	743
'08	158	432	423	-	-	-	9	181	-	613
'09	187	523	514	-	-	-	9	220	-	743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계 (농특세)	사업비				행정비 (농특세)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8	746	710	-	-	-	36	305	-	1,051
'05	31	104	86	-	-	-	18	37	-	141
'06	118	331	322	-	-	-	9	139	-	470
'07	109	311	302	-	-	-	9	129	-	44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조건불리지역	지원 법정리수	지원법정리수	개리	2,570	2,952	114.9

* 실적은 잠정치임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업생산조건이 열악하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소득을 보전하여 인구과소화를 최소화하려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되는 대표적 소득보전시책으로 우리의 경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음.

○ 사업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직접지불 대상면적이 100천ha를 상회하는 등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있으며 시행지침 개정, 이행점검시스템 개발·보급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임.

○ 현재는 조건불리지역의 선정기준이 자연적 조건불리를 나타내는 낮은 경지율과 높은 경사도에 한정하고 다만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지역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는데 현대의 한계농지는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의 열악이 오히려 더 큰 영향요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격지역 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원격낙후지역인 도서지역이 포함된다면 당연히 또 다른 원격지역인 원격산촌지역은 농지조건에 관계없이 전체농지를 직접지불 대상지역으로 확대 포함시키는 것이 논리상 맞음.

○ 전년도 점검평가의견은 비교적 성실히 검토하여 개선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또 다른 핵심 정책추진축인 마을발전기금 조성에 의한 지역활성화 부문이 농촌지역개발사업, 예를 들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의 출연기금 또는 자체자금으로의 활용과 연계된다면 보다 큰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WTO체제 아래서 허용되고 있는 대표적 농촌 지원수단의 하나인 직접지불제도의 핵심적 부문으로 농촌소득보전에 의한 농촌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나 무임승차의 의존성을 고착화 하는 위험성이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면밀한 보완노력을 지속하여야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음

○ 직접지불 지원 대상농지의 선정조건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발휘와 마을활성화를 위한 공동실천의무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잘한 조치이나 선정시는 물론이고 선정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무 이행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불여부 결정에 연동·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처리방식·절차가 강구되어야 함

○ 또한 최근 유럽연합에서 식량작물 재배면적 쿼터제도를 폐지한 사례를 참조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작물재배를 직불지원 대상의 필수조건화 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함. 여기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작물이지만 생산성은 떨어지는 작물의 경우는 지불단가를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영농동기를 부여하여야 함

○ 조건불리지역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매우 불리하므로 자체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조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케 한 조치는 매우 타당함. 다만 이렇게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을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자체부담금 내지는 공공투자분의 보완투자비로 활용한다면 매우 효과·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림부의 총괄 및 감독기능, 지자체의 지역밀착적 집행기능 그리고 한국농촌공사의 전문적 지원기능이 적절히 상호연계 및 보완되는 사업추진체계를 갖고 있음

○ 표현상 오류인지 모르나 지원기능을 갖고 있는 한국농촌공사가 '경지율 분석 및 경사도를 측정하여 사업대상 법정리를 선정'한다는 것은 권한부여의 적법성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실질적인 기초자료 조사·분석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한다 하여도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지 선정결정은 법적 권한이 부여된 기관, 즉 농림부나 지자체가 맡는 것이 적법할 것임

○ 사업담당자 교육시의 분임토의, 추진실태조사 및 추진현황 일제점검 등을 통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임

○ 전년도 점검·평가 의견을 정리하여 대상지역 선정기준에 도서지역은 전부 포함시키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지적사항을 시책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대부분의 농업정책이 상대적으로 농업경영조건이 양호한 평야지역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을 보전하고 보조금의 일부를 마을공동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농촌지역 내부에서의 균형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사업만족도 조사결과 73%가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이 79%로서 양호한 편임

○ 성과지표를 지불대상 법정리로 하여 금년도의 경우 목표치 2,570개 법정리 대비 지원결정 2,952개 법정리로 하여 14.9% 초과 달성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만약 면적을 기준할 경우 무리하게 면적확대를 시도하는 부작용을 우려하였다면 같은 맥락에서 법정리는 면적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지원결정 대상 법정리를 늘려 실적을 부풀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법정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합당한 논리를 명쾌하게 제시하여야 함

3. 개선방안 등

○ 대상지역 선정기준 보완작업에서 단순히 경지율의 상한선을 14%에서 7%로 인하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농업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반영하는 지표가 함께 하여야 조건불리지역의 소득보전이라는 본래의 사업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본 사업은 휴경보상제도와 그 취지가 다르고 또 최근 농업발 인플레이숀(Agflation)과 같은 구조적 농산물 부족사태에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지불조건에 작물재배를 의무화하는 조항 포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성과지표를 현재의 법정리 기준에서 면적기준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추진의 합리성·적합성 평가 또는 만족도 등 질적인 지표로의 전환을 검토하여야 함

4-4-1-0(계속)	1사1촌 운동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1사1촌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정착유도

○ 1사1촌 자매결연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로 확대되어 농업·농촌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증진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계속

○ 추진내용 : 민간의 적극적인 추진 및 참여를 독려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농교류활성화 기반 구축

- 1사1촌 자매결연 내실화
  - 도농교류촉진법(안)에 체험·휴양마을의 음식제공·공동숙박 특례,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세제·금융지원 등 마련, 기업체, 학교 등의 동참 여건 조성
  - 우리부 본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과의 날 행사, 현장학습 등을 활용 자매결연마을과 교류확대 실시 및 자매결연 우수 실·국 평가
  - 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매결연 사례별 교류 실태 전수 조사(15천건, 상반기)하여 실적이 미흡한 사례는 자매결연 사례에서 제외
  - 1사1촌 자매결연 시범마을 육성('07년 15개) 및 소득자원 발굴 추진
-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육 지원

· 우리부 국장(주무과장)이 마을개발지도자과정(30회)에 직접 출강하여 FTA, 쇠고기 수입문제 등 생생한 농정현안을 설명
· 지도자연수원에 소요되는 교육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우리부 및 외청 4급이하 직원, 중앙부처·지자체 1사1촌 담당 공무원의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 입교토록 공문조치

- 마을지도자 과정의 비중 상향조정 및 수준별 맞춤연수로 교육과정을 세분화

- 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
· 마을지도자, 기업·단체, 개인 등 도농교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 제2회 도농교류페스티벌 개최('07.5.3~5.6)시 1사1촌 농촌사랑 부스 설치로 현장에서 자매결연 추진 및 홍보
·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과 연계하여 기업체·단체, 학교 등 자매결연 마을 방문 유도

- 다양한 교류사례 홍보로 저변확대 및 내실화 벤치마킹화
· 우수사례집 발간(1만부), 교류프로그램 개발방법 영상물제작보급(CD 1만개), 농촌사랑소식지(계간지, 매분기 3만부) 배포
· TV, 일간지를 통한 특집 기획기사 시리즈를 통해 대국민 홍보

3. 연차별 추진계획

○ 1단계 : 교류성과 창출단계(2006~2008)
- 마을인프라구축, 교육 인적자원 육성, 농촌자원개발

○ 2단계 : 교류성과 확산단계(2008~2010)
- 성공사례확산 및 농촌자생력 강화, 기업체 투자 유도

○ 3단계 : 국민운동 정착단계(2010년 이후)
- 한국형 농촌발전모델정착, 운동혁신을 통한 범국민 지지와 참여 지속화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사1촌 자매결연수 목표는 '04년부터 자매결연체결 증가율을 감안한 11,500건으로 설정하였으나, 교류내실화 방안으로 전수조사 정리 후 매월 정리 및 관리 등으로 8,114건을 결연하여 목표 대비 71% 달성

* 자매결연 실적 : ('04) 2,404건 → ('07) 8,114('04년에 비해서 3.4배증가)

* 교류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07.3월 전수조사 이후 6개월이상 장기 미교류, 기업체 및 마을 사정 등으로 교류가 미진한 결연체를 지속적으로 정리함에 따라 실적이 다소 부진함.

· 장기미교류율 ('06.12) 37.8% ⇒ ('07.8) 36.7% ⇒ ('07.11) 6.4%

- 1사1촌 교류액 전년대비 증가액 목표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541억원이었으나 금년 교류액 553억원으로 추진계획 목표치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1사1촌 운동	1사1촌 자매결연수	목표달성	건	11,500	8,114	71
	1사1촌 교류액 전년대비 증가액	전년대비 15%로 증가	억원	541	553	118

Ⅱ. 평가결과

1. 총 평

○ 2004년에 시작되어 범국민운동으로 정착한 1사1촌 운동은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 마을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한 획기적 도농교류 활성화 모델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2007년 3월에는 그간 1사1촌 운동이 형식적인 결연건수 채우기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일제 조사를 통해 의미가 없는 결연 사례를 제외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체 평가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함.

○ 더욱 발전적인 1사1촌 운동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및 교류 모델의 다양화,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지역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관심도 제고, 나아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기업과 농촌마을의 결연을 통한 다양한 활동 유도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1사1촌 운동의 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은 매우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역할 분담, 홍보 추진 등은 범 국민운동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그간 형식적이고 양적인 교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자매결연 사례별 교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평가하고 정리한 것은 바람직하였다고 판단함.

○ 다만, 자매결연 사례별 교류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한 평가를 넘어서 1사1촌 운동이 5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는 일정 단계에 올라선 기업-마을과 측면 지원이 필요한 기업-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교류의 모델도 보다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 더욱 다양한 단체의 참여, 더욱 다양한 교류의 내용을 통해 추진체계를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1사1촌 운동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었음.

○ 자체 평가지표로 볼 때 자매결연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그 감소의 이유가 타당하며, 자매결연을 통한 물적 교류금액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판단됨.

- 나아가 참여 주체들의 만족도, 결연 지속의사 등을 성과지표 개발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1사1촌 운동의 유형별 사후관리 체계 마련 및 교류 모델의 다양화가 필요함.

- 2004년 이후 시간이 경과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한 붐 조성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호간에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큰 상태임.

○ 1사1촌 운동의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개발의 재설계를 고려함.

- 단지 교류건수, 교류액 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자매결연 기업-마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을 피드백 시키거나 지원할 사항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이 정책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지속의사 등을 성과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제3의 주체가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참여를 하는 체계도 고려할 수 있음.

4-4-2-0(계속)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

(농림부 / 정주지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39조

○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 ~ 계속

○ 지원대상지역 :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읍·면지역(단, 읍지역은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에 속한 지역에 한함)

○ 지원내용 :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규모 : 20~29호 10억원, 30~49호 15억원, 50~74호 20억원, 75~99호 25억원, 100호이상 30억원

○ 재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주체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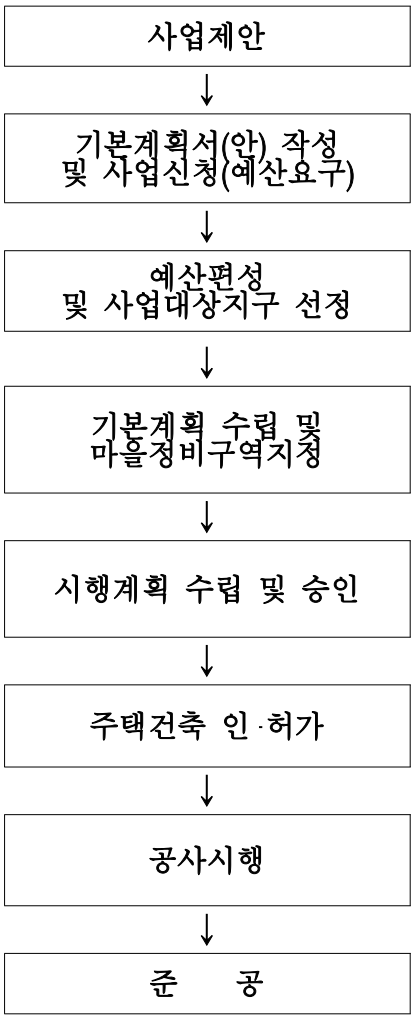

입주예정자, 지방이전기업, 농촌공사 등→시·군

시·군(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농정심의회 심의, 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시·도→농림부

농림부·기획예산처(예산편성)→시·도(대상지구 지정)→시·군

시·군→시·도(신청)→농림부(승인 : 환경부·건교부 협의)→시·도(지정)→시·군(고시)

시·군, 농촌공사→시·도(승인 : 승인 결과 농림부에 보고)→시·군(고시)

입주예정자, 지방이전기업, 시·군, 농촌공사→시 군 또는 시·도

시·군, 농촌공사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1,161	-	-	290	-	1,451
'05	28	-	277	-	-	69	-	346
'06	25	-	260	-	-	65	-	325
'07	15	-	231	-	-	58	-	289
'08	37	-	103	-	-	26	-	129
'09	15	-	290	-	-	72	-	362

* 사업규모(개소)는 신규 착수지구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8	-	768	-	-	192	-	960
'05	28	-	277	-	-	69	-	346
'06	25	-	260	-	-	65	-	325
'07	15	-	231	-	-	58	-	289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도시민 유치비율=도시민/전체입주예정자x100%
- 성과목표치 100% 달성함(목표 15%, 실적 15.2%)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전원마을조성	도시민 유치비율	전원마을지구의 전체입주예정자중 도시민 비율	%	15	15.2	101

* 성과목표치는'13까지 도시민 8,400가구 유치목표 대비 도시민 모집실적임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촌 지역특성에 맞는 품격 있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농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임.

○ 농산어촌지역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단지의 조성사업이므로 농촌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사업대상지 선정시 전

원마을 조성 사업의 시책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시책 및 추진방향인 창의적이고 지역 특성이 깃들인 품격 있는 농촌주택 건축을 위해 단지조성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설계, 완공시까지 관리, 감독 지원 체제를 유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 인프라 유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서의 적절성이 있음. 특히 농촌지역의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도시민 유입의 촉진 매체로 활용함은 적합함.

○ 전원마을 조성사업시행지침에 의한 계획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전원마을조성의 사례조사, 회의,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부처 협의를 통하여 협조 체제를 구축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신청의 단계가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방식도 사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추진의 효율성 높이고 있으며, 사업추진 시 각 부처 관련기관의 협조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으나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추진방향과 시책에 걸 맞는 경관이 조성되려면 건축, 경관등의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워크숍, 시행지침 개정, 포탈의 보강 및 개선을 통해 해결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이 사업은 입주후 정주 활동에 나타나는 이주민과 지역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달성도(성과)를 기대하기 이르다고 판단됨.

○ 전원마을 조성과 입주민의 수나 지표는 목표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의 시책 및 추진방향에 근접하는 마을의 조성과 유지가 더욱 중요함.

3. 개선방안 등

○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시책 및 추진방향을 전반적으로 실행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시행지침의 개선을 지속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시 신청한 조성사업이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단지 배치가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인지를 판단 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또한 건축물이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형태와 구조가 되도록 유도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함.

4-4-3-1(계속)	도농교류 활성화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활력증진 계기 마련과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지원으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는 등 도·농간 상생 구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 사업내용

- 농림어업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및 다양한 홍보 추진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나의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개최
- 도농교류 농촌사랑 정부포상
-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개최
-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포럼 개최

- 제2회 도농교류페스티벌 개최
-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1인 1촌 전문가 지원 등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후지원
- 지역역량강화와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역량 강화
- 도농교류센터 운영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97						297
'05		19						19
'06		39						39
'07		50						50
'08		84						84
'09		105						105

- '08년부터 농소정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예산액 증가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8						108
'05		19						19
'06		39						39
'07		50						50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도농교류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농촌체험마을의 매출액과 1사1촌 자매결연 교류액 15%증가를 성과지표로 설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농교류활성화	1사1촌 자매결연 교류액	전년대비 15%로 증가	억원	541	553	102
	농촌체험마을 매출액	전년대비 15%로 증가	억원	210	233	110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활력증진 계기 마련 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는 것은 현재의 농업·농촌이 처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2002년부터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을 매개 기관으로 벌이고 있는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나의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도농교류 농촌사랑 정부포상',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포럼 개최', '제2회 도농교류페스티벌 개최',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및 1인1촌 전문가 지원을 통한 체험마을 사후관리', '도농교류센터 운영 지원' 등과 같은 크고작은 사업은 도농교류 활성화라는 목표에 기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간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왔을뿐만 아니라, 특히 2008년부터는 농소정협력사업의 예산도 이관됨으로 사업비의 추가 증액이 예상됨.

○ 2007년도에는 1사1촌 자매결연 교류액이 전년대비 15% 증가하고, 농촌체험마을 매출액도 전년대비 15%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업 평가지표의 근본적 문제는 제2회 도농교류 페스티벌, 1사1촌 운동,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 타 사업의 성과를 자체 사업 평가로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의 정체성에 있음. 우선,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체계화와 역할 분담 체계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이 농림부의 도농교류 관련 여러 사업을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이 대행하고 있는 것인 만큼 사업 성과지표 역시 도농복합추진단이 얼마나 사업을 잘 대행하고 있는지에 놓여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시민의 수요를 농촌에서 유인, 활용함으로써 도농상생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은 타당성이 있음.

○ 2007년도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함으로써 체계적 접근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도시민 수요 창출, 농촌 측의 공급기반 강화라는 차원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배치하고 누가 추진할 것인지 등에 관한 근본적 계획이라기보다는 그간 추진되어오던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급급하였다고 판단됨.

- 통폐합해야 할 사업, 효용가치가 없어진 사업, 새로 만들어야 할 사업 등을 기획하고, 그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도농복합추진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설계가 요구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이 사업의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농림부가 기본 방안을 수립하고,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이 정부 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집행, 점검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의 종류가 워낙 방대한 만큼 정부 사업의 대행 추진 체계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대행 추진 체계에서 간과되어서 안되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임. 중앙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파트너십에 깊숙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행 추진이 불가피한 만큼 중앙정부의 사업 관리는 대행기관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점검, 지도할 책임이 있음.

- 즉, 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이 대행한 사업의 결과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추진단의 역할과 역량 강화에 대한 점검, 지도가 필요함.

○ 자체평가보고서에서는 사업 추진 내용의 대부분을 도농교류 페스티벌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1사1촌운동 등에 대한 것으로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함으로 이 사업 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통해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자체평가보고서의 대부분은 도농교류와 관련되는 타 개별사업의 성과 관리 및 달성도에 대한 내용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특히 농촌체험마을 매출액은 농촌체험마을사업의 성과이고, 1사1촌 자매결연 교류액도 1사1촌운동사업의 성과인만큼 그것을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의 성과라고 보는 것은 잘못되었음.

3. 개선방안 등

○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업 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유사사업 통폐합, 실효성이 없는 사업 폐지, 신규사업 발굴 등 포함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고 그 인과관계가 명확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의 본질은 도농복합추진단의 농림부 관련 사업 대행인 만큼 도농복합추진단의 사업 추진 효율성,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

4-4-3-3(신규)	도시민농촌생활지원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의 방치된 빈집 및 공동시설, 공간을 도시민의 농촌정주 기반을 위한 공간으로 지원

○ 은퇴 도시민 또는 귀농인 대상의 농촌정착 지원을 통하여 고령화· 공동화에 의해 낙후된 농촌 지역사회 활력화에 기여

○ 사업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 ~ 계속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 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추진내용

- 사 업 량 : 12개소
- 사 업 비 : 120백만원(개소 당 1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지원대상 : 농촌에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농촌주민 또는 도시민, 마을 내 방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는 마을공동 시설물 또는 공간을 도농교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법인 또는 영농법인

- 사업내용

  · 농촌마을 내 방치된 빈집 및 마을공동 시설물, 불량 주택 리모델링으로 도시민 전원생활, 귀농인 농촌정착 활용, 마을 주민 문화공간, 소득 작업장으로 활용

3. 연차별 추진계획

○ '06~'07년 : 도시민의 전원생활 및 농촌정착 기반조성 및 도농교류 시설 지원을 위한 농촌 빈집 리모델링 중심으로 추진

○ '08년~ : 도시민에게 올바른 농업·농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며 나아가 농촌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 전환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8	13.6	-	-	-	13.6	-	27.2
'05	-	-	-	-	-	-	-	-
'06	80	4	-	-	-	4	-	8
'07	12	0.6	-	-	-	0.6	-	1.2
'08	8	2	-	-	-	2	-	4
'09	28	7	-	-	-	7	-	14

※ '08년부터는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단가 증액 : 10백만원 → 50백만원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2	4.6	-	-	-	4.6	-	9.2
'05	-	-	-	-	-	-	-	-
'06	80	4	-	-	-	4	-	8
'07	12	0.6	-	-	-	0.6	-	1.2

4. 성과목표 달성도

○ '07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사업시행 목표치 100% 달성(12개소 완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시민농촌생활 지원	호당 평균 활용일수 증가율	사업농가의 전년대비 활용일수 증가율	%	100	102	102

- 호당 평균 활용일수 증가율이 목표대비 2% 초과 달성됨

· 측정산식 : 〔(금년도 활용일수/전년도 활용일수)×100〕- 100

* 전년도('06년) 호당 평균 활용일수 44일,
금년도('07년) 호당 평균 활용일수 89일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도시민농촌생활지원'이라는 사업명과 농촌마을내 방치된 빈집 및 공동시설을 도시민의 정주공간으로 지원한다는 사업목표는 근본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부족함.

○ 방치된 빈집과 마을공동시설물 및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는 점에서 사업취지는 좋으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등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개인단위 지원사업으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도시민농촌생활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적합하도록 사업의 전반적인 목표와 세부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도시인구를 유치하려는 사업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방치된 마을공동시설물 및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는 점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등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함.

○ 사업규모도 개소당 1천만원 을 지원(국비·지방비 각 50%)하는 것으로는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농촌에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농촌주민 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는 개인단위 지원이 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관리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07년 신규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점검 평가단 평가결과 반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08년도 예산은 8개소 4억 원을 확보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07년도 12개소 가운데 8개소는 개인시설물 리모델링이며, 4개소는 마을공동시설 리모델링임.

3. 개선방안 등

○ 도시민농촌생활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적합하도록 사업의 전반적인 목표와 세부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4-4-0(계속)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농림부 / 농촌정책과)

Ⅰ.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1사1촌자매결연 및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도농교류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사항을 해소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체계적인 도농교류활성화 지원가능

2. 사업내용

○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 도농교류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지정제 도입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타법에 대한 적용배제 및 특례근거 마련 등

○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도농교류관련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 활동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초·중등 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활성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제도 마련, 농촌체험지도사·마을해설사 자격제도 도입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안 농림부안(장관방침) 마련 : 2006.12월

※ 2007 정부입법계획 : 법제처고시 제2007-7호(2007.3.16)

- '07.9월 법제처 제출, '07.12월 국회제출

○ 2007년 추진실적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조정 : ’06.12.27~’07.7.6
- 농특위 주관 관계부처 조정회의 대응 : ’07.2.28
-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07.4.6~’07.4.26
- 첨렴위원회 부패영향 평가 : ’07.5.15
- 중앙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07.5.31
- 법제처 법안 심사 : ’07.7.18~’07.10.1
- 국무회의 심의 : ’07.10.9
- 국회 제출 : ’07.10.12
- 국회 상임위 심사 대응 : ’07.10.13~’07.11.16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대응 등 : ’07.11.17~’07.11.21
- 국회 본 회의 통과 : ’07.11.22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공포(법률 제8751호) : 2007.12.21

4. 성과목표 달성도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목표 100% 달성

- 2007.12.21일 법률 제8751호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공포됨

Ⅱ. 평가결과

1. 총 평

○ 농촌체험과 1사 1촌 자매결연 등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도농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사항을 해소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

○ 2년여에 걸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51호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

○ 그간 입법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짜임새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농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

○ 그간의 다양한 사례연구,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및 토론, 관계기관협의 및 조정 등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법안 내용에 반영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도농교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가동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반영

○ 재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부처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

○ 보도자료 배포, 신문보도 등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를 나름대로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국민 일반은 물론이고 농업인들마저도 본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현장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최초에 의도하였던 본 법률을 제정하였으므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입법 추진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하였고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번의 입법여건상 반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여건이 무르익을 경우 법률개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뒷 정리 필요

3. 개선방안 등

○ 해당없음